



2019

재무결산 Q&A

Contents

I. 질의항목 리스트	1
-------------------	---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27
-----------------------	----

제 1 장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29
---	----

1. 일반사항	29
2. 재정상태표	33
3. 순자산변동표	36

제 2 장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	37
-------------------------------	----

1.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방법	37
-------------------------	----

제 3 장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38
---------------------------------	----

1. 용어의 정의	38
2. 금융자산의 분류	39
3.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56
4. 금융자산의 인식 후 평가	57
5. 금융자산의 감액과 대손	68
6. 금융자산의 제거	80
7. 금융부채의 분류	83
8.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	85
9. 금융부채의 인식 후 평가	90
10. 금융부채의 제거	92

제 4 장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93
-------------------------------------	----

1. 용어의 정의	93
2.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분류	94

Contents

3. 인식의 일반원칙	105
4. 인식의 예외사항	115
5. 취득원가의 측정	120
6. 감가상각	158
7. 재평가	166
8. 감액	192
9. 제거	195
10. 공시	197
제 5 장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198
1. 인식	198
2. 상각	210
제 6 장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	213
1. 용어의 정의	213
2. 기타의 자산	214
3. 기타의 부채	223
제 7 장 리스 회계처리지침	227
1. 리스의 분류	227
2. 금융리스	230
제 8 장 총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233
1. 인식	233
2. 측정	237
3. 공시	238
제 9 장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243
1. 교환수익의 분류	243
2. 교환수익의 회계처리	254

제10장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262
1. 비교환수익의 분류	262
2.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인식	270
3.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환급과 과오납금의 반환	275
4.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표시	280
제11장 비용 회계처리지침	282
1. 비용의 분류	282
2. 비용의 회계처리	326
3. 비용의 표시	335
제12장 연금 회계처리지침	336
1. 용어의 정의	336
2. 퇴직수당충당부채의 인식 및 측정	337
3. 연금수익의 구성 및 인식	338
제13장 보험 회계처리지침	340
1. 보험충당부채의 인식 및 평가	340
2. 보험수익·비용의 인식 및 측정	341
제14장 보증 회계처리지침	342
1. 보증충당부채의 인식 및 평가	342
제15장 용자 회계처리지침	343
1. 적용범위	343
2. 순현금흐름	351
3. 유효이자율	353
4.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의 상각 및 평가	355
5. 제거(용자금의 매각 및 대손)	356

Contents

6. 수익과 비용의 인식	358
7. 재무제표 표시	359
8. 경과조치	360
제16장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361
1.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의 회계처리	361
제17장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363
1. 일반사항	363
2. 비용과 수익의 집계	365
3.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의 구분	366
4. 행정운영성 경비 구분	384
제18장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389
1. 적용범위	389
2. 국고금의 지출	390
제19장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	393
1. 세입·세출외거래의 회계처리	393
제20장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394
1.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	394
2. 전기오류수정	397
제21장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	409
1.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	409
2. 정부조직 개편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결산	413

Ⅲ. 디브레인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415

제1장 | 수정전시산표 마감전 업무처리 417

1. 개별법과 재무제표 대사 417
2. 건설중인자산, 선급금 내역 검토 419
3. 계정과목 변경 422
4. 계정과목 금액의 적정성 검토 425
5. 부(-)의 계정과목 처리 432
6. 업무마감 절차 435
7.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내역 검토 437
8. 처분 업무처리 오류 438
9. 취득 업무처리 오류 439

제2장 | 내부거래 441

1. 거래처 수정 441
2. 기타 미제거 건 조치방법 444
3. 대상제외 항목 446
4. 상대소관 또는 발생소관 미제거 건만 존재 시 조치방법 450
5. 수동대사 및 국채 제거 방법 454

제3장 | 결산조정분개 및 결산보고서 수정 459

1. 결산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 메뉴 사용 459
2. 결산조정전표 등록 461
3.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464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465

제1장 | 결산개요 467

- 1. 자산, 부채 및 순자산증감표 467

제2장 | 주식 468

- 1. 계류중인 소송사건 468
- 2. 세입·세출외 현금 469
- 3. 용자사업 470
- 4. 자산재평가 472

제3장 | 필수보충정보 473

- 1. 유산자산 473
- 2.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474

제4장 | 부속명세서 477

- 1. 일반유형자산명세서 477
- 2. 출자금명세서 479

제5장 | 기타 480



질의항목 리스트



I. 질의항목 리스트

연번	질 의 요 약	페이지
Q19	시설장치 보증금 회계처리 계정과목	51
Q20	예탁금의 장·단기 구분 기준	52
Q21	민간업체 전기료 대납액의 회계처리	53
Q22	승소한 소송 관련 미수채권의 계정과목	54
	3.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56
Q23	자산인식 되지 않은 매립면허권의 현물출자 시 회계처리	56
	4. 금융자산의 인식 후 평가	57
Q24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평가	57
Q25	MMF, 채권형펀드의 이자수익 원본 가산여부	58
Q26	특정금전신탁의 평가	58
Q27	채무증권의 평가	60
Q28	지분증권의 평가	61
Q29	출자금의 평가	62
Q30	기타지분증권(연기금투자액)의 재투자 회계처리	63
Q31	유가증권 평가 시 지분법 사용 가능 여부	64
Q32	기 투자증권평가이의 있는 경우 투자증권평가손실 인식	64
Q33	만기보유 목적 채무증권의 공정가액 평가 제외 가능 여부	65
Q34	중도 매매 목적이 아닌 유가증권의 평가	66
Q35	직접 대여금(미수채권)과 간접 대여금(수익증권)의 공정가액 평가여부	67
	5. 금융자산의 감액과 대손	68
Q36	유가증권 감액손실 인식여부의 선택	68
Q37	유가증권 감액손실 인식 후 비망가액	70
Q38	종류가 다른 유가증권의 감액손실과 감액손실환입 발생시	70
Q39	감자로 인해 유가증권의 지분을 변동시 회계처리	71
Q40	기타의장기금융상품 감액 시 회계처리	72
Q41	대여금의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대손충당금의 구분	73
Q42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 및 인식시점	74
Q43	유효이자율보다 대여이자율이 높은 융자금의 대손추산액 회계처리	76

연번	질 의 요 약	페이지
Q44	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	77
Q45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차보증금의 대손충당금 인식여부	78
Q46	미수제재금수익 회수가능성 하락 시 회계처리	79
	6. 금융자산의 제거	80
Q47	전신전화가입권 해지 후 환급금 회계처리	80
Q48	수익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이자의 회계처리	81
Q49	단주처리로 인해 수령한 금액의 회계처리	82
	7. 금융부채의 분류	83
Q50	타 기금으로부터 상환의무가 있는 자금 수령 시 계정과목	83
Q51	국유재산 대부보증금 수령 시 계정과목	84
	8.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	85
Q52	국채 발행 시 발행수수료, 법률자문료 등의 회계처리	85
Q53	발행일과 매출일이 다른 국채 발행 회계처리	86
Q54	해외차입금의 현재가치 평가 시 적용할 유효이자율	87
Q55	결산일에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수수료의 회계처리	88
Q56	협정에 따른 방위분담금의 부채 인식 필요 여부 등	89
	9. 금융부채의 인식 후 평가	90
Q57	퇴직급여충당부채 환율변동 효과 회계처리 방법	90
	10. 금융부채의 제거	92
Q58	정부내예수금 조기상환 회계처리	92
	제4장.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93
	1. 용어의 정의	93
Q59	기부채납 받은 건물의 취득원가 산정 시 필요한 공정가액의 의미	93
	2.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분류	94
Q60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구분 기준	94
Q61	건축물의 정의	95
Q62	국유재산상 기계기구의 재무계정과목	96
Q63	전비품 및 치안유지자산의 범위	97

I. 질의항목 리스트

연번	질 의 요 약	페이지
Q64	개업준비 비용을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가능 여부	99
Q65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 계정과목이 발생하는 경우	100
Q66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미술품의 회계처리	101
Q67	사이버갤러리에서 관리하는 정부미술품 인식 주체	101
Q68	미술품 구입 시 회계처리	102
Q69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취득한 자산의 귀속 및 회계처리	103
Q70	사회기반시설 관련 계정과목 발생 오류	104
	3. 인식의 일반원칙	105
Q71	등기 미완료 토지에 대한 자산 인식 방법	105
Q72	선 사용 토지의 자산 인식 여부	106
Q73	국방부에서 관리중인 군견(생물자산)의 회계처리	107
Q74	50만원 미만 취득 건물 자산 계상해도 되는지 여부	108
Q75	일괄취득 시 소액자산(50만원 미만) 판단기준	109
Q76	건당 50만원 이상의 도서 구입비 회계처리	110
Q77	업무용 도서 및 도서관 도서구입비 계정과목 선택	111
Q78	비용 처리한 400번대 예산목에 대한 자산 인식 여부	112
Q79	소유권이 없는 토지에 지은 건축물의 자산 인식 여부	113
Q80	재측량으로 토지 면적 증가 시 회계처리	114
	4. 인식의 예외사항	115
Q81	‘유산자산취득비’ 사용 시 회계처리	115
Q82	유산자산을 비용 처리하는 이유	116
Q83	보존용재산의 유산자산 해당 여부	117
Q84	수변보호구역, 생태계보호구역의 유산자산 해당 여부	118
Q85	문화재 복원작업 관련 비용의 회계처리	119
	5. 취득원가의 측정	120
Q86	건물에 대한 추가설비를 건물과 건축물로 구분하는 기준	120
Q87	토지 취득 관련 선납할인액 및 선금금에 대한 이자수익 회계처리	121
Q88	토지의 취득부대비용	122

연번	질 의 요 약	페이지
Q89	건물 등의 취득부대비용	124
Q90	취득부대비용 중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회계처리	126
Q91	유찰 업체에 지급한 설계보상비의 회계처리	127
Q92	선박 취득 시 선박펀드에 지급한 수수료의 취득원가 포함 여부	128
Q93	취득부대비용이 본 자산의 취득원가보다 큰 경우 회계처리	129
Q94	무주재산 발굴 시 회계처리	130
Q95	부처 내 자산 관리권 이전의 회계처리	131
Q96	자산 교환으로 인한 취득 시 취득원가의 측정	132
Q97	현금이 수반된 토지교환거래 시 공정가액 평가방법	133
Q98	아파트 재건축(분양권)에 따른 회계처리	134
Q99	무상관리전환 시 취득실체의 회계처리	135
Q100	무상관리전환 시 취득실체의 재평가이익 승계	137
Q101	무상관리전환 시 취득실체의 감가상각누계액 승계	138
Q102	무상관리전환 시 처분실체의 회계처리	139
Q103	무상관리전환 시 처분실체의 재평가이익 처리방법	140
Q104	일괄취득자산의 올바른 회계처리	141
Q105	토지 사용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 산정	142
Q106	철거 예정 건축물의 회계처리	143
Q107	철거 예정 자산 장부가액 순액표시 여부	144
Q108	민간에서 국가를 대행하여 취득한 자산의 회계처리	144
Q109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일반적인 구분기준	145
Q110	사례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146
Q111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비 회계처리	148
Q112	국도 관련 확장공사, 도로변경 등 공사비 회계처리	149
Q113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회계처리	150
Q114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회계처리	151
Q115	소모성물품(비용)을 수선하는 경우 계정과목	152
Q116	출자 및 민간대행사업을 통한 취득 시 사용수익권 계상	153

I. 질의항목 리스트

연번	질 의 요 약	페이지
Q117	출자 및 민간대행사업을 통한 취득 시 출자금 계상	154
Q118	사용수익권의 재무제표 표시	156
Q119	국가어항 관련 사용수익권 인식 및 회계처리	157
	6. 감가상각	158
Q120	치안유지자산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가방법	158
Q121	집기 비품의 내용연수	159
Q122	자산의 잔존가액 결정	160
Q123	잔존가액이 0인 경우 오류인지 여부	161
Q124	감가상각 미수행자산에 대한 전기누적효과 반영 방법	162
Q125	전비품 중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오류인지 여부	163
Q126	과거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 변경 여부	164
Q127	상각완료자산의 무상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 시 회계처리	165
	7. 재평가	166
Q128	국유재산에 해당하지 않은 자산의 재평가 수행 여부	166
Q129	200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 수행 여부	167
Q130	내용연수 경과자산의 재평가 수행 여부	168
Q131	치안유지자산 및 미술품의 재평가 수행 여부	169
Q132	투자자산의 재평가 수행 여부	170
Q133	일반유형자산의 재평가 사유	171
Q134	일반유형자산의 재평가 방법	172
Q135	자산별 재평가 수행일의 차이 가능 여부	173
Q136	자산 재평가 시 물가배수법의 적용방법	174
Q137	자산 재평가 시 공정가액의 범위	175
Q138	매각 중인 토지의 재평가 여부 및 재평가 금액 측정	176
Q139	재평가 수행을 위해 토지 공시지가를 관리해야 하는 이유	177
Q140	재평가이익이 있는 자산의 분류 변경 시 회계처리	178
Q141	자산 재평가 수행 주기	179
Q142	당해 연도 취득 토지의 재평가 여부	180

연번	질 의 요 약	페이지
Q143	자산 재평가 단위	181
Q144	토지의 용도변경으로 가치 상승 시 회계처리	181
Q145	재평가 시 입목의 평가방법	182
Q146	해외에 소재한 자산의 재평가 방법	183
Q147	재평가 대상 해외 부동산의 기말 환산 시 적용할 환율	184
Q148	재평가로 자산 증가 시 회계처리 방법	185
Q149	재평가이익이 있는 자산의 감가상각 시 회계처리	186
Q150	재평가이익이 있는 자산의 처분 시 회계처리	187
Q151	재평가이익이 발생한 자산의 교환, 현물출자 시 회계처리	188
Q152	재평가 이익이 있는 자산 용도폐지 시 회계처리	189
Q153	재평가손실이 있는 자산의 처분 시 회계처리	190
Q154	재평가 이후 자산의 내용연수	191
	8. 감액	192
Q155	건설중인건물에 대한 재해손실 회계처리	192
Q156	재평가이익이 있는 자산의 감액 시 회계처리	193
Q157	자산 폐기 시 회계처리 계정과목	194
	9. 제거	195
Q158	현물출자로 인한 유형자산 처분 시 회계처리	195
Q159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한 자산매각 시 회계처리	196
Q160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하지 않은 유상관리전환 시 회계처리	196
	10. 공시	197
Q161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의 공시사항	197
	제5장.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198
	1. 인식	198
Q162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의 자산 인식 여부	198
Q163	시스템 개발 관련 연구개발용역비 무형자산 인식 여부	199
Q164	외부 용역으로 구축한 소프트웨어의 인식 및 내용연수의 측정	200
Q165	자체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취득원가 및 계정과목	202

I. 질의항목 리스트

연번	질 의 요 약	페이지
Q166	특허권 취득원가의 범위	203
Q167	보안프로그램 라이선스 취득 시 계정과목	205
Q168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	206
Q169	감리비용의 취득부대비용 해당 여부	207
Q170	홈페이지 웹호환성 인증마크 획득 및 디자인 개선에 지출된 금액의 회계처리 계정과목	208
Q171	공공기관으로부터 무형자산 수증 시 계정과목 선택	209
	2. 상각	210
Q172	상각완료된 무형자산의 관리	210
Q173	자본적 지출로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211
Q174	자본적 지출 관련하여 감가상각 시 월/연 단위 상각 여부	212
	제6장.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	213
	1. 용어의 정의	213
Q175	병원 내 의약품 구매비용 회계처리	213
	2. 기타의 자산	214
Q176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선택 및 변경방법	214
Q177	재고자산 저가평가 시 회계처리	215
Q178	시장가격의 확인이 어려운 재고자산(축산물)의 저가법 적용 여부	216
Q179	재고자산의 정상적/비정상적 감모손실의 원가구분	217
Q180	정부비축물자 회계처리	218
Q181	퇴직연금운용자산 발생이자 회계처리	220
Q182	재화 판매 후 미수된 금액의 회계처리	221
Q183	타 소관으로 불용품 무상양여 시 회계처리	222
	3. 기타의 부채	223
Q184	퇴직보험예치금의 적절한 회계처리	223
Q185	기타직에 대한 퇴직보험예치금 납입 시 회계처리	224
Q186	퇴직보험운용사에 대한 수수료 회계처리	225
Q187	퇴직급여충당부채 초과 예치금 회계처리	226

연번	질 의 요 약	페이지
Q188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부채 회계처리	226
	제7장. 리스 회계처리지침	227
	1. 리스의 분류	227
Q189	금융리스부채의 유동성 대체	227
Q190	제3자 명의로 계약된 금융리스계약에 대한 자산, 부채의 인식 여부	228
Q191	운용리스와 임차계약 구분기준	229
	2. 금융리스	230
Q192	금융리스자산 취득원가에 조달수수료 포함여부	230
Q193	리스개설직접원가 반영 시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 금액 차이	231
Q194	지급일과 결산일이 상이한 금융리스 회계처리	231
Q195	금융리스자산의 재무제표 표시	232
	제8장. 총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233
	1. 인식	233
Q196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총당부채 인식 요건	233
Q197	재무제표 작성 완료 전 패소가 확정된 경우 소송총당부채 계상 여부	235
Q198	최소운영수입보장협약(민간투자사업) 관련 총당부채 인식 여부	236
	2. 측정	237
Q199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총당부채 금액 측정	237
	3. 공시	238
Q200	소송 관련 총당부채 계상 시 계정과목 및 주식 공시 사항	238
Q201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에 따른 주식 공시 여부	239
Q202	소송가액 미확정 시 주식 공시 여부	241
	제9장.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243
	1. 교환수익의 분류	243
Q203	감호소 봉투판매 수익의 계정과목	243
Q204	병원운영에 따른 수익의 계정과목	244
Q205	자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수익의 계정과목	246
Q206	주파수할당대가의 계정과목	247

I. 질의항목 리스트

연번	질 의 요 약	페이지
Q207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교육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계정과목	248
Q208	일반회계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대체경비수입의 회계처리	249
Q209	정기예금 이자수익 계정과목	250
Q210	관서운영경비를 관리하는 보통예금의 이자수익 계정과목	251
Q211	폐지, 고철 매각대금 계정과목	252
Q212	신용카드 포인트의 현금 수령 시 회계처리 계정과목	253
	2. 교환수익의 회계처리	254
Q213	사용료수익의 인식	254
Q214	주파수할당대가 수익의 기간배분	255
Q215	소송관련 선수금의 수익 인식 시기	256
Q216	건물의 손상으로 수령하는 보험료 회계처리	257
Q217	수입금 환급과 과오납금 반환의 차이	258
Q218	전기 발생 수입금에 대한 과오납반환 시 회계처리	259
Q219	전기 징수결의 미납분에 대한 오류 정정 회계처리	260
Q220	일반회계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교환수익 계정과목	261
	제10장.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262
	1. 비교환수익의 분류	262
Q221	부담금, 과태료 및 과징금 등에 대한 연체이자의 계정과목	262
Q222	타 부처로부터 건설중인자산을 이전 받은 경우 회계처리	263
Q223	보조비 집행 후 민간이 구입한 물품을 인계받는 경우 계정과목	264
Q224	농특세이전수입과 주세이전수입의 정의	264
Q225	학자금 대여금 이전에 따른 계정과목	266
Q226	기금 신설 전 적립된 자금의 인식시기 및 계정과목	267
Q227	기금 폐지 후 사후정산대금 등을 수령한 경우 회계처리	268
Q228	기타재원조달의 정의	269
	2.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인식	270
Q229	벌금수익의 수익 인식 시기	270
Q230	무상이전수입의 수익 인식 시기	271

연번	질 의 요 약	페이지
Q231	기금이 수령하는 출연금 회계처리	272
Q232	차입금상환재원으로 수령한 출연금의 순자산변동표 반영	273
	3.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환급과 과오납금의 반환	275
Q233	전기 징수한 부담금수익에 대한 법률에 따른 환급 시 회계처리	275
Q234	전기 징수한 부담금수익에 대한 과오납반환 시 회계처리	276
Q235	과오납반환 시 지급금액 계정과목	277
Q236	외환건전성부담금 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의 적정성	278
Q237	비교환수익 환급금이 당해 징수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계처리	279
	4.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표시	280
Q238	비교환수익을 순자산변동표와 재정운영표로 구분 반영하는 기준	280
Q239	기금의 특별회계전입금(순자산변동표)사용 가능 여부	281
	제11장. 비용 회계처리지침	282
	1. 비용의 분류	282
Q240	선택진료수당 비용 계정과목	282
Q241	기타직 직원의 급여 지급 시 계정과목	283
Q242	무기계약직 급여 지급 시 계정과목	284
Q243	파견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지원비의 계정과목	285
Q244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4대보험료의 계정과목	286
Q245	포상 목적의 상품권 지급 시 계정과목	288
Q246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한 비용의 계정과목	289
Q247	해외 파견공무원 의료보험료 지급 시 계정과목	290
Q248	출연비 지급 시 계정과목의 구분 기준	291
Q249	보조비 지급 시 계정과목의 구분 기준	292
Q250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보조비의 계정과목	293
Q251	출자기관의 법인세 대납하는 경우 비용 계정과목	294
Q252	잔여재산 반환 시 계정과목	295
Q253	사진인화 및 책자 발간 시 계정과목	296
Q254	파워포인트 제작에 소요된 비용의 계정과목	297

I. 질의항목 리스트

연번	질 의 요 약	페이지
Q255	신문 구독 대금 지급 시 계정과목	297
Q256	시험연구비와 연구개발용역비의 계정과목 구분	298
Q257	연구개발용역비와 연구용역비의 계정과목 구분	299
Q258	외부 번역 용역비 지급 시 계정과목	300
Q259	의료적 시험 실시 비용의 계정과목	301
Q260	외부강사 초빙 강사료 지급 시 계정과목	302
Q261	무선통신망 유지 관리비의 계정과목	303
Q262	관리용역비와 위탁사업비의 계정과목 구분	304
Q263	위탁계약에 의한 상담센터 운영비용의 계정과목	305
Q264	사업비 용도로 사용되는 민간위탁금의 계정과목	306
Q265	민간대행사업 수행 시 비용 계정과목	307
Q266	외부 전문가 자문료 지급 시 계정과목	308
Q267	외부전문가 용역비 지급 시 계정과목	309
Q268	외부 일반인 대상 교육의 초빙 강사료의 계정과목	310
Q269	기타용역비와 기타수수료의 계정과목 구분	311
Q270	TV수신료, Skylife 수신료 등 지급 시 계정과목	312
Q271	계약에 의한 부담금 지급 시 계정과목	313
Q272	협회비 지급 시 계정과목 선택	313
Q273	업무용 차량 주유비 지급 시 계정과목	314
Q274	해외 주재원 여비 지급 시 계정과목	315
Q275	해외 출장 시 식사비 및 공식행사비의 계정과목	316
Q276	공식행사 진행 관련 비용 계정과목	317
Q277	전세권 설정 시 지급한 비용의 계정과목	318
Q278	송달료 등 소송비용의 계정과목	319
Q279	신용카드 수수료 지급 시 계정과목	320
Q280	신용평가정보이용료 지급 시 계정과목	321
Q281	회의장소 임차료의 계정과목	322
Q282	변론참고인에 지급한 여비 계정과목	323

연번	질 의 요 약	페이지
Q283	기타공공기관의 의료보조비 지급 시 계정과목	324
Q284	국가회계실체의 법인세 납부 시 계정과목	325
	2. 비용의 회계처리	326
Q285	지방재정교부금 정산금의 인식 시기	326
Q286	사고이월금액에 대한 비용 인식 기준	327
Q287	기금이 타 기금에 출연금 지급 시 회계처리	328
Q288	과오지급금회수금의 비교환수익 반영여부	329
Q289	급여 등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 회계처리	329
Q290	보조비 등의 집행 잔액을 정산하여 반납 받는 경우 회계처리	331
Q291	행정소송 승소 후 반환받은 소송비용의 계정과목	332
Q292	지출금반납금 회계처리	333
Q293	보조비 지급 후 보조비 사용내역의 회계처리 여부	334
	3. 비용의 표시	335
Q294	전출금 지급 시 순자산변동표와 재정운영표에 반영하는 기준	335
	제12장. 연금 회계처리지침	336
	1. 용어의 정의	336
Q295	연금총당부채의 정의	336
	2. 퇴직수당총당부채의 인식 및 측정	337
Q296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총당부채 계상 여부	337
	3. 연금수익의 구성 및 인식	338
Q297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부처 예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	338
Q298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인사혁신처 예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	339
	제13장. 보험 회계처리지침	340
	1. 보험총당부채의 인식 및 평가	340
Q299	보험총당부채 산정방식	340
	2. 보험수익·비용의 인식 및 측정	341
Q300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증감 시 회계처리	341

I. 질의항목 리스트

연번	질 의 요 약	페이지
	제14장. 보증 회계처리지침	342
	1. 보증충당부채의 인식 및 평가	342
Q301	보증비용의 측정	342
	제15장. 융자 회계처리지침	343
	1. 적용범위	343
Q302	융자보조원가총당금 인식의 주체	343
Q303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는 융자사업의 범위	344
Q304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여금의 회계처리	345
Q305	단기융자금에 대한 융자보조원가총당금 산정 필요 여부	347
Q306	융자보조원가총당금 설정 대상 융자금	348
Q307	국고채이자율 확인 방법	349
Q308	융자금의 현재가치 평가 여부	350
	2. 순현금흐름	351
Q309	융자금 채무불이행 예상액 산정 방법	351
Q310	순현금유입액 측정 시 채권잔액비례법 사용 가능 여부	352
	3. 유효이자율	353
Q311	융자보조원가총당금 계산 시 적용하는 유효이자율	353
Q312	융자보조원가총당금 계산 시 적용하는 유효이자율	354
	4. 융자보조원가총당금의 상각 및 평가	355
Q313	융자금에 대한 미수이자 계상 시 적용할 이자율	355
	5. 제거(융자금의 매각 및 대손)	356
Q314	융자금 정상 회수의 경우 융자보조원가총당금의 회계처리	356
Q315	융자금 회수 시 회계처리	357
	6. 수익과 비용의 인식	358
Q316	융자보조비용(융자보조원가총당금환입), 융자금이자수익의 재정운영표상 표시	358
	7. 재무제표 표시	359
Q317	융자금의 표시(유동성대체)	359

연번	질의 요약	페이지
	8. 경과조치	360
Q318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융자금에 대한 대손추산액의 처리	360
	16장.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361
	1.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의 회계처리	361
Q319	임대형 민자사업(BTL) 계약변경 시 회계처리	361
Q320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자산 인식 시점	362
	17장.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363
	1. 일반사항	363
Q321	프로그램명이 변경된 경우 재정운영표상 표시 방법	363
Q322	국가회계의 원가정보 집계단위	364
	2. 비용과 수익의 집계	365
Q323	일반회계의 프로그램수익	365
	3.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의 구분	366
Q324	감가상각비(프로그램총원가 vs 비배분비용)	366
Q325	자산재평가손실(프로그램총원가 vs 비배분비용)	367
Q326	자산폐기손실(프로그램총원가 vs 비배분비용)	368
Q327	외화평가손실(프로그램총원가 vs 비배분비용)	369
Q328	미수채권대손상각비(프로그램총원가 vs 비배분비용)	370
Q329	여유자금운용 투자증권처분손실(프로그램총원가 vs 비배분비용)	371
Q330	금융리스이자비용(프로그램총원가 vs 비배분비용)	372
Q331	인건비, 복리후생비의 원가구분(비배분비용 vs 관리운영비)	373
Q332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비용의 원가 구분	374
Q333	폐지된 융자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원가구분	375
Q334	국고금운용수익계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원가구분	376
Q335	프로그램 관련 수익의 원가구분(프로그램수익 vs 비배분수익)	377
Q336	지출금반납금의 원가 구분(프로그램수익 vs 비배분수익)	378
Q337	융자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이자수익(프로그램수익 vs 비배분수익)	379
Q338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수익(프로그램수익 vs 비배분수익)	380

I. 질의항목 리스트

연번	질 의 요 약	페이지
Q339	잡이익(프로그램수익 vs 비배분수익)	381
Q340	이자수익(프로그램수익 vs 비배분수익)	382
Q341	정부내전대차관이자수익(프로그램수익 vs 비배분수익)	383
	4. 행정운영성 경비 구분	384
Q342	일반회계의 행정운영성경비의 구분	384
Q343	기금의 행정운영성경비 중 프로그램총원가 계상 여부	385
Q344	인건비의 원가구분(프로그램총원가 vs 관리운영비)	386
Q345	동일부처 내 회계실체 간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원가 배부	387
Q346	부서관 간접원가	388
	제18장.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389
	1. 적용범위	389
Q347	국고금 회계처리지침의 적용 대상	389
	2. 국고금의 지출	390
Q348	예산집행 과정과 회계처리 시점의 관계	390
Q349	국고수입과 국고이전지출의 정의	391
Q350	기말 결산 시 국고예금 잔액이 있을 경우 오류여부	392
	제19장.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	393
	1. 세입·세출외거래의 회계처리	393
Q351	현물출자 시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393
	제20장.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394
	1.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	394
Q352	회계정책변경효과의 소급적용에 대한 기준 해석	394
Q353	정책변경에 따른 원가 구분 변경 시 재무제표 재작성 여부	395
Q354	퇴직수당충당부채 주식 재작성 및 비교표시 방법	396
	2. 전기오류수정	397
Q355	유형자산 분류 및 인식관련 전기오류수정 시 회계처리	397
Q356	감사원 지적에 따라 미인식된 부채 계상시 회계처리	399
Q35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전기오류 회계처리	400

연번	질의 요약	페이지
Q358	비용을 미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오류정정 회계처리	401
Q359	투자증권평가이익을 재정운영표 상 평가이익으로 처리한 경우 오류정정 회계처리	402
Q360	건축물을 건물로 잘못 처리한 경우 회계처리	403
Q361	재평가 자산의 오류수정 회계처리	404
Q362	중대한 오류의 판단	406
Q363	전기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전기 순자산변동표 반영 방법	407
Q364	전기오류의 범위	408
	제21장.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	409
	1.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	409
Q365	조직변경으로 이관된 자산이 취득원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회계처리	409
Q366	조직개편에 따른 자산 이관 회계처리 방법	410
Q367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증감 계정과목	411
Q368	조직개편 시 국고예금 처리방법	412
	2. 정부조직 개편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결산	413
Q369	폐지부처 재무제표의 국회 보고	413

[디브레인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연번	질 의 요 약	페이지
	제1장. 수정전시산표 마감전 업무처리	417
	1. 개별법과 재무제표 대사	417
Q370	결산조정전표로 등록하여 국유재산 대장에만 누락된 자산의 처리	417
Q371	국유재산 금액 조회 가능 시기	417
Q372	지번 변경으로 분할·합병된 토지의 업무처리 방법	418
	2. 건설중인자산, 선금금 내역 검토	419
Q373	회계연도말 선금금 잔액 정산 여부	419
Q374	전기 이전에 자본적지출을 비용 처리한 경우 당기 업무처리 방법	419
Q375	검사미정산으로 남아있는 건설중인자산 정리방법	420
Q376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분개로 삭제한 건설중인자산을 일선관서에서 배부 처리한 경우 조치방법	420
Q377	본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완료된 부대공사의 정산 시기	421
Q378	본계정대체되지 않은 건설중인자산 회계처리	421
	3. 계정과목 변경	422
Q379	보험료 지급 시 디브레인상 업무처리 방법	422
Q380	시스템상 계정과목 변경 방법	423
Q381	시스템상 계정과목 변경 반영 시간	424
Q382	'계정과목변경' 기능 사용가능 시기	424
Q383	'수입과목정정결의' 기능 사용가능 시기	424
	4. 계정과목 금액의 적정성 검토	425
Q384	국고예금 잔액 적정성 검토	425
Q385	국고수입과 월별 세출부 누계금액이 차이나는 원인	425
Q386	결산상 잉여금과 한국은행국가예금 잔액의 일치 여부	426
Q387	정부외자산기부 금액 발생 시 적정성 여부	426
Q388	전기오류수정이의 발생내역 검토 및 조치방법	427

연번	질의 요약	페이지
Q389	기타증감을 통해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적정성 판단	428
Q390	BTL자산 취득 시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이익의 적정성 여부	428
Q391	감가상각비 재계산을 위한 정보 조회 방법	429
Q392	기타증감을 통해 발생한 잡손실의 적정성 판단	429
Q393	물품대장과 국유재산대장 간의 자산 이동 시 발생한 손익 처리	430
Q394	기부채납 시 올바른 회계처리와 업무처리 방법	430
Q395	전세권이 감가상각되는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	431
	5. 부(-)의 계정과목 처리	432
Q396	임차보증금 관련 부(-)의 선수금 발생사유 및 처리방법	432
Q397	계정과목별 부(-)의 명세서상 관리번호의 의미	433
Q398	선금금 거래처별 부(-)의 잔액 조치방법	433
Q399	미지급금의 발생과 지급시점의 거래처가 상이한 경우 조치방법	433
Q400	거래처별 부(-)의 명세서에서 전기에 조치한 거래처가 당기에 부(-)의 금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조치방법	434
Q401	연계기관 재무결산 자료 등록 시 부(-)의 금액이 발생하여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 조치방법	434
	6. 업무마감 절차	435
Q402	기금의 수입, 지출 업무가 마감되었는데도 업무마감일자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조치방법	435
Q403	기금의 국유재산은 마감되었으나 중앙관서에서 마감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조치방법	435
Q404	선금금이나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수행 시기	436
	7.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내역 검토	437
Q405	자산취득비(430-01) 등 400번대 예산으로 지출한 내역이 자본적지출 또는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437
	8. 처분 업무처리 오류	438
Q406	자산 매각 시 업무처리 오류 조치 방법	438

I. 질의항목 리스트

연번	질 의 요 약	페이지
	9. 취득 업무처리 오류	439
Q407	건설중인자산을 대체하지 않고 기타증가로 처리한 경우 조치방법	439
Q408	건당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자산을 비용처리한 경우 조치방법	439
Q409	대금 지급 시 미지급금이 정산되지 않은 오류 조치방법	440
	제2장. 내부거래	441
	1. 거래처 수정	441
Q410	수입, 지출업무가 마감된 상태에서 거래처 수정방법	441
Q411	상대소관이 폐지소관인 경우 조치방법	441
Q412	상호점검에서 조회되지 않는 전표의 거래처 수정방법	442
Q413	내부거래처가 올바른지 확인하는 방법	442
Q414	거래처명과 거래처 정보가 불일치하는 미제거 건 조치방법	443
	2. 기타 미제거 건 조치 방법	444
Q415	부가세 차이로 인한 미제거 건 조치방법	444
Q416	자산계정의 잔액이 0원이나, 당기에 발생한 부(-)의 금액이 미제거로 표시된 경우 조치방법	445
Q417	거래처가 국고금회계인 건의 조치 방법	445
	3. 대상제외 항목	446
Q418	대상제외 항목의 의미와 처리방법	446
Q419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의 종류	446
Q420	조달수수료,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미제거로 조회된 이유	447
Q421	기금 내부거래 대상 자료에 법인세비용 포함여부	448
Q422	선급법인세도 법인세비용과 같이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인지 여부	448
Q423	부담금수익과 제세의 내부거래 제거 여부	449
Q424	관세를 운송비로 처리한 경우 조치방법	449
	4. 상대소관 또는 발생소관 미제거 건만 존재시 조치방법	450
Q425	상호점검에서 발생소관의 미제거 건만 존재하는 경우 조치방법	450
Q426	발생소관의 미제거 건만 존재하는 경우(상대소관 부채 누락) 조치방법	450

연번	질의 요약	페이지
Q427	발생소관의 미제거 건만 존재하는 경우(조달청에 대한 관리용역비) 조치방법	451
Q428	발생소관의 미제거 건만 존재하는 경우(상대소관의 거래처 선택 오류) 조치방법	451
Q429	발생소관의 미제거 건만 존재하는 경우(발생소관의 거래처 선택 오류) 조치방법	452
Q430	상대소관 미제거 건만 존재하는 경우(계정과목 선택 오류) 조치방법	452
Q431	상대소관에서 발생시킨 미제거 건만 존재하는 경우(거래처 선택 오류) 조치방법	453
Q432	환원전표 내부거래 제거 여부	453
	5. 수동대사 및 국채 제거 방법	454
Q433	상호점검 조회 화면의 요청번호 의미	454
Q434	일대 다수 전표 미제거 건의 조치방법	454
Q435	회계간 내부거래 미제거 건 조치 기한	455
Q436	외부연계기관의 수동대사 수행 여부	455
Q437	중간점검 시 자산부채 수동대사 필요 여부	456
Q438	내부거래 COA 다운로드 방법	456
Q439	중앙관서내 회계실체간 국채 내부거래 제거 방법	457
Q440	소관간 국채 내부거래 제거 방법	458
	제3장. 결산조정분개 및 결산보고서 수정	459
	1. 결산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 메뉴 사용	459
Q441	디브리엔을 통한 감가상각비 계산 시점	459
Q442	정부내예수금에 대한 미지급비용 계상 시 계정과목과 시스템 상 처리방법	459
Q443	대손충당금의 프로그램 대응 방법	460
	2. 결산조정전표 등록	461
Q444	결산조정전표 등록 가능 시점	461
Q445	건설중인자산을 결산조정분개로 처리한 경우 사후 조치	461
Q446	결산조정전표 입력 시 조정항목의 순자산구분 선택 방법	462
Q447	소송패소로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기존 소송충당부채 상계 방법	462
Q448	항공권 구매권한 선급비용 인식 시 환원분개 처리 여부	463

I. 질의항목 리스트

연번	질의 요약	페이지
	3.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464
Q449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절차	464
Q450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시 수정분개의 반영 방식	464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연번	질의 요약	페이지
	제1장. 결산개요	467
	1. 자산, 부채 및 순자산증감표	467
Q451	연계기관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증감표 작성방법	467
	제2장. 주식	468
	1. 계류중인 소송사건	468
Q452	주식 공시 대상인 소송사건의 범위	468
Q453	소송 관련 주식 작성	468
	2. 세입·세출외 현금	469
Q454	세입·세출외 현금 주식 기재 방법	469
	3. 용자사업	470
Q455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이 없는 용자사업 주식 공시	470
Q456	용자사업 주식에 대손처리금액 표시 방법	470
Q457	용자사업 세부현황 작성 시 감면액 표시 방법	471
Q458	용자사업 주식 기재 범위	471
	4. 자산재평가	472
Q459	자산재평가 주식사항 작성 방법	472
	제3장. 필수보충정보	473
	1. 유산자산	473
Q460	유산자산 공시 방법	473
	2.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474
Q461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상 미수채권의 증가 표시 방법	474
Q462	공무원연금부담비의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조정항목 포함여부	474
Q463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금액 대서 방법	475
Q464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의 퇴직급여 차이와 재정운영표의 퇴직급여 금액 일치 여부	476
Q465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상 무형자산 상각금액 입력 방법	476

I. 질의항목 리스트

연번	질의 요약	페이지
	제4장. 부속명세서	477
	1. 일반유형자산명세서	477
Q466	일반유형자산명세서 상 '감가상각등'과 '기타증감'의 내용	477
Q467	자산재평가이익 금액대사 방법	478
Q468	재평가이익이 존재하는 유형자산 처분 시 명세서 표시 방법	478
	2. 출자금명세서	479
Q469	출자금명세서 작성 방법	479
	제5장. 기타	480
Q470	결산보고서 인쇄본 기획재정부 제출 여부	480
Q471	중앙관서 결산보고서 조회 사이트	480
Q472	세출예산과 재무계정과목 매핑자료 다운로드 방법	481
Q473	한국은행국가예금이 국가채권현재액 보고서에 포함되는지 여부	482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제 1 장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1. 일반사항

Q1 국가회계실체의 범위

질 의 내 용

국가회계실체의 범위를 결정하는 근거 규정은 무엇인가요?

-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을 국가회계실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회계실체”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Q2 내부거래 상계 제외

질 의 내 용

국가회계실체가 조달청에 납부하는 조달수수료 등 소액이 다수로 발생하는 내부거래도 국가재무제표 작성 시 상계처리하나요?

-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호에 따라 중요성을 고려하여 실용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조달수수료 등은 소액 다수 건으로 제거로 인한 효익보다 소요되는 비용이 크고 그 금액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아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일반원칙) 국가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 4. (일반원칙) 국가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으로 하며, 다음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실무해설6. (☞ 관련문단 7. (4)) 내부거래 상계 제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호에 따라 아래 항목 관련 거래로 발생한 수익·비용, 자산·부채와 같이 내부거래가 소액 다수 건이어서 제거로 인한 효익보다 소요되는 비용이 크고 그 금액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않을 수 있다.

- (1) 조달청에 납부하는 조달수수료, 나라장터이용 수수료
- (2) 우편사업특별회계에 납부하는 우편요금
- (3) 등기특별회계에 납부하는 등기로
- (4) 국세청, 관세청에 납부하는 제세
- (5) 중앙전파관리소에 납부하는 검사수수료 및 허가수수료

Q3 정부 내 전대차관 거래액 원단위 절사 후 인식 가능 여부

질 의 내 용

○○기금과 상대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 내 전대차관원리금 거래 시 원단위 절사 후 금액으로 정산하는 경우 동 거래액을 원단위 절사 후 금액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나요?

-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차관원리금 회수 시 원단위 절사 후 금액으로 정산하는 거래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원단위 금액을 포함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원단위 절사 후 금액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일반원칙) 국가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6. 회계처리는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4. (일반원칙) 국가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으로 하며, 다음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6) 회계처리는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Q4 납기가 정해져 있는 수입의 회계연도 적용

질 의 내 용

납기일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2일에 수납한 것과 관련하여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처리한 경우 결산시점에 미수 채권을 인식해야 하나요?

-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출납정리기한 중에 발생하는 거래의 회계처리는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거래로 보아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 따라서 결산시점에 이미 수납된 것으로 보아 미수채권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②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2장에 따른 출납정리기한 중에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는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거래로 보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입은 해당 회계연도 말일에 수입된 것으로 본다.
2.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은 해당 회계연도 말일에 지출된 것으로 본다.
3.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단서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교부받은 관서운영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 후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일에 반납된 것으로 본다.

2. 재정상태표

Q5 재정상태표상 기본순자산이 표시되지 않은 이유

질 의 내 용

기금 중 기본순자산이 재정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문단 12.(2)에 따르면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일부 기금의 경우 설치 당시 재원조성 없이 운영비 전입을 통해 ‘적립금 및 잉여금’으로 조성되는 경우 등이 존재하며, 이런 경우 기본순자산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6 재정상태표상 적립금 및 잉여금의 세부내역이 표시되지 않은 이유

질 의 내 용

재정상태표상 적립금 및 잉여금에 전기이월결손금·잉여금 및 재정운영결과등 세부내역이 표시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재정상태표상 적립금 및 잉여금은 재정운영결과 등을 포함한 누적액을 보여주는 항목이며, 재정운영결과는 변동액 개념이므로 순자산변동표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12. (순자산의 정의와 구분) (1)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 (2) 순자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뺀 금액으로 표시한다.
 - (나) 적립금 및 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전기이월결손금·잉여금, 재정운영결과 등을 표시한다.
 - (다) 순자산조정은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표시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재정상태표

당기: 20XY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20XX년 12월 31일 현재

OO기금, OO부처, 대한민국 정부

(단위: . . .)

	주식	20XY	20XX
자산			
Ⅰ. 유동자산		XXX	XXX
Ⅱ. 투자자산		XXX	XXX
Ⅲ. 일반유형자산		XXX	XXX
Ⅳ. 사회기반시설		XXX	XXX
Ⅴ. 무형자산		XXX	XXX
Ⅵ. 기타비유동자산		XXX	XXX
자산계		XXX	XXX
부채			
Ⅰ. 유동부채		XXX	XXX
Ⅱ. 장기차입부채		XXX	XXX
Ⅲ. 장기충당부채		XXX	XXX
Ⅳ. 기타비유동부채		XXX	XXX
부채계		XXX	XXX
순자산			
Ⅰ. 기본순자산		XXX	XXX
Ⅱ. 적립금및잉여금		XXX	XXX
Ⅲ. 순자산조정		XXX	XXX
순자산계		XXX	XXX
부채외순자산계		XXX	XXX

[별지 제5호서식]

순자산변동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정부

(단위:)

	주식	기본순자산	적립금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 기초순자산		XXX	XXX	XXX	XXX
1. 보고금액		XXX	XXX	XXX	XXX
2. 전기오류수정손익	X	XXX	XXX	XXX	XXX
3. 회계변경누적효과	X	XXX	XXX	XXX	XXX
Ⅱ. 재정운영결과			XXX		XXX
Ⅲ. 조정항목		XXX	XXX	XXX	XXX
1. 납입자본의 증감	X	XXX	-	-	XXX
2. 투자증권평가손익	X	-	-	XXX	XXX
3. 파생상품평가손익	X	-	-	XXX	XXX
4. 기타 순자산의 증감	X	XXX	XXX	XXX	XXX
5. ...	X	XXX	XXX	XXX	XXX
Ⅳ. 기말순자산(Ⅰ-Ⅱ+Ⅲ)		XXX	XXX	XXX	XXX

3. 순자산변동표

Q7 순자산변동표 기초순자산 표시 방법

질 의 내 용

전기에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이 발생하여 전기 순자산변동표의 '당기 기초순자산'에 '전기 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 순자산변동표의 '전기 기초순자산'을 전기 순자산변동표와 같이 '보고금액'과 '전기 오류수정손익'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기오류수정손익' 금액을 '보고금액'에 합산하여 기재해야 하나요?

- ▶ 당기 순자산변동표의 '전기 기초순자산'은 전기 순자산변동표의 '당기 기초순자산'의 표시 방법과 동일하게 '보고금액'과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순자산변동표					순자산변동표				
당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당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본 순자산	작입금및 잉여금	순자산 조정	합계		기본 순자산	작입금및 잉여금	순자산 조정	합계
I 전기 기초순자산	XXX	XXX	XXX	XXX	I 전기 기초순자산	XXX	XXX	XXX	XXX
1. 보고금액	XXX	XXX	XXX	XXX	1. 보고금액	XXX	XXX	XXX	XXX
2. 전기오류수정손익	XXX	XXX	XXX	XXX	2. 전기오류수정손익	XXX	XXX	XXX	XXX
3. 회계변경누적효과	XXX	XXX	XXX	XXX	3. 회계변경누적효과	XXX	XXX	XXX	XXX
II 재정운영결과		XXX		XXX	II 재정운영결과		XXX		XXX
III 조정항목	XXX	XXX	XXX	XXX	III 조정항목	XXX	XXX	XXX	XXX
IV 전기 기말순자산(I-II+III)	XXX	XXX	XXX	XXX	IV 전기 기말순자산(I-II+III)	XXX	XXX	XXX	XXX
V 당기 기초순자산	XXX	XXX	XXX	XXX	V 당기 기초순자산	XXX	XXX	XXX	XXX
1. 보고금액	XXX	XXX	XXX	XXX	1. 보고금액	XXX	XXX	XXX	XXX
2. 전기오류수정손익	XXX	XXX	XXX	XXX	2. 전기오류수정손익	XXX	XXX	XXX	XXX
3. 회계변경누적효과	XXX	XXX	XXX	XXX	3. 회계변경누적효과	XXX	XXX	XXX	XXX
VI 재정운영결과		XXX		XXX	VI 재정운영결과		XXX		XXX
VII 조정항목	XXX	XXX	XXX	XXX	VII 조정항목	XXX	XXX	XXX	XXX
VIII 당기 기말순자산(V-VI+VII)	XXX	XXX	XXX	XXX	VIII 당기 기말순자산(V-VI+VII)	XXX	XXX	XXX	XXX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27. (기초순자산) 기초순자산은 전기에 이미 보고된 순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당기에 발생한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하여 기초순자산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전기에 보고한 금액을 "보고금액"으로 별도 표시하고, 회계정책 변경이나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이 매 회계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전기오류수정손익", "회계변경누적효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2장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

1.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방법

Q8 금융성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전출금 내부거래 제거

질 의 내 용

국회 공통요구자료에 기입되는 통합재정수지 산출 시, 금융성 기금은 통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금융성 기금 간의 거래는 내부거래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무결산에서도 금융성 기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의 거래는 내부거래로 인식하면 안 되는 건가요?

- ▶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 문단7 및 문단9에 따라 국가회계실체 내 거래는 내부거래 대상으로 보고 국가통합 또는 중앙관서 결산 시 내부거래로 제거해야 합니다.
- 금융성 기금도 국가회계실체에 포함되므로 금융성 기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의 거래도 내부거래로 인식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

7. (자산·부채의 내부거래 제거)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간 거래를 통해 상호 채권·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시 해당 채권·채무를 상계하여 제거한다. 다만, 일반유형자산의 취득, 처분, 관리전환 등의 거래는 상호간 채권·채무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내부거래 제거대상에서 제외한다.
9. (수익·비용의 내부거래 제거)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 간 거래를 통해 재정운영표에 수익·비용을 인식한 경우 해당 내부거래로 인하여 상호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제거한다.

제3장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1. 용어의 정의

Q9 외부 감정법인 산정결과의 공정가액 해당 여부

질 의 내 용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대체투자상품의 공정가액을 외부 감정법인의 용역결과에 따라 추정하여 산정한 경우에도 이를 신뢰성 있는 객관적 공정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3에 따르면 공정가액의 정의에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액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외부 감정법인의 용역결과가 이러한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공정가액”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시장가격)이며,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액을 말한다.

2. 금융자산의 분류

Q10 정기에금의 계정과목 분류

질 의 내 용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정기에금도 금융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나요? 또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라 함은 3개월을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 ▶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정기에금의 경우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라도 현금 전환이 용이하지 않거나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한 경우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라 함은 3개월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5. (현금및현금성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보통예금, 당좌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Q11 기업어음(CP)의 계정과목 분류

질 의 내 용

기업어음(CP)은 금융상품 또는 투자증권 중 무엇으로 분류되어야 하나요? 또한 자산가액은 어떻게 인식해야 하나요?

▶ 기업어음(CP)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10에 따라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며, 같은 예규 문단17에 따라 취득원가로 인식해야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17. (인식기준) (2) 금융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다만, 국가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실무해설10. (☞ 관련문단 5~7) 상품종류별 계정분류 예시

상품종류	현금	장·단기 금융상품	유가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
신종기업어음(Commercial Paper)		○		

Q12 표지어음의 계정과목 분류

질 의 내 용

표지어음의 경우 만기 전 중도해지가 불가능한데 이러한 경우에도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 표지어음이 만기 전 중도해지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현금및현금성자산이 아닌 장·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5. (현금및현금성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보통예금, 당좌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실무해설10. (☞ 관련문단 5~7) 상품종류별 계정분류 예시

상품종류	현금	장·단기 금융상품	유가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
표지어음		○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Q13 수익증권의 계정과목 분류

질의내용(1)

MMF, 주식형·채권형·혼합형 펀드, 연기금몰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러한 수익증권은 계정과목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나요?

- ▶ MMF, 주식형·채권형·혼합형 펀드, 연기금몰의 수익증권은 유가증권(지분증권)으로 분류합니다. 동 유가증권을 자금운용목적 또는 법령·정책적 목적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지분증권' 중 '기타지분증권'으로 처리하고, 그 외의 목적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기타장·단기투자증권' 중 '기타지분증권'으로 처리합니다.
- 다만, 동 지분증권이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으며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라면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질의내용(2)

수시입출금식으로 운용되는 MMF의 경우 별도의 계약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정의에 부합되나요?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는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수시로 입출금되면서 거래비용 또는 제약이 없는 MMF의 경우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후인 MMF와 ELS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10에 따라 유가증권(지분증권)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DLS는 별도로 계정분류 예시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ELS와 유사하므로 이와 동일하게 지분증권으로 분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MMF 등이 자금운용목적 또는 법령·정책적 목적에 의해 취득한 경우라면 '지분증권' 중 '기타지분증권'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목적에 의해 취득한 경우라면 '기타장·단기투자증권' 중 '기타지분증권'으로 처리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5. (현금및현금성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보통예금, 당좌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실무해설5. (2) 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 당좌예금,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초단기 수익증권(MMF를 포함), 취득 당시의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취득 당시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환매채(3개월 이내의 환매조건) 등을 의미한다.

7. (유가증권)

(3) (2)에 따른 채무증권 또는 지분증권을 자금운용목적 또는 법령·정책적 목적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채무증권” 또는 “지분증권”으로 처리하고, 그 외의 목적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기타 장·단기투자증권”으로 처리한다.

실무해설10. (☞ 관련문단 5~7) 상품종류별 계정분류 예시

상품종류	현금	장·단기 금융상품	유가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
MMF				○
연기금풀에 비율로 투자하는 경우				○

Q14 신종자본증권의 계정과목 분류

질 의 내 용

채권과 주식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신종자본증권의 적절한 분류는 무엇이며 신종자본 증권에 포함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나요?

▶ 신종자본증권은 지분증권으로 분류하며,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 상품도 분리하지 않고 일괄 지분증권으로 처리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201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

실무해설10. (☞ 관련문단 5~7) 상품종류별 계정분류 예시

상품종류	현금	장·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
신종자본증권				○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으로 이루어진 복합계약은 이 지침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지 않는다.

Q15 투자일임계약의 계정과목 분류

질 의 내 용

투자일임계약은 어떻게 회계처리 하나요?

- ▶ 투자일임계약은 지분증권으로 분류하며,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도 분리하지 않고 일괄 지분증권으로 처리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
- 국가회계에서 특정투자일임계약의 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직접 보유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일괄 지분증권으로 처리하더라도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정과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실용적인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여 재무제표 작성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201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

실무해설10. (☞ 관련문단 5~7) 상품종류별 계정분류 예시

상품종류	현금	장·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일임계약				○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으로 이루어진 복합계약은 이 지침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지 않는다.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Q16 정부기금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계정과목 분류

질의내용(1)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정부기금)이 보유한 외화보통예금, MMF(현금및현금성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한 것) 등을 '현금및현금등가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맞나요?

질의내용(2)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정부기금)이 보유한 단기금융상품과 단기투자증권 중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은 국고금의 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 ▶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정부기금)이 보유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5에 따라 '현금및현금등가물'이 아닌 '국고금'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 단기금융상품과 단기투자증권 중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으며 취득당시 계약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것은 현금성자산에 해당하므로 '국고금'으로 분류합니다.
- 국고금의 '현금성자산' 계정과목은 2016회계연도부터 '기타국고금'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현금성자산'이 아닌 '기타국고금'으로 처리합니다.

질의내용(3)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정부기금)이 보유한 사용제한이 있는 보통예금에 대해서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나요?

- ▶ 사용제한이 있는 보통예금은 장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해야 하나 국고금의 경우, 사용 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국고금으로 분류하므로 '국고금' 하위의 '기타국고금'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5. (현금및현금성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보통예금, 당좌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 (2) 「국고금 관리법」 제2조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이 보유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국고금”으로 분류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기금이 보유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및현금등가물”로 분류한다.

실무해설5. (☞ 관련문단 5) 현금및현금성자산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자산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등가물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기타현금성자산
			국고금	한국은행국가예금
				금고은행국가예금
				국고예금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기타국고금

6. (단기금융상품과 장기금융상품) (1) “단기금융상품”과 “장기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을 말한다.

〈계정과목 해설서〉

I. 현금 및 현금성자산 /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① 현금및현금성자산 계정분류 시 유의사항

- (2)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 중 차입담보계약, 관련 법 또는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 등의 특정 이유로 사용이 제한되어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만기 구분에 따라 단기금융상품 또는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 다만, 국고금의 경우, 사용 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국고금으로 분류한다.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Q17 **주식회사가 아닌 회사에 대한 투자금의 계정과목 분류**

질 의 내 용

○○특별회계에서 ○○공사 출자금을 일부는 주식으로, 일부는 출자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 주식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만 장·단기투자증권 중 주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주식’으로 계상되어 있는 출자금을 ‘출자금’ 계정과목으로 재분류하여야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 7. (유가증권) (1) 유가증권(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은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 (2) 유가증권은 그 형태에 따라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으로 구분한다.
 - (가) 채무증권이란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으로서 국채, 공채, 지방채 및 회사채 등을 말한다.
 - (나) 지분증권이란 유가증권 중 채무증권을 제외한 것으로서 주식, 출자금 등을 말한다.
- (3) (2)에 따른 채무증권 또는 지분증권을 자금운용목적 또는 법령·정책적 목적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채무증권” 또는 “지분증권”으로 처리하고, 그 외의 목적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기타 장·단기투자증권”으로 처리한다.

〈계정과목 해설서〉

III. 장·단기투자증권 /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장·단기투자증권

(2) 지분증권

국가회계실체가 자금운용목적 또는 법령·정책적 목적에 의해 당해 유가증권의 소유가 필요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지분증권은 주식, 출자금, 기타지분증권으로 구분한다.

- ① 주식: 자본을 구성하며 주주의 권리를 표명하는 지분증권
- ② 출자금: 정부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해 법률 등에 의해 출자하여 취득한 지분증권으로, 장기투자증권에 포함

Q18 임차보증금 회계처리

질의내용(1)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하는 보증금과 전세권 설정에 따른 등기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 하나요?

- ▶ 임차보증금은 전세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임차보증금-국유’로,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국가채권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채권’으로,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보고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일반’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 ▶ 전세권 설정에 따른 등기비용은 ‘지급수수료’ 중 ‘등기료법정수수료’로 비용 처리합니다.

질의내용(2)

부처가 사용 중인 관사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20X2년 5월입니다. 부처에서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해당 관사를 임차할 예정인데 관련 임차보증금을 20X1년 결산 시 단기로 분류해야 하나요?

-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도래하므로, 계약서에 계약연장 관련 특수조항이 없는 한 해당 임차보증금은 단기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3)

민법상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존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이 법적갱신요건을 충족한 전세권에 대해 연도말 결산 시 유동성대체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도래하므로 원칙적으로 임차보증금은 단기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 다만, 결산일 현재 법적갱신요건을 충족하여 전세권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었다면 갱신된 만기일 기준으로 유동성대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4.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하며, 만기일이나 회수일이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한다.

10. (기타의 금융자산)

(다) “지급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과 “기타지급보증금”으로 분류한다. “임차보증금”은 전세권 등기를 하여 국유재산으로 관리될 경우에는 “임차보증금-국유”로,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국가채권으로 관리되는 자산은 “임차보증금-채권”으로,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보고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일반”으로 구분한다.

〈계정과목 해설서〉

VII. 지급수수료, 지급보험료, 지급임차료 /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지급수수료

(3) 등기로법정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을 말한다.

Q19 시설장치 보증금 회계처리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임차 중인 건물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면서 납부한 소액(20만원 정도)의 보증금에 대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 ▶ 해당 보증금은 추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지급보증금으로 자산에 해당되므로 비용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 지급보증금은 회수시점에 따라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 이내에 돌려받을 보증금이라면 '기타지급보증금'으로, 1년 후에 돌려받을 보증금이라면 '장기기타지급보증금'으로 처리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10. (기타의 금융자산) (1) 기타의 금융자산은 문단5부터 문단9의 금융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자산”, “부가세대급금”, “지급보증금” 등을 말한다.
 - (다) “지급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과 “기타지급보증금”으로 분류한다. “임차보증금”은 전세권 등기를 하여 국유재산으로 관리될 경우에는 “임차보증금-국유”로,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국가채권으로 관리되는 자산은 “임차보증금-채권”으로,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보고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일반”으로 구분한다.
 - (2) 기타의 금융자산은 “기타유동자산”과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계정과목 해설서>

- VI. 기타유동자산 / 2. 세부계정과목 설명
 - ① 기타유동자산
 - (8) 지급보증금

임대차 계약, 일상적인 상거래,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거래 상대방 또는 공탁소 등에 예치하는 담보 성격의 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잔여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금액으로, 세부계정은 다음과 같다.

 - ② 기타지급보증금: 임차보증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급보증금으로 공탁금 및 국고채당금 등을 말함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Q20 예탁금의 장·단기 구분 기준

질 의 내 용

AA기금은 BB기금에 매년 3월 3일에 빌려주고 다음연도 3월 3일에 되돌려 받는 예탁금이 있습니다. (BB기금은 3월 2일까지 이 자금을 운용합니다.) 이 예탁금의 경우 만기가 1년 이내 인 것으로 봐야하나요?

-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4에 따르면 대여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일이나 회수일이 재정상태표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단기로 구분합니다.
- 다음연도 3월 3일인 회수하는 예탁금의 경우 재정상태표일로부터 회수일이 1년 이내 이므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4.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하며, 만기일이나 회수일이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한다.
-

Q21 민간업체 전기료 대납액의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부가 청사 내 민간업자 자판기에 대해 미리 납부하였던 전기요금을 민간업자에게 되돌려 받는 경우 해당 요금을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 ▶ 선납 전기요금은 추후 민간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것을 전제로 지급한 것이므로 ○○부에서 전기요금 납부 시 '기타의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되돌려 받을 때 '기타의미수금'의 회수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선납 전기요금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8. (미수채권) (1) 미수채권은 정부 고유의 행정활동, 재화 및 용역제공활동 등의 거래에 의하여 장래에 일정한 현금을 수취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계정과목 해설서>

IV. 장·단기미수채권 / 2. 세부계정과목 설명

㉠ (장기)미수채권

(11) (장기)기타의미수금

일반유형자산 처분 등으로 발생하는 미수금을 비롯하여 자금거래 등과 관련하여 확정된 채권 중 미수한 금액을 말한다.

Q22 승소한 소송 관련 미수채권의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면 미수채권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 해당 채권을 발생시킨 거래의 성격에 따라 ‘미수국세’, ‘미수부담금수익’, ‘미수제재금수익’,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미수사회보험수익’, ‘미수연금수익’, ‘미수보험수익’, ‘미수보증수익’, ‘미수이자수익’, ‘미수기타수익’, ‘기타의미수금’으로 구분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 8. (미수채권) (1) 미수채권은 정부 고유의 행정활동, 재화 및 용역제공활동 등의 거래에 의하여 장래에 일정한 현금을 수취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 (2) “미수채권”과 “장기미수채권”은 해당 채권을 발생시킨 거래의 성격에 따라 “미수국세”, “미수부담금수익”, “미수제재금수익”,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미수사회보험수익”, “미수연금수익”, “미수보험수익”, “미수보증수익”, “미수이자수익”, “미수기타수익”, “기타의미수금”으로 구분한다.

<계정과목 해설서>

IV. 장·단기미수채권 /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장기)미수채권

- (1) (장기)미수국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수익 발생분 중 미수금액을 말한다. (☞ 국세징수의 국세수익)
- (2) (장기)미수부담금수익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조세성부담금 등의 법정부담금 수익 발생분 중 미수금액을 말한다. (☞ 비교환수익의 부담금수익)
- (3) (장기)미수제재금수익
변상금, 위약금, 가산금, 벌금, 몰수금 등의 수익 발생분 중 미수금액을 말한다. (☞ 비교환수익의 제재금수)
- (4) (장기)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병원수입, 교도소수입, 입장료수입(관람료수입 포함), 면허료 및 수수료, 국립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항공·항만 시설의 이용에 따른 수입 및 공업용수 사용료, 실습수입(학교 및 단체의 실습 연구 시험에 따른 부산물 수입)등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재화 및 용역 제공수익 발생분 중 미수된 금액으로 용역제공의 경우 기간경과에 따른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 프로그램수익·비배분수익의 재화및용역제공수익)

-
- (5) (장기)미수사회보험수익
사회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가 수취하는 사회보험수익 발생분 중 미수된 금액을 말한다.
(☞ 비교환수익의 사회보험수익)
- (6) (장기)미수연금수익
공무원연금수익, 군인연금수익, 사학연금수익과 국민연금수익 발생분 중 미수된 금액을 말한다.
(☞ 프로그램수익의 연금수익)
- (7) (장기)미수보험수익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 등이 수취하는 보험료수입 발생분 중 미수된 금액을 말한다.
(☞ 프로그램수익의 보험수익)
- (8) (장기)미수보증수익
보증사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 등이 수취하는 보증료수입 발생분 중 미수된 금액을 말한다.
(☞ 프로그램수익의 보증수익)
- (9) (장기)미수이자수익
금융상품, 채권 및 대여금 등에 대하여 산정한 기간 경과분 미수수익 및 수취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수취하지 못한 이자수익 금액을 말한다. (☞ 프로그램수익·비배분수익의 이자수익)
- ① 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수익
 - ② 미수채권이자수익: 국채, 공채, 지방채, 회사채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수익
 - ③ 미수대여금이자수익: 대여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수익
 - ④ 미수기타이자수익: ① ~ ③ 외 기타자산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수익
- (10) (장기)미수기타수익
배당금수익, 법인세환급금, 신탁사업이익 등 기타수익에 대한 미수채권을 말한다.
(☞ 프로그램수익·비배분수익의 기타수익)
- (11) (장기)기타의미수금
일반유형자산 처분 등으로 발생하는 미수금을 비롯하여 자금거래 등과 관련하여 확정된 채권 중 미수한 금액을 말한다.
-

3.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Q23 자산인식 되지 않은 매립면허권의 현물출자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AA공사설립과 관련하여 BB기금의 매립면허권을 AA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매립면허권은 취득원가가 "0"으로 기존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현물출자를 위해 공정가액 평가함)

-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17에 따라 AA공사에 현물출자 시 취득하는 '출자금'은 국가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인식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AA공사에 권리(공유수면 매립면허권)를 제공하는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교환수의 중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 ▶ 참고로, 무형자산은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며,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BB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은 무형자산 정의에 부합하나, 취득원가가 "0"이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무형자산의 평가) ①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평가한다.

②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이 경우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17. (인식기준) (1) 금융자산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 (2) 금융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다만, 국가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4. 금융자산의 인식 후 평가

Q24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평가

질의내용(1)

재정상태표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구분되어 있는 정기에금 등 금융상품의 기말 자산가액 평가 및 미수이자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임에 따라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정기예금,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기간 경과분 이자는 '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기말 자산가액에는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2)

재정상태표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구분되어 있는 MMF 등 수익증권의 공정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이는 어떻게 회계처리 하나요?

- ▶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임에 따라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MMF 등 수익증권의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공정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이를 '기타금융상품이자수익' 또는 '기타의기타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20. (금융자산의 인식 후 평가) 금융자산은 이 예규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21.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인식 후 평가) (1) 채권, 상환우선주, 환매채 및 MMF 등의 수익증권이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임에 따라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취득원가와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을 재정운영표에 "기타금융상품이자수익" 또는 "기타의기타이자비용"으로 반영한다.

Q25 MMF, 채권형펀드의 이자수익 원본 가산여부

질 의 내 용

초단기 수익증권 MMF(국가채권), 채권형펀드(국유재산)의 고객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12월말 현재 예탁금계좌에 존재하는 경우 MMF나 채권형펀드의 원본에 가산해야 하나요?

- ▶ 고객예탁금에서 발생하여 예탁금계좌에 존재하는 이자수익은 차후 펀드 환매 시 고객에게 지급되므로, 12월말 현재 MMF나 채권형펀드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26 특정금전신탁의 평가

질 의 내 용

특정금전신탁은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하나요? 평가한다면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 ▶ 특정금전신탁은 장·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 20에 따라 취득원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 신탁 평가금액이 특정금전신탁의 기말 시점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미수금융상품이자 수익'과 '기타금융상품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 신탁 평가금액이 특정금전신탁의 기말 시점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이 중요하다면 '자산감액손실'로 회계처리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 20. (금융자산의 인식 후 평가) 금융자산은 이 예규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 26. (금융자산의 감액) 금융자산(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금융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직접 빼서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감액손실"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실무해설10. (☞ 관련문단 5~7) 상품종류별 계정분류 예시

상품종류	현금	장·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
특정금전신탁		○		

Q27 채무증권의 평가

질의내용(1)

채무증권을 공정가액이 아닌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22에 따라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투자목적(매매차익 목적)이면서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투자목적이 아니거나, 투자목적이지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증권을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합니다.

질의내용(2)

채무증권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면서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도 해야 하나요?

-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22에 따라 채무증권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투자목적 채무증권의 공정가액 평가 시 할인 또는 할증차금을 상각하여 이자수익을 먼저 인식한 후에 상각후취득원가와 공정가액과의 차이를 ‘투자증권평가손익’으로 계상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22. (유가증권의 인식 후 평가) (1) 유가증권 중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취득원가와 만기 액면가액의 차이는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지분증권과 기타 장기투자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투자 목적의 단기투자증권 또는 장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 중 “투자증권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

Q28 지분증권의 평가

질의내용(1)

상장되어있는 ○○공사의 지분증권을 결산 시 시가평가 해야 하나요?
또한, 비상장주식도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나요?

- ▶ 지분증권은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인식 후 취득원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상장여부와 상관없이 투자목적이면서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질의내용(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국세 물납 등의 사유로 취득한 비상장투자증권의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 ▶ 국세 물납 등의 사유로 취득한 비상장투자증권은 기타 장·단기투자증권으로 분류하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물납가액 등 취득원가로 평가합니다.
- 다만,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감액손실'을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22. (유가증권의 인식 후 평가) (1) 유가증권 중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는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지분증권과 기타 장기투자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투자 목적의 단기투자증권 또는 장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 중 “투자증권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
28. (유가증권의 감액과 회복) 금융자산 중 유가증권의 감액은 다음의 사항을 적용한다.
- (1)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실무해설9. (☞ 관련문단 7. (3)) “기타 장·단기투자증권”의 대표적인 예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등에 따른 국세 물납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등이 있다.

Q29 출자금의 평가

질 의 내 용

○○부 일반회계에서 벤처투자회사에 직접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출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7에 따라 출자금은 ‘장기투자증권’ 중 ‘지분증권’ 또는 ‘기타장기투자증권’으로 분류하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22에 따라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투자목적이고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출자금은 국가회계실체가 현금 또는 현물 등 유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만 발생(증가)하므로 피투자기관에 100% 출자한 경우라도 피투자기관의 자본금과 다를 수 있으며, 피투자기관의 자본전입 등(예: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국가회계실체의 출자금은 증가되지 않습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 7. (유가증권) (2) 유가증권은 그 형태에 따라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으로 구분한다.
 - (나) 지분증권이란 유가증권 중 채무증권을 제외한 것으로서 주식, 출자금 등을 말한다.
 - (3) (2)에 따른 채무증권 또는 지분증권을 자금운용목적 또는 법령·정책적 목적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채무증권” 또는 “지분증권”으로 처리하고, 그 외의 목적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기타 장·단기투자증권”으로 처리한다.
- 22. (유가증권의 인식 후 평가) (1) 유가증권 중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취득원가와 만기 액면가액의 차이는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지분증권과 기타 장기투자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투자목적의 단기투자증권 또는 장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 항목 중 “투자증권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

Q30 기타지분증권(연기금투자액)의 재투자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연기금풀에 투자하여 운용 중인 기타지분증권을 재투자하고자 합니다. 이때 기준가격 이상의 상승분을 장·단기투자증권의 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맞나요?

▶ 연기금풀에 투자하는 경우 ‘장·단기투자증권’의 ‘지분증권’ 중 ‘기타지분증권’으로 분류하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22.(4)에 따라 재투자 시 기준가격 상승분을 ‘투자증권처분이익’으로 처리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22. (유가증권의 인식 후 평가)

- (4) 단기투자증권 또는 장기투자증권에 포함된 수익증권으로서 투자신탁계약기간 내에 이익분배금의 명목으로 현금을 수취하거나 이를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단기투자증권처분이익” 또는 “장기투자증권처분이익”으로 당기수익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당기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의 기준가격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된 “투자증권평가이익”은 가산하고 “투자증권평가손실”은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나머지는 투자원본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Q31 유가증권 평가 시 지분법 사용 가능 여부

질 의 내 용

투자유가증권 평가 시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만약 적용할 수 없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22에 따라 유가증권 중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되 투자목적이면서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분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22. (유가증권의 인식 후 평가) (1) 유가증권 중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는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지분증권과 기타 장기투자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투자목적의 단기투자증권 또는 장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 중 “투자증권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

Q32 기 투자증권평가이익 있는 경우 투자증권평가손실 인식

질 의 내 용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증권평가이익의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투자증권평가손실을 인식할 수 있나요?

▶ 투자증권평가이익의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동일한 유가증권에 대해 기존에 인식하고 있던 순자산변동표상 조정항목의 ‘투자증권평가이익’을 우선적으로 차감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증권평가손실’을 인식합니다.

Q33 만기보유 목적 채무증권의 공정가액 평가 제외 가능 여부

질 의 내 용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경우 공정가액 평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나요?

▶ 만기보유 의도와 무관하게 투자목적의 유가증권이고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다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22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22. (유가증권의 인식 후 평가) (1) 유가증권 중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취득원가와 만기 액면가액의 차이는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지분증권과 기타 장기투자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투자 목적의 단기투자증권 또는 장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 정항목 중 “투자증권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Q34 중도 매매 목적이 아닌 유가증권의 평가

질 의 내 용

국공채를 매매차익(중도 매각)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모든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 ▶ 투자목적이 아닌 채무증권의 경우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22.(2)에 따라 투자목적이란 매매차익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매차익목적으로 보유하지 아니하며, 만기보유 하는 경우 투자목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22. (유가증권의 인식 후 평가) (1) 유가증권 중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는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지분증권과 기타 장기투자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투자목적의 단기투자증권 또는 장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 중 “투자증권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
- (2) (1)의 투자목적이란 유가증권을 매매차익목적으로 보유함을 의미한다.

Q35 직접 대여금(미수채권)과 간접 대여금(수익증권)의 공정가액 평가여부

질 의 내 용

직접 제3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인식한 대여금과 수익증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3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나요?

- ▶ 직접 대출한 대여금은 ‘미수채권’에 해당하며 공정가액 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23과 문단29에 따라 현재가치 및 대손평가를 고려하여 취득 원가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한편, 투자자금을 납입하고 보유하는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이므로 ‘장·단기투자증권’에 해당하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 22에 따라 취득원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투자목적이면서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 22. (유가증권의 인식 후 평가) (1) 유가증권 중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취득원가와 만기 액면가액의 차이는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 한다. 지분증권과 기타 장기투자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투자목적의 단기투자증권 또는 장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 항목 중 “투자증권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
- 23. (미수채권 등의 인식 후 평가) 미수채권, 대여금 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환입하여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 29. (미수채권 등의 대손충당금 설정) 미수채권, 대여금 등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5. 금융자산의 감액과 대손

Q36 유가증권 감액손실 인식여부의 선택

질의내용(1)

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현저하게 적고, 회복 가능성이 낮은 경우 감액손실 인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나요?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추후 유가증권의 제거시점에 처분손실로 인식할 수 있나요?

- ▶ 재정상태표일 현재 해당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해야 합니다.
- ▶ 감액 징후 존재 시 감액손실 인식 여부는 선택할 수 없고, 감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 감액손실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2)

휴업, 폐업, 완전자본잠식, 법정관리, 회생절차 포기 등이 발생한 주식은 반드시 감액손실을 인식해야 하나요?

- ▶ 휴업, 폐업, 완전자본잠식, 법정관리, 회생절차 포기와 같이 감액 손실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감액 손실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합니다.
- ▶ 재정상태표일 현재 해당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해야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28. (유가증권의 감액과 회복) 금융자산 중 유가증권의 감액은 다음의 사항을 적용한다.
- (1)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다만,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경우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인식한 “투자증권평가손실” 또는 “투자증권평가이익”을 “감액손실”에 더하거나 뺀다.
 - (2) 취득원가 또는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한 유가증권의 경우 회복된 금액을 재정운영표상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되, 회복 후 장부가액이 당초에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회복일 현재의 취득원가 또는 상각후취득원가가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유가증권의 경우 이전에 인식하였던 감액손실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재정운영표상 당기 수익으로 인식한다.
 - (3) 유가증권 중 채무증권에 대한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 해당 시점부터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을 중지하고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이후 감액손실이 환입되어 채무증권의 장부가액이 당초에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회복일 현재 인식되었을 상각후취득원가까지 회복된 경우 당해 시점부터 상각을 개시한다.

실무해설34. (☞ 관련문단 28)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 기타투자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인식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계정과목 해설서〉

XV. 자산감액손실 / 2. 세부계정과목 설명

☐ 1 자산감액손실

(1) 투자증권감액손실

투자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인식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감액손실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재정상태표일마다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한다.

Q37 유가증권 감액손실 인식 후 비망가액

질의내용(3)

보유하고 있는 OO주식의 발행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며, 주식의 회수가능가액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장부가액을 전액 감소시키고 투자증권감액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 이렇게 장부가액을 0원으로 해도 되나요? 관리차원에서 남겨두어야 하는 비망가액이 있나요?

-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28에 따라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합니다.
- ▶ 국가회계처리지침 상 관리 목적으로 비망가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감액손실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Q38 종류가 다른 유가증권의 감액손실과 감액손실환입 발생시

질의내용(4)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중 일부는 감액손실이 발생하였고, 일부는 감액손실환입이 발생한 경우 감액손실과 감액손실환입을 각각 인식해야 하나요? 아니면 감액손실에서 감액손실환입을 차감한 금액만큼 감액손실을 인식해야 하나요?

- ▶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종류별로 각각 감액손실과 감액손실환입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Q39 감자로 인해 유가증권의 지분율 변동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피투자회사의 감자로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 감액손실 인식 이외 추가로 고려해야할 회계 처리가 있나요?

▶ 감자로 인해 발생한 유가증권의 단순한 지분율 변동은 회계처리 대상이 아니나, 지분율 변동으로 해당 투자증권의 공정가액이 변동하였을 경우 감액손실인식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 28. (유가증권의 감액과 회복) 금융자산 중 유가증권의 감액은 다음의 사항을 적용한다.
 - (1)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다만,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경우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인식한 “투자증권평가손실” 또는 “투자증권평가이익”을 “감액손실”에 더하거나 뺀다.

실무해설34. (☞ 관련문단 28)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 기타투자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인식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Q40 기타의장기금융상품 감액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기타의장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하였던 기업어음(CP)이 파산선고로 관련법에 따라 원본감소 승인을 받아 해당 기타의장기금융상품을 감액하는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26에 따라 금융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합니다.
- ▶ 기타의장기금융상품의 경우 ‘기타자산감액손실’로 처리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26. (금융자산의 감액) 금융자산(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금융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직접 빼서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감액손실"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실무해설33. (☞ 관련문단 26~27) 금융자산의 감액 및 회복 관련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비용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자산감액손실	투자증권감액손실	
			기타자산감액손실	
수익	프로그램수익/ 비배분수익	기타수익	감액손실환입	투자증권감액손실환입
				기타자산감액손실환입

〈계정과목 해설서〉

XV. 자산감액손실 /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자산감액손실

(4) 기타자산감액손실

기타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기타자산감액손실을 인식한다.

Q41 대여금의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대손충당금의 구분

질 의 내 용

대여금에 대해 미래 추정회수가능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성격과 대손충당금의 성격이 합쳐진 금액이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대손충당금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해당 대여금은 용자 회계처리지침 적용대상이 아님)

▶ 일반대여금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만기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되는 반면, 일반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재정상태표일마다 대손액의 추산(평가) 과정을 통해 추가 설정 또는 환입되므로 두 계정과목을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통합하여 인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각각 적절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별도로 인식해야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 23. (미수채권 등의 인식 후 평가) 미수채권, 대여금 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환입하여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 29. (미수채권 등의 대손충당금 설정) 미수채권, 대여금 등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 (2) 대손추산액과 대손충당금 잔액을 비교하여 결산전 대손충당금 잔액이 대손추산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분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대손추산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대손충당금환입”으로 처리한다. 회수가 불가능한 미수채권 또는 대여금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11.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Q42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 및 인식시점

질의내용(1)

○○기금이 시중은행에 대해 만기 1~20년의 대출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해당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필요가 있나요?
(용자 회계처리지침 적용대상 아님)

-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29에 따라 대여금에 대해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2)

○○기금의 시중은행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각각의 대여금이 지출된 시점에 설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말에 일괄적으로 설정해야 할까요?

- ▶ 대손충당금의 경우 기말 결산시점에 기말 채권잔액 중 기간경과분석, 거래처별 신용 및 재무상태분석, 과거경험율을 토대로 대손예상액을 추산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 용자금 지출 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상태표일에 설정해야 합니다.

질의내용(3)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수익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나요? 만일 설정해야 한다면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준용해도 되나요?

- ▶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수익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며, '미수대여금이자수의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 ▶ 대손충당금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며, 대여금과 동일한 설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29. (미수채권 등의 대손충당금 설정) 미수채권, 대여금 등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 (1) 기말 미수채권과 대여금 잔액에 대한 대손추산액을 산정할 때에는 연령분석법, 채권잔액비례법, 대손실적률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이외에도 기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가) 연령분석법은 기말 채권잔액을 경과일수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별로 상이한 대손율을 적용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인데, 이는 오래된 채권일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채권의 기간경과일수의 장단기에 따라 대손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이다.
- (나) 채권잔액비례법은 기말 채권잔액 전체에 대해 일정비율을 회수불능채권예상액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말 대손충당금잔액으로 하는 방법이나 채권의 연령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대손율을 적용한다.
- (다) 대손실적률법은 채권에 대한 과거 대손율을 산정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이다.

〈계정과목 해설서〉

IV. 장·단기미수채권 /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④ 대손충당금 평가방법

- (1) 대손충당금은 기말 결산시점에 기말 채권잔액 중 기간경과분석, 거래처별 신용 및 재무상태분석, 과거경험율을 토대로 대손예상액을 추산하여 대손충당금 잔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결산전 대손충당금 잔액이 대손예상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분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 추가로 설정하고, 반대로 결산전 대손충당금잔액이 대손예상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대손충당금환입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하여 차액을 환입한다.
- (2) 기말 채권잔액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추정 시에는 연령분석법, 채권잔액비례법, 대손실적률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이외에도 기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 연령분석법: 기말 채권잔액을 경과일수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별로 상이한 대손율을 적용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
 - ※ 채권잔액비례법: 기말 채권잔액 전체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회수불능채권예상액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말 대손충당금잔액으로 하는 방법
 - ※ 대손실적률법: 채권에 대한 과거 대손율을 산정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

Q43 유효이자율보다 대여이자율이 높은 용자금의 대손추산액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유효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빌려주어 저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용자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별도로 설정해야 하나요?

- ▶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제공하는 저리용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용자금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해당 지침 문단29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별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적용한다.
- (1) 국고금의 수납·지출, 여유자금운용 등에 따른 국고금회계의 회계처리(「국고금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 (2)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제공하는 용자금(「용자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 (3) 금융리스부채(「리스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29. (미수채권 등의 대손충당금 설정) 미수채권, 대여금 등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Q44 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

질 의 내 용

전기까지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명확한 근거 없이 채권잔액의 1%로 설정하였습니다.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당기에도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 ▶ 대손충당금은 연령분석법, 채권잔액비례법, 대손실적률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이외에도 기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방법을 사용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 1%의 대손율이 당기에도 합리적이라 판단되면 사용해도 무방하나 명확한 근거 없이 추정된 것이라면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대손율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29. (미수채권 등의 대손충당금 설정) 미수채권, 대여금 등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 (1) 기말 미수채권과 대여금 잔액에 대한 대손추산액을 산정할 때에는 연령분석법, 채권잔액비례법, 대손실적률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이외에도 기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Q45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차보증금의 대손충당금 인식여부

질 의 내 용

계약기간이 끝나고 실제로 임차자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이 하락하였을 경우 대손충당금을 인식하여야 하나요?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미회수된 금액은 임차보증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미수채권으로 계정재분류하고 대손충당금 인식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 10. (기타의 금융자산) (1) 기타의 금융자산은 문단5부터 문단9의 금융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자산”, “부가세대급금”, “지급보증금” 등을 말한다.
 - (다) “지급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과 “기타지급보증금”으로 분류한다. “임차보증금”은 전세권 등기를 하여 국유재산으로 관리될 경우에는 “임차보증금-국유”로,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국가채권으로 관리되는 자산은 “임차보증금-채권”으로,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보고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일반”으로 구분한다.
 - (2) 기타의 금융자산은 “기타유동자산”과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 29. (미수채권 등의 대손충당금 설정) 미수채권, 대여금 등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계정과목 해설서>

- VI. 기타유동자산 / 2. 세부계정과목 설명
 - ① 기타유동자산
 - (8) 지급보증금
 - ① 임차보증금: 타인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임차자가 임대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보증금 및 전세금으로,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 이내에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말함. 전세권 등기를 하여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국유’,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국가채권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채권’으로,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보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일반’ 계정과목을 사용함

Q46 미수제재금수익 회수가능성 하락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미수제재금수익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경우 대손충당금을 인식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각을 해야 하나요?

▶ 미수제재금수익의 회수가능성이 현저하게 하락하였을 경우 해당 미수채권의 감액여부를 검토하여 '감액손실'로 인식하거나 대손추산액을 산출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 26. (금융자산의 감액) 금융자산(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금융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직접 빼서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감액손실"로 재정운영영수원가에 반영한다.
- 29. (미수채권 등의 대손충당금 설정) 미수채권, 대여금 등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6. 금융자산의 제거

Q47 전신전화가입권 해지 후 환급금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전신전화가입권(기존에 자산 계상) 해지 후 수령한 환급금에 대하여 선수금으로 처리하였는데, 적절한 회계처리인가요?

- ▶ 기존에 자산으로 계상한 '전신전화가입권'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경우 재정상태표에서 인식된 '전신전화가입권'을 제거하고 환급금(현금)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채로 계상한 선수금과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전신전화가입권'을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30.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은 문단17에 따른 금융자산의 인식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 재정상태표에서 제거한다.

Q48 수익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이자의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수익증권 처분 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처분손익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 해당 수익증권이 투자신탁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큰 거래비용이 없으며 가치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해당한다면 ‘기타금융상품이자수익’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장·단기투자증권처분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21.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인식 후 평가)

(2)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유가증권(MMF, 채권, 환매채 등)에 포함된 수익증권으로서 투자신탁 계약기간 내에 이익분배금의 명목으로 현금을 수취하거나 이를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기타금융상품이자수익”으로 당기수익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당기수익에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은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의 기준가격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며 나머지는 투자원본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22. (유가증권의 인식 후 평가)

(4) 단기투자증권 또는 장기투자증권에 포함된 수익증권으로서 투자신탁계약기간 내에 이익분배금의 명목으로 현금을 수취하거나 이를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단기투자증권처분이익” 또는 “장기투자증권처분이익”으로 당기수익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당기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의 기준가격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된 “투자증권평가이익”은 가산하고 “투자증권평가손실”은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나머지는 투자원본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Q49 단주처리로 인해 수령한 금액의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피투자회사의 감자로 인해 단주가 발생하여 현금(약 3만원)으로 수령한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재화판매수익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 재화판매수익은 재고자산의 판매에 대한 대가로 국가회계실체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을 말합니다.
- ▶ 따라서 주식 감자 시 수령한 단주대금의 경우에는 교환수익의 타항목에서 설명되지 아니하고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므로 잡이익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30.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은 문단17에 따른 금융자산의 인식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 재정상태표에서 제거한다.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 5.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이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통해 발생하는 교환수익으로 재화판매수익, 용역제공수익과 기타사업수익을 말한다.
 - (1) 재화판매수익: 판매를 위하여 취득한 상품과 판매목적으로 생산한 제품 등을 비롯한 재고자산의 판매에 대한 대가로 국가회계실체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 9. (기타수익) “기타수익”이란 교환수익 중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연금수익, 보험수익, 보증수익, 이자수익, 평가이익, 자산처분이익을 제외한 각종 수익을 말한다.
 - (16) 잡이익: 교환수익 중 타 항목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수익

<계정과목 해설서>

VII. 기타수익 / 2. 세부계정과목 설명

□ 기타수익

(23) 잡이익

교환수익 중 ‘프로그램수익/비배분수익’의 타항목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수익으로 학교 및 단체의 실습연구 시험에 따른 부산물판매수입 및 실습 수입과 같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수익 등을 말한다.

7. 금융부채의 분류

Q50 타 기금으로부터 상환의무가 있는 자금 수령 시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자금(상환의무가 있는 것)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 ▶ 타 회계 또는 타 기금으로부터 상환 의무가 있는 자금을 수령한 경우 '정부내차입금'으로 처리합니다. 상환일이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 도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 (차입금) (1) 차입금은 일정한 기간 내에 원금의 상환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채권·채무 계약에 따라 조달된 자금을 말한다.
(2) 차입금은 “국내차입금”, “해외차입금”, “정부내차입금”, “기타민간예수금”으로 구분한다.

〈계정과목 해설서〉

II. 장·단기차입금 / 2. 세부계정과목 설명

2-1. 유동부채

① 단기차입금

(3) 정부내단기차입금

국가회계실체간의 차입금 중 만기가 1년 이내인 금액으로 세부 계정은 다음과 같다.

- 단기전대차관: 타 국가회계실체가 도입한 차관을 전대한 것으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전대차관
- 정부내단기예수금: 정부내 거래로서 국가회계실체로부터 받는 일시적인 보관금으로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예수금

2-2. 장기차입부채

① 장기차입금

(3) 정부내장기차입금

국가회계실체간의 차입금 중 만기가 1년 후인 금액으로 세부 계정은 다음과 같다.

(☞ 유동부채의 정부내단기차입금)

- 장기전대차관: 타 국가회계실체가 도입한 차관을 전대한 것으로 만기가 1년 후 도래하는 전대차관
- 정부내장기예수금: 정부내 거래로서 국가회계실체로부터 받는 일시적인 보관금으로 1년 후 상환하여야 하는 예수금

Q51 국유재산 임대보증금 수령 시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 ▶ 임대보증금은 대부계약 종료 시 되돌려 줄 것을 전제로 수취한 것이므로 임대보증금 계약 기간 종료일이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합니다.
- 임대보증금 계약기간 종료일이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 도래하는 경우 ‘기타유동부채’의 ‘예수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의 기타비유동부채’의 ‘장기예수보증금’ 중 ‘장기임대보증금’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 16. (기타의 금융부채) (1) 기타의 금융부채는 문단12부터 문단15까지의 금융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부채”, “예수금”, “예수보증금”, “미지급비용”, “미지급법인세” 등을 말한다.
(다) “예수보증금”은 임대보증금 등의 보증금을 말한다.

<계정과목 해설서>

III. 기타부채

2-1. 유동부채 /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기타유동부채

(4) 예수보증금

수취한 보증금 중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제해야 하는 단기성부채를 말하며, 세부 계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계약 완료시 회수하는 금액

2-2. 기타비유동부채

②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3) 장기예수보증금

수취한 보증금 중 지급기일이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후에 도래하는 장기성부채를 말하며 세부 계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장기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계약 완료시 회수하는 금액

8.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

Q52 국채 발행 시 발행수수료, 법률자문료 등의 회계처리

질의내용(1)

국채를 발행할 때 지출한 발행수수료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32에 따라 국채발행수수료 및 발행 관련 직접 비용은 비용 처리하지 않고 국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질의내용(2)

국채를 발행할 당시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던 법률자문료를 발행일 이후에 지급하면서 비용으로 처리하였는데 적절한 회계처리에 해당하나요?

-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32에 따라 법률자문료는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급될 때 부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 또한 법률자문료 반영 전 유효이자율은 법률자문료 차감 후 발행금액과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이자율로 재계산해야 하며, 새로 산정한 유효이자율로 국채의 이자 비용과 할인차금 상각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32. (국채의 최초 측정) (1) 국채는 국채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 (2) 국채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국채할인(할증)발행차금”으로 액면가액에서 빼거나 더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 (3) 국채의 발행일과 매출일이 불일치할 경우 매출일을 기준으로 할인(할증)발행차금을 산출한다. 발행일과 매출일 불일치로 매출경과료(10원 미만은 절사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미지급이자 비용”으로 처리하고, 할인(할증)발행차금에 가산(차감)한다.

$$\text{할인(할증)발행차금} = \text{발행액면금액} - \text{발행대금납입액} + \text{매출경과료}$$

Q53 발행일과 매출일이 다른 국채 발행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발생주의 회계기준에서는 국채의 발행일과 매출일이 다른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 발생주의 회계기준에서는 매출일을 기준으로 수행되나, 발행일부터 매출일까지의 매출 경과료를 미지급이자비용으로 기록함으로써 최초 이자지급일에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회계처리는 매출일을 기준으로 수행되나, 현금 이자지급액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32. (국채의 최초 측정)

(3) 국채의 발행일과 매출일이 불일치할 경우 매출일을 기준으로 할인(할증)발행차금을 산출한다. 발행일과 매출일 불일치로 매출경과료(10원 미만은 절사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미지급이자 비용”으로 처리하고, 할인(할증)발행차금에 가산(차감)한다.

$$\text{할인(할증)발행차금} = \text{발행액면금액} - \text{발행대금납입액} + \text{매출경과료}$$

Q54 해외차입금의 현재가치 평가 시 적용할 유효이자율

질 의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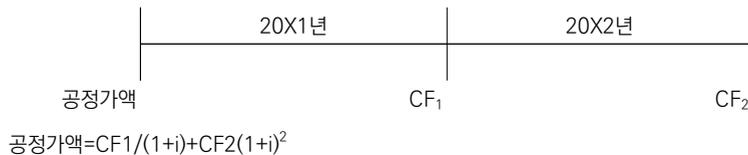
해외차입금의 현재가치 평가 시 적용할 유효이자율은 무엇인가요?

- ▶ 해외차입금의 현재가치 평가 시 적용할 유효이자율은 거래발생 당시 거래 상대방의 신용상태 및 지급 조건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체결된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이자율이며, 거래 발생시점의 공정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외차입금의 공정가액과 당해 해외차입금에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공정한 시장이라면 공정가액에 상대방의 신용상태 및 지급 조건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을 것이므로 두 이자율은 동일할 것입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34. (차입금 등의 최초 측정) (1) 장기연불조건의 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금, 미지급금 등으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다만, 차입금 중 “전대차관”과 “정부내예수금”은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 (2) (1)에 따른 현재가치 가액은 해당 금융부채로 인해 미래에 지급할 총금액을 해당 거래의 유효이자율(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제 유통수익률을 말한다)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실무해설3. (☞ 관련문단 3. (6)) 유효이자율이란 거래 당시 상대방의 신용상태 및 지급 조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체결된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이자율이다. 그러나 거래 발생시점의 공정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의 유효이자율은 자산·부채의 공정가액과 당해 자산·부채에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산정된다.



공정한 시장이라면 공정가액에 상대방의 신용상태 및 지급 조건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을 것이므로 위 두 이자율은 동일할 것이다.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Q55 결산일에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수수료의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결산일 시점에 수수료 지급금액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지급비용을 인식해야 하나요?

- ▶ 수수료 지급금액이 최종 확정되지 않더라도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미지급비용'을 인식해야 합니다.
- 결산일 이후 결산보고서 제출 전에 해당 수수료 지급금액이 최종 확정되면 그 금액을 부채로 계상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31. (인식기준) (1) 금융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 중 향후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

Q56 협정에 따른 방위분담금의 부채 인식 필요 여부 등

질 의 내 용

미국과의 협정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 방위분담금(부담해야 할 금액은 협정으로 확정되어 있음)에 대해 부채로 인식해야 하나요? 또한, 분담금의 예산 상 지급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변경이 부채 인식 여부에 영향을 주나요?

- ▶ 방위분담금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미지급금'을 인식해야 합니다.
- ▶ 예산의 편성, 자금의 배정은 회계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지급하는 예산 방식의 변경은 회계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31. (인식기준) (1) 금융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 중 향후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9. 금융부채의 인식 후 평가

Q57 퇴직급여충당부채 환율변동 효과 회계처리 방법

질 의 내 용

재외공관 계약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산 시 외화기준 추계액은 증가하였으나 당기말 환율이 전기말 대비 크게 감소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 금액이 전기이월액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율감소로 인한 퇴직급여충당부채 감소 효과를 외화평가이익으로 계상해야 하나요?

- ▶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일정 화폐액으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으로 화폐성 외화부채에 해당합니다.
-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 39에 따라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평가로 발생한 이익은 외화평가이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 외화 퇴직급여충당부채과 당기 외화평가손익 산정방식

퇴직급여 = 전기말 환율 × (당기말 외화 퇴직급여충당부채 - 전기말 외화 퇴직급여충당부채)

외화평가손익 = 당기말 외화 퇴직급여충당부채 × (당기말 환율 - 전기말 환율)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39. (외화부채의 인식 후 평가) (1) 화폐성 외화부채에 해당하는 금융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기준 환율로 평가한다.
- (2)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부채에 해당하는 금융부채는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기준환율로 평가한다.
- (3)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부채에 해당하는 금융부채는 공정가액이 측정된 날의 기준환율로 평가한다.
- (4) (1)에 따라 발생하는 환율변동효과는 “외화평가손실” 또는 “외화평가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 (5) 비화폐성 외화부채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손익을 조정항목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조정항목에 반영한다. 그러나, 비화폐성 외화부채에서 발생한 손익을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 (6) 화폐성 외화부채는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부채의 금액이 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 화폐액으로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경우의 부채를 말한다. 다만, 화폐성과 비화폐성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외화부채는 해당 부채의 보유 목적이나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 (7) 화폐성 외화부채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유동성대체되는 경우 외화평가를 먼저 수행한 후에 유동성대체를 수행한다.

10. 금융부채의 제거

Q58 정부내예수금 조기상환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정부내예수금을 조기상환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어떤 계정 과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 ▶ 정부내예수금의 조기 상환으로 발생한 손실은 '기타비용' 중 '채무상환손실'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41.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부채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 경우 또는 채권자로부터 법적으로 유효하게 면제받은 경우에 재정상태표에서 제거한다.
42. (국채(공채)의 조기상환) 국채(공채)를 발행한 기관이 국채(공채)를 만기일 이전에 조기상환할 경우 국채(공채)의 장부가액이 국채(공채)의 상환가액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채무상환 손익"으로 인식한다.

실무해설44. (☞ 관련문단 42) 국채와 공채의 조기상환 관련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프로그램수익/ 비배분수익	기타수익	채무상환이익	
비용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기타비용	채무상환손실	

<계정과목 해설서>

VII. 기타비용 / 2. 세부계정과목 설명

□ 기타비용

(6) 채무상환손실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의 지출에 따른 손실을 의미한다.

제4장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1. 용어의 정의

Q59 기부채납 받은 건물의 취득원가 산정 시 필요한 공정가액의 의미

질 의 내 용

○○대학교(국립대)에서 기부채납받은 건물의 재산가액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산정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공정가액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또 공정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3.(4)에 따르면 공정가액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적인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의미합니다.
- ▶ 공정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시장가격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 자산의 현금거래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현가능가액이나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평가한 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한다. 다만,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공정가액"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적인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 가격을 말한다. 공정가액은 시장가격으로 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 자산의 현금거래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현가능가액이나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평가한 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16. (무상취득) 국가회계실체 외의 자로부터의 수증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무상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다만, 무상 사용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사용수익권을 계상한다.

2.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분류

Q60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구분 기준

질 의 내 용

재무제표상 사회기반시설이 계상되어 있는데, 해당 자산이 일반유형자산인지 사회기반 시설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 일반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더라도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은 '사회기반시설'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 국가회계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 나열한 시설 및 그 부속 토지 중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하천, 상수도, 국가어항 등 8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일반유형자산"이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전비품, 기타 일반유형 자산 및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등을 말한다. 일반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또는 자체 사용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 (2) "사회기반시설"이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하천, 상수도, 국가어항, 기타 사회기반시설 및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등을 말한다. 사회기반시설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 나열한 시설 및 그 부속 토지 중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산이다.

Q61 구축물의 정의

질 의 내 용

구축물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건물에 포함되는 전기공사비용을 현재 별도의 구축물로 관리하고 있는데 올바른 것인가요?

- ▶ ‘구축물’은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 중 입목, 건물 및 건물 부속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건물에 부수되는 전기공사비용은 구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별도의 자산으로 관리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물에 포함되는 전기공사비용은 건물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4. (일반유형자산의 분류) 일반유형자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3) “구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 중 입목, 건물 및 건물 부속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물을 말한다.
26.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이 외의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적 지출로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Q62 **국유재산상 기계기구의 재무계정과목**

질 의 내 용

국유재산상 기계기구로 분류되는 항목은 재무제표에서 어떤 계정과목과 매칭 되나요?

▶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계기구는 국가회계 계정과목 중 ‘고정성기계장치’와 매칭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4. (일반유형자산의 분류) 일반유형자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4) “기계장치”란 동력 등의 힘을 이용해 물리적·화학적으로 원·부재료를 가공제품으로 변환시키는 각종 제조설비 및 작업장치를 말하며, 물품대장에 등재되는 기계장치는 “이동성기계장치”, 국유 재산대장에 등재되는 기계장치는 “고정성기계장치”로 분류한다.
-

Q63 전비품 및 치안유지자산의 범위

질의내용(1)

총기, 탄약, 함포, 전기충격기 등의 경우 치안유지자산으로 회계처리하나요?

질의내용(2)

보유중인 탄피는 재고자산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아니면 무기류와 같이 전비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질의내용(3)

부처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내부 예비군 훈련과 관련하여 취득한 암호해독장비를 치안유지자산으로 분류해도 되나요?

질의내용(4)

치안유지자산과 전비품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 ‘치안유지자산’은 치안유지목적으로 보유한 총기류 및 탄약 등 중에서 전비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총기, 탄약, 탄피, 함포, 전기충격기, 암호해독장비 등이 전비품에 해당하지 않고 치안유지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기타일반유형자산’ 중 ‘치안유지자산’으로 분류합니다.
- ‘전비품’이란 군수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며, 전쟁의 억제 및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군사장비와 탄약 등을 말합니다.
- ‘재고자산’은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투입을 위해 존재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보유중인 자산이 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인 경우 재고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4. (일반유형자산의 분류) 일반유형자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6) “전비품”이란 전쟁의 억제 및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군사장비와 탄약 등을 말한다.
 - (7) “기타일반유형자산”이란 (1) 내지 (6)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일반유형자산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나) 치안유지자산: 치안유지목적으로 보유한 총기류 및 탄약 등으로 전비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산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재고자산”이란 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생산과정 또는 용역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으로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축산물, 미착품 및 기타의저장품이 있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제1조의2(군수품의 구분) ①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전비품”(戰備品)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수품(비밀도서, 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 2. 「군사기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 3. 별표에 따른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또는 장착되는 장비를 포함한다), 수리부속품 및 탄약류
- ② 법 제3조에서 “통상품”(通常品)이란 군수품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전비품(이하 “전비품”이라 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

Q64 개업준비 비용을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가능 여부

질 의 내 용

건물 신축 시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된 사무직 인건비를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 할 수 있나요?

- ▶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된 사무직 인건비는 건물 신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이나 용역잠재력 있는 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 ‘건설중인자산’이란 취득과정이 진행 중인 일반유형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의 지출액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과목입니다.
 - 따라서 인건비 등이 건물 취득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된 경우에는 취득원가 또는 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자산이 완공되기 전까지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하게 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4. (일반유형자산의 분류) 일반유형자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8)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이란 취득과정이 진행 중인 일반유형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의 지출액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은 검수 또는 국유재산 등에 등재시점에 본계정으로 대체한다.
9. (취득원가의 측정)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한다. 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을 위하여 사용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Q65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 계정과목이 발생하는 경우

질 의 내 용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계정과목인가요?

- ▶ 토지, 건물 등 자산을 일괄취득하거나 국세청이 물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 토지, 건물 등 자산을 일괄취득 시 우선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이후 자산대장 등재 시 적절히 안분하여 개별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이 물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고 기획재정부 이관 시 ‘물납이전’으로 처리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4. (일반유형자산의 분류) 일반유형자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8)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이란 취득과정이 진행 중인 일반유형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의 지출액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은 검수 또는 국유재산 등에 등재시점에 본계정으로 대체한다.
14. (일괄취득)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일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각 자산의 공정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개별 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일괄취득한 자산 중 일부 자산의 공정가액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알 수 있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우선 배분하고, 잔액은 나머지 자산에 배분한다.

실무해설11. 국세청이 물납으로 취득하는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은 취득 시 “건설중인기타의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기획재정부 이관 시 “물납이전”으로 처리한다.

Q66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미술품의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해당하지 않는 미술품 또는 미화물품은 어떻게 회계처리 하나요?

▶ 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4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아 유산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미술품 및 미화물품은 '기타일반유형자산' 중 '정부 미술품·정부미화물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4. (일반유형자산의 분류) 일반유형자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7) "기타일반유형자산"이란 (1) 내지 (6)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일반유형자산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다)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 국가회계실체가 보유하는 미술품 및 미화물품 중「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아 유산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자산

Q67 사이버갤러리에서 관리하는 정부미술품 인식 주체

질 의 내 용

조달청 사이버갤러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부미술품을 각 회계실체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인가요?

▶ 정부미술품의 소유권을 각 보유 회계실체가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 회계실체가 정부 미술품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Q68 **미술품 구입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부의 미술작품 구입은 크게 미술은행 구입건과 미술관 소장용 2가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미술은행 구입건(타종양부처에 미술작품을 대여하기 위해 취득한 2000만원 미만의 미술작품)은 건설중인가타의유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 미술관 소장용 미술품은 홍보물품비로 처리하였습니다.

미술품에 대하여 동일한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올바른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4에 따라 보유 중인 미술품 및 미화물품 중 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아 유산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자산은 '기타일반유형 자산' 중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따라서 기존에 '홍보물품비'로 처리한 미술품과 '건설중인가타의유형자산'으로 처리한 미술품은 모두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4. (일반유형자산의 분류) 일반유형자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7) "기타일반유형자산"이란 (1) 내지 (6)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일반유형자산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다)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 국가회계실체가 보유하는 미술품 및 미화물품 중 「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아 유산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자산

Q69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취득한 자산의 귀속 및 회계처리**

질의내용(1)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취득한 자산을 일반회계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질의내용(2)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하여 국유재산 취득 시 국유재산기금과 실제 취득 회계실체는 각각 어떠한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하나요?

- ▶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취득한 자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일반회계 소속으로 합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등기된 자산은 물론이고 건설증인자산도 모두 일반회계 귀속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하여 국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하는 회계실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다른 국가회계실체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각각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차)	기 타 재 원 이 전	XXX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XXX
〈취득 회계실체〉					
차)	자 산	XXX	대)	기 타 재 원 조 달	XXX

〈국유재산법〉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 ②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취득한 자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Q70 사회기반시설 관련 계정과목 발생 오류

질 의 내 용

합계잔액시산표 확인 결과 사회기반시설(도로) 계정과목에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적정한 회계처리인가요?

- ▶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따라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일부 부처에서만 발생하는 계정과목입니다.
- 따라서 상기 부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도로)이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 실질을 확인하여 회계처리 오류가 아닌지 검토해야 합니다. 오류의 경우 ‘일반유형 자산’으로 계정분류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5. (사회기반시설의 분류) 사회기반시설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따라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일반국도와 고속국도를 말한다.
-

3. 인식의 일반원칙

Q71 등기 미완료 토지에 대한 자산 인식 방법

질 의 내 용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국유재산대장에 등재하지 못하고 있는 취득 중인 토지는 어떻게 회계처리 하나요?

- ▶ 일반유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합니다.
- 일반적으로 검수 또는 국유재산대장 등의 등재시점에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산이 미등기 상태이거나 국유재산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았더라도 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한다면 당해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 6. (인식조건)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한다.
 - (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실무해설4. (☞ 관련문단 6. (1)) 일반적으로 검수 또는 국유재산대장 등의 등재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자산이 미등기 상태이거나 국유재산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았더라도 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한다면 당해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Q72 선 사용 토지의 자산 인식 여부

질 의 내 용

아직 지출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를 실제 사용하는 경우 토지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나요?

- ▶ 지출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현재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토지를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 토지를 자산으로 인식 시 미지출분에 대하여 부채를 함께 인식하여야 합니다.

자산으로 인식할 경우 회계처리 예시

차)	토	지	XXX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XXX
					미 지 급 금	XXX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자산의 정의와 구분) 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 6. (인식조건)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한다.
 - (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실무해설4. (☞ 관련문단 6. (1)) 일반적으로 검수 또는 국유재산대장 등의 등재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자산이 미등기 상태이거나 국유재산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았더라도 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한다면 당해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Q73 국방부에서 관리중인 군견(생물자산)의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국방부에서 관리중인 군견(생물자산)이 유형자산에 해당하나요?

- ▶ 군견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에 해당합니다.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6에 따라 군견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자산의 정의와 구분) 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6. (인식조건)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한다.
- (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Q74 50만원 미만 취득 건을 자산 계상해도 되는지 여부

질 의 내 용

50만원 미만 물품 취득에 따른 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해도 되나요?

질 의 내 용

취득원가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물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는데 올바른 회계처리인가요?

- ▶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물품은 소액자산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소액자산의 경우에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6.(2) 및 실무해설5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물품은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6. (인식조건)

(2) 다만, 소액자산 또는 소모성 물품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실무해설5. (☞ 관련문단 6. (2))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물품은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물품은 소액자산으로 볼 수 있다.

Q75 일괄취득 시 소액자산(50만원 미만) 판단기준

질 의 내 용

물품의 건당 50만원 미만 비용 처리 시 '건당'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질 의 내 용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해 학교 건물의 LED 조명 교체에 약 1,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취득한 LED 조명의 가격은 건당 50만원 미만입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에 건당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는데, 이에 따라 LED 조명 구입비를 모두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 물품취득 시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지 여부는 일괄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물품 개별 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 6. (인식조건)
 - (2) 다만, 소액자산 또는 소모성 물품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실무해설5. (☞ 관련문단 6.(2))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물품은 물품 관리운용보고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물품은 소액자산으로 볼 수 있다.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Q76 건당 50만원 이상의 도서 구입비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구입한 도서 중 건당 50만원 이상 도서의 합계 금액이 1억원 정도 됩니다. 국가회계편람 계정과목 해설서에 의하면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성격의 도서구입비는 기타일반유형 자산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으나, 물품관리법 제49조에 따라 물품으로 등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 이후 감가상각, 처분 등 사후 관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 ▶ 건당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도서구입비는 ‘기타일반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도서관 도서가 물품관리법 제49조에 따라 법 적용을 일부 배제 할 수 있고 디브레인 시스템상 취득 이후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유로 건당 50만원 이상의 도서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 6. (인식조건)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한다.
 - (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2) 다만, 소액자산 또는 소모성 물품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계정과목 해설서>

- Ⅲ. 소모품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 ㉓ 도서구입비의 구분
 - 일반도서 구입비는 간행물비로 분류하되,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 성격의 도서구입비는 기타일반유형 자산으로 분류한다.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제49조(적용배제)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써 취득한 물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물품)
 - 8. 도서, 박물관 보존물품, 과학관 전시물품

Q77 업무용 도서 및 도서관 도서구입비 계정과목 선택

질 의 내 용

업무용 도서 구입비용은 간행물비가 아닌 소모성물품비가 맞나요? 그리고 도서관의 도서 구입비는 소모성물품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 업무 관련 도서 구입비용은 '간행물비'로 처리하고 도서관 도서구입비는 '기타일반유형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Ⅲ. 소모품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소모품비

(4) 간행물비는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를 말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③ 도서구입비의 구분

일반도서 구입비는 간행물비로 분류하되,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 성격의 도서구입비는 기타일반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Q78 비용 처리한 400번대 예산목에 대한 자산 인식 여부

질 의 내 용

410~440 예산목으로 지출하고 비용처리한 항목과 관련하여 지출금액이 큰 건에 대해서 자산으로 계상해야 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요?

- ▶ 410~440 예산목으로 지출한 비용 중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건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 또한, 본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에 대해서는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자본적 지출인 경우 본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Q79 소유권이 없는 토지에 지은 건축물의 자산 인식 여부

질 의 내 용

다른 국가회계실체 소유의 토지에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에도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자산으로 개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나요?

- ▶ 건축물을 지은 토지의 소유자와 상관없이 건축물이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자산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 ▶ 또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건축물을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자산의 정의와 구분) 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 6. (인식조건)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한다.
 - (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Q80 재측량으로 토지 면적 증가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2011년도에 당시 면적이 46,533㎡이어서 이를 근거로 2011년 공시지가(14,800/㎡)를 적용하여 자산재평가(688백만원)를 하였으나, 2012년 재측량 시 47,128㎡로 59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누락된 면적(595㎡)에 대해 2011년 공시지가(14,800/㎡)를 적용하여 전기오류수정 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 ▶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한 경우에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관련 효과를 전기 순자산변동표상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합니다.
 - 이 경우 전기오류수정 후 47,128㎡에 2011년 공시지가를 적용한 금액이 토지의 기초장부가액으로 재정상태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이 자산재평가이익의 오류는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수정이므로 발견한 회계연도의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직접 반영합니다.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8.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소급하여 재작성하며, 전기오류수정 효과를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한다.
 - (1) 오류가 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해당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 (2) 오류가 전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기오류수정효과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 금액을 재작성한다.
9. (중대하지 않은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상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반영한다. 다만,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상태표 또는 순자산변동표에 직접 반영한다.

4. 인식의 예외사항

Q81 '유산자산취득비' 사용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유산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유산자산취득비' 계정과목을 사용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7에 따라 유산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유산자산취득비'로 처리합니다.
- 따라서 '유산자산취득비'는 취득 시점에 재정운영표상 비용으로 표시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7. (유산자산) 유산자산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국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을 말한다. 유산자산과 관리토지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유산자산취득비" 또는 "관리토지 취득비"로 처리한다.

Q82 유산자산을 비용 처리하는 이유

질 의 내 용

유산자산은 미술품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비용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 인가요?

- ▶ 유산자산은 현 세대 및 미래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자산으로 신뢰성 있는 가액의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하여 관리합니다.
- 즉, 유산자산도 미술품과 마찬가지로 자산의 정의는 충족하나 자산의 인식기준 중 측정 가능성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10조(자산의 인식기준) ① 자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 ②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이하 “유산자산”이라 한다)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 ③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자산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7. (유산자산) 유산자산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국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을 말한다. 유산자산과 관리토지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유산자산취득비” 또는 “관리토지 취득비”로 처리한다.

Q83 보존용재산의 유산자산 해당 여부

질 의 내 용

국유대장상 보존용재산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유산자산으로 보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적정한가요?

- ▶ 보존용재산이란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으로 보존용재산 중 유산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자산을 유산자산으로 인식합니다.
- 또한 유산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더라도 청사와 같이 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유산 자산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일반유형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7. (유산자산) 유산자산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국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을 말한다. 유산자산과 관리 토지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유산자산취득비” 또는 “관리토지 취득비”로 처리한다.

실무해설6. (☞ 관련문단 7) 유산자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1) 문화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유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의한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를 의미)로서 그 관리주체가 국가인 문화재
- (2) 국립공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국립공원을 의미하며, 공원시설은 제외
- (3)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호구역, 자연경관보호구역 등과 같이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으며, 관리주체가 국가인 보호구역

유산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이라도 청사와 같이 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유산자산으로 분류하지 아니 하고 일반유형자산으로 구분하며,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술품을 구입 또는 기증받은 경우에는 기타일반유형자산으로 인식한다. 기타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된 예술품은 취득원가(역사적 원가)나 기부시점의 공정가액으로 인식한다.

Q84 수변보호구역, 생태계보호구역의 유산자산 해당 여부

질 의 내 용

수변보호구역, 생태계보호구역이 유산자산에 해당되나요?

- ▶ 수변보호구역, 생태계보호구역이 자연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으며 관리주체가 국가인 보호구역인 경우 유산자산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 그러나 보호구역 내의 진입도로, 주차장, 사무실 등 부수시설은 행정활동에 위해서 사용되는 자산이므로 일반유형자산의 토지, 건물, 구축물 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인식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7. (유산자산) 유산자산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국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을 말한다. 유산자산과 관리 토지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유산자산취득비” 또는 “관리토지 취득비”로 처리한다.

실무해설6. (☞ 관련문단 7) 유산자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3)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호구역, 자연경관보호구역 등과 같이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으며, 관리주체가 국가인 보호구역

<계정과목 해설서>

XI. 유산자산 /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③ 유산자산 인식 예외사항

- (2) 국립공원 및 보호구역 내의 진입도로, 주차장, 사무실 등 부수시설은 행정활동에 위해서 사용되는 자산이므로 일반유형자산의 토지, 건물, 구축물 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인식한다.

Q85 문화재 복원작업 관련 비용의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문화재 복원작업을 하면서 사용된 비용을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한 후에 공사 완료시점에 유산자산으로 계정과목 변경을 해도 되나요?

▶ 문화재 복원작업을 하면서 사용된 비용은 ‘유산자산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8.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란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유산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계정과목 해설서〉

X. 수선유지비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② 유산자산수선유지비

유산자산의 경우에는 최초 취득 시에는 유산자산취득비로 계상하며 취득 이후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유산자산수선유지비로 계상한다.

5. 취득원가의 측정

Q86 건물에 대한 추가설비를 건물과 구축물로 구분하는 기준

질 의 내 용

건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한 설비가 있는데 이를 건물과 구축물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 ▶ 건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한 설비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부수되는 시설물인 경우 건물로 구분하며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 중 입목, 건물 및 건물 부속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물인 경우 구축물로 구분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4. (일반유형자산의 분류) 일반유형자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2) “건물”이란 청사, 관사, 아파트 등 「건축법」상 건축물로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 (3) “구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 중 입목, 건물 및 건물 부속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물을 말한다.

Q87 토지 취득 관련 선납할인액 및 선급금에 대한 이자수익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토지 취득 관련 선납할인액 및 선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취득원가 산정 시 고려해야 하나요?

- ▶ 선납할인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매입할인 규정을 준용하여 취득가액에서 차감합니다.
- ▶ 선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자산의 취득 활동과 별개의 금융요소이므로 토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기타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범위 등)

③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9. (취득원가의 측정)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한다. 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을 위하여 사용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16.

16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1)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Q88 토지의 취득부대비용

질의내용(1)

토지 취득 시에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문화재 지표조사비용 및 문화재 발굴조사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나요?

질의내용(2)

토지를 매입하면서 원소유자에게 지급한 주거이전비의 경우 비용성격인가요? 아니면 토지매입부대비용인가요?

질의내용(3)

토지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분묘 이전비용, 원두막 해체비용 등)을 건설중인가타의 유형자산으로 처리했는데 토지 취득이 완료된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하나요?

질의내용(4)

국방시설 관련 토지 및 건물 취득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의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출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취득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나요?

질의내용(5)

토지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보상비가 등기 이후에 지출되었는데, 이때 보상비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 ▶ 문화재 관련 조사비용, 주거이전비,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분묘 이전비용 등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지출이라면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 지침 문단9에 따라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 토지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토지 취득완료 후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합니다.
- 취득부대비용의 예시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9. (취득원가의 측정)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한다. 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을 위하여 사용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실무해설7. (☞ 관련문단 9) 취득부대비용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1)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 (2) 외부 운송 및 취급비
- (3) 설치비
- (4)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5)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 제세공과금

Q89 건물 등의 취득부대비용

질의내용(1)

지진계를 설치하기 위한 굴착 등 공사비용을 지진계의 원가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나요?

질의내용(2)

자산 취득 시 발생한 감리비용은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나요?

질의내용(3)

시설부대비(420-05)로 지출한 내역 중에 공사현장 감독을 위한 여비 등으로 지출한 것은 취득부대비용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질의내용(4)

함, 포 등 치안유지자산 취득 시 지출되는 설치기술지원비는 본 자산 취득 후 이를 사용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느 시점(취득시 or 사용시)까지 발생한 금액을 취득부대비용으로 보나요?

질의내용(5)

건물 공사 시 발생한 설계비, 감리비, 시공부대비 등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근거 규정은 무엇인가요?

질의내용(6)

신규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을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신규자산의 취득원가로 반영해야 하나요?

질의내용(7)

조달청에 지급하는 조달수수료를 부수적인 비용으로 보아 본 자산 또는 본 비용에 포함 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별도의 거래로 보아 '기타수수료' 등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나요?

- ▶ 지진계 설치를 위한 굴착공사비, 감리비, 설계비, 시공부대비 등이 건물 등을 취득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지출이라면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9에 따라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건물 등의 취득원가에 산입해야 합니다.
- 취득부대비용은 취득 후 사용 준비를 위한 지출을 포함하므로 자산을 사용가능한 상태에 도달하기 까지 발생한 비용은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취득부대비용의 예시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9. (취득원가의 측정)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한다. 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을 위하여 사용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실무해설7. (☞ 관련문단 9) 취득부대비용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1)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 (2) 외부 운송 및 취급비
- (3) 설치비
- (4)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5)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 제세공과금

Q90 취득부대비용 중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기존 청사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건물의 취득부대비용 인가요? 아니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가요? 토지는 이미 예전에 취득한 상태이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건물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요?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에 의해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등에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부담금은 건물 취득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토지 취득 시(상업용지 입찰 등) 부과될 수도 있고, 건물 취득 시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9. (취득원가의 측정)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한다. 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을 위하여 사용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실무해설7. (☞ 관련문단 9) 취득부대비용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1)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 (2) 외부 운송 및 취급비
- (3) 설치비
- (4)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5)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 제세공과금

Q91 유찰 업체에 지급한 설계보상비의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설계-시공-입찰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턴키(turn-key) 방식¹⁾으로 자산 취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되지 못한 업체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는데,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9에 따라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 낙찰되지 못한 경우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는 턴키 방식의 사업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지출이므로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9. (취득원가의 측정)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한다. 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을 위하여 사용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실무해설7. (☞ 관련문단 9) 취득부대비용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1)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 (2) 외부 운송 및 취급비
- (3) 설치비
- (4)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5)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 제세공과금

1) 턴키(turn-key)방식: 일괄시공업체가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와 시공, 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방식

Q92 선박 취득 시 선박펀드에 지급한 수수료의 취득원가 포함 여부

질 의 내 용

선박펀드를 통해 선박 취득 시 펀드에 지급하는 이자비용과 조달수수료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나요?

- ▶ 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 시 발생한 펀드 지급 이자비용과 조달수수료는 펀드를 통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지출이므로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 다만, 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을 위하여 사용된 자금을 직접 차입금으로 충당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9. (취득원가의 측정)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한다. 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을 위하여 사용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

Q93 취득부대비용이 본 자산의 취득원가보다 큰 경우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취득부대비용이 본자산의 취득원가보다 큰 경우(예시: 토지취득비가 2억, 주거이전비가 4억인 경우) 취득부대비용을 본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 인가요?

- ▶ 금액적 비중이 취득부대비용의 자산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므로 취득부대비용이 본 자산의 취득원가보다 크더라도 관련 금액을 본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9. (취득원가의 측정)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 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한다. 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을 위하여 사용된 자금을 차입금으로 총당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Q94 무주재산 발굴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무주재산을 발견한 경우 대변에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 무주재산을 발굴한 경우 ‘잡이익’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적용사례9. (☞ 관련문단 16) 무주부동산을 발굴한 경우

1. 배경정보

AA부처는 토지(무주부동산)를 발굴하여 자산에 등재하였으며, 토지의 공정가액은 1천만원으로 평가되었다.

2. 회계처리

- 무주부동산 발굴에 따른 자산 등재 시 -

차)	토	지 ^(*)	10,000,000	대)	잡 이 익	10,000,000
----	---	------------------	------------	----	-------	------------

(*1) 발굴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취득등록시점에 발굴자산의 상세한 내역을 기표함

Q95 부처 내 자산 관리권 이전의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부처 내부적으로 자산의 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 국가회계실체 사이의 관리전환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 지침 문단1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유상관리전환인 경우 관리전환 받은 자산의 공정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되, 제공하는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간주하여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는 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무상관리전환인 경우 관리전환 받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자산을 제공하는 실체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감가상각누계액과 재평가이익을 포함하여 재무제표에 총액으로 표시합니다. 또한 동 금액을 정부내자산수증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13. (관리전환을 통한 취득) 관리전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관리전환의 경우 장부가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자산의 경우에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한다.
- (1) 유상관리전환의 경우, 관리전환 대상 자산의 공정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되, 제공하는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간주하여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는 처분손익으로 한다.
 - (2) 무상관리전환 또는 용도폐지에 따른 전환의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는 관리전환으로 자산을 제공하는 실체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재무제표에 총액으로 표시한다.

Q96 자산 교환으로 인한 취득 시 취득원가의 측정

질 의 내 용

국가회계실체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측정해야 하나요?

- ▶ 국가회계실체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합니다.
- ▶ 다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15. (교환으로 인한 취득) 국가회계실체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
-

Q97 현금이 수반된 토지교환거래 시 공정가액 평가방법

질 의 내 용

토지를 교환하면서 현금을 수령한 경우 공정가액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나요?

▶ 취득 당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에서 현금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공정가액)로 해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15. (교환으로 인한 취득) 국가회계실체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

적용사례7. (☞ 관련문단 15) 현금이 수반되는 교환의 경우

1. 배경정보

일반유형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을 현금을 받는 다음의 조건으로 교환하기로 하였다. (단위: 원)

구 분	건물(A)	건물(B)	비 고
취 득 가 액	500,000,000	600,00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00,000,000	450,000,000	
순 장 부 가 액	200,000,000	150,000,000	
공 정 가 액	450,000,000	410,000,000	
현 금 수 령 액	40,000,000	(-)40,000,000	

2. 회계처리

<건물A를 제공하고 건물B를 받는 회계실체>

- 교환 자산 등재 시 -

차) 건	물(B) ^(*1)	410,000,000	대) 건	물 (A)	500,000,000
	건물감가상각누계액(A)	300,000,000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2)	250,000,000
	기 타 의 미 수 금	40,000,000			

(*1)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에서 현금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
 (*2) 제공한 건물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 차이는 처분손익으로 인식

- 미수금 회수 시 -

차) 국	고	금 ^(*1)	40,000,000	대) 기	타 의 미 수 금	40,000,000

(*1) 국고금 회계처리 생략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Q98 아파트 재건축(분양권)에 따른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아파트를 구입하여 기숙사 등으로 사용해 오던 중 재건축으로 인하여 분양권이 발생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 기존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의 교환으로 보아 회계처리 합니다.
- 기존 아파트의 미상각장부가액은 재건축을 위한 양도시점(등기부등본 말소시점)에 별도의 계정(예: 건설중인자산)으로 대체하고, 교환으로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교환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15. (교환으로 인한 취득) 국가회계실체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

적용사례6. (☞ 관련문단 15)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교환의 경우

1. 배경정보

일반유형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단위: 원)

구 분	건물(A)	건물(B)	비 고
취 득 가 액	500,000,000	600,00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00,000,000	450,000,000	
순 장 부 가 액	200,000,000	150,000,000	
공 정 가 액	450,000,000	410,000,000	

2. 회계처리

- 교환 자산 등재 시 -

<건물A를 제공하고 건물B를 받는 회계실체>

차) 건물(B) ^(*1)	450,000,000	대) 건물(A)	500,000,000
건물감가상각누계액(A)	300,000,000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2)	250,000,000

(*1)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평가
(*2)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는 처분손익으로 인식

<건물B를 제공하고 건물A를 받는 회계실체>

차) 건물(A) ^(*1)	410,000,000	대) 건물(B)	600,000,000
건물감가상각누계액(B)	450,000,000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2)	260,000,000

(*1)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평가
(*2)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는 처분손익으로 인식

Q99 무상관리전환 시 취득실체의 회계처리

질의내용(1)

타부처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건물에 대해서 잡이익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올바른 회계처리는 무엇인가요?

- ▶ 타부처로부터 건물을 무상으로 받는 거래는 무상관리전환에 해당하며, 무상관리전환을 받는 부처의 경우 '정부내자산수증'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잡이익'으로 계상된 부분은 '정부내자산수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질의내용(2)

무상관리전환 시 취득실체에서 수행해야 하는 올바른 회계처리는 무엇인가요?

- ▶ 무상관리전환 시 취득실체는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관리전환으로 자산을 제공하는 실체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감가상각누계액과 재평가이익을 포함하여 재무제표에 총액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동 금액을 '정부내자산수증'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질의내용(3)

토지를 무상관리전환 받았는데 국유재산 담당자가 기타증감/기타(증)으로 처리(토지가액 공시지가로 반영)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올바른 회계처리는 무엇인가요?

- ▶ 무상관리전환의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원가는 공시지가가 아닌 자산을 제공하는 실체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재평가이익을 포함하여 재무제표에 총액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동 금액을 '정부내자산수증'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차변)	토	지	XXX	(대변)	자산재평가이익	XXX
					정부내자산수증	XXX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13. (관리전환을 통한 취득)

- (2) 무상관리전환 또는 용도폐지에 따른 전환의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는 관리전환으로 자산을 제공하는 실체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재무제표에 총액으로 표시한다.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12. (무상이전수입) “무상이전수입”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금, 정부내 자산수증, 정부외자산수증, 정부외기부금, 농특세이전수입 및 주세이전수입 등을 통한 순자산의 증가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4) 정부내자산수증: 국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국가회계실체 간 무상관리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
-

Q100 무상관리전환 시 취득실체의 재평가이익 승계

질 의 내 용

무상관리전환 받은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이익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무상관리전환 시 해당 자산에 대한 재평가이익의 올바른 회계처리는 무엇인가요?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13에서 무상관리전환의 경우 자산을 제공하는 실체의 장부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되, 재무제표에 총액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평가이익을 승계하여 인식하여야 합니다.

〈무상관리전환으로 건물을 취득한 실체 회계처리〉

차)	건 물	XXX	대)	정부내자산수증	XXX
				감가상각누계액	XXX
				건물재평가이익	XXX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13. (관리전환을 통한 취득) 관리전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관리전환의 경우 장부가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자산의 경우에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한다.
 - (1) 유상관리전환의 경우, 관리전환 대상 자산의 공정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되, 제공하는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간주하여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는 처분손익으로 한다.
 - (2) 무상관리전환 또는 용도폐지에 따른 전환의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는 관리전환으로 자산을 제공하는 실체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재무제표에 총액으로 표시한다.

Q101 무상관리전환 시 취득실체의 감가상각누계액 승계

질 의 내 용

무상관리전환 시 감가상각누계액을 포함하여 취득 회계처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가 아닌가요?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13에서 무상관리전환의 경우 자산을 제공하는 실체의 장부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되, 재무제표에 총액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처분실체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승계하여 각각 자산과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13. (관리전환을 통한 취득)

- (2) 무상관리전환 또는 용도폐지에 따른 전환의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는 관리전환으로 자산을 제공하는 실체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재무제표에 총액으로 표시한다.
-

Q102 무상관리전환 시 처분실체의 회계처리

질의내용(1)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토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 국가회계실체간 무상관리전환으로 토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토지의 상대 계정과목은 '무상이전지출' 중 '정부내자산기부'로 회계처리 합니다.

〈무상관리전환으로 토지를 처분한 실체 회계처리〉

차)	정부내자산기부	XXX	대)	토지	XXX
----	---------	-----	----	----	-----

질의내용(2)

동일한 유형의 관리전환과 관련하여 '기타무상이전지출'과 '정부내자산기부'로 각각 다르게 회계처리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 ▶ 무상관리전환(용도폐지 인계 포함)의 경우 처분실체는 장부가액에서 '자산재평가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정부내자산기부'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 '기타무상이전지출'은 정부내 거래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출금 및 정부내자산기부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타무상이전지출'이 아닌 '정부내자산기부'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23. (무상이전지출) "무상이전지출"이란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 국고금회계전출금, 정부내자산기부 등을 통한 순자산의 감소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6) 정부내자산기부: 국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국가회계실체 간 무상관리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28. (정부내자산기부의 측정) 정부내자산기부는 정부내부간 자산의 무상관리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무상관리전환하는 국가회계실체에서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자산재평가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정부내자산기부"로 회계처리한다.

Q103 무상관리전환 시 처분실체의 재평가이익 처리방법

질 의 내 용

재평가이익이 존재하는 자산을 무상관리전환을 통하여 타 부처로 이관한 경우 올바른 회계처리는 무엇인가요?

▶ 무상관리전환의 경우 처분실체는 장부가액에서 ‘재평가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정부내 자산기부’로 회계처리 합니다.

〈무상관리전환으로 자산을 처분한 실체 회계처리〉

차)	감가상각누계액	XXX	대)	자산	XXX
	자산재평가이익	XXX			
	정부내자산기부	XXX			

〈비용 회계처리지침〉

28. (정부내자산기부의 측정) 정부내자산기부는 정부내부간 자산의 무상관리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무상관리전환하는 국가회계실체에서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자산재평가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정부내자산기부”로 회계처리한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13. (관리전환을 통한 취득) 관리전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관리전환의 경우 장부가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자산의 경우에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한다.

(2) 무상관리전환 또는 용도폐지에 따른 전환의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는 관리전환으로 자산을 제공하는 실체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재무제표에 총액으로 표시한다.

실무해설19. (☞ 관련문단 67)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처분은 일반적으로 자산대장에서 해당 자산을 제거할 때 회계처리한다.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처분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 취득원가의 측정(문단9 ~ 문단27)을 참고한다.

Q104 일괄취득자산의 올바른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일괄지출한 비용 전액을 일반유형자산으로 등재하였습니다. 세부 취득내역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나요?

- ▶ 자산을 일괄취득한 경우 공정가액 비율로 구분하고, 취득부대비용은 개별자산별 안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안분하고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 시 비용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괄취득의 경우 각각의 세부내역을 파악하여 공정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취득 원가를 산정하고, 취득부대비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자산에 직접 대응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14. (일괄취득)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일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각 자산의 공정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개별 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일괄취득한 자산 중 일부 자산의 공정가액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알 수 있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우선 배분하고, 잔액은 나머지 자산에 배분한다. 다만, 일괄취득에 따른 부대비용 안분의 경우에는 개별자산별 대응이 가능한 취득부대비용에 대하여는 안분을 하고, 대응이 어려운 취득부대비용은 취득 시 비용화한다.

Q105 토지 사용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 산정

질 의 내 용

주차장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건물은 결산시점에 아직 철거가 시작되지 않았으나 빠른 시일 내에 철거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도 토지의 취득원가로 보아야 하나요?

- ▶ 토지 사용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건물은 사용가치가 없어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거래는 자산의 일괄취득 건이 아니라 토지의 취득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전체 매매가액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하지 않고 토지의 취득원가로 일괄 처리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17. (기존 건물 철거비용)

- (2)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 판매대가를 차감한 가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

Q106 철거 예정 건축물의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철거 예정인 건축물은 어떻게 회계처리 하나요?

- ▶ 철거 예정인 건축물은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63에 따라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 감액손실을 인식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 철거 시점에는 문단17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합니다.
 -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 판매대가를 차감한 가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17. (기존 건물 철거비용) (1)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2)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 판매대가를 차감한 가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63. (감액의 요건) (1)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물리적인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 감액손실을 인식한다.
 (2) 회수가능가액은 해당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가) 순실현가능가치란 해당 자산의 예상 매각대가에서 매각 시 발생하는 추정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나) 사용가치란 해당 자산의 사용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금액을 말한다.

Q107 철거 예정 자산 장부가액 순액표시 여부

질 의 내 용

철거 예정인 건물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하나요?

- ▶ 철거 예정 자산도 다른 일반유형자산과 동일하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총액표시 해야 합니다.

Q108 민간에서 국가를 대행하여 취득한 자산의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공사가 민간대행사업으로 국가를 대행하여 취득한 댐 등의 취득가액 및 공사대금 중 자산화 대상 및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25에 따라 민간대행사업을 통해 자산을 취득하고, 해당 자산의 완공 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투자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므로 투입된 금액 전체를 취득원가로 하고, 사용수익권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25. (민간대행사업을 통한 취득) 예산상 “민간이전-민간대행사업비”를 통하여 지출 후 해당 자산의 완공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투자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므로 투입된 전체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사용수익권은 인식하지 않는다.

Q109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일반적인 구분기준

질 의 내 용

수선유지비를 지출하였을 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실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상세한 기준이 있나요?

- ▶ 국가회계예규는 구체적인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사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26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법인세 집행기준 23-31-2에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26.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이 외의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적 지출로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법인세 집행기준 23-31-2〉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추상적 구분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감가상각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구체적 구분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1부터 4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1부터 5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Q110 사례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질의내용(1)

파출소 등을 새로 개관할 때 집행한 행사비용(개관식 등에 소요된 비용)은 자본적지출인가요?

- ▶ 파출소의 행사비용은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질의내용(2)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물의 등을 LED로 교체하는 공사를 실시한 경우 자본적지출인가요?

- ▶ LED 교체 공사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질의내용(3)

건물 옥상에 누수방지를 위해 실시한 방수공사는 자본적지출인가요?

- ▶ 건물의 방수공사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물의 장부가액에 가산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질의내용(4)

파티션 재배치 경비를 수선유지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 ▶ 파티션 재배치 경비는 건물 등의 내용연수 또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므로 비용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질의내용(5)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을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발생한 설치비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나요?

- ▶ 유형자산의 설치장소 이동으로 발생한 설치비는 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므로 비용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26.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이 외의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적 지출로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8.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란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유산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Q111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비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냉난방기 설치, 창호공사, 전기공사와 관련된 지출을 건물로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26에 따라 건물 리모델링이 건물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 하는 경우 건물의 장부가액에 가산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수익적지출로 보아 비용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 그러나 해당 자본적 지출이 지출금액, 자산의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자산의 정의와 구분) 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제10조(자산의 인식기준) ① 자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26.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이 외의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적 지출로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Q112 국도 관련 확장공사, 도로변경 등 공사비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국도와 관련하여 차선확장공사, 일부 도로변경, 중앙분리대 및 중앙분리 화단설치 등 종전의 도로를 획기적으로 재설치 및 확충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비를 수선 유지비와 자산 중 어떤 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또한 자산으로 처리할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반영해야 하나요?

- ▶ 국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국도의 장부가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26.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이 외의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적 지출로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Q113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회계처리

질의내용(1)

임차하여 사용 중인 건물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의내용(2)

○○청이 임차한 건물 내 실험실에 대해 대규모 수선 공사를 수행한 경우 해당 공사 비용을 자산으로 회계처리 가능한가요?

▶ 임차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지출금액, 자산의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질의내용(3)

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간판은 자산으로 회계처리 가능한가요?

▶ 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간판은 별도의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기타의기타일반유형 자산'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자산의 정의와 구분) 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제10조(자산의 인식기준) ① 자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26.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이 외의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적 지출로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Q114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회계처리

질의내용(1)

○○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195백만원)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관련 공사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고 자산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질의내용(2)

○○부가 △△부 소유의 청사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지출한 리모델링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나요?

▶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산도 일반적인 임차자산과 같이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지출금액, 자산의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자산의 정의와 구분) 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제10조(자산의 인식기준) ① 자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26.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이 외의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적 지출로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Q115 소모성물품(비용)을 수선하는 경우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소모성물품의 수선유지비는 기타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 ▶ 소모성물품은 일반적으로 자산이 아니라 비용처리되므로 이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기타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로 처리할 수 없으며 ‘소모성물품비’ 등 적절한 비용과목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III. 소모품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소모품비

(3) 소모성물품비는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 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비,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대가 등을 말한다.

X. 수선유지비

1. 수선유지비 정의

수선유지비란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유산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Q116 출자 및 민간대행사업을 통한 취득 시 사용수익권 계상

질 의 내 용

출자금 및 민간사업대행을 통한 취득의 경우, 댐 완공 시 국가 이외의 자의 사용권 비율만큼을 사용수익권금액으로 계상하나요?

- ▶ ‘출자금’ 및 ‘민간이전-민간대행사업비’를 통하여 지출한 후 해당 자산의 완공 시 국가에 귀속되고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투입된 전체금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며 국가 이외의 자의 사용권 비율만큼 ‘사용수익권’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24. (출자 및 민간대행사업을 통한 취득) 예산상 “출자금” 및 “민간이전-민간대행사업비”를 통하여 지출 후 해당 자산의 완공시 국가에 귀속되고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투입된 전체금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며 국가 이외의 자의 사용권 비율만큼 사용수익권으로 회계처리한다. 이 때 기지급된 선금금(총 투자비 중 국가 부담금)과 사용수익권의 차액은 출자금에 가감한다.

Q117 출자 및 민간대행사업을 통한 취득 시 출자금 계상

질 의 내 용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24(출자 및 민간대행사업을 통한 취득)에서 기지급된 선급금(총 투자비 중 국가 부담금)과 사용수익권의 차액은 출자금에 가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가감이라는 표현이 적절한가요?

▶ 출자 및 민간대행사업을 통한 취득이 완료된 시점에서 출자금은 기 지급된 선급금과 사용수익권의 차액으로 결정되는데, 국가와 민간사업체의 사용권 비율 평가결과에 따라 사용수익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자금에 대한 가산 또는 차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24. (출자 및 민간대행사업을 통한 취득) 예산상 “출자금” 및 “민간이전-민간대행사업비”를 통하여 지출 후 해당 자산의 완공시 국가에 귀속되고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투입된 전체금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며 국가 이외의 자의 사용권 비율만큼 사용수익권으로 회계처리한다. 이 때 기지급된 선급금(총 투자비 중 국가 부담금)과 사용수익권의 차액은 출자금에 가감한다.

적용사례17. (☞ 관련문단 24) 출자 및 민간대행사업을 통한 취득 사례

1. 배경정보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출자 및 민간위탁을 통하여 아래의 조건으로 댐 공사를 위탁하였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공사에 재정지원의 차원으로 사업 시작 전에 1,000억원을 출자하였다.

과 목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합 계
토지취득비	1,000억원	500억원	1,500억원
건축비	2,000억원	1,500억원	3,500억원
합 계	3,000억원	2,000억원	5,000억원

한편, 댐이 완공되고 댐사용권을 국가(홍수조절, 관개용수권 등)와 한국수자원공사(생공용수 및 발전용수권 등)를 비교하여 정산한 결과에 의하면 국가 사용권 비율은 50%, 한국수자원공사 사용권 비율은 50%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2. 회계처리

- 수자원공사 출자금 지급 시 -

차) 출 자 금 (*) 1,000억원 대) 국 고 금 1,000억원

(*) 해당 출자금의 경우, 이는 댐 건설을 위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댐 건설과 별개의 자본거래로 보아야 함. 해당 출자금의 경우, 전체 출자금에 포함되어 배당, 감자 및 잔여재산 처분 등의 일반절차에 따름

- 토지관련 국가 부담금 지급 시 -

차) 선 급 금 1,000억원 대) 국 고 금 1,000억원

(*) 실제로 토지취득과 관련된 지출은 총 1,500억원으로서 500억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함. 다만, 댐 완공 시에 국가자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것임

- 건물관련 국가 부담금 지급 시 -

차) 선 금 금 2,000억원 대) 국 고 금 2,000억원

(*) 실제로 건물 건설과 관련된 지출은 총 3,500억원으로서 1,500억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함. 다만, 댐 완공 시에 국가자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것임

- 댐 완공 시 -

차) 토 지^(*) 1,500억원 대) 선 금 금 3,000억원
 건물 물^(*) 3,500억원 댐 사 용 수 익 권 2,500억원
 출 자 금^(**) 500억원

(*) 자산 - 사회기반시설 - 댐의 하부계정임

(**) 추가 출자금에 대한 계산 근거는 다음과 같음

과목	금액	계산내역
투자금액	3,000억원	토지(1,000억원) + 건물(2,000억원)
사용권	2,500억원	총투자비(5,000억원)*국가사용권비율(50%)
차이금액	500억원	해당차이금액은 현물출자

- 사용수익권 상각 시 -

차) 댐 사 용 수 익 권^(*) 50억원 대) 정 부 외 자 산 수 증 50억원

(*) 사용수익기간은 50년으로 정액 상각함

※ 상기 사회기반시설은 관리·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당시의 용역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감가 상각비를 인식하지 아니함

Q118 사용수익권의 재무제표 표시

질의내용(1)

국가회계에서 사용수익권은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되나요?

질의내용(2)

사용수익권을 토지, 건물, 구축물로 배분해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27에 따라 사용수익권은 관련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합니다.
- ▶ 현 계정과목 체계에 따라 사용수익권은 실질에 맞게 토지, 건물, 구축물로 안분하여 회계 처리 해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27. (사용수익권) 국가 이외의 자에게 부여하는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사용수익권과 동일하게 평가하며, 관련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다만, 기부채납 당시 사용수익권 교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국가가 일정 기간 사용 후 기존 국가 보유 자산의 무상사용 허가와 동일한 절차로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사용수익권”을 인식하지 않는다.

<계정과목 해설서>

VIII. 일반유형자산

2. 세부계정과목 설명(사용수익권 부분만 발췌)

중분류(II)	회계과목(III)	관리과목(IV)	세부관리과목(V)	
일반 유형자산	토지사용수익권	-	-	
	건물사용수익권	-	-	
	구축물사용수익권	-	-	
	기계장치사용수익권	이동성기계장치사용수익권	-	-
		고정성기계장치사용수익권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사용수익권	전기통신기기사용수익권	-	-
		사무용기기사용수익권		
		사무용집기사용수익권		
		운반건설기계및차량 사용수익권		
	기타일반유형자산 사용수익권	선박및항공기사용수익권	-	-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 사용수익권				

Q119 국가어항 관련 사용수익권 인식 및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국가어항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 ▶ 국가어항의 사용수익권은 국가어항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이때 어촌·어항법 제29조의 어항시설관리운영권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사용수익권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한편 국가가 일정 기간 사용 후 기존 국가 보유 자산의 무상사용 허가와 동일한 절차로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사용수익권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27. (사용수익권) 국가 이외의 자에게 부여하는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사용수익권과 동일하게 평가하며, 관련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다만, 기부채납 당시 사용수익권 교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국가가 일정 기간 사용 후 기존 국가 보유 자산의 무상사용 허가와 동일한 절차로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사용수익권”을 인식하지 않는다.

〈어촌·어항법〉

제29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지정권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이를 유지·관리하고, 해당 어항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이라 한다)를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6. 감가상각

Q120 치안유지자산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

질의내용(1)

치안유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기존 전비품과 일반유형자산 중 어떤 항목과 동일하게 수행해야 하나요?

질의내용(2)

부속품만 교체하면 무한정 쓸 수 있는 치안유지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을 전비품을 준용해 재고법 등을 사용해도 되나요?

질의내용(3)

치안유지자산의 경우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가요? 만약 감가상각 대상이라면 내용연수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 ▶ ‘치안유지자산’은 ‘전비품’이 아닌 ‘기타일반유형자산’으로 구분되며 ‘기타일반유형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가 정액법과 중대하게 다를 경우에는 다른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의 감소, 주기적인 대규모 수선,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내용연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29. (감가상각방법)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과 중대하게 다를 경우에는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감가상각에 따른 자산 감소분은 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에 가산하여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33. (내용연수) 내용연수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으로서 자산이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말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의 감소, 주기적인 대규모 수선,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내용연수를 정한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에 해당되어 사용수익권이 설정된 자산의 경우, 위의 방법으로 정한 내용연수와 사용수익기간 중 긴 것을 내용연수로 한다.

Q121 집기 비품의 내용연수

질 의 내 용

대강당에 세워놓을 병풍을 취득하여 집기·비품·차량운반구로 분류하였는데, 내용연수가 “0”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용연수가 “0”이 맞나요? (정부미술품에는 해당되지 않음)

▶ 집기비품의 내용연수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35에 따라 물품 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정해진 내용연수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35. (집기·비품·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 (1) 일반유형자산인 집기·비품·차량운반구에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물품의 내용연수를 합리적인 내용연수로 본다. 다만, 조달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물품의 내용연수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물품관리법〉

제16조의2(물품의 내용연수)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관서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

Q122 자산의 잔존가액 결정

질의내용(1)

자산 잔존가액의 입력기준은 무엇인가요?

질의내용(2)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은 모두 1천원으로 설정해야 하나요?

▶ 잔존가액이란 자산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 하에 자산의 처분 시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자산 취득 시점에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사용완료 후의 잔존가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존가액을 “0”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잔존가액이 “0”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 완료 후 자산의 처분 시까지 1천원을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38. (잔존가액의 결정) 잔존가액이란 자산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 하에 자산의 처분 시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잔존가액은 자산 취득시점에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완료 후의 잔존가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존가액을 “0”으로 할 수 있다.
39. (상각완료자산의 관리)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이 완료되는 마지막 연도에는 잔존가액을 제외한 장부가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고 잔존가액을 처분시점까지의 자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문단38에 따라 잔존가액이 “0”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완료 후 자산의 처분시까지 1천원을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Q123 잔존가액이 0인 경우 오류인지 여부

질 의 내 용

현재 자산대장의 잔존가액이 “0”원으로 입력되어 있으면 오류인가요? 또한 내용연수 경과자산의 대장금액은 “0”원이 되어야 하나요?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38에 따라 일반 유형자산의 사용완료 후의 잔존가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존가액을 “0”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잔존가액이 “0”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 완료 후 자산의 처분 시까지 1천원을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 38. (잔존가액의 결정) 잔존가액이란 자산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 하에 자산의 처분 시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잔존가액은 자산 취득시점에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완료 후의 잔존가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존가액을 “0”으로 할 수 있다.
- 39. (상각완료자산의 관리)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이 완료되는 마지막 연도에는 잔존가액을 제외한 장부가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고 잔존가액을 처분시점까지의 자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문단38에 따라 잔존가액이 “0”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완료 후 자산의 처분시까지 1천원을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Q124 감가상각 미수행자산에 대한 전기누적효과 반영 방법

질 의 내 용

전기까지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미수행 하였고 당기에 최초로 감가상각을 계상할 경우, 전기누적효과는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또한 전기 재무제표는 재작성해야 하나요?

- ▶ 전기누적효과가 중대한 경우에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관련 효과를 전기 순자산 변동표상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하고, 중대하지 않은 경우 재정운영표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8.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소급하여 재작성하며, 전기오류수정 효과를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상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한다.
 - (1) 오류가 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해당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 (2) 오류가 전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기오류수정효과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 금액을 재작성한다.
9. (중대하지 않은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상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반영한다. 다만,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상태표 또는 순자산변동표에 직접 반영한다.

Q125 전비품 중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오류인지 여부

질 의 내 용

전비품으로 계상한 총기와 포에서는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였고, 탄약에서는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오류인가요?

▶ 전비품에 해당하는 탄약을 재고법을 통해 감가상각을 수행하기로 한 경우 취득은 완료 되었으나 사용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31. (전비품 등의 감가상각) 전비품 등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예를 들어, 전비품 중 모동장비 및 비소모성 물품 등에 대하여는 재고법 등 국방부장관이 정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실무해설13. (☞ 관련문단 31) 재고법이란 매각·폐기되는 자산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며, 매 결산 시에 별도의 감가상각 인식은 하지 않는 방법을 말한다.

Q126 과거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 변경 여부

질 의 내 용

전기에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내용연수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당기부터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로 바뀌어야 하나요?

- ▶ 과거에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합리적인 내용연수 적용이 원칙이나 결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내용연수 준용)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본적 지출 또는 진부화 등의 사유로 인해 과거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가 증감될 경우, 해당 기관에서 잔존내용연수를 재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37. (내용연수의 수정)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내용연수가 자본적 지출 또는 진부화 등의 사유로 인해 증감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잔존내용연수를 재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자본적 지출로 인해 증가된 내용연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가된 내용연수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감가상각한다.

Q127 상각완료자산의 무상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무상관리전환, 무상양여에 관한 회계처리 중에 정부내자산기부, 정부외자산기부로 처리 되는 1000원이 존재합니다. 해당 계정과목이 생성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의 경우 자산이 이관 또는 처분이 될 때까지 1천원을 비망가액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산의 처분시점에 해당 비망가액이 상계되면서 ‘정부내자산기부’ 또는 ‘정부외자산기부’로 처리됩니다.
- 무상관리전환의 경우에는 ‘정부내자산기부’로 회계처리 되며, 무상양여의 경우에는 ‘정부외자산기부’로 회계처리 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39. (상각완료자산의 관리)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이 완료되는 마지막 연도에는 잔존가액을 제외한 장부가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고 잔존가액을 처분시점까지의 자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문단38에 따라 잔존가액이 “0”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완료 후 자산의 처분시까지 1천원을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 23. (무상이전지출) “무상이전지출”이란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 국고금회계전출금, 정부내자산기부 등을 통한 순자산의 감소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6) 정부내자산기부: 국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국가회계실체 간 무상관리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계정과목 해설서〉

XVII. 기타비용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기타비용

(3) 정부외자산기부

국가회계실체가 민간 등에 반대급부 없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우에 정부외자산기부로 계상한다.

7. 재평가

Q128 국유재산에 해당하지 않은 자산의 재평가 수행 여부

질 의 내 용

국유재산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도 총괄청이 정한 주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회계 기준에 따라 재평가를 수행해야 하나요?

- ▶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는 자산의 경우 국유재산법을 적용 받지 않는 국가회계실체의 해당 자산도 동일한 재평가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재평가를 수행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47. (재평가 사유)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재평가한다.
(가)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자산
(나)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
(2)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전비품
(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아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개정하는 자산
(다) 집기·비품·차량운반구(선박및항공기는 제외한다), 기계장치(고정성기계장치는 제외한다), 기타일반유형자산(입목은 제외한다),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실무해설15. (☞ 관련문단 47. (1). (나))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는 자산의 경우 「국유재산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가회계실체의 해당 자산도 동일한 재평가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Q129 200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 수행 여부

질 의 내 용

2010년 중에 취득하여 2011회계연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을 이후 회계연도에 재평가할 필요가 있나요?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75에 따라 재평가기준일 2011년 1월 1일로 최초 재평가 시 200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자산을 제외한 이유는 최근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가 대체적 평가방법 보다는 신뢰성이 높고 공정가액에 더 가까울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 따라서 이후 회계연도에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47에 따라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 간에 중요한 차이가 발생한 자산이거나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인 경우 2011회계연도에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재평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47. (재평가 사유)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재평가한다.
- (가)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자산
 - (나)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
- (2)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전비품
 - (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아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개정하는 자산
 - (다) 집기·비품·차량운반구(선박및항공기는 제외한다), 기계장치(고정성기계장치는 제외한다), 기타일반유형자산(입목은 제외한다),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75. (2009년 1월 1일 이전 취득자산의 최초 재평가)「국가회계법」최초시행일(2009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중 재평가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은 재평가기준일을 2011년 1월 1일로 하여 최초 재평가한다. 이 때,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이익은 “적립금및잉여금”으로 처리한다.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Q130 내용연수 경과자산의 재평가 수행 여부

질 의 내 용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사용을 중지하고 철거 예정인 자산의 경우에도 자산재평가를 수행해야 하나요?

▶ 이미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잔존가액이 “0”인 철거예정자산은 재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처분 시까지 1천원을 자산가액으로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39. (상각완료자산의 관리)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이 완료되는 마지막 연도에는 잔존가액을 제외한 장부가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고 잔존가액을 처분시점까지의 자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문단38에 따라 잔존가액이 “0”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완료 후 자산의 처분시까지 1천원을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Q131 치안유지자산 및 미술품의 재평가 수행 여부

질의내용(1)

치안유지자산은 어떻게 재평가하나요?

질의내용(2)

미술품도 재평가 대상인가요?

- ▶ ‘치안유지자산’ 및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은 ‘기타일반유형자산’에 해당합니다. 임목을 제외한 ‘기타일반유형자산’은 재평가대상자산이 아니므로 재평가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47. (재평가 사유) (2)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집기·비품·차량운반구(선박및항공기는 제외한다), 기계장치(고정성기계장치는 제외한다), 기타일반유형자산(임목은 제외한다),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Q132 투자자산의 재평가 수행 여부

질의내용(1)

일반유형자산과 투자자산에 대하여 각각 재평가를 수행해야 하나요?

- ▶ 투자자산은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및 기타 투자자산 등을 말합니다.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47에 따라 재평가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 투자자산은 재평가 대상자산이 아니며 투자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질의내용(2)

기타투자자산도 재평가 대상인가요?

- ▶ '기타투자자산'은 투자자산 중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및 장기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산으로서 투자회원권, 파생상품자산, 신탁사업수익권 등을 말합니다.
- ▶ '기타투자자산'은 재평가대상자산이 아니므로 재평가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47. (재평가 사유)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재평가한다.
- (가)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자산
 - (나)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
- (2)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전비품
 - (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아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개정하는 자산
 - (다) 집기·비품·차량운반구(선박및항공기는 제외한다), 기계장치(고정성기계장치는 제외한다), 기타일반유형자산(입목은 제외한다),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

〈계정과목 해설서〉

VII. 기타투자자산

1. 기타투자자산 정의

투자자산 중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및 장기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산으로서 투자회원권, 파생상품자산, 신탁사업수익권 등을 말한다.

Q133 일반유형자산의 재평가 사유

질 의 내 용

일반유형자산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하지 않았어도 자산재평가를 했다면 문제가 되나요?

- ▶ 일반유형자산의 경우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만 재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다만,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의 경우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평가해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47. (재평가 사유)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재평가한다.
- (가)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자산
 - (나)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
- (2)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전비품
 - (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아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개정하는 자산
 - (다) 집기·비품·차량운반구(선박및항공기는 제외한다), 기계장치(고정성기계장치는 제외한다), 기타일반유형자산(입목은 제외한다),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실무해설15. (☞ 관련문단 47. (1). (나))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는 자산의 경우 「국유재산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가회계실체의 해당 자산도 동일한 재평가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Q134 일반유형자산의 재평가 방법

질 의 내 용

일반유형자산의 경우 어떻게 재평가를 수행해야 하나요?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47에 따라 자산이 재평가 대상인 경우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하면 재평가를 수행합니다. 재평가하는 자산의 금액은 재평가 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하나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재평가금액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47. (재평가 사유)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재평가한다.
- (가)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자산
 - (나)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
- (2)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전비품
 - (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아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개정하는 자산
 - (다) 집기·비품·차량운반구(선박및항공기는 제외한다), 기계장치(고정성기계장치는 제외한다), 기타일반유형자산(입목은 제외한다),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49. (재평가 사유 검토) 재평가 사유 검토는 매 보고기간 말에 수행하며,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중요한 차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별로 해당 자산이 포함된 자산분류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
52. (재평가금액의 측정) 최초 인식 이후 재평가하는 자산의 금액은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재평가기준일 전후 1년 이내를 평가시점으로 하는 공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시가격이나 상각후대체원가법 등 대체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재평가 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

Q135 자산별 재평가 수행일의 차이 가능 여부

질 의 내 용

기금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평가 수행일이 서로 달라도 문제가 없나요?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의 문단48과 문단50에 따라 재평가 사유가 발생한 보고기간 말일을 기준으로 개별자산 건별로 재평가 합니다.
-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재평가 사유 발생 연도가 다르다면 재평가 수행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 48. (재평가 단위) (1) 자산을 재평가할 때, 개별자산 건별로 분류하여 재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2) 2개 이상의 자산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자산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가를 적용하여 일괄 평가할 수 있다.
- (3) 여러 개별요소로 구성된 1개의 자산이 개별요소별로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나 분할 취득된 경우 그 부분은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분 평가된 자산의 평가액은 합산한다.
- 50. (재평가기준일)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기준일은 재평가 사유가 발생한 해당 보고기간 말로 한다.

Q136 자산 재평가 시 물가배수법의 적용방법

질의내용(1)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의 취득원가가 크거나 중요한 경우 물가배수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 ▶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취득 원가에 물가배수를 반영하는 물가배수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의내용(2)

물가배수법 적용 시 자본적 지출이 포함되지 않은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 ▶ 물가배수법은 최초 취득원가에 물가배수를 반영하여 재조달원가로 산정하는 방법이므로 자본적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3)

당기 자산재평가를 수행할 시 물가배수법을 이용할 경우 1월 1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12월 31일 기준인가요? 그리고 해당 물가배수표를 받아볼 수는 없나요?

- ▶ 자산재평가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입니다. 물가배수표는 매년 국유재산 총괄청이 제공 하며, dBrain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으므로 재평가를 수행하시면 12월 31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53. (상각후대체원가법) (2) 재조달원가 산정방법 중 물가배수법이란 최초 취득원가에 물가배수를 반영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Q137 자산 재평가 시 공정가액의 범위

질 의 내 용

현재 건물 금액이 시세에 비해 너무 작다고 판단되어 건물에 대해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을 경우 그 금액을 자산재평가 금액으로 볼 수 있나요?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3에 따르면 공정가액의 범위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평가한 가액이 포함되므로 감정평가금액을 자산재평가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공정가액”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적인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 가격을 말한다. 공정가액은 시장가격으로 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 자산의 현금거래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현가능가액이나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평가한 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 52. (재평가금액의 측정) 최초 인식 이후 재평가하는 자산의 금액은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재평가기준일 전후 1년 이내를 평가시점으로 하는 공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시가격이나 상각후대체원가법 등 대체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재평가 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

Q138 매각 중인 토지의 재평가 여부 및 재평가 금액 측정

질 의 내 용

매각 중인 토지(매각가액 확인, 소유권 이전 전)에 대하여 재평가를 해야 하나요? 또한, 재평가해야 하는 경우 재평가 금액은 매각가액과 공시지가 중 어느 금액으로 하나요?

- ▶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하거나,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에 해당하여 재평가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라면 해당 토지는 공정가액으로 재평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공정가액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적인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으로 시장가격을 말하므로, 확인된 토지의 매각가액으로 재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공정가액”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적인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 가격을 말한다. 공정가액은 시장가격으로 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 자산의 현금거래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현가능가액이나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평가한 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 47. (재평가 사유)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재평가한다.
 - (가)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자산
 - (나)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
- 52. (재평가금액의 측정) 최초 인식 이후 재평가하는 자산의 금액은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재평가기준일 전후 1년 이내를 평가시점으로 하는 공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시가격이나 상각후대체원가법 등 대체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재평가 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

실무해설19. (☞ 관련문단 67)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처분은 일반적으로 자산대장에서 해당 자산을 제거할 때 회계처리한다.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처분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취득원가의 측정(문단9 ~ 문단27)을 참고한다.

Q139 재평가 수행을 위해 토지 공시지가를 관리해야 하는 이유

질 의 내 용

당기는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정한 토지 재평가 일정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공시지가를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 토지 재평가는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 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경우 뿐만 아니라,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경우에도 수행해야 합니다.
- 따라서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의 중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관리해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 47. (재평가 사유)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재평가한다.
 - (가)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자산
 - (나)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
- 52. (재평가금액의 측정) 최초 인식 이후 재평가하는 자산의 금액은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재평가기준일 전후 1년 이내를 평가시점으로 하는 공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시가격이나 상각후대체원가법 등 대체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재평가 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
- 54. (토지의 대체적 평가방법) 토지의 대체적 평가는 다음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 (1) 재평가기준일 현재 결정·공시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이하 “공시지가”라 한다)가 있을 경우에는 공시지를 재평가금액으로 한다.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를 말한다.

Q140 재평가이익이 있는 자산의 분류 변경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구축물(취득원가: 90원, 장부가액 100원, 재평가이익 10원)로 계상된 자산을 물품(집기·비품·차량운반구)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에 인식된 재평가이익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 ▶ 선박·항공기를 제외한 집기·비품·차량운반구의 경우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 처리지침 문단47에 따른 재평가대상이 아니므로 기존에 인식한 자산 증가와 재평가이익 회계처리를 취소해야 합니다.

(차변)	집기·비품·차량운반구	90	(대변)	구	축	물	100
	자 산 재 평 가 이 익	10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47. (재평가 사유)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재평가한다.
- (가)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자산
 - (나)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
- (2)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전비품
 - (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아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개정하는 자산
 - (다) 집기·비품·차량운반구(선박및항공기는 제외한다), 기계장치(고정성기계장치는 제외한다), 기타일반유형자산(입목은 제외한다),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Q141 자산 재평가 수행 주기

질 의 내 용

자산 재평가는 매년 수행해야 하나요?

- ▶ 재평가 사유 검토는 매 보고기간 말에 수행하되, 재평가 사유가 존재하는 자산의 경우 재평가를 수행합니다.
- 자산 재평가는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자산 또는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에 대해서 재평가를 수행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47. (재평가 사유)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재평가한다.
- (가)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자산
 - (나)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
- (2)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전비품
 - (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아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개정하는 자산
 - (다) 집기·비품·차량운반구(선박및항공기는 제외한다), 기계장치(고정성기계장치는 제외한다), 기타일반유형자산(입목은 제외한다),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49. (재평가 사유 검토) 재평가 사유 검토는 매 보고기간 말에 수행하며,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중요한 차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별로 해당 자산이 포함된 자산분류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자산 분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일반유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입목, 기계장치, 차량운반구(선박및항공기)
 - (2) 사회기반시설: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

Q142 당해 연도 취득 토지의 재평가 여부

질 의 내 용

당해 연도 7월에 취득한 토지 장부가액이 회계연도말 공시지가 보다 낮으며, 그 차이금액이 장부금액의 30%를 초과하면서 1억원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당해 연도에 취득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재평가를 수행해야 하나요?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52에 따라 재평가금액은 재평가기준일 전후 1년 이내를 평가시점으로 하는 공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재평가 할 수 있으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시가격으로 재평가 금액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 ▶ 당해 연도 토지의 거래가액은 재평가기준일 전후 1년 이내를 평가시점으로 하는 공정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 47. (재평가 사유)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재평가한다.
 - (가)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자산
 - (나)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
- 52. (재평가금액의 측정) 최초 인식 이후 재평가하는 자산의 금액은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재평가기준일 전후 1년 이내를 평가시점으로 하는 공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시가격이나 상각후대체원가법 등 대체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재평가 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

Q143 자산 재평가 단위

질 의 내 용

자산을 재평가할 때 개별자산 건별이 아닌 자산 종류별로 그룹화하여 재평가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요?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48에 따라 자산 재평가는 개별자산 건별로 분류하여 재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48. (재평가 단위) (1) 자산을 재평가할 때, 개별자산 건별로 분류하여 재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2) 2개 이상의 자산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자산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가를 적용하여 일괄 평가할 수 있다.
 (3) 여러 개별요소로 구성된 1개의 자산이 개별요소별로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나 분할 취득된 경우 그 부분은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분 평가된 자산의 평가액은 합산한다.

Q144 토지의 용도변경으로 가치 상승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토지가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자산가치 상승분 62억)되었습니다. 이를 국유재산 대장에서 기타증감(임야:기타(감), 대지:기타(증))으로 처리하여 차변과 대변에 각각 전기오류 수정손실(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타당한 회계처리인가요?

▶ 토지가 임야에서 대지로 용도 변경된 경우 회계처리는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중에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 다만,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발생한 자산가치 상승분(62억)은 기말 자산재평가를 통해 토지 장부가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145 재평가 시 입목의 평가방법

질 의 내 용

자산재평가 시 입목의 가격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입목의 가격평가는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고시가격, 물가정보지 등 신뢰성 있는 가액을 사용하여 재평가해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 52. (재평가금액의 측정) 최초 인식 이후 재평가하는 자산의 금액은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재평가기준일 전후 1년 이내를 평가시점으로 하는 공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시가격이나 상각후대체원가법 등 대체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재평가 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
- 58. (입목의 대체적 평가방법) 입목은 재평가기준일 현재 결정·공시된 시가표준액을 재평가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 고시가격, 물가정보지 등 신뢰성 있는 가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Q146 해외에 소재한 자산의 재평가 방법

질 의 내 용

해외 소재한 자산이 재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평가 금액은 어떻게 측정해야 하나요?

- ▶ 해외에 소재한 자산도 국내에 소재한 자산과 마찬가지로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재평가기준일 전후 1년 이내를 평가시점으로 하는 공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재평가금액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52. (재평가금액의 측정) 최초 인식 이후 재평가하는 자산의 금액은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재평가기준일 전후 1년 이내를 평가시점으로 하는 공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시가격이나 상각후대체원가법 등 대체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재평가 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

Q147 재평가 대상 해외 부동산의 기말 환산 시 적용할 환율

질 의 내 용

재평가 대상 해외 부동산의 외화 환산 시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 ▶ 재평가 대상 해외 부동산은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므로 국가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라 공정가액이 측정된 날의 기준환율로 평가합니다.
- 참고로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당시의 기준 환율로 평가합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①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8.3.5.>

1.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

2.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경우: 공정가액이 측정된 날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환율변동효과는 외화평가손실 또는 외화평가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재정 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개정 2018.3.5.>

④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에서 발생한 손익을 조정항목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해당 조정항목에 반영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해당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신설 2018.3.5.>

⑤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과 부채의 금액이 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 화폐액으로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경우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다만, 화폐성과 비화폐성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과 부채의 보유 목적이나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18.3.5.>

⑥ 중요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내용, 평가기준 및 평가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8.3.5.>

Q148 재평가로 자산 증가 시 회계처리 방법

질 의 내 용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경우 그 증가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자산의 장부가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자산재평가이익’으로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한 후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 폐기 또는 처분될 때 관련손익과 상계처리해야 합니다.
-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재정운영순원가로 반영한 ‘자산재평가손실’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자산재평가손실환입’으로 우선 인식 한 후 나머지를 ‘재평가이익’으로 인식합니다.
- 또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경우 재평가로 인한 자산증가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자산재평가이익’과 상계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60. (재평가손익의 인식 및 측정) (1) 자산의 장부가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순자산조정인 “자산재평가이익”으로 인식하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재정운영순원가로 반영한 “자산재평가손실”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자산재평가손실환입”으로 우선 인식한 후 나머지를 “자산재평가이익”으로 인식한다.
61. (자산재평가이익의 상계) 자산의 재평가로 인식한 순자산조정인 “자산재평가이익”은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 처분·폐기될 때 관련손익과 상계처리한다.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경우 재평가로 인한 자산증가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자산재평가이익”과 상계한다. 처분 또는 폐기시 인식한 처분 및 폐기손익은 이전에 인식한 “자산재평가이익”과 상계한다.

Q149 재평가이익이 있는 자산의 감가상각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재평가된 자산의 감가상각 시 재평가이익은 어떤 방법으로 상계처리 해야 하나요?

▶ 재평가 이후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중 취득가액과 ‘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으로 인식된 부분의 비율로 안분하여 ‘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과 상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61. (자산재평가이익의 상계) 자산의 재평가로 인식한 순자산조정인 “자산재평가이익”은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 처분·폐기될 때 관련손익과 상계처리한다.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경우 재평가로 인한 자산증가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자산재평가이익”과 상계한다. 처분 또는 폐기시 인식한 처분 및 폐기손익은 이전에 인식한 “자산재평가이익”과 상계한다.

Q150 재평가이익이 있는 자산의 처분 시 회계처리

질의내용(1)

매각금액 1,000, 자산의 장부가액 700, 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 200이 계상된 재평가된 자산을 처분하였을 때 인식해야 할 처분손익은 얼마인가요?

질의내용(2)

재평가이익이 발생한 자산을 국가회계실체에 유상관리전환하는 경우 재평가이익은 어떻게 회계처리 하나요?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61에 따라 순자산조정인 ‘자산재평가 이익’은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 처분·폐기될 때 관련손익과 상계 처리하여야 합니다.
- 자산의 매각, 유상관리전환의 경우 자산의 처분에 해당되므로 재평가이익은 처분손익과 상계하며, 인식해야할 처분손익은 500입니다.

〈재평가 자산 매각 시 회계처리〉

차) 현금	1,000	대) 자산	700
재평가이익	200	자산처분이익*	500

* 처분이익 500 = 1,000-(700-200)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61. (자산재평가이익의 상계) 자산의 재평가로 인식한 순자산조정인 “자산재평가이익”은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 처분·폐기될 때 관련손익과 상계처리한다.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경우 재평가로 인한 자산증가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자산재평가이익”과 상계한다. 처분 또는 폐기시 인식한 처분 및 폐기손익은 이전에 인식한 “자산재평가이익”과 상계한다.
67. (처분대가의 측정) 처분의 종류에는 매각, 교환, 양여, 유상관리전환, 현물출자, 멸실, 신탁, 기타 처분이 있으며,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처분대가는 제공받는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Q151 재평가이익이 발생한 자산의 교환, 현물출자 시 회계처리

질의내용(1)

재평가이익이 발생한 자산을 민간과 교환하는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 하나요?

질의내용(2)

재평가이익이 발생한 자산을 토지를 당기 중 처분하고 신탁사업수익권을 인식(장부가액법, 상대 민간)한 경우 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질의내용(3)

재평가이익이 발생한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 하나요?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61에 따라 순자산조정인 ‘자산재평가 이익’은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 처분·폐기될 때 관련손익과 상계 처리하여야 합니다.
 - 자산의 교환, 현물출자의 경우 자산의 처분에 해당되므로 재평가이익은 처분손익과 상계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61. (자산재평가이익의 상계) 자산의 재평가로 인식한 순자산조정인 “자산재평가이익”은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 처분·폐기될 때 관련손익과 상계처리한다.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경우 재평가로 인한 자산증가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자산재평가이익”과 상계한다. 처분 또는 폐기시 인식한 처분 및 폐기손익은 이전에 인식한 “자산재평가이익”과 상계한다.
67. (처분대가의 측정) 처분의 종류에는 매각, 교환, 양여, 유상관리전환, 현물출자, 멸실, 신탁, 기타 처분이 있으며,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처분대가는 제공받는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Q152 재평가 이익이 있는 자산 용도폐지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재평가이익이 발생한 자산을 용도폐지 하는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 ▶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무상관리전환과 동일하게 용도폐지 후 자산을 인수하는 총괄청에서 관련 재평가이익을 승계해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61. (자산재평가이익의 상계) 자산의 재평가로 인식한 순자산조정인 “자산재평가이익”은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 처분·폐기될 때 관련손익과 상계처리한다.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경우 재평가로 인한 자산증가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자산재평가이익”과 상계한다. 처분 또는 폐기시 인식한 처분 및 폐기손익은 이전에 인식한 “자산재평가이익”과 상계한다.

Q153 재평가손실이 있는 자산의 처분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재평가손실이 발생한 자산 처분 시 재평가손실환입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 ▶ 재평가 손실이 발생한 자산 처분 시에는 ‘재평가손실환입’이 아닌 ‘자산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 ▶ ‘자산재평가손실환입’은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60에 따라 자산의 장부가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기존의 자산재평가손실 인식 금액을 환입할 때 발생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 60. (재평가손익의 인식 및 측정) (1) 자산의 장부가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순자산조정인 “자산재평가이익”으로 인식하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재정운영순원가로 반영한 “자산재평가손실”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자산재평가손실환입”으로 우선 인식한 후 나머지를 “자산재평가이익”으로 인식한다.
- 67. (처분대가의 측정) 처분의 종류에는 매각, 교환, 양여, 유상관리전환, 현물출자, 멸실, 신탁, 기타 처분이 있으며,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처분대가는 제공받는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 68. (처분시 회계처리) 문단67에 의한 처분대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자산처분이익”으로 반영하고, 처분대가가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한다.

Q154 재평가 이후 자산의 내용연수

질의내용(1)

재평가된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시 추정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인가요?

질의내용(2)

재평가로 인해 장부가액이 변동한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자산의 잔존내용연수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재평가된 자산의 감가상각 시 적용되는 추정내용연수는 재평가일로부터 자산이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며,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에 제시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 ▶ 재평가로 자산의 장부가액이 변동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잔존내용연수를 조정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62. (재평가 이후 감가상각)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금액을 재평가 시점의 잔존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8. 감액

Q155 건설중인건물에 대한 재해손실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건설중인건물에 대해 화재가 발생하여 건설중인건물 100억원 중 40억원이 멸실된 경우 재해손실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나요? 또한, 건설회사로부터 배상받는 금액이 추후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 ▶ 일반유형자산의 물리적인 손상에 따른 일부멸실에 해당하므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65에 따라 자산감액손실로 인식해야 하며, 건설회사 배상금은 추후 수취 시점에서 구상이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65. (감액손실의 인식) 감액사유 발생 시,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그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이 때, 보유한 자산의 일부멸실, 일부손망실의 경우 “자산감액손실”로 처리하나, 자산의 전액멸실, 전액손망실, 폐기의 경우에는 “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한다.

<계정과목 해설서>

VII. 기타수익

2. 세부계정과목 설명

㉠ 기타수익

(14) 구상이익

손해배상, 변상 혹은 배상으로 변제받는 금액이 장부가액(없는 경우에도 존재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만약, 구상채권, 대위변제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없으므로, 배상·변상으로 변제받는 금액 전체가 구상이 된다.

Q156 재평가이익이 있는 자산의 감액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을 인식하였던 자산이 손상된 경우 재평가손실과 감액손실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 재평가대상 자산에 대한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우선 자산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후에 물리적 손상 등에 의한 감액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64. (재평가와 감액판단의 순서) 문단47에 따른 재평가 사유가 발생한 자산을 문단63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재평가 후에 감액 여부를 판단한다.

문단제정근거14. (☞ 관련문단 64) 재평가대상 자산의 경우 '시장가치의 하락에 의한' 감액사유 발생 시 감액손실과 자산재평가손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적용순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손실을 인식하는 재평가대상 자산의 공정가액은 시장상황 및 기타 외부요소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자산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자산재평가를 여부를 판단한 후에 물리적인 손상 등에 의한 감액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Q157 자산 폐기 시 회계처리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자산 폐기 시 자산처분손실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산폐기손실로 해야 하나요?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65에 따라 자산의 전액멸실, 전액손망실, 폐기의 경우 '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65. (감액손실의 인식) 감액사유 발생 시,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그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이 때, 보유한 자산의 일부멸실, 일부손망실의 경우 "자산감액손실"로 처리하나, 자산의 전액멸실, 전액손망실, 폐기의 경우에는 "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한다.

9. 제거

Q158 현물출자로 인한 유형자산 처분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부동산을 SPC에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수령하는 경우 제공하는 부동산의 장부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공정가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67에 따라 현물출자는 처분의 한 종류이므로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공정가액의 차이는 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67. (처분대가의 측정) 처분의 종류에는 매각, 교환, 양여, 유상관리전환, 현물출자, 멸실, 신탁, 기타 처분이 있으며,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처분대가는 제공받는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다만, 교환의 경우에는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처분대가로 하되,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Q159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한 자산매각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하여 국유재산 매각 시 징수결의 시점에 국유재산관리기금과 처분 회계실체는 각각 어떠한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하나요?

▶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차) 미수금 XXX 대) 기타자원조달 XXX

〈처분 회계실체〉

차) 기타자원이전 XXX 대) 선수금 XXX

Q160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하지 않은 유상관리전환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국가회계실체가 보유하던 국유자산을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하지 않고 다른 국가회계 실체에 유상관리전환 시 어떻게 회계처리 하나요?

▶ 국유재산 유상관리전환 시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매각과 동일한 회계처리 수행됩니다.

10. 공시

Q161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의 공시사항

질 의 내 용

감가상각대체하는 사회기반시설의 필수보충정보의 작성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72에 따라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분류기준의 충족 여부
 -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의 종류 및 규모(또는 수량)
 - 상태평가, 상태평가기준 및 작성기관, 상태평가기준의 평가 등급
 - 최소유지등급
 - 최근 3개년치의 상태평가결과
 - 최근 5개년의 추정된 수선유지비와 실제 지출된 수선유지비의 비교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72. (필수보충정보)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로 분류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 (가)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분류기준의 충족여부
 - (나)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의 종류 및 규모(또는 수량)
 - (다) 상태평가, 상태평가기준 및 작성기관, 상태평가기준의 평가등급
 - (라) 최소유지등급
 - (마) 최근 3개년치의 상태평가결과
 - (바) 최근 5개년의 추정된 수선유지비와 실제 지출된 수선유지비의 비교

제5장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1. 인식

Q162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의 자산 인식 여부

질의내용(1)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질의내용(2)

홈페이지 구축에 10억원이 소요되었으나, 일선관서에서는 비용처리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게 맞나요?

- ▶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문단4에 따라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 홈페이지 구축이 이러한 인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4. (인식조건) (1) 무형자산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한다.
- (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2) 다만, 소액자산 또는 소모성 물품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Q163 시스템 개발 관련 연구개발용역비 무형자산 인식 여부

질 의 내 용

다음과 같이 외부업체를 통해 업무관련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소요된 용역비는 어떻게 회계처리 되나요?

- (1)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용할 시스템
- (2) 형사사법통계시스템 구축
- (3) 정보화시스템 구축

- ▶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문단4에 따라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 ▶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용할 시스템, 형사사법통계시스템, 정보화시스템이 이러한 인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 4. (인식조건) (1) 무형자산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한다.
 - (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2) 다만, 소액자산 또는 소모성 물품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계정과목 해설서>

- X. 무형자산
 - 2. 세부계정과목 설명
 - ③ 소프트웨어
 - (1) 내부개발소프트웨어
외부업체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축한 전산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 (2) 외부구입소프트웨어
외부에서 구입한 전산 패키지 등을 말한다.

Q164 외부 용역으로 구축한 소프트웨어의 인식 및 내용연수의 측정

질의내용(1)

○○○위원회에서 외부에 용역을 의뢰하여 구축한 전산시스템(업무포탈시스템)의 회계 처리 및 내용연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질의내용(2)

외부업체 용역을 통해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였습니다. 무형자산으로 계상이 가능한가요?

- ▶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문단4에 따라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 ▶ 외부업체에 대가를 지불하고 구축한 소프트웨어가 이러한 인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무형자산의 '소프트웨어' 중 '내부개발소프트웨어'로 인식합니다.
- ▶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문단8에 따라 법적권한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합리적인 내용연수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별 관리상태와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일정 범위(±25%)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4. (인식조건) (1) 무형자산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한다.
- (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2) 다만, 소액자산 또는 소모성 물품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내용연수) (1)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적권한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합리적인 내용연수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2) 다만,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별 관리상태와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일정 범위(±25%)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기준내용연수〉

종류		기준내용연수
광업권		20
산업재산권	상표권	5
	저작권	10
	특허권	10
	실용신안권	5
기타무형자산		5
소프트웨어		5

〈계정과목 해설서〉

- X. 무형자산
2. 세부계정과목 설명
- ③ 소프트웨어
- (1) 내부개발소프트웨어
- 외부업체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축한 전산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Q165 자체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취득원가 및 계정과목

질의내용(1)

사업부서의 연구용역개발로 추진된 사업 중 내부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취득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질의내용(2)

개발 진행 중인 소프트웨어에 사용되는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해야 맞나요?

- ▶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문단4에 따라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 ▶ 외부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는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적용사례2의 인식요건을 만족할 때 '기타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4. (인식조건) (1) 무형자산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한다.
 - (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2) 다만, 소액자산 또는 소모성 물품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5. (취득원가의 측정)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금융비용은 당기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적용사례2. (☞ 관련문단 5) 산업재산권 취득사례

- (*) 연구개발을 위한 지출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기타무형자산)으로 인식함
- (가)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 (나)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가 있다.
- (다)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 (라)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마)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 (바)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계정과목 해설서〉

X. 무형자산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③ 소프트웨어

(1) 내부개발소프트웨어

외부업체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축한 전산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2) 외부구입소프트웨어

외부에서 구입한 전산 패키지 등을 말한다.

Q166 특허권 취득원가의 범위

질의내용(1)

특허권의 취득원가에 특허권과 관련된 기술개발비(R&D비용)도 포함되나요?

질의내용(2)

OO부 일반회계에서 당기 이전에 특허권과 관련되어 지출된 연구용역비를 당기 중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처리가 타당한가요?

차) 산업재산권 3억 대) 기타순자산증감 3억

질의내용(3)

내부적으로 개발된 기록물 보존기술의 특허 결정 전 까지 발생한 금액은 전액 비용처리하고 특허를 위해 발생한 수수료만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개발된 10개의 기술 중 1-2개만 특허권을 받음)

질의내용(4)

특허권 취득원가로 계상되는 금액은 관련 지출 중 어떤 부분만 해당되나요?

- ▶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문단4에 따라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 ▶ 특허권 취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금액만을 특허권의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하며 기존에 자산화 한 '기타무형자산'의 미상각잔액을 특허권 취득원가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4. (인식조건) (1) 무형자산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한다.
- (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2) 다만, 소액자산 또는 소모성 물품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적용사례2. (☞ 관련문단 5) 산업재산권 취득사례

- (*) 연구개발을 위한 지출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기타무형자산)으로 인식함
- (가)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 (나)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가 있다.
 - (다)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 (라)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마)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 (바)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Q167 보안프로그램 라이선스 취득 시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보안프로그램(V3) 라이선스 취득 건에 대해서 기타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 ▶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문단 4에 따라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 ▶ 보안프로그램 라이선스가 위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며 외부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인 경우 무형자산의 '소프트웨어' 중 '외부구입소프트웨어'로 회계처리합니다.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4. (인식조건) (1) 무형자산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한다.
 - (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2) 다만, 소액자산 또는 소모성 물품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계정과목 해설서>

- X. 무형자산
 2. 세부계정과목 설명
 - ③ 소프트웨어
 - (1) 내부개발소프트웨어
외부업체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축한 전산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 (2) 외부구입소프트웨어
외부에서 구입한 전산 패키지 등을 말한다.

Q168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사료품질 안전성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였는데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구개발용역비와 시험연구비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 해야 하나요?

- ▶ 연구개발용역비는 외부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자체 개발로 지출된 비용의 경우 시험연구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시험연구비는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정비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일용 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운영수당,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의 비용을 말하며, 연구개발용역비는 국가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된 금액을 말합니다.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 4. (인식조건) (1) 무형자산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한다.
 - (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적용사례2. (☞ 관련문단 5) 산업재산권 취득사례

- (*) 연구개발을 위한 지출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기타무형자산)으로 인식함
- (가)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 (나)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가 있다.
- (다)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 (라)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마)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 (바)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계정과목 해설서〉

Ⅳ.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외주용역비

2. 세부계정과목 설명

㉠ 연구개발비

(1) 시험연구비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정비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일용 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운영수당,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3) 연구개발용역비

국가사업의 지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일반연구개발용역비는 국가로부터 지식기반 업무에 대한 것(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 정책연구개발용역비는 각 부처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관련 비용을 말한다.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Q169 감리비용의 취득부대비용 해당 여부

질 의 내 용

내부개발소프트웨어 취득 시 발생한 감리비용은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나요?

▶ 감리비용이 내부개발소프트웨어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5. (취득원가의 측정)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금융비용은 당기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실무해설4. (☞ 관련문단 5)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예시는 다음과 같다.

- (1)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재료비, 용역비 등
- (2)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3) 취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Q170

홈페이지 웹호환성 인증마크 획득 및 디자인 개선에 지출된 금액의 회계처리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홈페이지 웹호환성 인증마크 획득 및 디자인 개선에 지출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무형자산으로 등재해야 하나요?

- ▶ 홈페이지 웹호환성 인증마크 획득 및 디자인 개선에 지출된 금액이 본 자산(소프트웨어 등)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라면 자본적 지출로서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하고, 이 외의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적 지출로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6.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서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이 외의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적 지출로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Q171 공공기관으로부터 무형자산 수증 시 계정과목 선택

질 의 내 용

공공기관으로부터 인터넷pc자료 저장방지시스템을 무상양도 받았습니다. 정부내자산 수증과 정부외자산수증 중 어느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가회계실체가 아닌 공공기관이므로 ‘정부외자산수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비교환수의 회계처리지침>

12. (무상이전수입) “무상이전수입”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금, 정부 내자산수증, 정부외자산수증, 정부외기부금, 농특세이전수입 및 주세이전수입 등을 통한 순자산의 증가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5) 정부외자산수증: 국가회계실체 외의 자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 받는 수익

<계정과목 해설서>

II. 재원의 조달

2. 세부계정과목 설명

㉔ 무상이전수입

(5) 정부외자산수증

정부 이외의 자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 받는 경우 발생한다. 정부외기부금은 현금성자산 또는 금융자산을 수증 받는 경우인데 반해 정부외자산수증의 경우 비금융자산을 수증 받는 경우임에 유의한다.

2. 상각

Q172 상각완료된 무형자산의 관리

질 의 내 용

당기말 현재 소프트웨어 중 상각이 완료된(내용연수 경과) 자산의 장부금액은 0원이지만 사용하는 경우 비망관리를 위해서 장부금액을 1,000원으로 수정해야하나요?

- ▶ 잔존가액이 “0”인 자산의 경우, 상각이 완료되었지만 실제로 보유 중이거나 사용된다면 자산의 처분 시까지 1천원을 자산가액으로 합니다.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10. (상각완료자산의 관리) 무형자산의 상각이 완료되는 마지막 연도에는 잔존가액을 제외한 장부가액을 “무형자산상각비”로 인식하고 잔존가액을 처분시점까지의 자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잔존가액이 “0”인 자산의 경우, 상각이 완료되었지만 실제로 보유 중이거나 사용된다면 자산의 처분시까지 1천원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Q173 자본적 지출로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질의내용(1)

무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시스템업그레이드)로 인하여 증가한 금액은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나요?

▶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인한 무형자산의 증가는 본자산인 무형자산의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본적 지출이 중요한 경우 무형자산 회계처리 지침 문단8.(3)에 의해 각 중앙광서의 장이 잔존내용연수를 재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2)

20X1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국유재산으로 관리하였고 20X2년, 20X3년에 자본적 지출에 의해 각각 고도화를 추진한 경우, 소프트웨어 자본적 지출 증가에 따른 추정내용연수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문단8에 따라 중요한 자본적 지출 또는 진부화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검토하여 잔존내용연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 6.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서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이 외의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적 지출로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 8. (내용연수)
 -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하여 중요한 자본적 지출 또는 진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잔존내용연수를 재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다.

Q174 자본적 지출 관련하여 감가상각 시 월/연 단위 상각 여부

질 의 내 용

무형자산의 자본적지출이 기중에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 시 월 단위, 연 단위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 무형자산 상각 시 기중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은 모두 기초에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므로 자본적 지출의 월 단위 상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6. (☞ 관련문단 8. (3)) 기중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여도 월할 상각하지 않는다. 이는 기중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여도 기초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고 상각을 진행한다는 의미이다. 기중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을 고려하여 상각비를 계산할 경우 계산이 복잡해지는 것에 비해 그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아 기중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은 모두 기초에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여 상각한다.

제6장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

1. 용어의 정의

Q175 병원 내 의약품 구매비용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병원(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약품의 경우 병원 내 재고자산에 해당하나요?

▶ 병원(특별회계)에서 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위해 기말에 회계실체가 보유하는 의약품/의료 소모품은 재고자산에 해당합니다.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재고자산”이란 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생산과정 또는 용역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으로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축산물, 미착품 및 기타의저장품이 있다.

실무해설1. (☞ 관련문단 3. (1)) 재고자산의 종류

(1)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의 재고자산 종류

구분	종류
양곡관리특별회계	미곡, 잡곡, 기타부산물, 포장재 등
조달특별회계	6대 원자재(유연탄, 우라늄, 철광석, 동광석, 아연, 니켈), 희귀금속 등 비축물자
우편사업/우체국예금	저장품, 미착자산
경찰병원/국립병원/국립재활원	의약품, 진료재료, 의료소모품

2. 기타의 자산

Q176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선택 및 변경방법

질 의 내 용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이동평균법에서 개별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품목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물 흐름 및 원가산정 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한번 선택된 평가방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개별법을 적용하는 것이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

4. (재고자산과 저장품) “재고자산”과 “저장품”의 회계처리는 아래 사항을 따른다.
 - (3) 단위원가의 결정: “재고자산”과 “저장품”의 품목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 및 원가산정 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한다. 이 때 한번 선택된 평가방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Q177 재고자산 저가평가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재고자산 평가 시 시가와 취득가액 중 저가로 평가하는 것이 맞나요? 만약 저가로 평가할 경우 평가손실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 ▶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보다 시가가 낮은 경우 시가로 평가하는 저가법을 적용합니다.
 - 이때, 재고자산 중 제품, 상품 및 재공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치를 말하며,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를 말합니다.
- ▶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에 따라 인식하는 평가손실은 ‘평가손실’ 중 ‘기타평가손실’로 회계처리 해야 하며, 이는 재화판매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소요된 원가이므로 프로그램총원가로 구분합니다.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

4. (재고자산과 저장품) “재고자산”과 “저장품”의 회계처리는 아래 사항을 따른다.
 - (4) 저가법의 적용: 단위원가 평가 수행 후 “재고자산”과 “저장품”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재고자산”과 “저장품” 중 제품, 상품 및 재공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치를 말하며,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를 말한다.

Q178 시장가격의 확인이 어려운 재고자산(축산물)의 저가법 적용 여부

질 의 내 용

시장가격의 확인이 어려운 재고자산(축산물)의 경우 저가법을 배제할 수 있나요?

- ▶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4에 따라 재고자산(축산물)은 저가법을 적용하며, 저가법 적용 시 제품, 상품 및 재공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치를 말하며, 생산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를 말합니다.
- 순실현가능가치는 시장가격 확인이 어렵더라도 추정일 현재 사용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 추정하며 현행대체원가의 경우 현재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 시 소요되는 원가로 추정합니다.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재고자산”이란 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생산과정 또는 용역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으로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축산물, 미착품 및 기타의저장품이 있다.
 - (3) “순실현가능가치”란 해당 자산이 미래에 현금 또는 현금등가액으로 전환될 때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그러한 전환에 직접 소요될 비용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 (4) “현행대체원가”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할 경우 소요되는 원가를 말한다.
4. (재고자산과 저장품) “재고자산”과 “저장품”의 회계처리는 아래 사항을 따른다.
 - (4) 저가법의 적용: 단위원가 평가 수행 후 “재고자산”과 “저장품”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재고자산”과 “저장품” 중 제품, 상품 및 재공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치를 말하며,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를 말한다.

Q179 재고자산의 정상적/비정상적 감모손실의 원가구분

질 의 내 용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을 정상적인 부분과 비정상적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감모손실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나 국가회계예규는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을 정상적·비정상적 여부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자산감액손실’* 과목으로 하여 프로그램 대응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충원가 또는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합니다.

* 기타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기타자산감액손실”을 인식함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3. (비배분비용)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재고자산〉

7.20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 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Q180 정부비축물자 회계처리

질의내용(1)

재고자산의 실물흐름이 선입선출(先入先出)임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평가 방법에 선입선출법이 아닌 이동평균법 등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 ▶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가산정 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선입선출법 이외 다른 방법(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단위원가 측정방법은 실물흐름을 포함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합니다.

질의내용(2)

정부비축물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저가법 평가를 항상 수행해야 하나요?

- ▶ 일반적인 재고자산은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 저가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정부비축물자는 진부화 등 장기보유로 인해 가치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물품이므로 일시적인 국제시세의 하락으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져도 국제시세가 추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

4. (재고자산과 저장품) “재고자산”과 “저장품”의 회계처리는 아래 사항을 따른다.
 - (3) 단위원가의 결정: “재고자산”과 “저장품”의 품목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 및 원가산정 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한다. 이 때 한번 선택된 평가방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4) 저가법의 적용: 단위원가 평가 수행 후 “재고자산”과 “저장품”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재고자산”과 “저장품” 중 제품, 상품 및 재공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치를 말하며,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를 말한다. 이러한 “재고자산”과 “저장품”의 평가는 종목별로 실시한다. 다만,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축하는 정부비축물자는 일시적인 국제시세의 하락으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져도 국제시세가 추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취득원가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 (5) 재화판매원가: “재고자산”과 “저장품”은 판매에 따라 인식되는 재화판매수익에 대응하여 재화판매원가로 비용화된다.
11. (주석사항)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1) 재고자산
 - (가)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평가방법
 - (나) 재고자산의 실물흐름 및 원가산정 방법 등에 비추어 선입선출법 이외의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

Q181 퇴직연금운용자산 발생이자 회계처리

질의내용(1)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이자가 원본에 가산되는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질의내용(2)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 원본에 가산한 이자금액만큼 차변에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증가시키고 대변에 '기타이자 수익'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

- 9. (퇴직급여충당부채) (1)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추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 (2) 다음의 자산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 (가) “퇴직보험예치금”이란 직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사, 은행 등에 퇴직금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두는 금액을 말한다.
 - (나) “퇴직연금운용자산”이란 국가회계실체가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 (다) “국민연금전환금”이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을 말한다.

<계정과목 해설서>

IV. 장기충당부채

1. 장기충당부채

① 퇴직급여충당부채

(4) 퇴직연금운용자산

국가회계실체가 외부 금융기관의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적립한 자산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이다.

Q182 재화 판매 후 미수된 금액의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재고자산을 판매하였으나 결산일 현재 수취하지 못한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나요?

- ▶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발생 분 중 미수된 금액은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8. (미수채권) (1) 미수채권은 정부 고유의 행정활동, 재화 및 용역제공활동 등의 거래에 의하여 장래에 일정한 현금을 수취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 (2) "미수채권"과 "장기미수채권"은 해당 채권을 발생시킨 거래의 성격에 따라 "미수국세", "미수부담금수익", "미수제재금수익",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미수사회보험수익", "미수연금수익", "미수보험수익", "미수보증수익", "미수이자수익", "미수기타수익", "기타의미수금"으로 구분한다.

Q183 타 소관으로 불용품 무상양여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청에서 △△청의 위탁기관으로 불용품 무상양여 시 ‘정부외자산기부’로 회계처리하면 되나요?

- ▶ 물품관리법 제38조에 따르면 불용품의 양여는 중앙관서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국가회계실체 이외와의 거래 시에 적용됩니다.
- △△청의 위탁기관으로 불용품 무상양여 시 ‘기타비용’ 중 ‘정부외자산기부’로 회계처리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19. (기타비용) “기타비용”이란 외환차손, 파생상품거래손실, 정부외자산기부 등 각종 기타비용을 말한다.

<계정과목 해설서>

XVIII. 기타비용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기타비용

(3) 정부외자산기부

국가회계실체가 민간 등에 반대급부 없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우에 정부외자산기부로 계상한다.

<물품관리법>

제38조(불용품의 양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기타의 부채

Q184 퇴직보험예치금의 적절한 회계처리

질의내용(1)

○○기금은 퇴직보험예치금 성격으로 편성된 예산을 직원의 수급권이 없는 금융상품(정기 예금)에 투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계처리 시 부채 차감이 아닌 금융상품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러한 회계처리가 적절한가요?

질의내용(2)

직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 금융기관의 퇴직보험에 적용한 “퇴직 보험예치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 ▶ ‘퇴직보험예치금’이란 직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사, 은행 등에 퇴직금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두는 금액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다만, 수급권이 보장되지 않은 예금에 투자한 경우에는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처리할 수 없고 금융상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

9. (퇴직급여충당부채)

(2) 다음의 자산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 (가) “퇴직보험예치금”이란 직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사, 은행 등에 퇴직금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두는 금액을 말한다.

적용사례9. (☞ 관련문단 9)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회계처리

회계과목	관리과목	금액
퇴직급여충당부채	합계	25,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80,000,000
	퇴직보험예치금	(-)48,000,000
	국민연금전환금	(-)7,000,000

Q185 기타직에 대한 퇴직보험예치금 납입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일선관서에서 기타직에 대한 퇴직보험예치금 납입 시 보통예금으로 회계처리해도 무방한가요?

▶ 기타직에 대한 퇴직보험예치금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

9. (퇴직급여충당부채) (1) 재정상태표일 현재「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추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 (2) 다음의 자산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 (가) “퇴직보험예치금”이란 직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사, 은행 등에 퇴직금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두는 금액을 말한다.
 - (나) “퇴직연금운용자산”이란 국가회계실체가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 (다) “국민연금전환금”이란「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을 말한다.

Q186 퇴직보험운용사에 대한 수수료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일선관서에서 퇴직보험운용사인 OO증권에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이를 퇴직보험예치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나요?

▶ 운용사에 대한 수수료는 추후 회수할 수 있는 예치금 성격이 아니므로 퇴직보험예치금이 아닌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VII. 지급수수료, 지급보험료, 지급임차료

1. 계정과목의 정의

지급수수료는 업무대행수수료, 송금수수료, 등기료법정수수료, 외주가공비, 포장비, 보관비, 운송비 등 외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IV. 장기충당부채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퇴직급여충당부채

(2) 퇴직보험예치금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사, 은행 등에 퇴직금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두는 금액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이다. 재정상태표일의 잔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계상한다.

Q187 퇴직급여충당부채 초과 예치금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퇴직급여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 ‘기타투자자산’ 중 ‘기타의기타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IV. 장기충당부채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②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산출 및 재무제표 표시

(7)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산으로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VII. 기타투자자산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기타투자자산

(1) 투자회원권(생략)

(2) 파생상품자산(생략)

(3) 신탁사업수익권(생략)

(4) 기타의기타투자자산

(1)~(3)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투자자산을 말한다.

Q188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부채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기타직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임시직보수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올바른 회계처리인가요?

▶ 기타직에 대한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7장 리스 회계처리지침

1. 리스의 분류

Q189 금융리스부채의 유동성 대체

질의내용(1)
 유동성 금융리스부채의 계상 시기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유동성 금융리스부채 금액은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할 금액으로 매년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상환기일이 1년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유동성대체가 이루어집니다.

질의내용(2)
 유동성 금융리스부채로의 유동성 대체는 필수 사항 인가요?

▶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금융리스부채는 유동성 대체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리스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4. (☞ 관련문단 6) 금융리스부채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부채	유동부채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유동성금융리스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계정과목 해설서>

II. 장·단기차입금

2. 세부계정과목 설명

2-1. 유동부채

②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최초 차입 당시에는 장기차입부채(장기차입금)였으나 기간의 경과에 따라 재정상태표일로부터 상환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장기차입부채는 유동성장기차입부채로 대체한다.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Q190 제3자 명의로 계약된 금융리스계약에 대한 자산, 부채의 인식 여부

질 의 내 용

○○청이 업무대행업체(계약서상 리스 이용자)를 통하여 계약하는 금융리스계약에 대하여 금융리스자산(○○청이 통제 및 사용 중)과 금융리스부채(○○청이 리스료를 전액 부담)를 인식할 수 있나요?

▶ 리스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당해 금융리스 계약의 위험과 효익을 실질적으로 ○○청이 부담한다면 ○○청의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리스 회계처리지침>

5. (리스의 분류기준) 리스는 형식(리스자산의 법적소유권)보다는 실질(리스자산의 위험과 효익 부담 정도)에 따라 분류한다. 아래의 요건을 하나 또는 그 이상 충족하는 리스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그 외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그러나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 (2)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 (3)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4) 리스약정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5)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 가능한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4. (일반원칙) 국가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으로 하며, 다음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6) 회계처리는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Q191 운용리스와 임차계약 구분기준

질 의 내 용

운용리스와 임차계약(렌탈 등)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 운용리스와 임차계약은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소유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유사합니다.
- ▶ 다만, 운용리스는 리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리스계약서가 존재하며, 단순 임차계약(렌탈)은 리스회사가 아닌 판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에 리스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VII. 지급수수료, 지급보험료, 지급임차료

1. 계정과목의 정의

지급임차료는 임대차계약에 의해 토지, 건물, 창고, 기계장치, 사무용 비품, 차량운반구, 리스자산 등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를 말한다.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② 지급임차료

- (1) 토지임차료: 토지 임차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임차료를 말한다.
- (2) 건물임차료: 건물, 장소 등의 임차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임차료를 말한다.
- (3) 기타자산임차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및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ing)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를 말한다.
- (4) 운용리스료: 운용리스계약으로 비품이나 장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리스로 지급액을 말한다.

2. 금융리스

Q192 금융리스자산 취득원가에 조달수수료 포함여부

질 의 내 용

금융리스를 조달청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 금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타수수료로 처리해야 하나요?

- ▶ 리스계약과 관련해서 조달청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리스계약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리스 개설직접원가로서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자산에 가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리스 회계처리지침>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5) “리스개설직접원가”란 리스의 협상 및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리스계약 부대비용 등을 말한다. 다만,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제외한다.
6. (금융리스자산·부채의 최초 인식) 금융리스는 법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효익과 위험이 리스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을 전제로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한다. 리스이용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될 금액에 포함한다. 리스개설직접원가가 발생한 경우, 금융리스부채와 금융리스자산은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되지 아니한다.

최소리스료^(*) = 연간리스료 + 보증잔존가치 + 행사가 확실히 되는 염가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

금융리스자산 = Min[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 리스이용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

금융리스부채 = Min[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Q193 리스개설직접원가 반영 시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 금액 차이

질 의 내 용

리스계약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부대비용 등이 금융리스자산에만 포함되어 동 금액만큼 금융리스부채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적정한가요?

▶ 리스개설직접원가가 발생한 경우 금융리스자산에만 포함되므로, 동 금액만큼 금융리스부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스 회계처리지침>

6. (금융리스자산·부채의 최초 인식)

리스이용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될 금액에 포함한다. 리스개설직접원가가 발생한 경우, 금융리스부채와 금융리스자산은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되지 아니한다.

Q194 지급일과 결산일이 상이한 금융리스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금융리스의 리스료 지급일과 결산일이 다른 경우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맞나요?

▶ 금융리스 이용자가 매기 지급하는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와 금융리스부채의 원금상환액으로 구분되며, 기간경과분에 해당하는 금융원가 만큼 이자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Q195 금융리스자산의 재무제표 표시

질 의 내 용

금융리스부채는 계정과목에 있는데 금융리스자산은 어디에 있나요?

▶ 금융리스부채와 달리 금융리스자산은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표시되지 않고, 일반유형자산의 구분에 따라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리스 회계처리지침>

8. (재무제표 표시) 금융리스를 통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리스자산을 별도 구분하여 계상하지 아니하고 일반유형자산의 구분에 따라 분류한다.

제8장

총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1. 인식

Q196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총당부채 인식 요건

질의내용(1)

1심 패소한 모든 소송에 대해 총당부채를 인식하고자 하는데, 국가회계처리지침상 총당부채 인식요건에 1심 패소 혹은 2심 패소 등의 구체적인 조건이 있나요?

질의내용(2)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으로 총당부채 인식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요?

질의내용(3)

2심 패소한 소송 건에 대하여 소송총당부채를 계상하여야 하나요?

질의내용(4)

1, 2심 패소하였으나 3심에서 승소하여 다시 1심으로 파기 환송된 사건에 대해 소송총당부채를 계상해야 하나요?

- ▶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며,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소송총당부채를 인식합니다.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 ▶ 사건별로 자원유출 가능성은 서로 상이하므로, 판단이 필요하므로 국가회계예규 상 재판 결과(1심 패소, 2심 패소) 등을 기준으로 일괄적용 가능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앙관서 또는 회계실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소송 등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향후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소송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재정상태표의 부채로 인식한다.
 - (1)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 (2)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3)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5. (우발부채) (1) 우발부채는 재정상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 (2)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는 한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한다.
 - (3)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행할 전체 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의무 중에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 (4) 우발부채는 처음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생긴 기간의 재정상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다만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는 제외한다.

실무해설5. (☞ 관련문단 4.(2))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가능성

- (1) 소송 등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향후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를 말한다.
- (2) 다수의 유사한 의무가 있는 경우 의무 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은 해당 의무 전체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비록 개별항목에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Q197 재무제표 작성 완료 전 패소가 확정된 경우 소송총당부채 계상 여부

질 의 내 용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로 계류 중이던 소송이 당기 12월 중 1심 패소 확정되었고, 차기 1월 12일 항소를 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된 경우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보아 당기말 소송총당부채를 계상하여야 하나요?

- ▶ 총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하므로, 재무제표 작성 완료 전 소송 결과 및 지급해야할 금액이 확정된 경우, 소송총당부채가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총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① 총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하며,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추정치 산정 시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총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 4. (총당부채) 총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재정상태표의 부채로 인식한다.
 - (1)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 (2)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3)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계정과목 해설서>

Ⅲ. 기타부채 / 2. 세부계정과목 설명 / 2-1. 유동부채

① 기타유동부채

(2) 미지급금

국가회계실체의 자산취득과 사회보험, 연금 및 보험 등의 비용부담 과정에서 발생하여 이미 확정된 채무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Ⅳ. 장기총당부채 /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④ 기타장기총당부채

(3) 소송총당부채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향후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 금융출액의 현재가치 금액을 말한다.

Q198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민간투자사업) 관련 총당부채 인식 여부

질 의 내 용

민간투자사업 중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을 체결한 경우 총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나요?

- ▶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한 향후 지급액 예상규모는 통행량의 변동, 요금수준 변동, 교통 체계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 만큼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어려워 총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 ▶ 다만,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문단12에 따라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의 주요 내용, 최근 3개년 간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에 따른 지급액,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합니다.

<총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 4. (총당부채) 총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재정상태표의 부채로 인식한다.
 - (1)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 (2)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3)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 12. (주석사항) 국가회계실체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1)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의 주요 내용
 - (2) 최근 3개년 간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에 따른 지급액
 - (3)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측정

Q199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총당부채 금액 측정

질 의 내 용

2심 일부 패소인 경우 소송총당부채 금액은 소송가액의 전체로 잡는 것과 일부만 잡는 것 중 합리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 ▶ 소송총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로써, 재정상태표일 현재 시점에 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 금액을 추정할 때에는 유사한 거래에 대한 과거의 경험, 독립적인 전문가의 보고서 및 재정상태표일 후 발생한 사건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총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7. (최선의 추정치) (1) 총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2) 최선의 추정치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시점에 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금액을 추정할 때에는 유사한 거래에 대한 과거의 경험, 독립적인 전문가의 보고서 및 재정상태표일 후 발생한 사건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8. (위험과 불확실성) (1) 총당부채의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 산정 시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수익 또는 자산을 과대 계상하거나 비용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총당부채 금액을 과대 계상하는 것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공시

Q200 소송 관련 총당부채 계상 시 계정과목 및 주식 공시 사항

질 의 내 용

소송 관련 총당부채 회계처리 계정과목 및 주식 공시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소송총당부채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 기타비용(소송총당부채전입액)	XXX	대) 기타장기총당부채(소송총당부채)	XXX
--------------------	-----	---------------------	-----

▶ 소송총당부채는 기초와 기말 장부금액 및 당기 증감 내용, 총당부채의 내용과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시기, 유출될 자원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 제3자에 의한 변제 예상금액 및 그와 관련하여 인식한 자산 금액, 현재가치로 평가한 총당부채의 기간 경과에 따른 당기 증가금액 및 할인율 변동에 따른 효과를 주식으로 공시합니다.

<총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15. (총당부채의 공시) 총당부채는 유형별로 다음 사항을 주식으로 공시한다.

- (1) 기초와 기말 장부금액, 당기 증감 내용
- (2) 총당부채의 내용과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시기
- (3) 유출될 자원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 (필요한 경우, 관련된 미래사건에 대한 중요한 가정 포함)
- (4) 제3자에 의한 변제 예상금액 및 그와 관련하여 인식한 자산 금액
- (5) 현재가치로 평가한 총당부채의 기간 경과에 따른 당기 증가금액 및 할인율 변동에 따른 효과

<계정과목 해설서>

XVII. 기타비용 /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기타비용

(18) 소송총당부채전입액

재정상태표일 현재 소송총당부채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소송총당부채를 차감한 후 회계 연도 중 지급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Q201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에 따른 주식 공시 여부

질 의 내 용

국가회계실체에서 피소당한 소송의 경우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과 관계없이 모두 주식으로 공시하여야 하나요?

- ▶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는 한 주식으로 우발부채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 ▶ 특히,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총당부채로 인식한 경우 총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문단15에 따른 내용을 주식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 다만, 주식으로 공시하는 것이 총당부채, 우발부채와 관련하여 진행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총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4. (총당부채) 총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재정상태표의 부채로 인식한다.
 - (1)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 (2)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3)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5. (우발부채) (1) 우발부채는 재정상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 (2)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는 한 주식에 우발부채를 공시한다.
 - (3)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행할 전체 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의무 중에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에 대하여 총당부채를 인식한다.
 - (4) 우발부채는 처음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생긴 기간의 재정상태표에 총당부채로 인식한다. 다만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는 제외한다.
15. (총당부채의 공시) 총당부채는 유형별로 다음 사항을 주식으로 공시한다.
 - (1) 기초와 기말 장부금액, 당기 증감 내용
 - (2) 총당부채의 내용과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시기

- (3) 유출될 자원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 (필요한 경우, 관련된 미래사건에 대한 중요한 가정 포함)
 - (4) 제3자에 의한 변제 예상금액 및 그와 관련하여 인식한 자산 금액
 - (5) 현재가치로 평가한 총당부채의 기간 경과에 따른 당기 증가금액 및 할인율 변동에 따른 효과
16. (우발부채의 공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는 유형별로 그 내용을 주석에 설명하고 가능하면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1) 우발부채의 추정금액
 - (2)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 (3) 제3자에 의한 변제의 가능성
18. (공시예외) (1)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에 대하여 실무적인 이유로 공시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2) 총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분쟁의 전반적인 성격과 공시를 생략한 사실 및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

Q202 소송가액 미확정 시 주식 공시 여부

질 의 내 용

소송이 발생하였으나 소송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결산보고서 작성 시 주식 공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 ▶ 유사한 거래에 대한 과거의 경험, 독립적인 전문가의 보고서 및 재정상태표일 후 발생한 사건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소송총당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 또한, 소송가액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는 한 그 내용을 주석에 설명하고, 가능하면 우발부채의 추정금액,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 정도, 제3자에 의한 변제의 가능성을 주석으로 공시합니다.
- ▶ 다만,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총당부채, 우발부채와 관련하여 진행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총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4. (총당부채) 총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재정상태표의 부채로 인식한다.
 - (1)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 (2)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3)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5. (우발부채) (1) 우발부채는 재정상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 (2)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는 한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한다.
 - (3)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행할 전체 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의무 중에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에 대하여 총당부채를 인식한다.
 - (4) 우발부채는 처음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생긴 기간의 재정상태표에 총당부채로 인식한다. 다만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는 제외한다.

15. (총당부채의 공시) 총당부채는 유형별로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1) 기초와 기말 장부금액, 당기 증감 내용
 - (2) 총당부채의 내용과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시기
 - (3) 유출될 자원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 (필요한 경우, 관련된 미래사건에 대한 중요한 가정 포함)
 - (4) 제3자에 의한 변제 예상금액 및 그와 관련하여 인식한 자산 금액
 - (5) 현재가치로 평가한 총당부채의 기간 경과에 따른 당기 증가금액 및 할인율 변동에 따른 효과
16. (우발부채의 공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는 유형별로 그 내용을 주석에 설명하고 가능하면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1) 우발부채의 추정금액
 - (2)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 (3) 제3자에 의한 변제의 가능성
18. (공시예외) (1)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에 대하여 실무적인 이유로 공시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2) 총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분쟁의 전반적인 성격과 공시를 생략한 사실 및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

제9장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1. 교환수익의 분류

Q203 감호소 봉투판매 수익의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법무부 산하 ○○감호소에서 치료목적으로 봉투를 접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봉투를 판매하여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익의 적절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 ▶ ○○감호소에서 봉투를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이라면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의 '재화판매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5.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이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통해 발생하는 교환수익으로 재화판매수익, 용역제공수익과 기타사업수익을 말한다.
 - (1) 재화판매수익: 판매를 위하여 취득한 상품과 판매목적으로 생산한 제품 등을 비롯한 재고자산의 판매에 대한 대가로 국가회계실체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Q204 병원운영에 따른 수익의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병원운영에 따라 발생한 수입을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해도 되나요?

- ▶ 병원운영에 따라 발생한 수입은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중 ‘용역제공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 ‘잡이익’은 교환수익 중 타 항목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수익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수익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 5.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이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통해 발생하는 교환수익으로 재화판매수익, 용역제공수익과 기타사업수익을 말한다.
 - (2) 용역제공수익: 일반적인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과업을 수행함에 따른 대가로 국가가 수행하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 (3) 기타사업수익: 재화판매수익과 용역제공수익을 제외한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 (가) 사용료수익: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 (나) 수수료수익: 인적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하는 수익
 - (다) 수익사업이익전입금: 국가회계실체가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수익사업(경륜사업 등)으로부터의 이익전입금
- 9. (기타수익) “기타수익”이란 교환수익 중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연금수익, 보험수익, 보증수익, 이자수익, 평가이익, 자산처분이익을 제외한 각종 수익을 말한다.
 - (16) 잡이익: 교환수익 중 타 항목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수익

〈계정과목 해설서〉

I.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② 용역제공수익의 인식기준

용역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이때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란 아래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를 의미한다.

- ①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②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 ③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④ 이미 발생한 원가와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다만,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위의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아 진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식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계정과목	예시
용역제공 수익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편사업수익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정사업부문의 수탁영업수입 등 기타수입 조달특별회계의 내자구매 사업 관련수입(예: 내자구매대행수익) 조달특별회계의 외자구매 사업 관련수입(예: 외자구매대행수익) 조달특별회계의 시설계약 사업수입(예: 시설계약 대행수익) 병원운영에 따른 용역제공수입 교도소운영에 따른 용역제공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국립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및 기타사업수입으로 강의, 교육수입을 포함)

VII. 기타수익

2. 세부계정과목 설명

1] 기타수익

(23) 잡이익

교환수익 중 '프로그램수익/비배분수익'의 타항목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수익으로 학교 및 단체의 실습연구 시험에 따른 부산물판매수입 및 실습 수입과 같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수익 등을 말한다.

Q205 자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수익의 계정과목

질의내용(1)

망향의 동산 묘지 사용료수익은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질의내용(2)

현재 관람료 및 주차장 수입을 용역제공수익 또는 사용료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질의내용(3)

특별회계에서 항만시설 사용으로 인한 운영수입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질의내용(4)

항만의 수심을 파내어 나온 흙을 저장할 수 있는 투기장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민간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수령하고 있을 때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 국가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기타사업수익'의 '사용료수익'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5.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이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통해 발생하는 교환수익으로 재화판매수익, 용역제공수익과 기타사업수익을 말한다.
 - (3) 기타사업수익: 재화판매수익과 용역제공수익을 제외한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 (가) 사용료수익: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 (나) 수수료수익: 인적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하는 수익
 - (다) 수익사업이익전입금: 국가회계실체가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수익사업(경륜사업 등)으로부터의 이익전입금

Q206 주파수할당대가의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주파수할당대가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 ▶ 주파수할당대가는 주파수를 사용하는 대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중 ‘사용료수익’에 해당합니다.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5.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이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통해 발생하는 교환수익으로 재화판매수익, 용역제공수익과 기타사업수익을 말한다.
 - (3) 기타사업수익: 재화판매수익과 용역제공수익을 제외한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 (가) 사용료수익: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 (나) 수수료수익: 인적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하는 수익
 - (다) 수익사업이익전입금: 국가회계실체가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수익사업(경륜사업 등)으로부터의 이익전입금

Q207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교육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여 외부 기관에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 제공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나요?

▶ 계약에 의하여 교육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중 ‘용역제공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5.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이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통해 발생하는 교환수익으로 재화판매수익, 용역제공수익과 기타사업수익을 말한다.
 - (2) 용역제공수익: 일반적인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과업을 수행함에 따른 대가로 국가가 수행하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 (3) 기타사업수익: 재화판매수익과 용역제공수익을 제외한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 (가) 사용료수익: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 (나) 수수료수익: 인적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하는 수익
 - (다) 수익사업이익전입금: 국가회계실체가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수익사업(경륜사업 등)으로부터의 이익전입금

Q208 일반회계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대체경비수입의 회계처리

질의내용(1)

일반회계의 수입대체경비 수입으로 민간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의 회계처리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요?

- ▶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문단 5.(2)에 따라 민간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은 ‘용역 제공수익’으로 처리하며,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문단12.(1)에 따라 일반회계의 수입대체 경비수입은 프로그램수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2)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에서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들로부터 실습비를 수령하고 있는데, 실습비의 대부분은 ○○연수원에서 직영하는 식당에 지급되는 식비입니다. 이 실습비를 “잡이익” 처리해도 되나요?

- ▶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문단 5.(2)에 따라 ○○연수원이 직영하고 있는 식당의 식대수입은 ‘용역제공수익’으로 처리하며,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문단12.(1)에 따라 일반회계의 수입대체경비수입은 프로그램수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5.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이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통해 발생하는 교환수익으로 재화판매수익, 용역제공수익과 기타사업수익을 말한다.
 - (2) 용역제공수익: 일반적인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과업을 수행함에 따른 대가로 국가가 수행하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2.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의 구분집계) 수익은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으로 구분하여 집계되어야 한다.
 - (1) 교환수익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프로그램 대응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수익과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도 이전까지 일반회계는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만을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한다.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Q209 정기에금 이자수익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구분되는 정기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의 재정운영표상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구분되는 정기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상품이자수익’ 중 ‘정기에금이자수익’으로 처리합니다.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6. (이자수익) “이자수익”이란 금융상품 예치, 국·공채 등 장·단기투자증권 보유, 외부 자금 대여 등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수익을 말한다.

<계정과목 해설서>

IV. 이자수익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이자수익

(1) 금융상품이자수익

① 정기에금이자수익: 정기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Q210 관서운영경비를 관리하는 보통예금의 이자수익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관서운영경비를 관리하는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기예금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 인가요?

▶ 관서운영경비를 관리하는 통장에서 발생한 보통예금 이자수익의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 9. (기타수익) “기타수익”이란 교환수익 중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연금수익, 보험수익, 보증수익, 이자수익, 평가이익, 자산처분이익을 제외한 각종 수익을 말한다.
- (16) 잡이익: 교환수익 중 타 항목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수익

<계정과목 해설서>

VII. 기타수익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기타수익

(23) 잡이익

교환수익 중 '프로그램수익/비배분수익'의 타항목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수익으로 학교 및 단체의 실습연구 시험에 따른 부산물판매수입 및 실습 수입과 같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수익 등을 말한다.

Q211 폐지, 고철 매각대금 계정과목

질의내용(1)

폐지 매각대금 수입의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하나요?

질의내용(2)

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던 고철을 매각할 때 잡이익 계정과목을 사용해도 되나요?

▶ 폐지, 고철의 매각 수익과 같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면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9. (기타수익) "기타수익"이란 교환수익 중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연금수익, 보험수익, 보증수익, 이자수익, 평가이익, 자산처분이익을 제외한 각종 수익을 말한다.

(16) 잡이익: 교환수익 중 타 항목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수익

<계정과목 해설서>

VII. 기타수익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기타수익

(23) 잡이익

교환수익 중 '프로그램수익/비배분수익'의 타항목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수익으로 학교 및 단체의 실습연구 시험에 따른 부산물판매수입 및 실습 수입과 같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수익 등을 말한다.

Q212 신용카드 포인트의 현금 수령 시 회계처리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발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경우에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괜찮은가요?

- ▶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반환 받은 경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수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잡이익’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 9. (기타수익) “기타수익”이란 교환수익 중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연금수익, 보험수익, 보증수익, 이자수익, 평가이익, 자산처분이익을 제외한 각종 수익을 말한다.
(16) 잡이익: 교환수익 중 타 항목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수익

〈계정과목 해설서〉

VII. 기타수익

2. 세부계정과목 설명

□ 기타수익

(23) 잡이익

교환수익 중 “프로그램수익/비배분수익”의 타항목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수익으로 학교 및 단체의 실습연구 시험에 따른 부산물판매수입 및 실습 수입과 같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수익 등을 말한다.

2. 교환수익의 회계처리

Q213 사용료수익의 인식

질의내용(1)

무형자산의 사용료수익 인식 요건은 무엇인지요?

- ▶ ‘사용료수익’은 기간단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배분에 따라 인식하나 입장료 수입 등 1회성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즉시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수납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질의내용(2)

토지대여료를 분납 형태로 수납 시 회계처리 및 적절한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 ▶ 토지대여수입은 ‘사용료수익’에 해당하고, 기간단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대여기간에 따라 인식합니다. 분납으로 수익인식과 다르게 현금을 미수 또는 선수한 경우에는 미수수익 또는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5.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이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통해 발생하는 교환수익으로 재화판매수익, 용역제공수익과 기타사업수익을 말한다.
 - (3) 기타사업수익: 재화판매수익과 용역제공수익을 제외한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 (가) 사용료수익: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14. (사용료수익)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의 기타사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은 기간단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배분에 따라 인식한다. 입장료수입 등 1회성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즉시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수납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다만, 사용료수익과 별개로 보증금의 형태로 예치한 예납금은 사용수익 기간의 만료 시 반납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사용료수익이 아닌 부채(“임대보증금”)로 처리한다.

Q214 주파수할당대가 수익의 기간배분

질 의 내 용

주파수할당대가 수익의 기간배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파수할당대가는 계약기간(예: 10년) 동안 분할납부하며, 최초 납부 시 전체 대가의 1/4을 납부하고 이후 남은 기간 동안은 나머지 3/4을 매년 균등분할하여 납부하고 있음)

- ▶ 주파수할당대가는 ‘사용료수익’에 해당하고, 기간단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배분에 따라 인식합니다.
- 최초 납부 시 최초 납부 금액(전체 대가의 1/4) 중 해당연도의 사용 기간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 만큼을 선수수익으로 처리하고, 다음 해부터 납부대가와 선수수익을 함께 사용료수익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5.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이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통해 발생하는 교환수익으로 재화판매수익, 용역제공수익과 기타사업수익을 말한다.
 - (3) 기타사업수익: 재화판매수익과 용역제공수익을 제외한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 (가) 사용료수익: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14. (사용료수익)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의 기타사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은 기간단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배분에 따라 인식한다. 입장료수입 등 1회성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즉시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수납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Q215 소송관련 선수금의 수익 인식 시기

질 의 내 용

소송과 관련되어 현금 수취 후 선수금으로 계상한 것이 있는데, 현재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선수금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여야 합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수익의 인식기준) ① 교환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하며, 수익 유형에 따른 세부 인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7.>

1.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국세: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2.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3. 원천징수하는 국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4. 연부연납(年賦延納)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에 그 납부할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
5. 부담금수익, 기부금수익, 무상이전수입, 제재금수익 등: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다만, 제재금수익 중 벌금, 과료, 범칙금 또는 몰수품으로서 청구권이 확정된 때나 몰수품을 몰수한 때에 그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 과료 또는 범칙금이 납부되거나 몰수품이 처분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6. 삭제 <2014.2.27.>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10. (일반원칙) 교환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다만, 수익창출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거나 수익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유입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14. (일반원칙)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Q216 건물의 손상으로 수령하는 보험료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건물의 지붕이 손상되어 보험료를 받을 예정인데, 관련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험사고로 멸실될 자산의 장부가액만큼 '기타의미수금'을 계상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이 확정되는 시점에 '보험차익'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18. (보험차익) 기타수익 중 보험차익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실무해설13. (☞ 관련문단 18)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험사고로 멸실된 자산의 장부가액만큼 "기타의미수금"을 계상한다.

Q217 수입금 환급과 과오납금 반환의 차이

질 의 내 용

수입금의 환급과 과오납금의 반환의 의미와 회계처리 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 ▶ 수입금의 환급이란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의거 환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국고금 관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오납금 반환이란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정과 수납업무의 착오·중복 등의 사유로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분에 대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입금환급금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환급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오납금반환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 ▶ 수입금환급금은 해당 수익에서 차감하나, 과오납반환금의 경우 당해연도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반환은 기존 수익에서 차감하고, 전기 또는 전기 이전에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반환은 재정운영표의 '전기과오납금반환금'으로 처리합니다.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 "수입금의 환급"이란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의거 환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국고금 관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 (3) "과오납금의 반환"이란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정과 수납업무의 착오·중복 등의 사유로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분에 대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 19. (수입금환급금의 회계처리) 교환수익의 수입금환급금은 해당 교환수익에서 차감한다.
- 20. (과오납반환금의 회계처리) 교환수익의 과오납반환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 (1) 당해 연도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계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 발생한 교환수익에서 차감한다.
 - (2) 전기 또는 전기 이전에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전기과오납금반환금"으로 처리한다.

실무해설14. (☞ 관련문단 19) 수입금환급금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환급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오납반환금과는 차이가 있다.

Q218 전기 발생 수입금에 대한 과오납반환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전기에 발생한 수입금을 당기에 전기과오납반환 업무처리를 할 경우 어떤 회계처리가 발생하나요?

▶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문단20에 따라 과오납반환 결의를 통해 전기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 재정운영표의 ‘기타비용’ 중 ‘전기과오납금반환금’으로 처리합니다.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 20. (과오납반환금의 회계처리) 교환수익의 과오납반환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 (1) 당해 연도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계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 발생한 교환수익에서 차감한다.
 - (2) 전기 또는 전기 이전에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전기과오납금반환금”으로 처리한다.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 12. (과오납금의 반환) (1) 과오납금의 반환이란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정과 수납업무의 착오·중복 등의 사유로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분에 대하여「국고금 관리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 (2)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가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할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가) 당해 연도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 발생한 수익을 차감하는 동시에 “국고이전지출”을 차감하고, 국고금회계는 “국고이전수입”을 차감하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킨다.
 - (나) 전기와 전기 이전에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국고금회계는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세출예산지출액”으로 처리하고,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국고수입”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전기과오납반환금”으로 인식한다.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Q219 전기 징수결의 미납분에 대한 오류 정정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미납된 연구개발부담금의 가산금에 대하여 이전 징수결의를 정정하는 경우, 징수결의 착오정정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 ▶ 전기 또는 전기이전에 징수결의 하였지만 아직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징수결의착오정정’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 다만, 당해 연도 발생한 징수결의를 착오정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계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 발생한 교환수익에서 차감합니다.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징수결의착오정정”이란 징수결의금액에 착오가 있을 경우 수납전에 이를 올바른 금액으로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징수결의착오정정의 회계처리) 교환수익의 징수결의착오정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 (1) 당해 연도 발생한 징수결의를 착오정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계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 발생한 교환수익에서 차감한다.
 - (2) 전기 또는 전기이전에 발생한 징수결의를 착오정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전기징수결의 착오정정”으로 처리한다.

Q220 일반회계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교환수익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재화판매수익’ 및 ‘정기예금이자수익’이 일반회계에서 발생할 수 있나요?

- ▶ ‘재화판매수익’이란 판매를 위하여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고자산의 판매 대가로 국가회계 실체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하며, ‘정기예금이자수익’이란 정기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일반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계정과목입니다. 다만, 일반회계가 재고자산을 보유하거나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9. (☞ 관련문단 11) 재화판매수익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미곡·잡곡·기타부산물 판매수입
- (2) 조달특별회계의 비축물자 사업수입
- (3) 복권기금의 복권사업수입
- (4) 간행물, 영상물 판매수입과 행정용품 판매수입

〈계정과목 해설서〉

I.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1) 재화판매수익

판매를 위하여 취득한 상품과 판매목적으로 생산한 제품 등을 비롯한 재고자산의 판매에 대한 대가로 국가회계실체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IV. 이자수익

1. 이자수익의 정의

이자수익이란 금융상품 예치, 국·공채 등 장·단기투자증권 보유, 외부자금대여 등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수익을 말한다.

제10장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1. 비교환수익의 분류

Q221 부담금, 과태료 및 과징금 등에 대한 연체이자의 계정과목

질의내용(1)

부담금의 연체이자는 가산금수익과 부담금수익 중 어느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질의내용(2)

부담금, 과태료 및 과징금 등에 대한 연체이자를 제재금수익 하위의 가산금수익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 ▶ ‘가산금수익’이란 국세, 부담금,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납부해야 할 행정법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할증된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국세, 부담금,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납부해야 할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하여 발행한 연체이자라면 ‘가산금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행정법상 의무의 이행 지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수익에 가산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7. (제재금수익) “제재금수익”이란 법이나 규정 등을 위반한 자에게 부담시켜 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수익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3) 가산금수익: 국세, 부담금,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납부해야 할 행정법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할증된 금액

Q222 타 부처로부터 건설증인자산을 이전 받은 경우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청이 △△부로부터 이전 받은 건설증인자산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 ▶ 타 부처로부터 받은 국유재산 및 물품이 국가회계실체 간 무상관리전환에 해당하면 ‘정부내자산수증’으로 계상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기타무상이전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 ‘건설증인자산’은 국유재산 및 물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타무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합니다.
- 다만, 조직개편으로 건설증인자산을 이관 받은 경우에는 순자산변동표상 조정항목 중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증가(순자산조정)’로 처리합니다.

<비교환수의 회계처리지침>

- 12. (무상이전수입) “무상이전수입”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금, 정부내자산수증, 정부외자산수증, 정부외기부금, 농특세이전수입 및 주세이전수입 등을 통한 순자산의 증가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4) 정부내자산수증: 국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국가회계실체 간 무상관리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

- 6. (순자산의 이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이관 및 승계되는 순자산은 다음에 따라 이관 대상 자산·부채에 대응시키고, 순자산변동표 상 “조정항목”으로 반영한다.

<계정과목 해설서>

II. 재원의 조달 / 2. 세부계정과목 설명

무상이전수입

무상이전수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금, 정부내자산수증, 정부외자산수증, 정부외기부금, 농특세이전수입 및 주세이전수입 등을 통한 순자산의 증가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0) 기타무상이전수입

무상이전수입 중 (1) ~ (9)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Q223 보조비 집행 후 민간이 구입한 물품을 인계받는 경우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보조비 집행 후 민간이 구입한 물품을 인계받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 자금집행과 별도로 자산의 무상취득으로 보아 '무상이전수입' 중 '정부외자산수증'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비교환수의 회계처리지침>

- 12. (무상이전수입) "무상이전수입"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금, 정부 내자산수증, 정부외자산수증, 정부외기부금, 농특세이전수입 및 주세이전수입 등을 통한 순자산의 증가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5) 정부외자산수증: 국가회계실체 외의 자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 받는 수익
 - (6) 정부외기부금: 국가회계실체 외의 자로부터 받는 기부금

Q224 농특세이전수입과 주세이전수입의 정의

질 의 내 용

순자산변동표 계정과목 중 농특세이전수입과 주세이전수입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 ▶ '농특세이전수입', '주세이전수입'은 국세청·관세청·기획재정부에서 징수하는 농어촌특별세 수익과 주세수익을 해당 특별회계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해당 특별회계가 인식하는 수익을 말합니다.
 - '농특세이전수입'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전받는 농어촌특별세 수입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징수업무를 수행하나 농림축산식품부 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 합니다.

- ‘주세이전수입’은 지역발전특별회계가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이전받는 주세수입으로 국세청 및 관세청에서 징수업무를 수행하나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합니다.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12. (무상이전수입) “무상이전수입”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금, 정부 내자산수증, 정부외자산수증, 정부외기부금, 농특세이전수입 및 주세이전수입 등을 통한 순자산의 증가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7) 농특세이전수입, 주세이전수입: 국세청·관세청·기획재정부에서 징수하는 농어촌특별세수익과 주세수익을 해당 특별회계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해당 특별회계가 인식하는 수익

〈계정과목 해설서〉

II. 재원의 조달

2. 세부계정과목 설명

☐ 무상이전수입

(8) 농특세이전수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전받는 농어촌특별세수입으로 농어촌특별세 수익은 기획재정부에서 징수업무를 수행하나 농림축산식품부 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한다. 다만, 징수 결의시점에 농어촌특별세수익이 국세수익의 항목으로 국세징수활동표에 인식되나 국고금 배정절차를 통하여 수납 결의시점에 농림축산식품부 특별회계의 농특세이전수입으로 순자산 변동표에 인식된다.

(9) 주세이전수입

지역발전특별회계가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이전받는 주세수입으로 주세수익은 국세청 및 관세청에서 징수업무를 수행하나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한다. 다만, 징수 결의시점에 주세수익이 국세수익의 항목으로 국세징수활동표에 인식되나 국고금 배정절차를 통하여 수납 결의시점에 해당 특별회계의 주세이전수입으로 순자산변동표에 인식된다.

Q225 학자금 대여금 이전에 따른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기금은 △△대학교 법인화에 따라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학자금 대여금 중 일부(65.7억)를 이전 받았습니다. 대여금 인식 시 상대계정은 무엇인가요?

▶ 대여금을 이전하는 회계실체는 ‘기타무상이전지출’, 대여금을 이전받는 회계실체는 ‘기타무상이전수입’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비교환수의 회계처리지침>

12. (무상이전수입) “무상이전수입”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금, 정부내자산수증, 정부외자산수증, 정부외기부금, 농특세이전수입 및 주세이전수입 등을 통한 순자산의 증가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계정과목 해설서>

II. 재원의 조달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⑦ 무상이전수입

(10) 기타무상이전수입

무상이전수입 중 (1) ~ (9)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Q226 기금 신설 전 적립된 자금의 인식시기 및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국가회계실체 외의 자가 관리하던 자금을 재원으로 법령에 따라 기금을 신설하였는데, 기금 개시 전 적립된 자금은 기초와 기중 중 어느 시점에 인식하나요?
또한, 관련 자원 편입 시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나요?

- ▶ 국가회계법 제3조에 따른 기금 신설 전 거래는 인식이 불가하므로 자원 편입 거래를 기금 신설이 완료된 기중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또한, 기금 개시 전 적립된 자금을 국가회계실체 외의 자로부터 이전받는 거래로 보아 재정운영표상 ‘기타재원조달및이전’의 ‘무상이전수입(정부외자산수증, 정부외기부금 등)’으로 처리합니다.

〈국가회계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비교환수의 회계처리지침〉

12. (무상이전수입) “무상이전수입”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금, 정부내자산수증, 정부외자산수증, 정부외기부금, 농특세이전수입 및 주세이전수입 등을 통한 순자산의 증가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1) 일반회계전입금: 국가회계실체간 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 (2) 특별회계전입금: 국가회계실체간 내부거래로서 특별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 (3) 기금전입금: 국가회계실체간 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 (4) 정부내자산수증: 국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국가회계실체 간 무상관리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
- (5) 정부외자산수증: 국가회계실체 외의 자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 받는 수익
- (6) 정부외기부금: 국가회계실체 외의 자로부터 받는 기부금
- (7) 농특세이전수입, 주세이전수입: 국세청·관세청·기획재정부에서 징수하는 농어촌특별세수익과 주세수익을 해당 특별회계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해당 특별회계가 인식하는 수익

Q227 기금 폐지 후 사후정산대금 등을 수령한 경우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기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폐지 이후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출연비율에 따라 전기 중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을 배분받았으며, 잔여재산 수령 시 기타무상이전 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이후 당기에도 주식매각 사후정산대금, 지방세 환급분 등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수령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기타무상이전수입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 ▶ 기금 폐지 이후 정산과정을 통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추가적으로 수령한 자금은 ‘기타 무상이전수입’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기타무상이전수입’이란 무상이전수입 중 일반회계전입금, 특별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정부내자산수증, 정부외자산수증, 정부외기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처리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12. (무상이전수입) “무상이전수입”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금, 정부 내자산수증, 정부외자산수증, 정부외기부금, 농특세이전수입 및 주세이전수입 등을 통한 순자산의 증가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계정과목 해설서>

II. 재원의 조달 /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⑦ 무상이전수입

(10) 기타무상이전수입

무상이전수입 중 (1) ~ (9)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III. 재원의 이전 /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③ 무상이전지출

(7) 기타무상이전지출

정부내에서 발생하는 무상이전지출 중 상기 (1) ~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Q228 기타재원조달의 정의

질 의 내 용

비교환수의 계정과목 중 기타재원조달은 어느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인가요?

- ▶ ‘기타재원조달’이란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원의 유출을 다른 국가회계실체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와 순자산의 증감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국세수익,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사회보험수익, 채무면제이익, 무상이전수입 등을 제외한 각종 재원조달거래를 말합니다.
- ▶ 대표적인 사례로 인사혁신처가 타 부처를 대신하여 공무원연금부담액을 납부한 경우, 타 부처는 ‘공무원연금부담비’를 인식하고 상대계정과목으로 ‘기타재원조달’을 인식합니다.

〈비교환수의 회계처리지침〉

13. (기타재원조달) “기타재원조달”이란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원의 유출을 다른 국가회계실체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와 순자산의 증감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위*에서 언급한 수익을 제외한 각종 재원조달거래를 말한다.

* 국세수익,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사회보험수익, 채무면제이익, 무상이전수입 등

〈연금 회계처리지침〉

적용사례3. (☞ 관련문단 33) 공무원연금 관련 회계처리

1. 배경정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부담비를 각 부처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 각 부처의 공무원연금비용을 ‘전출금’ 예산을 통해 일괄적으로 공무원연금기금에 지급한다. 인사혁신처가 타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용주부담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순자산변동표 상의 “기타재원이전”으로 처리하고 타중앙관서는 “기타재원조달”로 처리한다.

2.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인식

Q229 벌금수익의 수익 인식 시기

질의내용(1)

벌금수익의 수익 인식 시기는 언제인가요?

- ▶ 일반적으로 벌금수익 중 벌금 및 과료, 범칙금은 납부하는 때 수익을 인식하며, 과태료, 과징금, 징계부가금은 고지하는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다만, 과태료의 경우 자진신고 후 고지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는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질의내용(2)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고지전 자진납부하는 경우, 카드 결제 시점과 카드사로부터 국고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되는 시점 중 언제 수익을 인식하나요?

- ▶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고지하는 때 수익을 인식하나, 자진신고 후 고지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는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 만약 고지전 자진납부 시 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카드 결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22.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인식기준) 부담금수익, 무상이전수입, 기부금 수익, 제재금수익 등은 청구권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제재금수익 중 벌금, 과료, 범칙금 또는 몰수품으로서 청구권이 확정된 때나 몰수품을 몰수한 때에 그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 과료 또는 범칙금이 납부되거나 몰수품이 처분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24. (제재금수익) 일반적으로 제재금수익의 수익인식 시기는 다음과 같다.
 - (4) 벌금수익
 - (가) 벌금 및 과료: 납부하는 때
 - (나) 범칙금: 납부하는 때
 - (다) 과태료: 고지하는 때, 다만 자진신고 후 고지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는 때

-
- (라) 과징금: 고지하는 때
 - (마) 징계부가금: 고지하는 때
-

Q230 무상이전수입의 수익 인식 시기

질 의 내 용

일반회계전입금, 특별회계전입금과 기금전입금은 언제 수익 인식을 하나요?

- ▶ 일반회계전입금, 특별회계전입금과 기금전입금은 고지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비교환수의 회계처리지침〉

25. (무상이전수입) 무상이전수입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 (1) 일반회계전입금, 특별회계전입금과 기금전입금은 고지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

Q231 기금이 수령하는 출연금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기금이 국가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에 반영하는 경우와 순자산 변동표의 조정항목 중 '기타순자산의증감'으로 반영하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 기금이 수령하는 출연금은 지출용도에 따라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 또는 순자산 변동표의 '기타순자산의증감'으로 처리합니다.
- 사업비용, 관리·운영비 등에 충당하여 재원이 소진되는 경우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 중 '무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하고,
- 시설 신설과 증설 등 자본적 지출, 자산매입, 신용보증의 재원, 차입금상환의 재원 등 자산 또는 부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용도에 사용되어 재원의 원본이 유지되는 경우 순자산 변동표의 '기타순자산의증감' 중 '출연금의증가'로 처리합니다.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29. (출연금) (1) 출연금은 지급한 회계실체에 따라 "일반회계전입금", "특별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및 "정부외기부금"으로 분류된다.
- (2) 기금이 수령하는 출연금은 지출용도에 따라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 또는 순자산변동표의 "기타순자산의증감"으로 처리한다. 다만, 재원의 용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주된 지출용도에 따라 회계처리 할 수 있다.
- (가) 기금이 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운영비 등에 충당하여 조성된 재원이 소진되는 경우 재정 운영표의 "무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한다. 기금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조성된 재원을 다음의 용도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성된 재원이 소진되는 것으로 본다.
- 1) 사업비용 충당 (대표적으로 보험관련 기금)
 - 2) 관리, 운영비 등에 충당
 - 3) 연구개발 관련 비용에 충당
- (나) 기금이 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주로 자산 또는 부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용도에 사용되어 재원의 원본이 유지되는 경우 순자산변동표의 "출연금의증가"로 처리한다. 기금이 조성된 재원을 다음의 용도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재원의 원본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 1) 시설 신설과 증설 등 자본적 지출
 - 2) 자산매입 (부실채권, 유가증권 등의 매입) 또는 융자금의 재원
 - 3) 신용보증, 채무보증의 재원
 - 4) 차입금과 이자 상환의 재원

〈기금이 수령하는 출연금의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수익	비교환 수익등	기타재원조달 및이전	무상이전수입	일반회계전입금
				특별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정부내자산수증
				정부외자산수증
				정부외기부금
				손익계정전입금
				자본계정전입금
				감가상각전입금
				당기순이익전입금
				기타무상이전수입
순자산변동	조정항목	기타순자산의 증감	출연금의 증가	
			출연금의 감소	

Q232 차입금상환재원으로 수령한 출연금의 순자산변동표 반영

질 의 내 용

○○기금은 △△부 일반회계로부터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용으로 출연금을 수령하여 순자산 변동표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때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조달'과 '조정항목' 중 어느 곳에 반영하여야 하나요?

- ▶ 기금이 수령하는 출연금을 차입금 상환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으로 반영하며, '기타순자산의증감'의 '출연금의증가'로 처리합니다.
- 참고로,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조달및이전'은 행정형회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비교환수의 등을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비교환수의 회계처리지침>

29. (출연금) (1) 출연금은 지급한 회계실체에 따라 “일반회계전입금”, “특별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및 “정부외기부금”으로 분류된다.
- (2) 기금이 수령하는 출연금은 지출용도에 따라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 또는 순자산변동표의 “기타순자산의증감”으로 처리한다. 다만, 재원의 용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주된 지출용도에 따라 회계처리 할 수 있다.
- (가) 기금이 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운영비 등에 총당하여 조성된 재원이 소진되는 경우 재정 운영표의 “무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한다. 기금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조성된 재원을 다음의 용도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성된 재원이 소진되는 것으로 본다.
- 1) 사업비용 총당 (대표적으로 보험관련 기금)
 - 2) 관리, 운영비 등에 총당
 - 3) 연구개발 관련 비용에 총당
- (나) 기금이 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주로 자산 또는 부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용도에 사용되어 재원의 원본이 유지되는 경우 순자산변동표의 “출연금의증가”로 처리한다. 기금이 조성된 재원을 다음의 용도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재원의 원본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 1) 시설 신설과 증설 등 자본적 지출
 - 2) 자산매입 (부실채권, 유가증권 등의 매입) 또는 융자금의 재원
 - 3) 신용보증, 채무보증의 재원
 - 4) 차입금과 이자 상환의 재원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29.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행정형 회계의 비교환수익과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중앙관서 간의 무상이전거래를 말하며, 다음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1) 재원의 조달
- (가) 국고수입
 - (나) 부담금수익
 - (다) 제재금수익
 - (라) 기타비교환수익
 - (마) 무상이전수입
 - (바) 채무면제이익
 - (사) 기타재원조달
- (2) 재원의 이전
- (가) 국고이전지출
 - (나) 무상이전지출
 - (다) 기타재원이전
-

3.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환급과 과오납금의 반환

Q233 전기 징수한 부담금수익에 대한 법률에 따른 환급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전기에 징수한 부담금수익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발생하여 부담금수익을 환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급건의 경우 전기 이전까지 순자산변동표 상 '전기오류 수정손익'으로 처리하여 왔는데, 이러한 회계처리가 맞나요?

- ▶ 전기에 징수한 부담금수익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발생하여 부담금수익을 환급하는 경우 '부담금수익환급금'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해당 부담금 수익에서 차감 표시합니다.
- 수입금의 환급이란 수입으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담금을 법률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부담금수익환급금'으로 처리합니다.
- 순자산변동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중대한 오류에 대하여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계정입니다.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30. (수입금의 환급) (1) 수입금의 환급이란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국고금 관리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 (2)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비교환수익에서 차감한다.

Q234 전기 징수한 부담금수익에 대한 과오납반환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전기에 징수한 부담금수익에 대해 과오납반환이 발생한 경우 기타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비교환수익에 대한 과오납반환이므로 비교환수익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 등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 전기와 전기 이전에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기타 비용' 중 '전기과오납금반환금'으로 처리합니다.
- 당해 연도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타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 발생한 비교환수익에서 차감합니다.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31. (과오납금의 반환) (1) 과오납금의 반환이란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정과 수납업무의 착오·중복 등의 사유로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분에 대하여「국고금 관리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 (2)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과오납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가) 당해 연도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계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 발생한 비교환수익에서 차감한다.
 - (나) 전기와 전기 이전에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전기과오납금반환금"으로 처리한다.

Q235 과오납반환 시 지급금액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과오납 반환 시 지급금액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 과오로 인하여 당기 수익금 반환 시 지급금액은 당기 수익에서 차감하며 전기와 전기이전에 과오로 인하여 수익금 반환 시 지급금액은 '기타비용' 중 '전기과오납반환금'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 31. (과오납금의 반환) (1) 과오납금의 반환이란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정과 수납업무의 착오·중복 등의 사유로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분에 대하여「국고금 관리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 (2)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과오납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가) 당해 연도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계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 발생한 비교환수익에서 차감한다.
 - (나) 전기와 전기 이전에 발생한 수입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전기과오납금반환금”으로 처리한다.

Q236 외환건전성부담금 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의 적정성

질 의 내 용

외환건전성부담금 징수과정에서 부담금 납부 전 금액이 감액 또는 증액 조정이 결정된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부담금 납부 전 금액 정정이 결정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연도 발생한 징수결의를 착오정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계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 발생한 비교환수익에서 차감하고,
- 전기 또는 전기 이전에 인식한 부담금수익 금액을 납부 전에 조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비용’ 중 ‘전기징수결의착오정정’ 과목으로 하여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32. (징수결의착오정정) (1) 징수결의착오정정이란 징수결의금액에 착오가 있을 경우 수납전에 이를 올바른 금액으로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징수결의착오정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 (가) 당해 연도 발생한 징수결의를 착오정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계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 발생한 비교환수익에서 차감한다.
 - (나) 전기 또는 전기이전에 발생한 징수결의를 착오정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전기징수결의착오정정”으로 처리한다.

Q237 비교환수익 환급금이 당해 징수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비교환수익 환급금이 비교환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비교환수익 환급금은 해당 비교환수익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비교환수익 환급금이 해당 비교환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부(-)의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 17. (국세환급금) (1)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말한다.
(2) 국세환급금은 해당 국세수익에서 차감한다.
- 30. (수입금의 환급) (1) 수입금의 환급이란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국고금 관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비교환수익에서 차감한다.

4.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표시

Q238 비교환수익을 순자산변동표와 재정운영표로 구분 반영하는 기준

질의내용(1)

기금의 부담금수익과 같은 비교환수익은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순자산변동표에 직접 반영 하나요?

질의내용(2)

‘정부외자산수증’과 같은 비교환수익을 재정운영표와 순자산변동표에 반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 비교환수익은 국가회계실체(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에 따라 순자산변동표와 재정운영표로 구분됩니다.
- 기금, 기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비교환수익은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으로 표시하고,
-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의 비교환수익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조달및이전’으로 표시합니다.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34.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표시) (1)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다만, 납입자본금 성격은 문단28을 참조한다)은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조달및이전”에 표시하며,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에 표시한다.

Q239 기금의 특별회계전입금(순자산변동표)사용 가능 여부

질 의 내 용

순자산변동표상 재원의조달의 무상이전수입에 특별회계전입금 계정과목이 있습니다.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인가요?

▶ 순자산변동표 상 '재원의조달'에 표시되는 '특별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기금은 재정운영표 상 '비교환수익 등'에 표시되는 '특별회계전입금'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34.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의 표시) (1) 국세수익 이외의 비교환수익(다만, 납입자분금 성격은 문단28을 참조한다)은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조달및이전"에 표시하며,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에 표시한다.

제11장 비용 회계처리지침

1. 비용의 분류

Q240 선택진료수당 비용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국립재활원의 선택진료수당은 '기타직보수' 와 '기타복리후생비'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나요?

- ▶ 선택진료수당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 제공 후 받는 대가이므로 '인건비'의 '급여' 중 '기타직보수'로 처리합니다.
- 복리후생비는 근무여건 향상 등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해당 선택진료수당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6. (인건비) "인건비"란 공무원 등이 고용관계 또는 위임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 받는 급여, 퇴직급여 등의 일체의 금품 및 이익을 말한다.
7.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법적고용부담금과 기타복리후생비를 말한다.
 - (2) 기타복리후생비: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시설 운영 및 유지비용, 경비 등으로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시상금, 경조금, 건강진단비, 선물대, 재해보상비, 모임지원비 등

<계정과목 해설서>

- II. 인건비, 복리후생비
 2. 세부계정과목 설명

□ 인건비

(1) 급여

- ⑤ 기타직보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개별 법령에 의하여 월지급액이 정하여진 경비로 전문임기제, 사법연수원생, 임용전수습, 견습직원 (지역인재추천제), 청원경찰, 경비교도대원, 전공의, 공중보건기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 의사, 경찰대학생, 경찰·소방간부후보생, 공익법무관, 청원산림보호직, 위원회 상근직(상임 위원 및 간사) 등

〈계정과목 총괄표〉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비용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인건비	급여	기타직보수

Q241 기타직 직원의 급여 지급 시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기타직 직원의 급여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처리인가요?

▶ 기타직 직원의 급여는 ‘인건비’의 ‘급여’ 중 ‘기타직보수’로 회계처리 합니다.

- 기타직 직원에게 퇴직을 사유로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 (인건비) “인건비”란 공무원 등이 고용관계 또는 위임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 받는 급여, 퇴직급여 등의 일체의 금품 및 이익을 말한다.

〈계정과목 해설서〉

- 인건비, 복리후생비
-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인건비

(1) 급여

- 기타직보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개별 법령에 의하여 월지급액이 정하여진 경비로 전문임기제, 사법연수원생, 임용전수습, 견습직원(지역인재추천제), 청원경찰, 경비교도대원, 전공의, 공중보건기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의사, 경찰대학생, 경찰·소방간부후보생, 공익법무관, 청원산림보호직, 위원회 상근직(상임위원 및 간사) 등

〈계정과목 총괄표〉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비용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인건비	급여	기타직보수

Q242 무기계약직 급여 지급 시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는 ‘인건비’의 ‘급여’ 중 ‘상용임금’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6. (인건비) “인건비”란 공무원 등이 고용관계 또는 위임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 받는 급여, 퇴직급여 등의 일체의 금품 및 이익을 말한다.

〈계정과목 해설서〉

II. 인건비, 복리후생비

2. 세부계정과목 설명

□ 인건비

(1) 급여

⑥ 상용임금: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한 보수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 및 「공무원인재개발법」에 의한 교수요원 등에 대한 보수,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등

〈계정과목 총괄표〉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비용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인건비	급여	상용임금

Q243 파견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지원비의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파견자에 대한 주거지원비 지출 시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파견자에 대한 주거지원비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 개인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인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의 성격이라면 ‘인건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6. (인건비) “인건비”란 공무원 등이 고용관계 또는 위임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 받는 급여, 퇴직급여 등의 일체의 금품 및 이익을 말한다.
7.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법적고용부담금과 기타복리후생비를 말한다.
 - (1) 법정고용부담금: 복리후생비의 일종으로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법정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등으로 국민연금부담비, 공무원연금부담비, 군인연금부담비, 고용보험부담비, 산재보험부담비, 건강보험부담비, 사학연금부담비
 - (2) 기타복리후생비: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시설 운영 및 유지비용, 경비 등으로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시상금, 경조금, 건강진단비, 선물대, 재해보상비, 모임지원비 등

Q244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4대 보험료의 계정과목

질의내용(1)

기타직 보수로 처리되는 인건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4대보험 회사부담분을 퇴직급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업무처리인가요?

질의내용(2)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질의내용(3)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비를 310-01 보상금에서 지출했었는데, 비목이 개편되면서 310-04 기타보전금에서 지출할 경우 어느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복리후생비’의 ‘법정고용부담금’ 중 관련 계정과목(국민연금부담비, 고용보험부담비, 산재보험부담비, 건강보험부담비 등)으로 회계 처리 합니다.

- 참고로, 해당지출은 비목개편에 따라 2017년부터 고용부담금(320-09)으로 예산을 편성 해야 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7.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법적고용부담금과 기타복리후생비를 말한다.

- (1) 법정고용부담금: 복리후생비의 일종으로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법정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등으로 국민연금부담비, 공무원연금부담비, 군인연금부담비, 고용보험부담비, 산재 보험부담비, 건강보험부담비, 사학연금부담비

<계정과목 해설서>

- II. 인건비, 복리후생비
- 2. 세부계정과목 설명

2] 복리후생비

(1) 법정고용부담금

- ① 국민연금부담비: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자* 1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부담비
* 1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
- ② 공무원연금부담비: 정규직공무원* 2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공무원연금부담비
* 2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③ 군인연금부담비: 군인* 3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군인연금부담비
* 3 「군인연금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 복무 중 지원군간부 후보생 이외의 군간부 후보생 제외)
- ④ 고용보험부담비: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국가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부담비
- ⑤ 산재보험부담비: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부담비
- ⑥ 건강보험부담비: 공무원 등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국가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부담금 (50%)
- ⑦ 사학연금부담비: 사립학교교직원* 4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부담비
*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계정과목 총괄표〉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비용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복리후생비	법정고용부담금	국민연금부담비
				공무원연금부담비
				군인연금부담비
				고용보험부담비
				산재보험부담비
				건강보험부담비
				사학연금부담비

Q245 포상 목적의 상품권 지급 시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직원에게 포상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나요?

- ▶ 직원에 대한 포상은 ‘복리후생비’의 ‘기타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 법령에 의한 포상인 경우 ‘시상금’으로 처리하고, 이외의 포상은 ‘선물대’로 회계처리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 7.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법정고용부담금과 기타복리후생비를 말한다.
- (2) 기타복리후생비: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시설 운영 및 유지비용, 경비 등으로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시상금, 경조금, 건강진단비, 선물대, 재해 보상비, 모임지원비 등

<계정과목 해설서>

- II. 인건비, 복리후생비
- 2. 세부계정과목 설명
 - ② 복리후생비
 - (2) 기타복리후생비
 - ③ 시상금: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게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 및 상금, 예산절약 상여금
 - ⑥ 선물대: 직원에 대한 선물 구입비 등

<계정과목 총괄표>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비용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복리후생비	기타복리후생비	시상금
				선물대

Q246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한 비용의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한 비용은 '지급수수료'와 '복리후생비'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의 '기타복리후생비' 중 '기타의기타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 7.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법정고용부담금과 기타복리후생비를 말한다.
 - (2) 기타복리후생비: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시설 운영 및 유지비용, 경비 등으로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시상금, 경조금, 건강진단비, 선물대, 재해 보상비, 모임지원비 등

<계정과목 해설서>

- II. 인건비, 복리후생비
 - 2. 세부계정과목 설명
 - ② 복리후생비
 - (2) 기타복리후생비
 - ⑨ 기타의기타복리후생비: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 등을 말하며, 여기서 선택적 복지제도란 복지항목에 대한 선택권을 사용인에게 부여함으로써 복지를 증진시키는 제도임

<계정과목 총괄표>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비용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복리후생비	기타복리후생비	기타의기타복리후생비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Q247 해외 파견공무원 의료보험료 지급 시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해외 파견공무원에 대한 건강관련 보험료를 민간 보험사에 지급하는 경우 건강보험부담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가요?

- ▶ 해외 파견공무원에 대한 건강관련 보험료는 복리후생 성격이므로 ‘복리후생비’의 ‘기타 복리후생비’ 중 ‘기타의기타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합니다.
- ‘건강보험부담비’는 법정고용부담금으로 공무원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부담금(50%)을 지출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7.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법정고용부담금과 기타복리후생비를 말한다.
 - (2) 기타복리후생비: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시설운영 및 유지비용, 경비 등으로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시상금, 경조금, 건강진단비, 선물대, 재해보상비, 모임지원비 등

<계정과목 해설서>

- II. 인건비, 복리후생비
 2. 세부계정과목 설명
 - ② 복리후생비
 - (2) 기타복리후생비
 - ⑨ 기타의기타복리후생비: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 등을 말하며, 여기서 선택적 복지제도란 복지항목에 대한 선택권을 사용인에게 부여함으로써 복지를 증진시키는 제도임

<계정과목 총괄표>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비용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복리후생비	기타복리후생비	기타의기타복리후생비

Q248 출연비 지급 시 계정과목의 구분 기준

질 의 내 용

출연비 계정과목 중 ‘공공기관출연비’, ‘민간출연비’ 등을 구분할 때 1차 거래처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최종 수혜자를 기준으로 하나요?

- ▶ 출연비 계정과목은 출연비를 지급받는 대상에 따라 세부 계정과목이 구분되며, 국가회계 실체가 최초 지급하는 대상(즉, 1차 거래처)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따라서 출연비를 국가로부터 1차로 지급받는 대상이 공공기관이라면 ‘출연비’ 중 ‘공공기관출연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10. (출연비) “출연비”란 국가가 다른 경제주체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중 하나로서 공공기관출연비, 민간출연비, 해외출연비 등을 말한다.

<계정과목 총괄표>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비용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출연비	공공기관출연비	
			민간출연비	
			해외출연비	

Q249 보조비 지급 시 계정과목의 구분 기준

질 의 내 용

보조비 계정과목 중 ‘공공기관보조비’, ‘민간보조비’ 등을 구분할 때 1차 거래처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최종 수혜자를 기준으로 하나요?

- ▶ 보조비 계정과목은 보조비를 지급받는 대상에 따라 세부 계정과목이 구분되며, 국가회계 실체가 최초 지급하는 대상(즉, 1차 거래처)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따라서 보조비를 국가로부터 1차로 지급받는 대상이 공공기관이라면 ‘보조비’ 중 ‘공공기관보조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11. (보조비) “보조비”란 국가가 다른 경제주체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중 하나로서 공공기관보조비, 민간보조비, 자치단체보조비, 해외보조비, 교부금을 말한다.

〈계정과목 총괄표〉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비용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보조비	공공기관보조비	사립학교교직원건강보험보조비
				건강보험재정부담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보조비
				차액보상금
				기타공공기관보조비
			민간보조비	구호및교정비
				차액보상금
				기타민간보조비
			자치단체보조비	
			해외보조비	
			교부금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Q250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보조비의 계정과목

질의내용(1)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성격의 사업비를 지출한 경우 '기타무상이전지출'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질의내용(2)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 병원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보조금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보조비는 '보조비' 중 '자치단체보조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무상이전지출'은 정부내거래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11. (보조비) "보조비"란 국가가 다른 경제주체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중 하나로서 공공기관보조비, 민간보조비, 자치단체보조비, 해외보조비, 교부금을 말한다.

<계정과목 해설서>

Ⅲ. 재원의 이전 /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③ 무상이전지출

정부내 거래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Ⅷ. 보전비, 출연비, 보조비 /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③ 보조비

(3) 자치단체보조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지방정부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및 지방정부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등을 말한다.

<계정과목 총괄표>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비용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보조비	자치단체보조비	

Q251 출자기관의 법인세 대납하는 경우 비용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기금에서 출자한 △△캐피탈의 법인세 대납분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법인세 대납분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미수채권' 중 '기타의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대납분을 회수하지 않고 무상 제공하기로 한 경우 '기타비용' 중 '정부외자산기부'로 회계처리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 8. (미수채권) (1) 미수채권은 정부 고유의 행정활동, 재화 및 용역제공활동 등의 거래에 의하여 장래에 일정한 현금을 수취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 (2) "미수채권"과 "장기미수채권"은 해당 채권을 발생시킨 거래의 성격에 따라 "미수국세", "미수부담금수익", "미수제재금수익",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미수사회보험수익", "미수연금수익", "미수보험수익", "미수보증수익", "미수이자수익", "미수기타수익", "기타의미수금"으로 구분한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 19. (기타비용) "기타비용"이란 외환차손, 파생상품거래손실, 정부외자산기부 등 각종 기타비용을 말한다.

<계정과목 해설서>

IV. 장·단기미수채권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장기)미수채권

(11) (장기)기타의미수금

일반유형자산 처분 등으로 발생하는 미수금을 비롯하여 자금거래 등과 관련하여 확정된 채권 중 미수한 금액을 말한다.

VII. 기타비용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기타비용

(3) 정부외자산기부

국가회계실체가 민간 등에 반대급부 없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우에 정부외자산기부로 계상한다.

Q252 잔여재산 반환 시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기금이 운용 종료되어 △△부처 일반회계에게 잔여재산(현금 및 현물)을 반환할 때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 기금의 운용 종료에 따라 잔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기금은 재정운영표상 ‘비교환수의 등’에 표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잔여재산(현금 및 현물)은 ‘기타재원조달및이전’의 ‘무상이전지출’ 중 ‘기타무상이전지출’로 회계처리 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23. (무상이전지출) “무상이전지출”이란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다음의 자금, 국고금회계전출금, 정부내자산기부 등을 통한 순자산의 감소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7) 기타무상이전지출: (1)~(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상이전지출

〈계정과목 총괄표〉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수익	비교환수익등	기타재원조달및이전	무상이전지출	기타무상이전지출

Q253 사진인화 및 책자 발간 시 계정과목

질의내용(1)

사진인화경비를 인쇄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 자료 및 보고서에 사용할 사진을 인화하는데 사용된 비용은 '인쇄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질의내용(2)

부처에서 관리지침 책자를 발간한 비용이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 관리지침과 같은 책자를 발간하는 경우 '인쇄비'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III. 소모품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1. 계정과목의 정의

인쇄비는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를 말한다.

Q254 파워포인트 제작에 소요된 비용의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통계시스템 소개자료 등 외국 홍보를 위한 파워포인트 제작에 소요된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로 보아 ‘소모품비’ 중 ‘홍보물품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Ⅲ. 소모품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소모품비

(2) 홍보물품비란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기관(관서)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를 말한다.

Q255 신문 구독 대금 지급 시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매월 구독하는 신문대금은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 도서, 잡지, 마이크로필름, 관보, 법령추록, 통신구독료, 신문 구독료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로 보아 ‘소모품비’ 중 ‘간행물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Ⅲ. 소모품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소모품비

(4) 간행물비는 신문·잡지·관보·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를 말한다.

Q256 시험연구비와 연구개발용역비의 계정과목 구분

질 의 내 용

‘시험연구비’와 ‘연구개발용역비’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 ▶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를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연구개발용역비’는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위탁하여 수행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 ‘연구개발용역비’와 ‘시험연구비’는 직접 수행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IV.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외주용역비

2. 세부계정과목 설명

㉠ 연구개발비

(1) 시험연구비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정비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일용 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운영수당,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3) 연구개발용역비

국가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일반연구개발용역비는 국가로부터 지식기반 업무에 대한 것(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 정책연구개발 용역비는 각 부처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관련 비용을 말한다.

Q257 연구개발용역비와 연구용역비의 계정과목 구분

질의내용(1)

연구개발용역비와 연구용역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 ‘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용역비’는 국가사업 관련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을 수행한 반대급부로 지급된 금액을 말하지만, ‘외주용역비’ 중 ‘연구용역비’는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설계, 기본설계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질의내용(2)

정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연구개발용역비’와 ‘연구용역비’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관련 비용이므로 ‘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용역비’ 중 ‘정책연구개발용역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IV.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외주용역비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연구개발비

(3) 연구개발용역비

국가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일반연구개발용역비는 국가로부터 지식기반 업무에 대한 것(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 정책연구개발용역비는 각 부처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관련 비용을 말한다.

③ 외주용역비

(1) 연구용역비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주요설계 시행지침이나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 보상비, 차관자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내외에서 수행되는 조사, 연구 등 용역비를 말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② 연구개발용역비와 연구용역비의 구분

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용역비는 국가사업 관련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을 수행한 반대급부로 지급된 금액을 말하지만, 외주용역비 중 연구용역비는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설계, 기본설계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Q258 외부 번역 용역비 지급 시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시험연구비(210-13) 예산으로 연구 목적의 외부 번역을 맡긴 경우 '시험연구비'와 '기타 용역비'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 연구 목적의 외부 번역을 맡긴 경우 '시험연구비'와 '기타용역비' 계정과목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비용일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중 '시험연구비'로 처리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외주용역비' 중 '기타용역비'로 처리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IV.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외주용역비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연구개발비

(1) 시험연구비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정비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일용 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운영수당,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③ 외주용역비

(5) 기타용역비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과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등을 말한다.

Q259 의료적 시험 실시 비용의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병원 환자에 대해 여러 가지 의료적 시험을 실시(병원 직접 실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시험연구비’, ‘기타용역비’, ‘기타수수료’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 환자에 대한 의료적 시험을 실시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개발비’ 중 ‘시험연구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 외주용역비 또는 지급수수료는 용역 계약, 외부 지급 등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병원이 직접 시험을 실시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외주용역비’ 중 ‘기타용역비’ 또는 ‘지급수수료’ 중 ‘기타수수료’로 회계처리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IV.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외주용역비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연구개발비

(1) 시험연구비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정비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일용 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운영수당,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③ 외주용역비

(5) 기타용역비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과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등을 말한다.

VII. 지급수수료, 지급보험료, 지급임차료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지급수수료

(11) 기타수수료: 외부에 지급하는 수수료 중 (1)~(10) 이외의 비용을 말한다.

Q260 외부강사 초빙 강사료 지급 시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내부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 강사료를 일반수용비(210-01) 예산목에서 집행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세부항목 중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등을 선택하여 기타용역비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는데 지금은 매핑이 변경되어 동 세부항목이 없습니다. 210-01 예산에서 선택 가능한 내부교육비로 회계처리 하면 되나요?

- ▶ 초빙 강사료는 ‘교육훈련비’ 중 ‘내부교육비’로 회계처리합니다.
- 예산재무과목연계표(세출)가 변경되면서 210-01목 세세부항목에 ‘교육훈련시 초빙 강사료’가 추가되고 관련 재무계정과목으로 내부교육비가 매핑되었습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IV.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외주용역비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② 교육훈련비

(1) 내부교육비는 자체 교육을 위한 강사료, 연수원임차료 등을 말한다.

Q261 무선통신망 유지 관리비의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무선통신망을 주기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용역비를 ‘기타일반유형 자산수선유지비’로 계상하고 있는데 관리용역비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요?

▶ 무선통신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사용된 용역비는 ‘외주용역비’ 중 ‘관리용역비’로 회계 처리 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IV.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외주용역비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③ 외주용역비

(2) 관리용역비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 기관의 운영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제비용을 말한다.

Q262 관리용역비와 위탁사업비의 계정과목 구분

질 의 내 용

위탁사업비(210-15) 예산 목과 연계되는 계정과목인 '관리용역비'와 '위탁사업비'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 ▶ 법령에 의해 규정된 위탁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관리용역비'와 '위탁사업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 법령에 규정된 국가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외주용역비' 중 '위탁사업비'로,
- 청사시설관리, 장비유지관리, 전산운영 등 기관 운영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경우 '외주용역비' 중 '관리용역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IV.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외주용역비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③ 외주용역비

(2) 관리용역비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 기관의 운영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제비용을 말한다.

(3) 위탁사업비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제비용을 말한다.

Q263 위탁계약에 의한 상담센터 운영비용의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 관련 상담처리를 위한 상담센터를 별도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외부업체와 위탁계약(외부업체 명의로 운영)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지불되는 제비용은 위탁사업비와 업무대행수수료 중 어떤 비용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 ▶ 국가가 법령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외주용역비’ 중 ‘위탁사업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 업무대행수수료는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가 아닌 업무를 외부에 대행시키고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IV.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외주용역비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③ 외주용역비

(3) 위탁사업비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제비용을 말한다.

VII. 지급수수료, 지급보험료, 지급임차료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지급수수료

(1) 업무대행수수료: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등과 같이 외부에 업무를 대행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Q264 **사업비 용도로 사용되는 민간위탁금의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공단에 지급한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민간위탁금을 현재 ‘위탁사업비’로 비용처리하고 있는데, 예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공단에 지급한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민간위탁금은 이자수취 및 원금을 반환받는 예금과 성격이 다르며,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국가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외주용역비’ 중 ‘위탁사업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IV.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외주용역비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③ 외주용역비

(3) 위탁사업비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제비용을 말한다.

Q265 민간대행사업 수행 시 비용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비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는 '외주용역비'의 '대행사업비' 중 '민간대행사업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IV.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외주용역비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③ 외주용역비

(4) 대행사업비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를 말한다.

<계정과목 총괄표>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비용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외주용역비	대행사업비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

Q266 외부 전문가 자문료 지급 시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전문가 자문료 지급 시에 일선관서별로 업무대행수수료, 기타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다양한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 전문가의 자문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외주용역비' 중 '기타용역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IV.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외주용역비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③ 외주용역비

(5) 기타용역비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과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등을 말한다.

Q267 외부전문가 용역비 지급 시 계정과목

질의내용(1)

방송 제작과 관련하여 외부전문가(리porter, 성우)에게 지급한 비용을 일반수용비(210-01)로 지출한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나요?

질의내용(2)

전문가 초빙 사례비, TV제작비 등을 전기까지 일반수용비(210-01)중 기타용역비를 선택 해서 지출했었는데 당기는 다른 계정과목을 사용해도 되나요?

-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외부전문가와 용역계약을 통해 일반업무를 대행시키는 비용은 '외주용역비' 중 '기타용역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 참고로, 해당지출은 비목개편에 따라 2017년부터 일반용역비(210-14)로 예산을 편성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해야 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IV.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외주용역비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③ 외주용역비

(5) 기타용역비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과 국선번호사 및 수임·고문번호사에 대한 번호료·수임료 및 보수,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등을 말한다.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Q268 외부 일반인 대상 교육의 초빙 강사료의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외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초빙 강사료를 지출하려고 합니다.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나요?

- ▶ ‘외주용역비’ 중 ‘기타용역비’는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등을 의미하므로 강사료는 ‘외주용역비’ 중 ‘기타용역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IV.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외주용역비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③ 외주용역비

(5) 기타용역비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과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등을 말한다.

Q269 기타용역비와 기타수수료의 계정과목 구분

질 의 내 용

‘기타용역비’와 ‘기타수수료’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 ▶ ‘외주용역비’ 중 ‘기타용역비’는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과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등을 말합니다.
- ▶ ‘지급수수료’ 중 ‘기타수수료’는 업무대행수수료, 송금수수료, 등기료법정수수료, 검정및 시험수수료, 외주가공비, 포장비, 보관비, 운송비, 상하차비, 지급의료비 이외의 외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IV.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외주용역비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③ 외주용역비

(5) 기타용역비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과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등을 말한다.

VII. 지급수수료, 지급보험료, 지급임차료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지급수수료

(11) 기타수수료: 외부에 지급하는 수수료 중 (1)~(10) 이외의 비용을 말한다.

Q270 TV수신료, Skylife 수신료 등 지급 시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일반수용비(210-01) 예산으로 편성된 TV수신료, Skylife 수신료 등은 '기타수수료'와 '공공요금'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공공요금'이란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팩시밀리 등의 회선 사용료 등을 말하므로 '세금과공과' 중 '공공요금'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V. 세금과공과, 수도광열비, 유류비, 피복비와급량비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세금과공과

(1) 공공요금이란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팩시밀리 등의 회선 사용료 등을 말한다.

VII. 지급수수료, 지급보험료, 지급임차료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지급수수료

(11) 기타수수료: 외부에 지급하는 수수료 중 (1)~(10) 이외의 비용을 말한다.

Q271 계약에 의한 부담금 지급 시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방송통신위원회에 지급하는 계약에 의한 각종 부담금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나요?

▶ 법령에 의해 지불하는 부담금은 '세금과공과' 중 '제세'로 회계처리 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V. 세금과공과, 수도광열비, 유류비, 피복비와급량비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세금과공과

(2) 제세는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Q272 협회비 지급 시 계정과목 선택

질 의 내 용

협회비가 공공요금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바른 회계처리인가요?

▶ 협회비 등의 경우 공공요금이 아닌 '세금과공과' 중 '제세'로 회계처리 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V. 세금과공과, 수도광열비, 유류비, 피복비와급량비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세금과공과

(2) 제세는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Q273 업무용 차량 주유비 지급 시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업무용 차량의 주유비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며, 그 계정과목은 어느 재무제표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 업무용 차량의 주유비는 '유류비'로 회계처리하며, '유류비'는 재무제표 중 재정운영표에 표시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V. 세금과공과, 수도광열비, 유류비, 피복비와급량비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③ 유류비

유류비는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의 가동 및 차량·항공기·선박의 운행 등에 필요한 모든 유류(LPG, LNG 포함) 구입비를 말한다.

Q274 해외 주재원 여비 지급 시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해외공관의 주재원들이 해외에서 사용한 여비는 ‘국외여비’와 ‘국내여비’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해외에서 사용한 여비는 ‘국외여비’, 국내에서 사용한 여비는 ‘국내여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VI.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국립학교운영비

2. 세부계정과목 설명

□ 여비교통비

(1) 국내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및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여비,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를 말한다.

(2) 국외여비

여비규정에 의한 해외출장여비, 해외출장지원경비를 말한다.

Q275 해외 출장 시 식사비 및 공식행사비의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해외 출장 시 발생하는 정액경비 외 식사비, 공식행사비 등을 사업추진비 예산으로 지급 시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해외출장에서 여비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은 '여비교통비' 중 '국외여비'로 회계처리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VI.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국립학교운영비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여비교통비

(2) 국외여비

여비규정에 의한 해외출장여비, 해외출장지원경비를 말한다.

Q276 공식행사 진행 관련 비용 계정과목

질의내용(1)

행사 진행 관련 용품 구입비용 및 식비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나요?

- ▶ 행사 진행 관련 용품 구입비용 및 식비는 ‘업무추진비’ 중 ‘행사진행경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VI.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국립학교운영비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② 업무추진비

(1) 행사진행경비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행사 경비 등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체육대회 또는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소요 경비를 말한다.

질의내용(2)

외빈초청행사를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에게 식권을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비용이 잡손실로 처리되어 있는데 적절한 회계처리 인가요?

- ▶ 외빈초청에 따른 접대경비 등과 같은 공식적인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무추진비’ 중 ‘행사진행경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VI.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국립학교운영비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② 업무추진비

(1) 행사진행경비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행사 경비 등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체육대회 또는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소요 경비를 말한다.

Q277 전세권 설정 시 지급한 비용의 계정과목

질의내용(1)

전세권 설정 시 법무사에게 지출된 수수료는 '업무대행수수료', '등기료법정수수료', '검정 및시험수수료', '기타수수료'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질의내용(2)

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세권설정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 전세권 설정 관련 등기비용은 '지급수수료' 중 '등기료법정수수료'로 회계처리하며 법무사 비용은 '업무대행수수료'로 회계처리 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VII. 지급수수료, 지급보험료, 지급임차료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지급수수료

- (1) 업무대행수수료: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등과 같이 외부에 업무를 대행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3) 등기료법정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을 말한다.
-

Q278 송달료 등 소송비용의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소송사건으로 인한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은 등기료법정수수료가 맞나요?

▶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은 '지급수수료' 중 '등기료법정수수료'로 회계처리 합니다. 다만, 변호사 수입료는 '기타용역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VII. 지급수수료, 지급보험료, 지급임차료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지급수수료

(3) 등기료법정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을 말한다.

IV.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외주용역비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③ 외주용역비

(5) 기타용역비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과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등을 말한다.

Q279 신용카드 수수료 지급 시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신용카드수수료의 경우 세출로 처리된 후 세입으로 처리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 '기타 수수료'와 '업무대행수수료'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 신용카드수수료는 외부에 업무를 대행하고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업무대행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신용카드수수료는 '지급수수료' 중 '기타수수료'로 처리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VII. 지급수수료, 지급보험료, 지급임차료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지급수수료

- (1) 업무대행수수료: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등과 같이 외부에 업무를 대행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11) 기타수수료: 외부에 지급하는 수수료 중 (1)~(10) 이외의 비용을 말한다.
-

Q280 신용평가정보이용료 지급 시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신용평가정보이용료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 신용평가정보 이용료는 '지급수수료' 중 '기타수수료'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VII. 지급수수료, 지급보험료, 지급임차료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지급수수료

(11) 기타수수료: 외부에 지급하는 수수료 중 (1)~(10) 이외의 비용을 말한다.

Q281 회의장소 임차료의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회의를 위해 건물 회의실을 임차한 경우 '기타자산임차료'와 '건물임차료'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건물, 장소 등의 임차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임차료는 '지급임차료' 중 '건물임차료'로 회계처리 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VII. 지급수수료, 지급보험료, 지급임차료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② 지급임차료

(2) 건물임차료: 건물, 장소 등의 임차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임차료를 말한다.

(3) 기타자산임차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및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ing)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를 말한다. ASP서비스란 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고가의 소프트웨어 구입, 유지비 대신 ASP 업체에게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프로그램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된다.

Q282 변론참고인에 지급한 여비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변론참고인에 대해 지급한 여비는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 ▶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반대급부는 '보전비' 중 '기타보전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Ⅷ. 보전비, 출연비, 보조비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보전비

(4) 기타보전비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에 의하여 보전해야 할 보상금(징발보상금)을 말한다.

Q283 기타공공기관의 의료보조비 지급 시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보훈병원, 보훈요양원 등에 대한 의료보조비를 '기타공공기관보조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공공기관이 행하는 사업은 '기타공공기관보조비'로, 민간이 행하는 사업은 '기타민간보조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보훈병원 및 보훈요양원의 보훈 대상 환자들에 대한 의료보조비 관련 비용 성격의 지출은 '보조비' 중 '기타공공기관보조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VIII. 보전비, 출연비, 보조비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③ 보조비

(1) 공공기관보조비

- ⑤ 기타공공기관보조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에서 공공기관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지원 등

Q284 국가회계실체의 법인세 납부 시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국가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신용보증기금에 법인세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 법인격이 있는 기금의 경우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법인세 납부 시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XVII. 기타비용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기타비용

(8) 법인세비용

법인세 등의 법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해야 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를 말한다.

2. 비용의 회계처리

Q285 지방재정교부금 정산금의 인식 시기

질 의 내 용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재정교부금 정산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 ▶ 지방재정교부금은 정산이 확정되어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지방재정교부금 계정에 다음과 같이 가감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직전회계연도가 (+) 정산일 경우(세계잉여금 처리)〉

차) 지방재정교부금	XXX	대) 기타재원조달	XXX
------------	-----	-----------	-----

〈직전회계연도가 (-) 정산일 경우(다음회계연도 예산 반영)〉

차) 기타의미수금	XXX	대) 지방재정교부금	XXX
-----------	-----	------------	-----

〈비용 회계처리지침〉

25. (비용 인식기준) 비용은 다음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 (1)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른 지출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어 그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Q286 사고이월금액에 대한 비용 인식 기준

질 의 내 용

용역과 관련해서 회계연도말 현재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사고이월금액을 전부 비용으로 인식하고 부채 계상해야 하나요?

- ▶ 사고이월이란, 연도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 지출을 하지 못할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만으로 비용을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지출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25. (비용 인식기준) 비용은 다음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 (1)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른 지출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어 그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Q287 기금이 타 기금에 출연금 지급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기금이 타 기금에 출연금을 지급할 때도 출연금을 수령한 기금의 지출용도에 따라 재정운영표 또는 순자산변동표로 나누어 표시해야 하나요?

- ▶ 기금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국가회계실체(기금을 포함함)는 출연금을 수령한 기금의 주된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출연금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기타재원조달및이전'의 '무상이전지출' 중 '기금전출금'으로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에 표시합니다.
- 참고로, 기금이 수령하는 출연금은 지출용도에 따라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 또는 순자산변동표의 '기타순자산의증감'으로 처리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29. (출연금의 회계처리) 기금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일반회계 등의 경우 해당 기금에서 조성된 재원의 주된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해당 출연금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출연금을 지급하는 국가회계실체가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인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을 “무상이전지출” 계정과목으로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이전'에 반영하고,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인 경우에는 “기타재원조달및이전” 계정과목으로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에 반영한다. 한편, 국가회계실체가 국가회계실체 외의 자에게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연비”의 계정과목으로 재정운영표의 '프로그램총원가'에 반영한다.

Q288 과오지급금회수금의 비교환수익 반영여부

질 의 내 용

과거 회계연도에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되었던 지출금을 몇 년이 지나 '과오지급금 회수금'으로 반납처리 할 경우 비교환수익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나요?

- ▶ '과오지급금회수금'의 경우 전기 이전에 과오로 초과 지급한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 생성되는 수익 계정과목이며, 비교환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 29의2. (당기지출금의 반납) 국가회계실체가 당기에 지출한 비용을 반납 받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비용에서 차감한다.
- 29의3. (전기 이전 지출금의 반납) 국가회계실체가 전기 이전에 지출한 비용을 반납 받는 경우 반납의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 (1) 전기 이전에 과오로 초과지급한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과오지급금 회수금”으로 처리한다.
 - (2) 과오가 아닌 사유로 전기 이전의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지출금반납금”으로 처리한다.

Q289 급여 등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 회계처리

질의내용(1)

지출되었던 급여의 정산으로 인해 회수금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하면 되나요? 현재까지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질의내용(2)

판결금 임의지급금에 대한 환급액을 과오지급금회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정한가요?

질의내용(3)

공중보건의 급여, 계약직 연봉 등의 회수액을 과오지급금회수금, 잡이익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질의내용(4)

전기에 지출되었던 공무원 단체보험금의 정산으로 인해 당기에 회수금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는 무엇인가요?

- ▶ 당기에 지급한 비용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당기 회계처리한 해당 비용에서 차감하고, 전기 이전에 지급한 비용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반납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 과오로 초과지급한 비용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기타수익' 중 '과오지급금 회수금'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 과오가 아닌 사유로 비용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기타수익' 중 '지출금반납금'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 29의2. (당기지출금의 반납) 국가회계실체가 당기에 지출한 비용을 반납 받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비용에서 차감한다.
 - 29의3. (전기 이전 지출금의 반납) 국가회계실체가 전기 이전에 지출한 비용을 반납 받는 경우 반납의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 (1) 전기 이전에 과오로 초과지급한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과오지급금 회수금”으로 처리한다.
 - (2) 과오가 아닌 사유로 전기 이전의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지출금반납금”으로 처리한다.
-

Q290 보조비 등의 집행 잔액을 정산하여 반납 받는 경우 회계처리

질의내용(1)

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산하여 남은 잔액을 모두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처리인가요?

질의내용(2)

민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민간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반환처리 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처리인가요?

질의내용(3)

부처의 세부사업을 대신 수행하는 업체에 보조비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정산잔액을 반납 받는 경우에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질의내용(4)

당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보조비로 지급한 금액 중에서 일부가 반환되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질의내용(5)

전기 보조금 정산에 따라 당기에 수령한 반납금을 과거 기타비교환수익으로 회계처리 해왔습니다. 지출금반납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 ▶ 당기에 지출한 비용을 반납 받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비용에서 차감합니다.
- ▶ 전기 이전에 지출한 보조비 등을 정산하여 반납 받는 경우와 같이 과오가 아닌 사유로 지출금을 반납받는 경우 '지출금반납금'으로 처리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 29의2. (당기지출금의 반납) 국가회계실체가 당기에 지출한 비용을 반납 받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비용에서 차감한다.
- 29의3. (전기 이전 지출금의 반납) 국가회계실체가 전기 이전에 지출한 비용을 반납 받는 경우 반납의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 (2) 과오가 아닌 사유로 전기 이전의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지출금반납금”으로 처리한다.

Q291 행정소송 승소 후 반환받은 소송비용의 계정과목

질 의 내 용

행정소송 승소 후 청구하여 받은 소송비용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 ▶ 당기에 지출한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비용에서 차감합니다.
- ▶ 전기 이전에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승소하여 반환받는 경우와 같이 과오가 아닌 사유로 지출금을 반납받는 경우 ‘지출금반납금’으로 처리합니다.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9. (기타수익) “기타수익”이란 교환수익 중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연금수익, 보험수익, 보증수익, 이자수익, 평가이익, 자산처분이익을 제외한 각종 수익을 말한다.
- (16) 잡이익: 교환수익 중 타 항목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수익

〈계정과목 해설서〉

VII. 기타수익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기타수익

(23) 잡이익

교환수익 중 “프로그램수익/비배분수익”의 타항목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수익으로 학교 및 단체의 실습연구 시험에 따른 부산물판매수입 및 실습 수입과 같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수익 등을 말한다.

Q292 지출금반납금 회계처리

질의내용(1)

○○기금에서 발생하는 사업비 정산금은 어떻게 회계처리 하나요? 잡이익으로 회계처리도 되나요?

질의내용(2)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보전금의 반납액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나요?

- ▶ 당기에 지출한 비용을 반납 받는 경우 해당 비용에서 차감하며, 당기에 과오가 아닌 사유로 전기 이전의 지출금을 반납하는 경우 ‘기타수익’ 중 ‘지출금반납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 ‘잡이익’은 교환수익 중 타 항목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수익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수익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 29의2. (당기지출금의 반납) 국가회계실체가 당기에 지출한 비용을 반납 받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비용에서 차감한다.
- 29의3. (전기 이전 지출금의 반납) 국가회계실체가 전기 이전에 지출한 비용을 반납 받는 경우 반납의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 (2) 과오가 아닌 사유로 전기 이전의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지출금반납금”으로 처리한다.

Q293 보조비 지급 후 보조비 사용내역의 회계처리 여부

질의내용(1)

기금에서 외부에 기타민간보조비를 지출 하였고, 이를 수령한 기관에서 보조비 중 일부를 보험료로 지급하였습니다. 수령기관에서 보험료 지급 시 기금에서 선급비용을 인식해야 하나요?

질의내용(2)

기금에서 미술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비가 지원받는 기관의 '운영비'에 해당하므로 기금의 관리운영비로 계상하여야 하나요? 관리운영비가 아니라면 비배분 비용에 해당하나요?

- ▶ '보조비'란 국가회계실체가 다른 경제주체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국가회계실체는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며, 수령한 기관의 보조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추가적인 회계처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령한 기관의 사용내역에 따라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등으로 원가 구분하지 아니합니다.
- 보조비는 지급 시 비용처리하며, 지급된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총원가로 계상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11. (보조비) "보조비"란 국가가 다른 경제주체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중 하나로써 공공기관보조비, 민간보조비, 자치단체보조비, 해외보조비, 교부금을 말한다.
-

3.비용의 표시

Q294 전출금 지급 시 순자산변동표와 재정운영표에 반영하는 기준

질 의 내 용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때 순자산변동표의 무상이전지출이 아닌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 ▶ 기금이 일반회계에 지급한 전출금은 ‘무상이전지출’ 중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재정운영표상 ‘비교환수익 등’으로 표시합니다.
- ▶ 전출금과 같은 재원의 이전은 국가회계실체(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의 특성에 따라 순자산변동표와 재정운영표로 구분됩니다.
 - 기금 및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에서 재원을 이전하는 경우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으로 표시하고,
 -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순자산변동표상 ‘재원의 조달 및 이전’ 항목에 표시합니다.

〈비용 회계처리지침〉

30. (비용의 표시) (1) 비용 중 원가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직접적·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로서 프로그램총원가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으로 구분되어 재정운영표에 표시된다.
- (2) 재원의 이전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순자산변동표 상 ‘재원의 조달 및 이전’ 항목에 반영되며,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의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 항목에 반영된다.

제12장 연금 회계처리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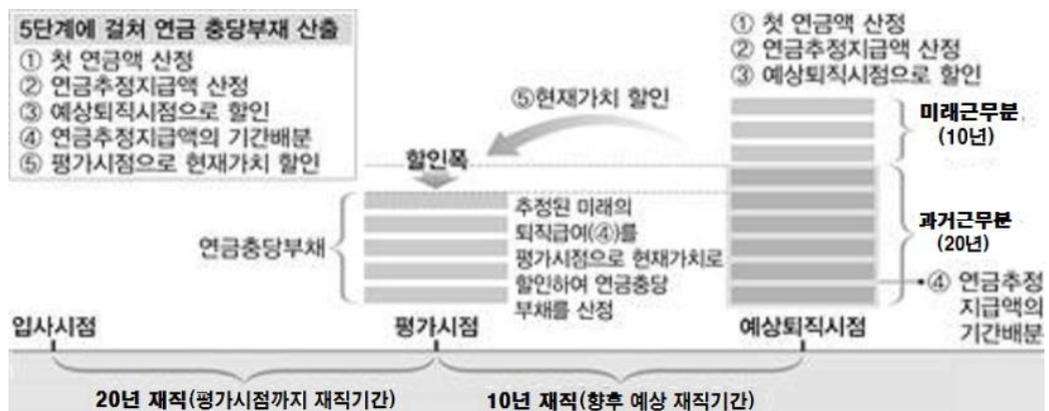
1. 용어의 정의

Q295 연금충당부채의 정의

질 의 내 용

연금충당부채 산정과 관련하여 “미래에 추정되는 연금지급액 전부를 연금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며, 재정상태표일 현재까지 할당된 금액만을 인식하게 됩니다”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이 문구대로라면 연금충당부채에 대해서는 미래의 추정이 필요없다는 뜻인가요?

- ▶ 연금충당부채의 산정 과정에는 반드시 미래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며, “재정상태표일 현재까지 할당된 금액만을 인식한다”는 의미는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할 때 추정을 통한 연금지급액 총액 중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채로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 예를 들어, 전체 추정 근무기간이 30년이고 기말 현재 근무기간이 20년인 경우, 총 연금지급액 추정 총액 중 2/3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부채로 인식합니다.



2. 퇴직수당총당부채의 인식 및 측정

Q296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총당부채 계상 여부

질 의 내 용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퇴직수당도 공무원 및 군인과 마찬가지로 퇴직수당총당부채를 계상할 수 있나요?

- ▶ 연금 회계처리지침 문단39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금액만을 미지급금으로 인식하고 퇴직수당총당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 국가회계실체가 고용주로서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공무원 및 군인에 대해서만 퇴직수당총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연금 회계처리지침〉

34. (퇴직수당총당부채의 인식 및 측정) (1)「공무원연금법」제42조의 퇴직수당 및「군인연금법」제6조의 퇴직수당은 연금총당부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수당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귀속되는 금액을 재정상태표일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퇴직수당총당부채”로 인식한다.
39. (퇴직수당부채의 인식)「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수당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3. 연금수익의 구성 및 인식

Q297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부처 예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인사혁신처에서 부담하지 않고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 ▶ 부처에서 공무원연금기금에 고용주부담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정운영표의 '복리후생비' 중 '공무원연금부담비'로 인식합니다.

〈연금 회계처리지침〉

33. (고용주실체의 비용인식 등) 공무원과 군인의 고용주체인 국가가 연금기금에 납부하는 금액은 항목별로 각각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1) 고용주부담금: 고용주실체가 해당 기금에 고용주부담금을 지급 시 재정운영표의 프로그램 총원가 또는 관리운영비의 "복리후생비"로 인식한다. 다만, 특정 국가회계실체가 다른 국가 회계실체가 납부하여야 할 고용주부담금을 연금기금에 일괄 납부하는 경우, 일괄 납부하는 국가회계실체는 순자산변동표의 "기타재원이전"으로 인식하고 본래 납부하여야하는 국가회계 실체는 순자산변동표의 "기타재원조달"로 인식한다.

Q298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인사혁신처 예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

질의내용(1)

인사혁신처에서 타 부처를 대신하여 공무원연금기금에 지급한 공무원연금고용주부담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 인사혁신처가 국가 각 부처의 공무원연금 고용주부담금을 ‘전출금’ 예산을 통해 일괄적으로 공무원연금기금에 납부하는 경우 인사혁신처가 납부하는 타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용주부담금은 순자산변동표상의 ‘기타재원이전’으로 처리하고, 본래 납부해야 할 중앙관서는 같은 금액을 순자산변동표의 ‘기타재원조달’로 인식하여 부처 간 내부거래 제거되도록 해야 합니다.

질의내용(2)

○○부 일반회계가 인사혁신처로부터 배부 받은 공무원연금부담비(기타재원조달)는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나요?

▶ 인사혁신처가 ○○부 일반회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부담비를 대신 공무원연금기금에 지급하는 경우, ○○부 일반회계에서는 재정운영표의 ‘복리후생비’ 중 ‘공무원연금부담비’로 인식하면서 상대계정은 순자산변동표의 ‘기타재원조달’로 인식합니다.

<연금 회계처리지침>

33. (고용주실체의 비용인식 등) 공무원과 군인의 고용주체인 국가가 연금기금에 납부하는 금액은 항목별로 각각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1) 고용주부담금: 고용주실체가 해당 기금에 고용주부담금을 지급 시 재정운영표의 프로그램 총원가 또는 관리운영비의 “복리후생비”로 인식한다. 다만, 특정 국가회계실체가 다른 국가회계실체가 납부하여야 할 고용주부담금을 연금기금에 일괄 납부하는 경우, 일괄 납부하는 국가회계실체는 순자산변동표의 “기타재원이전”으로 인식하고 본래 납부하여야 하는 국가회계실체는 순자산변동표의 “기타재원조달”로 인식한다.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제13장 ▶ 보험 회계처리지침

1. 보험충당부채의 인식 및 평가

Q299 보험충당부채 산정방식

질 의 내 용

보험충당부채를 기금의 설치근거법령 등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 등으로 산정하여 평가하여도 괜찮나요?

- ▶ 보험 회계처리지침 문단5에 따르면 관련법령에 의한 적립금과 준비금 산정 방식이 보험충당부채의 평가 방식과 유사한 경우 그 적립금과 준비금을 보험충당부채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 회계처리지침〉

5. (보험충당부채의 평가) (1) “보험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보험금 지급예상액과 재정상태표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장래 발생할 보험사고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지급예상액으로 구성된다.
- (2) 관련법령에 의한 적립금과 준비금 산정 방식이 (1)의 보험금예상지급액 산정방식과 유사한 경우 그 적립금과 준비금을 “보험충당부채”로 본다. 다만,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보험충당부채”가 아닌 “기타부채”로 표시한다.

2. 보험수익·비용의 인식 및 측정

Q300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증감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기타부채에 포함되는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이 전기 대비 증가(전입)하거나 감소(환입)할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 하나요?

- ▶ 보험 회계처리지침 문단10에 따라 '기타부채'에 포함되는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이 증가하는 경우 '미경과보험료적립금전입액'으로 처리하며, 감소할 경우 그 환입액을 우선 '미경과보험료적립금전입액'에서 차감하되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미경과보험료적립금환입액'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보험 회계처리지침〉

10.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관련 비용의 인식) “기타부채”에 포함되는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이 증가하는 경우 “미경과보험료적립금전입액”으로 처리하며, 감소할 경우에는 그 환입액을 “미경과보험료적립금전입액”에서 차감하되 감소액이 “미경과보험료적립금전입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미경과보험료적립금환입액”으로 회계처리한다.

제14장 ▶ 보증 회계처리지침

1. 보증총당부채의 인식 및 평가

Q301 보증비용의 측정

질 의 내 용

보증 회계처리지침 문단9에서 ‘보증비용은 직전 재정상태표일과 비교한 보증총당부채 증감액으로 재정운영표에 인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회계연도 중 보증채무 이행으로 지급된 금액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보증채무 이행 시 신용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 실체가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총당부채에서 차감하거나 보증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구상채권’으로 별도 인식됩니다.
- 따라서 보증비용은 보증 회계처리지침 문단9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재정상태표일 사이의 보증총당부채의 증감액으로 인식합니다.

〈보증 회계처리지침〉

5. (보증총당부채의 평가) “보증총당부채”는 보증약정 등에 따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국가 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피보증자의 신용위험, 경험손실율 및 예상손실율 등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추정 손실예상액을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할 수 있다.
9. (보증비용의 인식 및 측정) “보증비용”은 국가회계실체가 보증채무 이행 가능성을 추정하여 “보증 총당부채”가 증가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증비용”은 직전 재정상태표일과 비교한 “보증 총당부채” 증감액을 재정운영표에 프로그램총원가로 인식하며, 그 금액이 부(負)의 금액인 경우 프로그램수익으로 인식한다.

제15장 ▶ 용자 회계처리지침

1. 적용범위

Q302 용자보조원가충당금 인식의 주체

질 의 내 용

AA기금은 BB부로부터 무이자로 조달받은 재원을 바탕으로 학자금 대여금을 역시 무이자로 대여해주고 있으며, 이는 저리 용자사업에 해당합니다.

용자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해당 저리 용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 국가회계 실체는 재원의 조달 원천인 BB부인가요? 아니면 용자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AA기금인가요?

- ▶ 용자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용자보조원가충당금 및 용자보조비용을 계상해야 할 국가회계 실체는 해당 용자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AA기금입니다.
- BB부의 경우 AA기금에 대해 재원을 지원할 뿐이며 해당 용자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AA기금에 있으므로 BB부의 용자사업으로 처리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습니다.

〈용자 회계처리지침〉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용자를 제공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Q303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는 용자사업의 범위

질 의 내 용

용자 회계처리지침 문단23에 따라 사업 관련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는 용자사업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 용자 회계처리지침 문단23의 주석 공시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지침 문단2의 적용범위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용자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용자 회계처리지침〉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용자를 제공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23. (주석사항) 용자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1) 용자사업의 개요
 - (2) 적용이자율, 사업기간 및 용자조건
 - (3) 당기 및 전기 용자금지원액
 - (4) 당기 및 전기 용자금회수액
 - (5) 당기 및 전기 재정상태표일 현재 용자금잔액
 - (6) 당기 및 전기에 인식한 용자보조비용
 - (7)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Q304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여금의 회계처리

질의내용(1)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해당 대여금의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 ▶ 임직원 대상 대여금은 '장·단기 용자금'으로 회계처리 하되, 유효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단기저리용자금'으로 처리하고 용자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용자 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2)

○○기금에서 계상하고 있는 ○○공단 직원에 대한 용자금도 용자보조원가충당금 설정 대상이 되나요?

- ▶ ○○기금이 대여하고 있는 ○○공단 직원에 대한 용자금이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용자금인 경우 용자보조원가충당금 설정대상이 됩니다.

질의내용(3)

용자 회계처리지침 문단2에 따른 적용범위에 기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용자도 포함 되나요?

- ▶ 유효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용자금 역시 용자 회계처리지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용자금은 2013년 1월 1일부터 해당 지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용자 회계처리지침〉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용자를 제공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실무해설5. (☞ 관련문단 27)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용자금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구「용자회계준칙」을 적용하였다.

「용자회계준칙」부칙 제1조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용자금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이 준칙을 적용한다.
 [제정일 2012.12.1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12. (☞ 관련문단 9) 대여금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자산	유동자산	단기대여금	단기전대차관대여금	정부내단기전대차관대여금
				정부외단기전대차관대여금
			정부내단기예탁금	
			단기용자금	단기저리용자금 단기일반용자금
	투자자산	장기대여금	장기전대차관대여금	정부내장기전대차관대여금
				정부외장기전대차관대여금
			정부내장기예탁금	
			장기용자금	장기저리용자금 장기일반용자금

Q305 단기용자금에 대한 용자보조원가충당금 산정 필요 여부

질 의 내 용

단기용자금에도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산정하여야 하나요?

- ▶ 용자 회계처리지침 문단2에 따라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용자를 제공하는 경우 단기용자금에 대해서도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용자를 실행한 경우 이에 따른 보조효과를 정확하게 산출하여야 하므로 단기용자금도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용자 회계처리지침〉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용자를 제공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문단제정근거2. (☞ 관련문단 9. (1))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용자를 실행한 경우 이에 따른 보조효과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이 예규의 제정 취지임을 고려하여, 단기용자금에 대해서도 계산의 실익을 이유로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Q306 **용자보조원가총당금 설정 대상 용자금**

질 의 내 용

유효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용자는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을 계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 ▶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용자는 용자 회계처리지침을 적용하여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을 계상합니다.
- ▶ 유효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용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 장·단기일반용자금대손총당금 등을 계상합니다.

〈용자 회계처리지침〉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용자를 제공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계정과목 총괄표〉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자산	유동자산	단기대여금	단기용자금	단기저리용자금 단기일반용자금
		단기대여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단기용자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단기일반용자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단기대여금대손총당금	단기용자금대손총당금	단기용자보조원가총당금 단기일반용자금대손총당금
		장기대여금	장기용자금	장기저리용자금 장기일반용자금
	투자자산	장기대여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장기용자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장기일반용자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장기대여금대손총당금	장기용자금대손총당금	장기용자보조원가총당금 장기일반용자금대손총당금

Q307 국고채이자율 확인 방법

질 의 내 용

용자 회계처리지침 문단4 ‘유효이자율은 용자금과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을 적용한다.’에서 ‘국채이자율’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 ‘국채이자율’은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국고채의 유통수익률을 의미하며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의 ‘시장금리’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Q308 **용자금의 현재가치 평가 여부**

질 의 내 용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제공한 용자금에 대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의 현재가치평가를 적용하나요?

- ▶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제공하는 용자금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용자 회계처리지침을 적용합니다.
- 따라서 용자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현재가치 평가하여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며, 매년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평가해야 합니다.

〈용자 회계처리지침〉

-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용자를 제공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 4.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의 최초 인식) (1)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은 용자 실행 당시 용자금 원금에서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를 빼서 계산한다.
(2) (1)의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는 용자금으로부터의 추정 순현금유입액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3) (2)의 유효이자율은 용자금과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용자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조달된 재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재원의 조달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 10.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의 상각) (1) 문단4에 따라 인식한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한다.
- 12.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의 평가) (1)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은 매년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적용한다.
(2)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제공하는 용자금(「용자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2. 순현금흐름

Q309 용자금 채무불이행 예상액 산정 방법

질 의 내 용

용자금 채무불이행 예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 용자 회계처리지침 문단8에 따라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예상액을 추정할 때 과거 용자금의 채무불이행 실적, 용자금 회수에 영향을 주는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 상황, 차입자의 재무상태, 용자금에 대한 담보물의 가치 및 그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용자 회계처리지침〉

8. (채무불이행 예상액 추정의 기준) (1) 문단7에 따른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예상액을 추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 과거 용자금의 채무불이행 실적
 - (나) 용자금 회수에 영향을 주는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 상황
 - (다) 차입자의 재무상태
 - (라) 용자금에 대한 담보물의 가치 및 그 변화
- (2) (1)에 따른 채무불이행 예상액 추정의 기준은 최초 추정할 경우와 이후 평가할 경우에 모두 적용한다.

Q310 순현금유입액 측정 시 채권잔액비례법 사용 가능 여부

질 의 내 용

○○기금의 외화대여금에 대한 용자보조원가총당금 산정을 위해 순현금유입액을 추정하고자 하며, 이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회계법인에 자문을 구한 결과 외화대여금 잔액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채권잔액비례법을 사용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채권잔액비례법을 사용하여도 무방한가요?

▶ 순현금유입액 추정 시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예상액은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과 동일하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문결과로 제시받은 채권잔액비례법이 기금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이라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용자 회계처리지침>

8. (채무불이행 예상액 추정의 기준) (1) 문단7에 따른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예상액을 추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 과거 용자금의 채무불이행 실적
 - (나) 용자금 회수에 영향을 주는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 상황
 - (다) 차입자의 재무상태
 - (라) 용자금에 대한 담보물의 가치 및 그 변화
- (2) (1)에 따른 채무불이행 예상액 추정의 기준은 최초 추정할 경우와 이후 평가할 경우에 모두 적용한다.

3. 유효이자율

Q311 용자보조원가총당금 계산 시 적용하는 유효이자율

질 의 내 용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할 유효이자율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요?

1. 대부시점(당일)의 국고채 이자율 적용
2. 대부시점이 속하는 월(말)의 국고채 이자율 적용
3. 한 해 동안의 가중평균 국고채 이자율 적용

▶ 용자 회계처리지침 문단9에 따라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의 최초 인식 시 적용하는 유효이자율은 용자금 실행시점의 용자금과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요한 차이가 없을 경우 용자금이 실행된 회계기간의 가중평균이자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대부시점의 국고채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효이자율과 중요한 차이가 없다면 한 해 동안의 가중평균 이자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자 회계처리지침>

9. (유효이자율 적용) (1)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의 최초 인식 시 적용하는 유효이자율은 용자금과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용자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조달된 재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재원의 조달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적으로 조달된 재원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가중평균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 (가) 유효이자율은 용자금 실행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중요한 차이가 없을 경우 용자금이 실행된 회계기간의 가중평균한 이자율을 사용할 수 있다.
 - (나)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이 없는 경우 용자금의 만기와 가장 근접한 국채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한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 (다) 용자사업을 위해 직접 조달한 재원이 조달이자율이 없는 출연금 등 정부 예산인 경우에도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 (라) 동일한 종류의 용자금에 대해서도 개별 용자금별로 유효이자율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 용자금별로 유효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2)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을 평가할 때에는 용자보조원가총당금 최초 인식 시 적용한 유효이자율을 계속 적용한다.

Q312 **용자보조원가총당금 계산 시 적용하는 유효이자율**

질 의 내 용

기존에 주택계정에서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용자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 재원의 조달이자율을 적용하여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계정을 신설하여 용자사업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용자사업의 재원은 주택계정으로부터 수령한 주택계정전입금이고 이 전입금의 재원은 앞서 언급한 국민주택채권 발행 자금입니다.

이 경우 신설된 도시계정에서 실시한 용자사업의 용자보조원가총당금 인식 시 적용할 유효이자율은 무엇인가요? 기존 주택계정의 용자보조원가총당금 인식 시 적용한 유효이자율을 적용해도 되나요?

- ▶ 용자보조원가총당금 최초 인식 시 적용할 유효이자율은 용자금과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용자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조달된 재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재원의 조달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신설된 도시계정에서 실시한 용자사업을 위해 조달한 재원이 주택계정으로 부터 수령한 전입금이고, 그 전입금의 재원은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이므로, 도시계정과 주택계정의 용자사업 조달 재원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계정의 용자보조원가총당금 인식 시에도 주택계정에서 적용한 조달이자율을 유효이자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용자 회계처리지침〉

9. (유효이자율 적용) (1)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의 최초 인식 시 적용하는 유효이자율은 용자금과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용자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조달된 재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재원의 조달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적으로 조달된 재원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가중평균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 (가) 유효이자율은 용자금 실행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중요한 차이가 없을 경우 용자금이 실행된 회계기간의 가중평균한 이자율을 사용할 수 있다.
 - (나)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이 없는 경우 용자금의 만기와 가장 근접한 국채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한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 (다) 용자사업을 위해 직접 조달한 재원이 조달이자율이 없는 출연금 등 정부 예산인 경우에도 국채이자율을 적용한다.
 - (라) 동일한 종류의 용자금에 대해서도 개별 용자금별로 유효이자율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 용자금별로 유효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2)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을 평가할 때에는 용자보조원가총당금 최초 인식 시 적용한 유효이자율을 계속 적용한다.

4.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의 상각 및 평가

Q313 용자금에 대한 미수이자 계상 시 적용할 이자율

질 의 내 용

기금에서는 ○○은행과 용자약정을 체결하여 용자금을 지급하고, ○○은행에서는 사업주들과 개별용자약정을 통해 대출을 시행합니다. 미수이자 계상 시 이자율을 어떤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 ▶ 기금은 ○○은행과 용자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은행과 약정 시 정한 표면이자율을 적용하여 미수이자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5. 제거(용자금의 매각 및 대손)

Q314 용자금 정상 회수의 경우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의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용자금(만기일시상환조건) 실행 당시 채무불이행이 예상되어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을 설정 하였으나, 만기가 되었을 때 채무불이행 없이 정상적으로 회수가 된 경우 기존에 인식한 용자보조원가총당금에 대해 어떤 회계처리가 필요한가요?

- ▶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이 채무불이행 예상액만큼 남아 있게 되므로 용자금 회수 시점의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은 '용자보조원가총당금환입'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 예를 들어, 1,000원의 원금상환 불이행이 예상되었던 경우라면, 만기에 용자보조원가 총당금 1,000원이 상각되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용자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었으므로 용자보조원가총당금 잔액 1,000원을 환입합니다.

차) 용자보조원가총당금	1,000	대) 용자보조원가총당금환입	1,000
--------------	-------	----------------	-------

Q315 용자금 회수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기금에서 ○○은행과 용자약정을 체결하여 용자금을 지급했고, ○○은행에서는 사업주들과 개별용자약정을 통해 대출을 시행해 오던 중 동 용자금이 실수요자에게 용자되지 않고 기금으로 회수된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 ▶ ○○은행에서 해당 정책자금을 실수요자에게 용자하지 못하고 기금에 반납한 경우 동 반납액을 기존의 용자금 회수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합니다.
- 또한 기존 용자금의 조기 회수로 인해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이 변동될 것이므로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용자 회계처리지침 문단13에 따라 용자보조원가총당금 변경액을 산출한 후 동 금액을 용자보조비용에서 차감합니다. 만약 차감 후 용자보조비용 금액이 부(-)의 금액일 경우에는 그 부(-)의 금액은 용자보조원가총당금환입으로 인식합니다.

〈용자 회계처리지침〉

12.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의 평가) (1)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은 매년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1)에 따라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가) 용자금의 조기상환
 - (나) 채무불이행
 - (다) 체납 및 회수
 - (라) 기타 현금유출과 유입에 영향을 주는 요소
13.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의 변경액 측정) (1)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의 변경 시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의 변경액은 다음의 순서로 산출한다.
 - (가) 평가 시점에 변경된 용자금 순현금유입액을 재추정
 - (나) (가)에서 추정된 순현금유입액을 용자금 실행 시 사용한 유효이자율로 할인
 - (다)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용자금 원금에서 당 회계연도 현금회수액을 차감하고, (나)에서 구한 순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차감
 - (라) 변경전 용자보조원가총당금 잔액에서 (다)의 금액을 차감하여 용자보조원가총당금 변경액을 산출
- (2) (1)에 따른 용자보조원가총당금 변경액을 당기의 “용자보조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이 경우 “용자보조비용”에서 용자보조원가총당금 감소액을 뺀 금액이 음인 경우 그 차액을 “용자보조원가총당금환입”으로 인식한다.

6. 수익과 비용의 인식

Q316 융자보조비용(융자보조원가총당금환입), 융자금이자수익의 재정운영표상 표시

질의내용(1)

융자보조비용(융자보조원가총당금환입)은 프로그램총원가와 관리운영비(프로그램수익과 비배분수익)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질의내용(2)

기금이 융자금 재원을 차입하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는 경우,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융자보조비용, 융자금이자수익은 각각 프로그램총원가와 프로그램수익으로 분류되어야 하나요?

- ▶ 융자금 재원의 자체조달 여부와 상관없이 융자보조비용은 융자 회계처리지침 문단20에 따라 프로그램총원가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 ▶ 또한, 융자금이자수익은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문단12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응 가능한 교환수익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수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융자 회계처리지침〉

20. (수익과 비용의 인식) (1) 융자금의 원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한다. 다만, 원금이나 이자 등의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 (2) 융자보조원가총당금과 관련하여 인식한 “융자보조비용”과 “융자보조원가총당금환입”은 각각 프로그램총원가와 프로그램수익에 포함한다.
- (3) 융자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신용조사비용, 법률자문비용 등은 “관리운영비”에 포함한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2.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의 구분집계) 수익은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으로 구분하여 집계되어야 한다.
- (1) 교환수익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프로그램 대응 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수익과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도 이전까지 일반 회계는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만을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한다.

7. 재무제표 표시

Q317 융자금의 표시(유동성 대체)

질 의 내 용

융자금을 유동성 대체하는 경우 관련 융자보조원가총당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융자금은 재정상태표일로부터 상환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단기대여금'으로 유동성 대체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현금유입액(원금+이자) 관련 융자보조원가총당금도 함께 '단기융자보조원가총당금'으로 유동성 대체하여야 합니다.

〈융자 회계처리지침〉

21. (융자금의 표시) 융자금은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회수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유동자산의 "단기대여금"으로 분류하고 1년 후에 도래하는 경우 투자자산의 "장기대여금"으로 분류한다. 다만, 재정상태표일 현재 해당 투자자산의 회수일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유동성대체를 통하여 유동자산의 "단기대여금"으로 재분류한다.

실무해설3. (☞ 관련문단 21) 저리융자금 상세 계정과목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자산	유동자산	단기대여금	단기융자금	단기저리융자금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단기융자금대손충당금	단기융자보조원가총당금
자산	투자자산	장기대여금	장기융자금	장기저리융자금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	장기융자금대손충당금	장기융자보조원가총당금

8. 경과조치

Q318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융자금에 대한 대손추산액의 처리

질 의 내 용

○○기금에서 운영 중인 융자사업 중 2009년 이전에 실행되어 12월 31일 현재 회수만 이루어지고 있는 융자사업이 일부 존재합니다. 해당 융자금에 대한 대손추산액은 융자금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가요?

- ▶ 융자 회계처리지침 문단27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융자금은 대손추산액을 융자보조원가충당금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융자금대손충당금’은 유효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여한 융자금에 대해 인식한 대손추산액을 의미합니다.

〈융자 회계처리지침〉

27.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인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실행된 융자금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며, 2009년 12월 31일 이전 실행된 융자금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대손추산액을 융자보조원가충당금으로 인식한다.

〈계정과목 해설서〉

V. 장·단기대여금

중분류(II)	회계과목(III)	관리과목(IV)	세부관리과목(V)
유동자산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단기융자금대손충당금	단기융자보조원가충당금
			단기일반융자금대손충당금
투자자산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장기융자금대손충당금	장기융자보조원가충당금
			장기일반융자금대손충당금

제16장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1.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의 회계처리

Q319 임대형 민자사업(BTL) 계약변경 시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한 계약 조건(임대료)이 도중에 변동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한 계약 조건이 변경된 시점에 변경된 임대료를 반영하여 'BTL임대료장기미지급금' 과 'BTL임대료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을 조정하고, 차액은 당기손익(채무면제이익 등)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9. (취득원가)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에 의해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민간투자비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임대료지급액의 명목가액을 "BTL임대료미지급금"으로 계상한다. 임대료지급액의 명목가액과 민간투자비의 차액은 "BTL임대료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다.

Q320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자산 인식 시점**

질 의 내 용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자산 인식 시점은 언제인가요?

- ▶ 사용수익 기부자산이란 민간사업자가 건설하여 사용수익권(BTO) 또는 시설임대·사용료(BTL)의 대가로 국가에 기부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 ▶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문단4 및 문단8에 따르면 수익형 민자사업(BTO)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은 자산의 준공 후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때에 인식합니다.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 4. (인식조건) (1)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은 자산의 준공 후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때에 인식한다.
(2)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된 관리운영권은 자산을 취득하는 때에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인 “사용수익권”으로 인식한다.
 - 8. (인식조건)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은 자산의 준공 후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때에 인식한다.
-

제17장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 일반사항

Q321 프로그램명이 변경된 경우 재정운영표상 표시 방법

질 의 내 용

전기부터 존재하던 프로그램이 올해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명칭이 변경된 경우 재정 운영표상 어떻게 표시하나요?

▶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라 프로그램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프로그램으로 반영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5. (원가계산의 일반원칙)

(2) 원가는 국가회계실체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라 집행한 예산을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Q322 국가회계의 원가정보 집계단위

질 의 내 용

국가회계의 경우 원가 정보를 어느 수준으로 집계하고 공시하고 있나요?

- ▶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에 따라 프로그램(정책사업) 수준으로 원가를 집계하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 원가 집계 대상은 사업예산의 편성단위에서 통제나 의사결정이 필요하여 원가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원가계산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원가 집계 대상은 재정운영표 작성단위인 프로그램으로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9. (원가 집계 대상의 설정) (1) 원가 집계 대상은 사업예산의 편성단위에서 통제나 의사결정이 필요하여 원가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관리자, 예산편성 관계자 등 정보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주요 사업의 원가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가 집계 대상에 따라 원가를 산출하여 관리하되, 재정운영표에는 프로그램별로 총원가와 순원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실무해설2. (☞ 관련문단 9. (2)) 원가계산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원가 집계 대상은 재정운영표 작성단위인 프로그램으로 통일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원가계산 목적에 따라 별도의 원가 집계 대상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향후 원가계산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 자원의 효율적 활용여부 평가, 원가회수율 파악을 통한 사업성과 측정 등 국가회계실체가 통제나 의사결정을 위해 개별 측정이 필요한 단위로 원가집계대상을 설정할 수 있다.

2. 비용과 수익의 집계

Q323 일반회계의 프로그램수익

질의내용(1)

일반회계의 프로그램수익은 수입대체경비수입만 있나요?

질의내용(2)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재평가손실환입금액을 프로그램수익으로 계상할 수 있나요?

▶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문단12.(1)에 따라 일반회계는 수입대체경비수입만을 프로그램 수익으로 구분합니다.

○ 따라서 일반회계의 재평가손실환입금액은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2.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의 구분집계) 수익은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으로 구분하여 집계되어야 한다.

(1) 교환수익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한 수익으로 프로그램 대응 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수익과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도 이전까지 일반회계는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만을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한다.

문단제정근거2. (☞ 관련문단 12. (1)) 현재 일반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수입대체경비수입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은 프로그램별로 대응이 어려우므로 프로그램수익의 별도 표시를 유예한다.

3.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의 구분

Q324 감가상각비(프로그램총원가 vs 비배분비용)

질의내용(1)

자산과 관련해서 감가상각비가 모두 비배분비용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회계 처리가 적절한가요?

질의내용(2)

무상으로 취득한 건물을 이용한 부수적인 사업으로서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 중 어떤 항목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질의내용(3)

지금 설립 당시 취득했던 자산에 대해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전기까지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비배분비용으로 인식해도 되나요?

- ▶ 감가상각비가 발생한 자산을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확인 후 사용목적 및 프로그램과의 대응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또는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프로그램총원가'로 구분하고, 기관의 기본 기능 수행 등 행정운영과 관련된 경우 '관리운영비'로 구분합니다.
- 관리운영비에 해당하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3. (비배분비용)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2019회계연도부터 적용)

Q325 자산재평가손실(프로그램총원가 vs 비배분비용)

질의내용(1)

자산과 관련해서 자산재평가손실이 비배분비용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적절한가요?

질의내용(2)

재평가손실이 비배분비용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한가요?

▶ 재평가손실이 발생한 자산이 특정 프로그램에 대응되는 경우 프로그램총원가로 구분하고, 대응되지 않는 경우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3. (비배분비용)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2019회계연도부터 적용)

실무해설8. (☞ 관련문단 13) 집계된 비용 중 특정프로그램과 직·간접적 관련이 없어 프로그램으로 대응되지 않는 비용은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 종료된 프로그램에 대응되는 경우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한다.(2019회계연도부터 적용)

Q326 자산폐기손실(프로그램충원가 vs 비배분비용)

질 의 내 용

자산폐기손실은 재정운영표에서 프로그램충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나요?

- ▶ 자산폐기손실이 발생한 자산을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확인 후 사용목적 및 프로그램과의 대응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충원가, 관리운영비 또는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프로그램충원가'로 구분하고, 기관의 기본 기능 수행 등 행정운영과 관련된 경우 '관리운영비'로 구분합니다.
 - 관리운영비에 해당하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3. (비배분비용)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2019회계연도부터 적용)
-

Q327 외화평가손실(프로그램총원가 vs 비배분비용)

질 의 내 용

외화평가손실은 무조건 비배분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나요?

- ▶ 외화평가손실이 프로그램에 대응되는 경우 프로그램총원가로 구분하고, 대응되지 않는 경우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합니다.
- ▶ 만약 외화평가손실이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인 경우 주된 사업 여부로 판단하여 프로그램총원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 13. (비배분비용)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2019회계연도부터 적용)
- 15.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른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은 다음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
 - (1)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이 당해 회계실체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총원가와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 (2)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로 집계된 공무원연금부담금, 군인연금부담금, 건강보험국가부담금은 복리후생비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프로그램총원가 혹은 관리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다.

Q328 미수채권대손상각비(프로그램총원가 vs 비배분비용)

질 의 내 용

민간경상보조금을 정산하여 환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인식한 대손상각비를 재정운영표상 어떤 항목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 ▶ 보조금을 정산, 환수하는 경우 과오로 인한 반납인지 여부에 따라 '과오지급금회수금' 또는 '지출금반납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 동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의 대손상각비 역시 프로그램대응 여부에 따라 프로그램 원가(또는 관리운영비)나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 13. (비배분비용)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2019회계연도부터 적용)

<비용 회계처리지침>

- 29의3. (전기 이전 지출금의 반납) 국가회계실체가 전기 이전에 지출한 비용을 반납 받는 경우 반납의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 (1) 전기 이전에 과오로 초과지급한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과오지급금회수금"으로 처리한다.
 - (2) 과오가 아닌 사유로 전기 이전의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지출금반납금"으로 처리한다.

Q329 여유자금운용 투자증권처분손실(프로그램총원가 vs 비배분비용)

질 의 내 용

여유자금운용 과정에서 장기투자증권처분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유자금운용 프로그램에서 발생하였으니 프로그램총원가에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 ▶ 여유자금운영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른 보전지출입니다.
-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문단15에 따라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은 비배분비용이나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지출이 당해 회계실체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총원가와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5.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른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은 다음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
- (1)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이 당해 회계실체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총원가와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 (2)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로 집계된 공무원연금부담금, 군인연금부담금, 건강보험국가부담금은 복리후생비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프로그램총원가 또는 관리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다.

실무해설10. (☞ 관련문단 15. (2))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의하여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은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이 아니지만 코드처리를 위하여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였다.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예시

구분	프로그램
내부거래지출	회계간거래(전출금), 회계간거래(예탁금), 회계간거래(예수원금상환), 회계간거래(예수이자상환),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회계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회계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회계기금간거래(공무원연금부담금), 기금간거래(전출금), 기금간거래(예탁금),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계정간거래(전출금), 계정간거래(예탁금), 계정간거래(예수원금상환), 계정간거래(예수이자상환)
보전지출	여유자금운용, 차입금원금상환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Q330 금융리스이자비용(프로그램총원가 vs 비배분비용)

질 의 내 용

금융리스이자비용이 전기까지는 프로그램총원가로 분류되었는데, 당기부터는 비배분비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이자비용은 무조건 비배분비용으로 분류해야 하는 건가요?

- ▶ 금융리스이자비용이라 하더라도 특정 프로그램과 대응되는 경우 해당 비용을 프로그램 총원가로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료 등으로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경우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3. (비배분비용)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2019회계연도부터 적용)

실무해설8. (☞ 관련문단 13) 집계된 비용 중 특정프로그램과 직·간접적 관련이 없어 프로그램으로 대응되지 않는 비용은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 종료된 프로그램에 대응되는 경우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한다.(2019회계연도부터 적용)

Q331 인건비, 복리후생비의 원가구분(비배분비용 vs 관리운영비)

질 의 내 용

○○부의 전기 재정운영표를 보니 비배분비용 항목에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계정과목들은 관리운영비로 볼 수 있는데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상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 있나요?

- ▶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에 따라 비배분비용과 관리운영비는 계정과목(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합니다.
- 동일한 인건비라도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프로그램총원가’로 구분하고, 기관의 기본 기능 수행 등 행정운영과 관련된 경우 ‘관리운영비’로 구분합니다.
- 관리운영비에 해당하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 13. (비배분비용)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2019회계연도부터 적용)
 - 20. (관리운영비) (1)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및 특정 사업의 행정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를 말한다.
- 실무해설8. (☞ 관련문단 13) 집계된 비용 중 특정프로그램과 직·간접적 관련이 없어 프로그램으로 대응되지 않는 비용은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 종료된 프로그램에 대응되는 경우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한다.(2019회계연도부터 적용)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Q332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비용의 원가 구분

질의내용(1)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은 비배분비용으로 분류하면 되나요?

질의내용(2)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해서 비배분수익으로 분류하면 되나요?

▶ ‘경상적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프로그램에 대응되는 비용·수익은 프로그램충원가와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합니다.

- 다만, 특정프로그램으로 대응되지 않거나 프로그램이 종료된 경우에는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3. (비배분비용)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2019회계연도부터 적용)
14. (비배분수익) 비배분수익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을 말한다.(2019회계연도부터 적용)

실무해설8. (☞ 관련문단 13) 집계된 비용 중 특정프로그램과 직·간접적 관련이 없어 프로그램으로 대응되지 않는 비용은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 종료된 프로그램에 대응되는 경우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한다.(2019회계연도부터 적용)

실무해설9. (☞ 관련문단 14) 집계된 수익 중 특정프로그램과 직·간접적 관련이 없어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은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수익이 종료된 프로그램에 대응되는 경우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2019회계연도부터 적용)

Q333 폐지된 용자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원가구분

질 의 내 용

폐지된 용자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상황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관련 수익과 비용을 프로그램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에 따라 종료·폐지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대응되는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비배분수익과 비배분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실무해설8. (☞ 관련문단 13) 집계된 비용 중 특정프로그램과 직·간접적 관련이 없어 프로그램으로 대응되지 않는 비용은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 종료된 프로그램에 대응되는 경우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한다.(2019회계연도부터 적용)

실무해설9. (☞ 관련문단 14) 집계된 수익 중 특정프로그램과 직·간접적 관련이 없어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은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수익이 종료된 프로그램에 대응되는 경우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2019회계연도부터 적용)

Q334 국고금운용수익계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원가구분

질 의 내 용

국고금운용수익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등 손익은 재정운영표상 비배분비용 또는 비배분수익으로 표시되는 것이 적절한가요?

- ▶ 국고금운용수익계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경우 국가회계실체 또는 중앙관서 재정운영표에 표시되지 않으며, 국가재정운영표상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영순원가에 표시됩니다.
-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문단13과 14에 따라 국고금 운용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으므로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 13. (비배분비용)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2019회계연도부터 적용)
 - 14. (비배분수익) 비배분수익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을 말한다.(2019회계연도부터 적용)
-

Q335 프로그램 관련 수익의 원가구분(프로그램수익 vs 비배분수익)

질 의 내 용

○○기금의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에서 보조금 운영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를 받는 경우 해당 수익금은 프로그램수익 또는 비배분수익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하나요?

- ▶ 집계된 수익 중 특정프로그램과 직·간접적 관련이 없어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은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하며, 프로그램으로 대응되는 경우 프로그램수익으로 분류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
- ▶ 보조금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과 관련성이 높아 해당 프로그램으로 대응시킬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수익으로 분류합니다.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 21. (비배분수익) 비배분수익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을 말한다.(201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 14. (비배분수익) 비배분수익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을 말한다.(201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

실무해설9. (☞ 관련문단 14) 집계된 수익 중 특정프로그램과 직·간접적 관련이 없어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은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수익이 종료된 프로그램에 대응되는 경우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201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

- 27. (프로그램수익) 프로그램수익이란 특정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프로그램총원가에서 차감할 수익을 말한다.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Q336 지출금반납금의 원가 구분(프로그램수익 vs 비배분수익)

질의내용(1)

○○기금에서 회계기간을 달리하여 반납된 프로그램 사업비는 프로그램 수익으로 인식 하나요?

질의내용(2)

○○기금에서 발생하는 사업비 정산금(지출금반납금)의 수익 구분기준(프로그램수익 vs. '비배분수익')은 무엇인가요?

- ▶ 반납된 사업비가 특정 프로그램에 대응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수익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 다만, 특정프로그램으로 대응되지 않거나 프로그램이 종료된 경우에는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3. (비배분비용)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2019회계연도부터 적용)
 - 실무해설8. (☞ 관련문단 13) 집계된 비용 중 특정프로그램과 직·간접적 관련이 없어 프로그램으로 대응되지 않는 비용은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 종료된 프로그램에 대응되는 경우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한다.(2019회계연도부터 적용)
-

Q337 용자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이자수익(프로그램수익 vs 비배분수익)

질 의 내 용

○○기금의 용자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프로그램수익과 비배분수익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나요?

- ▶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문단12에 따라 특정 프로그램에 대응되는 경우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하고, 대응되지 않는 경우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합니다.
- 용자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있고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 12.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의 구분집계) 수익은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으로 구분하여 집계되어야 한다.
 - (1) 교환수익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프로그램 대응 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수익과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도 이전까지 일반회계는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만을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한다.
- 14. (비배분수익) 비배분수익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을 말한다.(2019회계연도부터 적용)

Q338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수익(프로그램수익 vs 비배분수익)

질 의 내 용

○○부의 일반회계에서 운영 중인 병원의 수입은 프로그램수익인가요?

▶ 일반회계의 경우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만을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병원의 수입이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한다면 프로그램수익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2.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의 구분집계) 수익은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으로 구분하여 집계되어야 한다.
(1) 교환수익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프로그램 대응 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수익과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도 이전까지 일반회계는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만을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한다.
14. (비배분수익) 비배분수익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을 말한다.(2019회계연도부터 적용)

Q339 잡이익(프로그램수익 vs 비배분수익)

질 의 내 용

○○기금에서 발생한 잡이익을 프로그램수익으로 분류할 수 있나요?

- ▶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문단12에 따라 재화·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한 수익은 특정 프로그램에 대응되는 경우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하고, 대응되지 않는 경우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합니다.
- 프로그램에 대응되는 경우 ‘잡이익’도 프로그램수익으로 분류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 12.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의 구분집계) 수익은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으로 구분하여 집계되어야 한다.
 - (1) 교환수익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프로그램 대응 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수익과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도 이전까지 일반회계는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만을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한다.
- 14. (비배분수익) 비배분수익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을 말한다.(2019회계연도부터 적용)

Q340 이자수익(프로그램수익 vs 비배분수익)

질 의 내 용

○○기금의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 해당 이자수익이 프로그램에 대응되는 경우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하고, 대응되지 않는 경우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2.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의 구분집계) 수익은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으로 구분하여 집계되어야 한다.
 - (1) 교환수익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프로그램 대응 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수익과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도 이전까지 일반회계는 수입대체경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만을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한다.
 14. (비배분수익) 비배분수익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을 말한다.(2019회계연도부터 적용)
-

Q341 정부내전대차관이자수익(프로그램수익 vs 비배분수익)

질 의 내 용

○○기금의 정부내전대차관이자수익을 비배분수익으로 계상하나요? 아니면 프로그램 수익으로 계상하나요?

- ▶ 정부내전대차관이자수익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른 정부내 거래로서 타회계로부터 받은 전대차관 이자수입을 말합니다.
-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문단15에 따라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은 비배분비용이나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지출이 당해 회계실체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총원가와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부내전대차관이자수익이 회계실체의 주된 사업에서 발생한 경우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5.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른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은 다음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한다.
- (1)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이 당해 회계실체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 총원가와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 (2)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로 집계된 공무원연금부담금, 군인연금부담금, 건강보험국가부담금은 복리후생비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프로그램총원가 또는 관리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다.

실무해설10. (☞ 관련문단 15. (2))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의하여 내부거래 지출과 보전지출은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이 아니지만 코드처리를 위하여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였다.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예시

구분	프로그램
내부거래 지출	회계간거래(전출금), 회계간거래(예탁금), 회계간거래(예수원금상환), 회계간거래(예수이자상환),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회계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회계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회계기금간거래(공무원연금부담금), 기금간거래(전출금), 기금간거래(예탁금),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계정간거래(전출금), 계정간거래(예탁금), 계정간거래(예수원금상환), 계정간거래(예수이자상환)
보전지출	여유자금운용, 차입금원금상환

II.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4. 행정운영성 경비 구분

Q342 일반회계의 행정운영성경비의 구분

질 의 내 용

일반회계에서 개별 프로그램으로 추적 가능한 피복비 등 행정운영성 경비항목이 관리운영비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를 프로그램총원가로 분류할 수 있나요?

- ▶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문단17에 따라 행정형회계에 해당하는 일반회계는 행정운영성 경비를 모두 관리운영비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더라도 프로그램별로 배부하지 않습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6. (국가회계실체의 구분과 원가계산의 적용) (1) 국가회계실체는 그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행정형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업특별회계는 제외한다)와 같이 징수한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 (나) 사업형 회계는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나 기금과 같이 개별적인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독립적인 수익 창출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17. (행정운영성 경비의 구분) 행정운영성 경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자산취득원가에 계상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국가회계실체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행정형 회계는 행정운영성 경비를 모두 관리운영비로 구분한다.
 - (2) 사업형 회계는 사업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나 행정운영성 경비로 일괄적으로 집계되는 경우 간접원가와 관리운영비로 구분하여 간접원가를 프로그램별로 배부하여야 한다.

Q343 기금의 행정운영성경비 중 프로그램총원가 계상 여부

질 의 내 용

기금의 행정운영성경비 중 아래의 업무대행수수료와 행사진행경비를 프로그램총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적정한가요?

- 업무대행수수료 내역 : 국채취급수수료와 콜수수료
- 행사진행경비 : 업무협의비

▶ ‘업무대행수수료’와 ‘행사진행경비’가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원가인 경우 프로그램총원가로 계상합니다.

- 사업형회계에 해당하는 기금의 행정운영성경비는 간접원가와 관리운영비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으나 행정운영성경비로 일괄 집계된 경우 간접원가를 배부기준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별로 배부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6. (국가회계실체의 구분과 원가계산의 적용) (1) 국가회계실체는 그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행정형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업특별회계는 제외한다)와 같이 징수한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 (나) 사업형 회계는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나 기금과 같이 개별적인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독립적인 수익 창출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17. (행정운영성 경비의 구분) 행정운영성 경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자산취득원가에 계상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국가회계실체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행정형 회계는 행정운영성 경비를 모두 관리운영비로 구분한다.
 - (2) 사업형 회계는 사업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나 행정운영성 경비로 일괄적으로 집계되는 경우 간접원가와 관리운영비로 구분하여 간접원가를 프로그램별로 배부하여야 한다.
18. (직접원가) (1) 직접원가는 특정 사업에 직접 소요된 원가를 말하며, 다음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 (2) 직접원가는 원가 집계 대상에 직접 부과한다.

Q344 인건비의 원가구분(프로그램총원가 vs 관리운영비)

질 의 내 용

○○부 'AA프로그램(행정지원프로그램 아님)'에서 편성하여 집행한 인건비를 관리운영비로 집계해야 하나요?

- ▶ 관리운영비는 조직의 기능수행과 행정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경비 중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은 비용을 말합니다.
- 따라서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는 프로그램에 대응되므로 프로그램총원가로 집계되어야 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20. (관리운영비) (1)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및 특정 사업의 행정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를 말한다.
-

Q345 동일부처 내 회계실체 간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원가 배부

질 의 내 용

○○부 △△기금의 경우 재정상태표상 기타일반유형자산이 3억원 가량에 불과한데도 재정 운영표상 기타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가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역을 파악해보니 ○○부 내 타 회계실체가 소유한 자산에 대해서도 △△기금이 수선 유지비를 지출한 건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동 수선유지비를 △△기금이 인식해야 하나요? 아니면 간접원가 배부를 통해 타 회계실체가 인식해야 하나요?

▶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문단22에 따라 특정 회계실체에서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그 경제적 효익은 타 회계실체가 가지는 경우는 ‘부서관 간접원가’에 해당하며, 효익을 제공받은 회계실체가 원가를 인식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부서관 간접원가의 경우 ‘기타재원조달/기타재원이전’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22. (간접원가) (1) 간접원가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었으나 특정 사업에 직접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인건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의 원가를 말하며, 동일 부서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간접원가(이하 “부서내 간접원가”라 한다)와 다른 부서에서 발생한 간접원가(이하 “부서관 간접원가”라 한다)로 구분된다. 간접원가 구분시 사용된 ‘부서’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말한다.

Q346 부서간 간접원가

질 의 내 용

특정 부처에서 예산이 집행되어 원가가 발생하였으나 그 경제적 효익은 타 부처에서 가지는 경우 어느 부처의 원가로 보아야 하나요?

- ▶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문단22에 따라 특정 회계실체에서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그 경제적 효익은 타 회계실체가 가지는 경우는 ‘부서간 간접원가’에 해당하며, 효익을 제공받은 회계실체가 원가를 인식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부서간 간접원가의 경우 ‘기타재원조달/기타재원이전’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 ▶ 대표적인 사례로 인사혁신처가 타 부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용주부담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순자산변동표 상의 ‘기타재원이전’으로 처리하고 타 부처는 ‘기타재원조달’로 처리합니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22. (간접원가) (1) 간접원가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었으나 특정 사업에 직접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인건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의 원가를 말하며, 동일 부서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간접원가(이하 “부서내 간접원가”라 한다)와 다른 부서에서 발생한 간접원가(이하 “부서간 간접원가”라 한다)로 구분된다. 간접원가 구분시 사용된 ‘부서’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말한다.

실무해설14. (☞ 관련문단 22) 부서간 간접원가는 특정 부서에서 예산이 집행되어 원가가 발생하였으나 그 경제적 효익은 타 부서에서 가지는 경우, 효익을 제공받은 부서가 원가가 발생한 부서로부터 배부 받은 간접원가를 의미한다. 인사혁신처에서 집행되는 공무원연금 고용주부담금, 국방부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에 대해 지급하는 인건비 및 군인연금 고용주부담금, 보건복지부가 집행한 건강보험국가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등이 해당된다. 부서간 간접원가는 회계처리를 통하여 해당 회계 실체의 재정운영표에 반영되므로, 별도의 배부 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18장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1. 적용범위

Q347 국고금 회계처리지침의 적용 대상

질 의 내 용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국고금을 통합운용하는 회계실체는 모두 국고금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하나요?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제외)만 국고금회계를 적용합니다.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2는 국고금의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관리 측면의 규정으로 국고금 회계처리 적용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고금의 분류와 재무제표 표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국고금을 통합관리하는 국고금회계의 회계처리 및 국고금회계의 국가 재무제표 반영 등에 적용한다.
- (국고금회계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회계실체의 국고금)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국고금은 해당 국가회계실체와 중앙관서의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2(통합계정의 운용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자금을 통합계정으로 통합관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의 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기업특별회계 중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양곡관리특별회계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통합계정에는 통합대상 회계 또는 계정(국고수납정리계정을 포함한다)의 전년도 이월액과 세계잉여금을 포함한다.

2. 국고금의 지출

Q348 예산집행 과정과 회계처리 시점의 관계

질 의 내 용

국고금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자금배정과 예산집행 중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나요?

- ▶ 국가회계에서 회계처리는 거래 발생 시 이루어지므로 국고금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예산을 집행하는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문단9와 실무해설7에 따라 연간 예산배정 및 월별세부자금계획 등을 통한 자금 배정 시점이 아니라, 실제 예산의 집행(지출) 시점에 회계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9. (세출예산지출액)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자산의 취득, 부채의 상환 등의 사유로 국고금을 지출하는 경우 국고금회계는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세출예산지출액”으로 처리하고, 일반 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국고수입”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재무제표에 관련 비용을 인식하거나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로 반영한다.

실무해설7. (☞ 관련문단 9) 정부는 각 정부부처의 연간 예산배정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득한 후, 기획재정부의 승인 하에 월별자금계획 및 월별세부자금계획 등을 통하여 자금을 배정한다. 실제 자금의 집행은 개별지출관의 요구에 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한국은행 본점의 국고금 계좌에서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재무제표에는 연간 예산배정 및 월별세부자금계획 등을 통한 자금 배정 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실제 예산의 집행(지출)시 회계처리를 실시한다.

Q349 국고수입과 국고이전지출의 정의

질 의 내 용

○○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순자산변동표에 표시되어 있는 국고수입과 국고이전지출 계정과목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 ▶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제외)는 국고금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국고금 회계처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국고수입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제외)에서 배정받은 예산을 집행하여 실제 사용한 국고금 금액을 의미하며, 국고이전지출은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수익 중 수납 후 국고금회계로 이전된 수입금을 의미합니다.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8. (국세 이외의 수입금의 수납)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부담금 등의 수납, 자산처분, 차입 등의 사유로 국고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 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재무제표에 관련 수익을 인식하거나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로 반영하는 동시에 “국고이전지출”로 처리하고, 국고금회계는 “국고이전수입”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을 증가시킨다.
9. (세출예산지출액)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자산의 취득, 부채의 상환 등의 사유로 국고금을 지출하는 경우 국고금회계는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세출예산지출액”으로 처리하고,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국고수입”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재무제표에 관련 비용을 인식하거나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로 반영한다.

<계정과목 해설서>

II. 재원의 조달 /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국고수입

국고수입은 일반·특별회계에서 배정받은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실제 사용한 예산금액을 의미한다. 자금배정단계가 아닌 자금집행단계에서 국고금 실물 이동이 이루어지므로 자금집행 시 국고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III. 재원의 이전 /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① 국고이전지출

국고이전지출은 일반·특별회계에서 사용하며 일반·특별회계의 수익 중 수납되어 국고금회계로 이전된 수입금을 의미한다.

Q350 기말 결산 시 국고예금 잔액이 있을 경우 오류여부

질 의 내 용

재무장부에 국고예금 금액이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고예금 금액을 '0'으로 맞추어야 하나요?

▶ 국고금 끝수 계산으로 인한 국고예금 잔액은 재무장부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 말 현재 국고예금 통장 잔액이 재무장부의 국고예금 잔액으로 계상되어야 합니다.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8. (☞ 관련문단 10) 관서운영경비의 경우 남은 잔액을 국고금회계로 반납하게 되므로, 기말 시점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에서는 “국고예금”의 잔액이 남아 있지 않게 된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국고금 끝수 계산’에 따라 “국고예금”의 잔액이 나타날 수 있다.

제19장 ▶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

1. 세입·세출외거래의 회계처리

Q351 현물출자 시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질 의 내 용

현물출자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 현물출자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

8. (세입·세출예산외거래) 세입·세출예산외거래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2) 현물출자는 세입·세출에는 반영되지 않으나 해당 재산의 감소와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제20장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1.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

Q352 회계정책변경효과의 소급적용에 대한 기준 해석

질 의 내 용

국가회계기준 및 예규 개정사항이 부칙에 따라 20XX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되는 경우 20XX회계연도 결산 시 비교 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나요? 또한, 20XX 회계연도 결산부터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한다면 회계정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20XX회계연도 결산은 20XX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상 비교 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포함하므로 회계정책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비교 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의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 다만, 소급법 적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해당 회계연도와 그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6. (회계정책의 변경시 처리)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다음의 방법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며, 새로운 회계정책이 적용되는 회계연도와 비교표시되는 회계연도의 순자산변동표상 기초순자산의 “회계변경누적효과”에 반영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해당 회계연도와 그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
 - (1) 회계정책의 변경이 직전 회계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해당 재무정보에 반영한다.
 - (2) 회계정책의 변경이 직전 회계연도 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전회계변경누적효과는 비교 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 금액에 반영한다.

Q353 정책변경에 따른 원가 구분 변경 시 재무제표 재작성 여부

질 의 내 용

기준에는 비배분수익으로 분류하였으나 기준 개정으로 인해 프로그램수익으로 분류하도록 변경된 경우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해야 하나요?

- ▶ 국가회계기준 개정에 따라 비배분수익에서 프로그램수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 변경에 해당하므로 소급하여 비교 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합니다.
- 다만, 소급법 적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해당 회계연도와 그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4. (회계정책 변경 요건) 회계정책의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1)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2) 법령 등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회계정책 변경이 아닌 경우) 다음의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 (2)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6. (회계정책의 변경시 처리)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다음의 방법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며, 새로운 회계정책이 적용되는 회계연도와 비교표시되는 회계연도의 순자산변동표상 기초순자산의 “회계변경누적효과”에 반영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해당 회계연도와 그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
 - (1) 회계정책의 변경이 직전 회계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해당 재무정보에 반영한다.
 - (2) 회계정책의 변경이 직전 회계연도 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전기회계변경누적효과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 금액에 반영한다.

Q354 퇴직수당충당부채 주식 재작성 및 비교표시 방법

질 의 내 용

퇴직수당충당부채를 PBO방식으로 재산정하고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경우 퇴직수당충당부채 주식상 전기 기초 잔액도 PBO방식에 따른 금액으로 수정해야 하나요?

▶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효과를 소급적용함에 따라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경우 주식상 퇴직급여충당부채 전기 기초 잔액도 PBO방식에 따른 금액으로 재작성해야 하며, 관련 효과를 순자산변동표상 기초순자산 금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4. (회계정책 변경 요건) 회계정책의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1)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2) 법령 등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회계정책의 변경시 처리)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다음의 방법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며, 새로운 회계정책이 적용되는 회계연도와 비교표시되는 회계연도의 순자산변동표상 기초순자산의 “회계변경누적효과”에 반영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해당 회계연도와 그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
 - (1) 회계정책의 변경이 직전 회계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해당 재무정보에 반영한다.
 - (2) 회계정책의 변경이 직전 회계연도 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전기회계변경누적효과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 금액에 반영한다.

2. 전기오류수정

Q355 유형자산 분류 및 인식관련 전기오류수정 시 회계처리

질의내용(1)

토지를 구축물로 분류 변경하고 전기 이전까지의 감가상각비 효과를 회계변경누적효과로 반영하였습니다. 적절한 회계처리인가요?

- ▶ 구축물을 토지로 회계처리 한 것은 전기오류에 해당하므로 이를 분류 변경하는 경우 전기 오류수정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전기 이전까지 인식하였어야 할 감가상각비는 ‘회계변경누적효과’가 아닌 ‘전기 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2)

취득일이 2011년 이전인 누락자산의 등재에 따라 감가상각을 수행하면서 전기오류수정 손실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올바른 회계처리인가요?

- ▶ 전기 이전 누락자산 등재 시 전년도 이전 감가상각분에 대해서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3)

전기에 총기류 등 치안유지자산을 구입할 때 수수료나 비품구입비 등으로 처리한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나요?

- ▶ 전기에 비용 처리한 자산을 당기에 수정하여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전기까지 발생한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4)

○○기금과 타 부처에서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공동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기금에서 토지 전체를 자산으로 계상하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토지 장부가액을 감소시키며 상대계정으로 자산감액손실이 타당한가요? 아니면 전기오류수정손실이 타당한가요?

- ▶ 토지를 과대 계상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액손실’이 아닌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전기오류수정”이란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회계처리를 당 회계연도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또는 순자산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 사항은 전기오류수정이익이라 하며,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또는 순자산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 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 한다.
8.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소급하여 재작성하며, 전기오류수정 효과를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한다.
 - (1) 오류가 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해당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 (2) 오류가 전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기오류수정효과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금액을 재작성한다.
9. (중대하지 않은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상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반영한다. 다만,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상태표 또는 순자산변동표에 직접 반영한다.

Q356 감사원 지적에 따라 미인식된 부채 계상 시 회계처리

질의내용(1)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전기 이전에 인식하여야 할 부채를 당기에 계상하면서 '기타의기타 순자산의감소'로 처리하였습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해야 하나요?

- ▶ “전기오류수정”이란 전기 또는 그 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국가회계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회계처리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감사원 지적에 따라 미인식된 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전기오류수정에 해당하므로 '기타의 기타순자산의감소'가 아닌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전기오류수정”이란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국가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회계처리를 당 회계연도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또는 순자산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 사항은 전기오류수정이익이라 하며,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또는 순자산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 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 한다.

Q35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전기오류 회계처리

질의내용(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보험 예치금 계정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및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 ▶ 따라서 전기말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과 퇴직보험예치금은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2)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일부 인원에 대한 퇴직급여에 대해 연금가입 및 납입을 누락해온 경우 당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하나요?

- ▶ 당기말 현재 지급의무가 있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미지급비용을 인식하고, 전기 이전분은 ‘전기오류수정손실’, 당기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인식해야 합니다.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전기오류수정”이란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회계처리를 당 회계연도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또는 순자산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 사항은 전기오류수정이익이라 하며,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또는 순자산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 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 한다.
8.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소급하여 재작성하며, 전기오류수정 효과를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한다.
 - (1) 오류가 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해당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Q359

**투자증권평가이익을 재정운영표 상 평가이익으로 처리한 경우
오류정정 회계처리**

질의내용(2)

연기금풀(채권형)투자수익을 전기까지 재정운영표상 기타평가이익으로 잘못 구분하던 것을 당기에 순자산변동표 상 투자증권평가이익으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전기오류수정 손실을 순자산변동표와 재정운영표 중 어디에 표시하여야 하나요?

- ▶ 중대한 오류로 판단되는 경우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에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반영하고 전기재무제표도 재작성합니다.
- ▶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반영합니다.
- ▶ 또한 전기오류수정 사항은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경우에는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 비교표시 재무제표의 수정금액 및 비교 재무제표가 다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주석 공시하여야 합니다.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전기오류수정”이란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회계처리를 당 회계연도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또는 순자산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 사항은 전기오류수정이익이라 하며,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또는 순자산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 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 한다.
8.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소급하여 재작성하며, 전기오류수정 효과를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한다.
 - (1) 오류가 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해당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 (2) 오류가 전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기오류수정효과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금액을 재작성한다.
9. (중대하지 않은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상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반영한다. 다만,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상태표 또는 순자산변동표에 직접 반영한다.
11. (전기오류수정의 주석 사항) 전기오류수정의 사항은 주석으로 표시하되, 문단8에 따른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의 경우 다음 사항을 주석에 추가한다.
 - (1)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
 - (2) 비교재무제표가 표시된 과거회계기간에 대한 수정금액
 - (3) 비교재무제표가 다시 작성되었다는 사실

Q360 구축물을 건물로 잘못 처리한 경우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국유재산 실태조사로 2015년에 취득한 구축물(내용연수 20년)을 건물(내용연수 40년)로 잘못 분류한 것을 발견하였고, 이는 중대하지 않은 오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구축물로 정정하는 회계처리 무엇인가요?

- ▶ 건물을 구축물로 정정하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일부터 전기 말까지 계상한 건물 및 건물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고, 구축물 및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을 인식합니다. 이 때, 취득일부터 전기 말까지 건물과 구축물의 내용연수 차이로 발생한 감가상각누계액 차이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 합니다.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전기오류수정”이란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회계처리를 당 회계연도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또는 순자산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 사항은 전기오류수정이익이라 하며,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또는 순자산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 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 한다.
9. (중대하지 않은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 운영표상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반영한다. 다만,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상태표 또는 순자산변동표에 직접 반영한다.

Q361 재평가 자산의 오류수정 회계처리

질의내용(1)

전기에 등재가 누락되어 재평가되지 않은 자산의 경우 자산재평가손익을 전기오류수정 손익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질의내용(2)

전기에 재평가한 자산의 가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 ▶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한 경우 소급하여 재작성하며, 전기오류수정 효과는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상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합니다.
- ▶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합니다.
 - 다만,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상태표 또는 순자산변동표에 직접 반영합니다.

질의내용(3)

분류 오류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일반유형자산으로 변경하는 경우 재평가손익도 함께 조정해야 하나요?

- ▶ 사회기반시설을 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 변경하는 경우 사회기반시설재평가이익도 함께 일반유형자산재평가이익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평가이익의 경우에는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상태표 또는 순자산변동표에 직접 반영합니다.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8.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소급하여 재작성하며, 전기오류 수정 효과를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한다.
 - (1) 오류가 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해당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 (2) 오류가 전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기오류수정효과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 금액을 재작성한다.
 9. (중대하지 않은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 운영표상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반영한다. 다만,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상태표 또는 순자산변동표에 직접 반영한다.
-

Q362 중대한 오류의 판단

질의내용(1)

교환대가인 비배분수익을 전기에 비교환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을 당기에 발견하였으며,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의 수익인식기준의 차이로 당기손익이 400억원 정도 변동됩니다. 이러한 경우 중대한 오류에 해당하여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나요?

질의내용(2)

당기말 현재 기타현금성자산 잔액을 기타국고금으로 계정재분류 하였습니다. 전기에도 동일한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나요?

- ▶ 재무제표의 중대한 오류 판단은 거래의 중요성, 금액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각 국가회계 실체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중대한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제표 재작성 대상이 되며, 그 외의 오류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합니다. 다만,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발견한 회계 연도의 재정상태표 또는 순자산변동표에 직접 반영합니다.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8.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소급하여 재작성하며, 전기 오류수정 효과를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한다.
 - (1) 오류가 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해당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 (2) 오류가 전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기오류수정효과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 금액을 재작성한다.
9. (중대하지 않은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 운영표상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반영한다. 다만,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상태표 또는 순자산변동표에 직접 반영한다.

Q363 전기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전기 순자산변동표 반영 방법

질 의 내 용

중대한 오류에 해당하여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려고 합니다. 전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오류인 경우 비교표시되는 전기 순자산변동표에 전기오류수정효과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 순자산변동표상 비교 표시되는 전기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8.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소급하여 재작성하며, 전기오류수정 효과를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한다.
- (1) 오류가 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해당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 (2) 오류가 전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기오류수정효과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금액을 재작성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순자산변동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정부		(단위:)			
	주식	기본순자산	적립금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I. 기초순자산		XXX	XXX	XXX	XXX
1. 보고금액		XXX	XXX	XXX	XXX
2. 전기오류수정손익	X	XXX	XXX	XXX	XXX
3. 회계변경누적효과	X	XXX	XXX	XXX	XXX
II. 재정운영결과			XXX		XXX
III. 조정항목		XXX	XXX	XXX	XXX
1. 납입자본의 증감	X	XXX	-	-	XXX
2. 투자증권평가손익	X	-	-	XXX	XXX
3. 파생상품평가손익	X	-	-	XXX	XXX
4. 기타 순자산의 증감	X	XXX	XXX	XXX	XXX
5. ...	X	XXX	XXX	XXX	XXX
IV. 기말순자산(I - II + III)		<u>XXX</u>	<u>XXX</u>	<u>XXX</u>	<u>XXX</u>

210mmX297mm(백상지(120g/㎡)또는 백상지(80g/㎡))

Q364 전기오류의 범위

질 의 내 용

전기 기타이전비용으로 잘못 처리한 항목을 당기부터 지급수수료로 계정과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수정으로 인하여 재정운영표상 관련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순원가 총액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상 프로그램총원가의 세부 구성항목의 금액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기오류로 볼 수 있나요?

- ▶ 전기오류수정이란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회계처리를 당 회계연도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이 경우 과거 계정과목 선택의 오류가 발생한 건이므로 전기오류수정에 해당하며, 중대한 전기오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수정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상 ‘전기오류 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반영합니다. 다만,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상태표 또는 순자산변동표에 직접 반영합니다.
 -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한 경우 소급하여 재작성하며, 전기오류수정 효과를 발견한 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상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합니다.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전기오류수정”이란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회계처리를 당 회계연도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또는 순자산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 사항은 전기오류수정이익이라 하며,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또는 순자산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전기오류수정 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 한다.
8.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소급하여 재작성하며, 전기오류수정 효과를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한다.
 - (1) 오류가 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해당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 (2) 오류가 전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기오류수정효과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 금액을 재작성한다.
9. (중대하지 않은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상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반영한다. 다만,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상태표 또는 순자산변동표에 직접 반영한다.

제21장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

1.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

Q365 조직 변경으로 이관된 자산이 취득원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조직 변경으로 장부가액이 50만원 미만인 자산이 이관될 경우 비용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자산을 이관하고 승계되는 경우 장부가액으로 인식하고 재정상태표에 총액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50만원 미만인 자산의 경우에도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장부가액 그대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장부가액 50만원 미만인 자산을 관리전환하는 경우에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

5. (회계처리의 일반원칙)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이관하고 승계되는 자산·부채 및 순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재정상태표에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13. (관리전환을 통한 취득) 관리전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관리전환의 경우 장부가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자산의 경우에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한다.
 - (1) 유상관리전환의 경우, 관리전환 대상 자산의 공정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되, 제공하는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간주하여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는 처분손익으로 한다.
 - (2) 무상관리전환 또는 용도폐지에 따른 전환의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는 관리전환으로 자산을 제공하는 실체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재무제표에 총액으로 표시한다.

Q366 조직개편에 따른 자산 이관 회계처리 방법

질 의 내 용

조직개편에 따른 자산 이관 회계처리는 무엇인가요?

▶ 정부조직법 등에 따른 조직개편 시, 자산을 이관하고 이관 받는 경우는 각각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감소’와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증가’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이관하는 부처

차)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감소	XX	대)	자산	XX
----	-----------------	----	----	----	----

- 이관받는 부처

차)	자산	XX	대)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증가	XX
----	----	----	----	-----------------	----

Q367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증감 계정과목

질의내용(1)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증감(순자산조정)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계정인가요?

- ▶ 정부조직법 등에 따른 조직개편 시, 자산, 부채를 이관하고 이관 받는 경우 발생하는 계정입니다.

질의내용(2)

조직개편 후 기간에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증감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있나요?

- ▶ 해당 계정과목은 조직개편일 시점에 자산, 부채의 이관 회계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계정과목이므로 조직개편일 이후 기간에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I. 기초순자산 /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③ 정부조직개편 등에 따른 자산의 증감

(1)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증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중앙관서의 순자산증감 중 승계한 자산·부채에 직접 대응되지 않는 순자산증가분을 말한다.

(2)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감소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중앙관서의 순자산증감 중 승계한 자산·부채에 직접 대응되지 않는 순자산감소분을 말한다.

IV. 조정항목 / 2. 세부계정과목 설명

⑤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증감

(1)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증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개편한 중앙관서의 순자산 증감 중 이관 또는 승계한 자산·부채에 직접 대응되지 않는 순자산증가분을 말한다.

(2)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감소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개편한 중앙관서의 순자산 증감 중 이관 또는 승계한 자산·부채에 직접 대응되지 않는 순자산감소분을 말한다.

Q368 조직개편 시 국고예금 처리방법

질 의 내 용

조직개편 시 국고예금통장 잔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고예금 잔액은 국고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계정과목 해설서>

- I. 현금 및 현금성자산
- 2. 세부계정과목 설명
 - ① 현금및현금성자산
 - (2) 국고금

「국고금 관리법」제2조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그 운용실태와 규모를 구분하기 위하여 현금및현금등가물과 구분하여 표시한 것이다. 국고금은 한국은행국가예금, 금고은행국가예금, 국고예금, 국고금융유자금운용액, 기타국고금으로 분류된다.

- ③ 국고예금: 「국고금 관리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국고금

2. 정부조직 개편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결산

Q369 폐지부처 재무제표의 국회 보고

질 의 내 용

폐지부처의 재무제표의 경우 국회 보고대상에 포함되나요? 포함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고되나요?

- ▶ 중앙관서가 폐지된 경우에도 국회 보고대상 결산보고서에 포함됩니다.
-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 문단9에 따라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폐지 부처의 사무를 승계한 중앙관서의 장은 폐지 부처 소관 내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개편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 * 1월 1일에 시작하여 정부조직개편일 전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

9. (중앙관서가 자산·부채를 이관하고 폐지되는 경우) 자산·부채를 이관하고 폐지되는 중앙관서 및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결산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 (1) 국가회계실체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정부조직 개편일 전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이하 “개편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한다.
 - (2)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를 통합하여 중앙관서의 ‘개편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이 경우 (1)과 (2)에 따라 작성하는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는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III

디브레인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본 챕터는 디브레인 업무처리 중 재무결산과 관련된 질의답변 내용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디브레인 시스템상의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법은 한국재정정보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수정전시산표 마감전 업무처리

1. 개별법과 재무제표 대사

Q370 결산조정전표로 등록하여 국유재산 대장에서만 누락된 자산의 처리

질 의 내 용

주식형 수익증권을 재무제표에는 결산조정으로 반영하였으나, 국유재산 대장에는 등재 누락하였습니다. 국유재산대장에 등재가 필요한가요?

- ▶ 수익증권은 국유재산이므로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하여야 합니다. 디브레인을 통해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하면 동시에 재무제표에도 반영되어 해당 자산이 이중계상 되므로, 기존의 결산조정으로 계상했던 자산은 다시 결산조정을 통해 제거해야 합니다.

Q371 국유재산 금액 조회 가능 시기

질 의 내 용

[회계결산 - 재무장부 - 원장조회 - 계정과목별 명세] 메뉴 중 '계정과목세부명세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국유재산과 [회계결산 - 재무장부 - 원장조회 - 업무별 원장조회] 메뉴 중 '국유재산/총계정원장간 비교점검' 화면에 국유재산 대장 금액이 모두 '0'입니다. 원인이 무엇인가요?

- ▶ 국유재산 마감이 완료되어야 해당 메뉴에 금액이 조회됩니다.

Q372 지번 변경으로 분할·합병된 토지의 업무처리 방법

질 의 내 용

당회계연도 중 지번 변경으로 인해 토지가 분할·합병되었습니다. 디브리인상 어떻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 ▶ [국유재산/대장관리/기타증감/증감없음/분할 또는 합병]을 통해 업무처리를 수행해야 별도 분개 발생 없이 분할·합병 전 장부금액과 재평가이익이 분할·합병 후 국유재산 대장에 제대로 반영됩니다.

2. 건설중인자산, 선급금 내역 검토

Q373 회계연도말 선급금 잔액 정산 여부

질 의 내 용

당회계연도 말 현재 용역기간이 만료된 시스템 유지·보수계약에 대해 당회계연도 중 선급한 금액이 당회계연도 말 현재 선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선급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 선급한 금액은 지출 시점에 선급금으로 계상 후 해당 용역의 제공기간에 걸쳐 비용과 상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회계연도 말 현재 선급금 잔액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 따라서, 당회계연도 말 재정상태표 상 선급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전액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디브레인 상 '검사업무 재수행'이나 '선급청산 금액정정' 등을 통해 해당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Q374 전기 이전에 자본적지출을 비용 처리한 경우 당기 업무처리 방법

질 의 내 용

전기 이전에 비용처리한 감리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어 자산가액을 증가시켜야 하는 경우에 적절한 업무처리는 무엇인가요?

- ▶ 전기 이전의 비용을 취소해야 하므로 전기오류에 해당됩니다. 자산가액을 증가시키면서 '전기오류수정이익'을 계상해야 하며, 중대한 오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디브레인상 기타증감을 통해 자산가액을 수정하되, 감가상각 금액을 취득일부터 다시 재계산하여 전기 이전분은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Q375 검사미정산으로 남아있는 건설중인자산 정리방법

질 의 내 용

검수 시점에 부대비 배부를 하지 못하여 남아 있는 건설중인자산을 본계정 대체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기타증감처리 메뉴 중 '부대비 배부(지출연동)'을 선택하면 검수 시점 이후에도 부대비 배부가 가능합니다.

Q376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분개로 삭제한 건설중인자산을 일선관서에서 배부 처리한 경우 조치방법

질 의 내 용

작년 결산 시 건설중인자산을 비용으로 판단하여 결산조정분개를 수행하였으나, 올해 일선 관서에서 해당 건설중인자산을 배부 처리하여 건설중인자산이 부(-)의 금액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요?

- ▶ 건설중인자산의 적정성을 일선관서담당자를 통해 파악한 후에 조치하여야 합니다.
- 건설중인자산이 맞다면, 전기에 결산조정분개로 삭제한 건설중인자산을 당기 결산조정 분개로 다시 계상하여야 합니다.

〈결산조정분개 예시〉

차) 건설중인자산	XXX	대) 전기오류수정손익	XXX
-----------	-----	-------------	-----

- 건설중인자산이 아니라 비용이 맞다면, 올해 수행한 부대비 배부 업무를 취소하고 정리 요청서를 통해 조달의 부대비 내역을 삭제하셔야 합니다.

Q377 본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완료된 부대공사의 정산 시기

질 의 내 용

본공사가 완료되기 전 부대공사가 먼저 끝났을 경우 건설중인자산의 대체 시기는 언제 인가요?

- ▶ 본공사가 완료되어 본공사 부분이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는 때, 부대공사 정산을 통해서 건설중인자산이 함께 자산으로 대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Q378 본계정대체되지 않은 건설중인자산 회계처리

질 의 내 용

준공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건설중인자산이 재무장부에 존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해당 건설중인자산과 관련하여 현재 국유재산 대장에 본자산이 등재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재무장부에도 본자산이 계상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Case1) 자산대체서 승인 누락으로 자산 등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디브레인에서 자산대체서 승인을 통해 본자산을 자산등재하여야 합니다.
 - Case2) 당기에 기타증감으로 대장 등재하였다면 해당 업무처리를 취소하고 자산대체서 승인 업무처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Case3) 전기 이전에 기타증감을 통해 해당 자산을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하였다면 당기 결산조정분개를 통해 건설중인자산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3. 계정과목 변경

Q379 보험료 지급 시 디브레인상 업무처리 방법

질 의 내 용

복지인력(도우미)에 대한 업무 관련 배상보험료를 일반지출을 통해 집행하고자 하는데 보험료 관련 세세부항목이 조회되지 않아 지급보험료 계정과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지급보험료 대신 기타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 ▶ 업무와 관련된 보험료 지출은 지급보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기타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으므로, [조달(계약)요청>기타계약>보험계약 요청] 메뉴를 통해 지출해야 합니다.
- 디브레인 시스템에서 보험료 관련 세세부항목이 조회되지 않는 것은 조달(계약) 메뉴를 통해 동 보험료 지출과정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Q380 시스템상 계정과목 변경 방법

질의내용(1)

지출 시 세부항목을 잘못 선택해 계정과목 오류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 세부·세세부항목 선택 오류에 따른 계정과목 오류와 관련해서는 ‘계정과목변경’ 메뉴*를 통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 지출>요청관리>계정과목정정요청>계정과목변경

- 관련 오류와 관련해서 해당 전표를 발생시킨 일선관서에 오류사항을 전달하여 수정 조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질의내용(2)

잡손실 계정과목을 검토 중인데, 올바른 계정과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 ‘계정과목변경’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다만, 세부·세세부항목 재선택을 통해서 계정과목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세목과 연계되어 있는 계정과목으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질의내용(3)

출산축하경비가 경조금이 아닌 선물대로 잘못 회계처리되어 있는데, 이를 수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계정과목변경’ 메뉴를 통해 세부·세세부항목 재선택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Q381 시스템상 계정과목 변경 반영 시간

질 의 내 용

업무담당자가 계정과목을 변경하였다고 하는데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계정과목변경은 어느 시점에 반영되나요?

- ▶ ‘계정과목변경’ 메뉴의 경우 디브레인 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하루에 한번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익일에 합계잔액시산표에서 변경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382 ‘계정과목변경’기능 사용가능 시기

질 의 내 용

지출이 모두 마감되어 디브레인에서 ‘계정과목변경’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결산 조정전표를 통해 수정해야 하나요?

- ▶ ‘계정과목변경’은 지출이 마감되었어도 수정전시산표 마감 전 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조정이 아니라 ‘계정과목변경’을 통해 해당 계정과목을 수정해야 합니다.

Q383 ‘수입과목정정결의’ 기능 사용가능 시기

질 의 내 용

디브레인의 ‘수입과목정정결의’ 기능은 수입 업무가 마감된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 ▶ ‘수입과목정정결의’ 기능은 세부·세세부항목 뿐만이 아니라 예산과목까지 수정이 가능하므로 수입 업무가 마감된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계정과목 금액의 적정성 검토

Q384 국고예금 잔액 적정성 검토

질 의 내 용

시산표에 계상된 국고예금 금액과 실제 예금잔액에 차이가 발생하면 결산조정분개로 조정해야하나요?

- ▶ 결산조정분개 보다는 잔액 차이가 나는 원인을 파악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 시산표 상 국고예금 잔액과 실제 예금잔액은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되므로, 누락된 업무가 없는 지 파악하여 해당 업무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Q385 국고수입과 월별 세출부 누계금액이 차이나는 원인

질 의 내 용

합계잔액시산표상 국고수입과 디브레인의 월별 세출부 누계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재무제표상 국고수입과 예산결산상 지출액은 원칙적으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세출부 누계금액 조회 시 조건(12월이 아니라 13월로 조회해야 함)이 정확하지 않으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386 결산상 잉여금과 한국은행국가예금 잔액의 일치 여부

질 의 내 용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예산결산상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연도말 한국은행국가예금과 일치해야 하나요?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예산결산상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연도말 한국은행국가예금과 일치해야 합니다.

Q387 정부외자산기부 금액 발생 시 적정성 여부

질 의 내 용

조달청으로 무상관리전환하였는데 계정과목이 정부외자산기부로 발생한 이유가 무엇 인가요?

- ▶ 조달청으로 무상관리전환을 한 거래라고 한다면 '정부외자산기부'가 아닌 '정부내자산기부'로 회계처리되어야 합니다.
- 만일 해당 거래가 조달청과의 거래가 아니라 조달청과 계약을 맺고 있는 민간업체와의 거래라면 관리전환이 아닌 양여이며, 양여인 경우에는 '정부외자산기부'로 회계처리 됩니다.

Q388 전기오류수정이익 발생내역 검토 및 조치방법

질 의 내 용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발생한 내역이 있는데, 이를 조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 전기오류수정이익은 ‘기타증감’ 업무로 국유재산 또는 물품대장가액을 증가시키는 경우 발생합니다.
 - 누락재산등록처럼 전기오류에 해당하거나, 기타(증)처럼 증가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 ▶ 따라서, 일선관서 담당자에게 어떤 거래를 통해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 누락재산등록처럼 전기오류인 경우에는 해당 오류가 중대한 오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재무제표 재작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기타(증)처럼 증가 사유를 알 수 없어 발생한 경우에는 확인된 거래에 맞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자산 구입을 조달메뉴를 통하지 않고, 구입대금은 일반지출로 처리하고 기타 증감을 통해 자산을 대장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출 시 발생한 비용 계정과목과 전기 오류수정이익을 상계처리 해야 합니다.

Q389 기타증감을 통해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적정성 판단

질 의 내 용

기타증감처리_국유, 기타증감처리_물품을 통하여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올바른 것인가요?

- ▶ 예산의 집행 또는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유재산, 물품의 가액 또는 정보관리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기타증감’ 메뉴를 사용합니다.
- 그러나 당기에 예산 집행을 통해 취득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기타증감 처리를 통해서 자산을 등재하여 자산과 비용이 과대 계상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 따라서 기타증감처리를 통해서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경우 전기오류에 의한 것(당년도 이전에 등재해야 할 것을 누락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올바른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Q390 BTL자산 취득 시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이익의 적정성 여부

질 의 내 용

전기오류수정이익 계정과목 내역을 살펴보니, 기말 시점에 토지 14억이 증가하면서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발생하는 분개가 있었습니다. 확인결과 BTL자산 취득이라고 합니다. 현재 디브레인에서 BTL 관련 업무처리가 없어서 부채를 자동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산조정전표 입력 시 상대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 ▶ BTL 자산 취득 시 상대계정과목은 ‘BTL임대료장기미지급금’ 입니다. 현재는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잘못 되어 있으므로, 전기오류수정이익을 상계하면서 ‘BTL임대료장기미지급금’을 계상하는 결산조정전표 입력이 필요합니다.

Q391 감가상각비 재계산을 위한 정보 조회 방법

질 의 내 용

감가상각비 재계산 검증 수행을 위해 국유재산 대장을 조회하였는데, 잔존가액 정보가 일괄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 ▶ 국유재산 대장에서는 개별 자산별로 조회가 가능하며, 일괄 조회를 위해서는 [회계결산>재무결산>회계기금>결산조정분개>결산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 메뉴에서 감가상각비를 조회해야 합니다.
- 국유재산 업무에서 감가상각 자동계산 처리가 수행되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392 기타증감을 통해 발생한 잡손실의 적정성 판단

질 의 내 용

잡손실 계정과목 내역 검토 중 “기타증감처리”에 따라 발생한 것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타증감처리를 하면 잡손실로 회계처리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회계 처리는 올바른 것인가요?

- ▶ ‘기타증감’은 대장관리 업무로 해당 업무처리 시 선택한 사유에 따라 계정과목이 결정됩니다.
- 재산관리관을 통해 어떤 업무를 기타증감으로 수행한 것인지 확인한 이후 해당 거래를 잡손실로 처리한 것이 올바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Q393 물품대장과 국유재산대장 간의 자산 이동 시 발생한 손익 처리

질 의 내 용

물품대장에 등재되어 있던 자산을 국유재산대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잡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올바른 회계처리인가요?

- ▶ 국가회계실체 내에서 물품에서 국유재산으로 단순 분류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손익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잡손실을 상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Q394 기부채납 시 올바른 회계처리와 업무처리 방법

질 의 내 용

민간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증받은 자산을 등재하였는데 상대 계정과목이 전기오류수정 이익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올바른 회계처리와 업무방법은 무엇인가요?

- ▶ 민간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기부채납에 해당되며, '정부외자산수증'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합니다. [국유재산>취득>기부채납]에서 기부채납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Q395 전세권이 감가상각되는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

질 의 내 용

전세권이 감가상각되는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일선관서 국유재산담당자가 전세권을 등재하면서 재산종류를 무체재산의 전세권이 아닌 무체재산의 기타로 잘못 선택하는 경우 디브레인에서 감가상각이 수행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5. 부(-)의 계정과목 처리

Q396 임차보증금 관련 부(-)의 선수금 발생사유 및 처리방법

질 의 내 용

임차보증금 관련 업무처리를 수행하고 나니 부(-)의 선수금이 생겼습니다. 처리방법은 무엇인가요?

- ▶ 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부의 선수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수납여부' 체크 때문입니다.
- 일반적으로 '임차보증금-국유'의 회수는 일선관서에서 [매각요청/징수요청/징수결의(수입)/수납정산(수입)/인계관리]의 업무절차를 통해 진행하나,
 - 매각요청에서 '기수납여부'를 체크하여 징수결의 없이 인계관리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부의 선수금이 발생합니다.

차) 선수금	XXX	대) 자산	XXX
--------	-----	-------	-----

- 일선관서에서 수납이 이루어졌으면 수납시점에 발생한 수익(대변 계정과목)과 선수금을 상계하는 결산조정분개를 수행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에 대해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사유를 파악하여, 부의 선수금이 제거될 수 있도록 결산조정분개를 입력해야 합니다.

Q397 계정과목별 부(-)의 명세서상 관리번호의 의미

질 의 내 용

선급금 부(-)의 거래처 조회 시 관리번호가 동일한데 거래처가 다른 것들이 조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관리번호는 하나의 계약(또는 사업)에 대해 부여된 번호이고, 거래처는 대금을 지급한 상대방이므로 하나의 관리번호에 다수의 거래처가 조회될 수 있습니다.

Q398 선급금 거래처별 부(-)의 잔액 조치방법

질 의 내 용

계정과목명세서상 선급금 거래처별 잔액이 부(-)의 금액입니다.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나요?

- ▶ 거래처 선택 오류로 인해 거래처별로 부(-)의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변경을 통하여 부의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Q399 미지급금의 발생과 지급시점의 거래처가 상이한 경우 조치방법

질 의 내 용

전기말 '기타' 거래처로 계상되어 있는 미지급금을 당기에 지급하면서 '기타'가 아닌 타 거래처로 업무처리 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 ▶ 당기의 미지급금 지급전표에 대하여 거래처 수정 전표를 발생시켜 거래처를 '기타'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Q400

거래처별 부(-)의 명세서에서 전기에 조치한 거래처가 당기에 부(-)의 금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조치방법

질 의 내 용

선급금 거래처별 부(-)의 잔액 검토 결과, 전기에 거래처 수정을 통해 타 거래처의 부(-)의 금액과 상계한 부분이 당기에 부(-)의 금액으로 조회가 됩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 전년도 거래처 수정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바른 거래처를 확인한 후 거래처 수정을 해야 합니다.
- 당기에 부(-)의 금액으로 조회되는 이유는 당기에 적정한 업무처리로 인해 해당 거래처의 선급금 금액이 차감되었다는 뜻이므로, 전기 거래처 수정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Q401

연계기관 재무결산 자료 등록 시 부(-)의 금액이 발생하여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 조치방법

질 의 내 용

투자증권평가손실이 부(-)의 금액이 발생하여 디브레인상 재무결산 연계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 ▶ '15회계연도 결산부터 디브레인 연계기관에 대해 부(-)의 계정과목 점검기능을 추가 하였습니다. 따라서 투자증권평가손실이 부(-)의 금액으로 계상된 사유를 파악하여 투자 증권평가이익으로 대체하는 등 연계자료를 수정한 후 재연계해야 합니다.

6. 업무마감 절차

Q402

기금의 수입, 지출 업무가 마감되었는데도 업무마감일자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조치방법

질 의 내 용

기금의 업무담당자는 수입, 지출 등을 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디브레인 '재무결산>회계 기금>수정전 시산표 마감' 메뉴 하단에 업무별 마감 현황에서는 업무마감일자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기금 업무 마감 후에 중앙관서 담당자가 중앙관서 마감을 별도로 수행하여야 업무별 마감 현황에서 업무마감일자가 조회됩니다.

○ 수입 업무 마감 : [수입>마감>중앙관서관리>중앙관서마감]

Q403

기금의 국유재산은 마감되었으나 중앙관서에서 마감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조치방법

질 의 내 용

중앙관서 국유재산 담당자가 타회계·기금의 국유재산 미마감을 이유로 본 기금의 국유재산 결산서를 확정하지 않아 수정전시산표마감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타 회계·기금의 국유재산이 마감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금의 국유재산보고서는 확정할 수 있으므로, 중앙관서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한 후 보고서 확정 요청하면 됩니다.

Q404 선급금이나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수행 시기

질 의 내 용

국유재산 대장을 마감하였다면 선급금이나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를 수행할 수 없나요?

- ▶ 국유재산 대장이 마감되었다면 본계정 대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국유재산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마감을 취소해야 합니다.
- 본계정 대체는 건증자산대체서를 생성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7.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내역 검토

Q405

자산취득비(430-01) 등 400번대 예산으로 지출한 내역이 자본적지출 또는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질 의 내 용

400번대 예산 지출 금액은 금액이 적어도 무조건 자본적지출인 것으로 간주해서 자산가액을 증가시켜야 하나요?

- ▶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자본적지출은 400번대 예산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 (2019 예산편성지침)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보수비 등은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편성하되, 시설 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개선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은 자산취득비(430-01) 또는 시설비(420-03)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8. 처분 업무처리 오류

Q406 자산 매각 시 업무처리 오류 조치 방법

질 의 내 용

자산매각과 관련하여 발생한 아래의 분개가 적절한가요?

차) 미수기타수익 10 대) 잡이익 10

- ▶ 국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업무 수행 시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징수결의>	차)	미수채권	10	대)	선수금	10
<수납정산>	차)	현금	10	대)	미수채권	10
<인계>	차)	선수금	10	대)	토지	8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2

- ▶ 매각절차를 통하지 않고 매각대금을 징수결의로 수납만 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모든 수입이 수익으로 회계처리되고, 자산은 장부에서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회계처리가 아닙니다.

- 결산담당자는 매각 담당자에게 해당 매각자산을 대장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징수결의 시 발생한 잡이익과 대장 삭제시 발생한 비용 계정과목을 취소하면서 처분손익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징수결의>	차)	미수채권	10	대)	잡이익	10
<수납정산>	차)	현금	10	대)	미수채권	10
<대장삭제>	차)	비용	8	대)	토지	8
<결산조정>	차)	잡이익	10	대)	비용	8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2

9. 취득 업무처리 오류

Q407 건설중인자산을 대체하지 않고 기타증가로 처리한 경우 조치방법

질 의 내 용

토지를 기타증가 처리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되고, 건설중인자산이 대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 자산등재 시 '기타(증)'으로 처리한 경우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기타(증)'으로 처리한 해당 업무를 취소하고 '검수-자산대체'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Q408 건당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자산을 비용처리한 경우 조치방법

질 의 내 용

구매요청서 작성 시 물품명세를 이동성기계장치(자산)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모성 물품비(대장X)로 선택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 구매요청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부분은 물품명세를 입력할 때 선택에 따라 자산과 비용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담당자는 물품명세의 품종을 선택할 때 대장에 등재가 되어야 하는 물품의 취득일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명세를 정확히 선택해서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물품 계정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검수 승인 이전인 경우에는 검수서에서 품종을 수정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 검수 승인 이후인 경우에는 [조달(계약)>검수>물품계약(물품/국유)명세변경>명세변경서 등록] 메뉴에서 변경하면 됩니다.

Q409 대금 지급 시 미지급금이 정산되지 않은 오류 조치방법

질의내용(1)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나, 미지급금이 정산되지 않은 경우 조치방법은 무엇인가요?

▶ 대금 지급 시 발생한 비용 계정과목과 미지급금을 상계처리 해야 합니다.

질의내용(2)

유상관리전환 시 발생한 미지급금과 관련하여 대금지급이 완료되었으나, 미지급금이 상계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나요?

- ▶ 유상관리전환 시 발생한 미지급금은 지출업무 시 해당 건을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면 상계 제거됩니다.
- 대금지급 완료 후에도 해당 미지급금이 남아 있다는 것은 대금지급 시 업무처리를 잘못 하였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관련 지출업무를 다시 수행하여야 하며, 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지출업무 처리 시 발생한 계정과목과 미지급금을 상계하는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내부거래

1. 거래처 수정

Q410 수입, 지출업무가 마감된 상태에서 거래처 수정방법

질 의 내 용

다수의 개인에게 인증서류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거래에서 거래처를 잘못 입력 하였습니다. 현재 수입, 지출이 마감된 상태인데 거래처를 조정분개로 수정해야 하나요?

- ▶ 세입, 세출이 마감된 상태에서도 수정후시산표 마감 전이라면 상호점검 메뉴에서 거래처 수정이 가능합니다. 상호점검 메뉴의 경로는 [재무장부>회계기금>내부거래 상호점검>상호점검]입니다.

Q411 상대소관이 폐지소관인 경우 조치방법

질 의 내 용

전표의 상대소관이 폐지된 소관으로 되어 있어 내부거래 미제거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거래처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중앙관서로 되어 있는 경우 올바른 거래처를 확인하여 거래처 수정을 하여야 합니다.

Q412 상호점검에서 조회되지 않는 전표의 거래처 수정방법

질 의 내 용

내부거래 상호점검에서 보이지 않는 전표는 거래처 수정을 어떻게 하나요?

- ▶ 내부거래 상호점검에서는 거래처가 국가회계실체인 내부거래 전표만 조회됩니다.
- ▶ 상호점검에서 조회되지 않는 전표의 거래처 수정은 디브레인의 '내부거래대상 계정과목별 점검'([회계결산]재무장부>회계기금>내부거래상호점검] 하위에 위치)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Q413 내부거래처가 올바른지 확인하는 방법

질 의 내 용

○○청과의 내부거래 미제거건이 존재하는데, 거래처가 '○○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를 '○○청 재정책임관'으로 바꾸면 올바른 거래처로 바뀌어 내부거래가 제거나요?

- ▶ 내부거래는 거래처가 일치해야 제거될 수 있으며, 일치여부는 일선관서나 거래처명이 아닌 해당 거래처 정보에 담긴 소관, 회계, 계정 정보입니다.
- 거래처 정보에 담긴 소관, 회계, 계정이 상대 소관, 회계, 계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거래처 수정 조치하면 미제거 건이 제거됩니다.

Q414 거래처명과 거래처 정보가 불일치하는 미제거 건 조치방법

질 의 내 용

내부거래 미제거 건 중 거래처명이 '경기도 XX시 건축과 징수관(보전)'으로 되어 있는데 상대소관 및 회계명이 ○○부, 지역발전특별회계-△△계정인 것이 있습니다. 거래처명과 상대소관 및 회계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거래처를 수정해야 하나요? 수정한다면 어떻게 하는지요?

- ▶ 실제 거래처가 XX시가 맞다면 결산담당자는 업무담당자를 통해 거래처를 올바르게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XX시를 거래처로 선택할 때 거래처구분을 '3-중앙재정(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이 아닌 다른 적절한 구분을 선택해야 상대소관 및 회계가 기존과 같이 ○○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나타나지 않게 되어 동 내부거래 미제거 건이 해결됩니다.

2. 기타 미제거 건 조치방법

Q415 부가세 차이로 인한 미제거 건 조치방법

질 의 내 용

부가세 차이로 인해 발생한 내부거래 미제거 건을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 부가세 차이로 인해 발생한 내부거래 미제거 건은 향후 국가통합결산보고서 작성 시 조정 분개로 반영하므로 중앙관서 결산 시점에서는 별도로 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국가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하는 부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공급대가를 임차료로 계상하나, 임대료 수입을 처리하는 부처에서는 수령한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만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 이러한 사유로 임차료가 수수료수익보다 부가가치세만큼 크게 계상되어 수익, 비용 내부거래 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Q416

자산계정의 잔액이 0원이나, 당기에 발생한 부(-)의 금액이 미제거로 표시된 경우 조치방법

질 의 내 용

12월말 현재 미수채권 잔액이 0원(전기이월 1,000원, 당기 발생 -1,000원)입니다. 당기 발생건에 대해 디브레인 '상호점검' 화면에 '미제거'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가요?

- ▶ 12월말 현재 자산부채 계정과목 잔액이 '0'인 경우는 제거할 금액이 없으므로 내부거래 제거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당기 발생 건 -1,000원에 대해 디브레인 상호점검 화면에서 '미제거'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작업을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Q417

거래처가 국고금회계인 건의 조치방법

질 의 내 용

상호점검 화면에서 '상대회계계정명'이 국고금회계로 되어 있는 미제거 전표가 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 '상대회계계정명'이 국고금회계로 되어 있는 미제거 건은 국가재무제표 작성 단계에서 제거하므로 중앙관서에서 별도로 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대상제외 항목

Q418 대상제외 항목의 의미와 처리방법

질 의 내 용

조달청의 조달특별회계와 조달수수료 거래를 했는데, 상호점검 시 대상제외로 조회됩니다. '대상제외'의 의미와 이와 같이 대상제외로 조회된 항목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 ▶ 조달청과의 거래 중 상호점검 시 대상제외로 조회된 금액은 내부거래 제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이므로, 대상제외로 조회된 항목은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합니다.

Q419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의 종류

질 의 내 용

조달수수료, 등기료, 우편요금 및 세금 외에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이 더 있나요?

- ▶ 2017회계연도부터 추가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전파 검사수수료 및 허가수수료가 있으며 대상제외 조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 목	대상제외 조건		
	거래처		계정과목
	소관	회계	
조달수수료,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조달청	조달특별회계, 조달사업회전자금	기타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조달특별회계	기타의미지급비용, 기타의미지급금
우편요금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우편사업특별회계	공공요금
전파 검사·허가 수수료		일반회계 (중앙전파관리소)	공공요금, 기타수수료, 기타의미지급비용, 기타의미지급금
등기료	대법원	등기특별회계	등기료법정수수료
세 금	국세청	일반회계	기타수수료, 제세, 법인세비용
	관세청	일반회계	

Q420 조달수수료,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미제거로 조회된 이유

질의내용(1)

조달청에 지급한 조달수수료의 경우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소모성 물품비 계정과목으로 인식한 조달수수료가 상호점검에서 내부거래 미제거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의내용(2)

조달청에 지급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내부거래 대상제외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요?

질의내용(3)

조달청에 조달수수료를 지급한 금액이 내부거래 미제거로 되어있습니다. 조달청에 문의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질의내용(4)

조달수수료에 대해서 계정과목이 기타수수료로 인식되어 있으나 내부거래 미제거로 조회 됩니다. 사유는 무엇입니까?

- ▶ 조달청 조달특별회계 및 조달사업회전자금을 거래처로 하여 업무대행수수료나 기타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인식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또는 조달수수료는 시스템상 대상제외로 집계 됩니다.
- 미제거로 조회되는 건의 거래처 및 계정과목이 대상제외 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21 기금 내부거래 대상 자료에 법인세비용 포함여부

질 의 내 용

디브레인을 사용하지 않는 기금에서 발생한 법인세비용을 기말 결산시 내부거래 자료로 업로드해야 하나요?

- ▶ 국세청과 거래한 법인세비용도 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기말 결산 시 내부거래 자료로 업로드 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거래처를 국세청으로하여 인식한 법인세비용은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이므로, 업로드 하더라도 대상제외 되어 상호점검 화면에서 내부거래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Q422 선급법인세도 법인세비용과 같이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인지 여부

질 의 내 용

○○기금에서 내부거래 대상 자료로 선급법인세를 포함하여 연계하였습니다. 법인세비용과 같이 선급법인세도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인가요? 대상제외 항목일 경우 해당 거래를 제외하고 연계해야 하나요?

- ▶ 상대거래처를 국세청으로 인식한 선급법인세도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입니다. ○○기금에서 선급법인세를 포함하여 내부거래 자료를 연계하더라도 디브레인 시스템에서 대상제외 처리하므로 ○○기금에서 선급법인세를 제외하고 재연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Q423 부담금수익과 제세의 내부거래 제거 여부

질 의 내 용

부담금수익과 제세는 내부거래 제거를 해야 하나요?

- ▶ 국가통합 재정운영표상 부담금 수입은 '부담금수익'으로 처리되어 '비교환수익 등'에 반영되지만, 부담금 지출은 '제세'로 처리되어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됩니다.
- 따라서 부담금수익과 제세를 제거할 경우 '내부거래 원가'와 '내부거래 수익'이 불일치하게 되므로 내부거래 제거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Q424 관세를 운송비로 처리한 경우 조치방법

질 의 내 용

관세청에 대한 관세 납부액은 내부거래 제외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운송비로 잘못 처리하여 내부거래 제거대상으로 조회되고 있습니다. 이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 업무담당자가 디브레인에서 '계정과목 변경' 메뉴[지출>요청관리>계정과목정정요청]를 통해 제세 등으로 계정과목을 올바르게 수정하면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으로 집계될 수 있습니다.

4. 상대소관 또는 발생소관 미제거 건만 존재 시 조치방법

Q425 상호점검에서 발생소관의 미제거 건만 존재하는 경우 조치방법

질 의 내 용

내부거래 상호점검 화면에서 우리 부처에서 발생한 내부거래 내역만 있고, 상대방에서 발생시킨 내부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 먼저 해당 거래가 내부거래가 맞는지 파악하고, 내부거래라면 상대 부처 결산담당자를 통해 해당 거래의 거래처나 계정과목 선택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 후 거래처나 계정과목 수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 만약 내부거래로 집계될 대상이 아닌데 해당 부처의 오류로 미제거된 상태라면 거래처 수정 등을 통해 내부거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Q426 발생소관의 미제거 건만 존재하는 경우(상대소관 부채 누락) 조치방법

질 의 내 용

내부거래 미제거 사유 파악 결과 상대기관의 부채 계상 누락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디브레인에서 해당 기관의 결산담당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내부거래 부채 금액이 누락된 사유를 파악한 후 거래처나 계정과목 수정을 통해 해당 내부거래가 제거될 수 있도록 상대기관 결산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Q427

발생소관의 미제거 건만 존재하는 경우(조달청에 대한 관리용역비) 조치방법

질 의 내 용

○○위원회에서 조달청을 거래처로하여 계상한 관리용역비가 내부거래 미제거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 대상제외해야 하는 건가요?

- ▶ 조달청과의 내부거래 중 조달수수료,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업무대행수수료와 기타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한 경우)만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용역비는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이 아니므로, 해당 미제거 건은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Q428

발생소관의 미제거 건만 존재하는 경우(상대소관의 거래처 선택 오류) 조치방법

질 의 내 용

○○청에서 우리 부처를 중앙부처가 아닌 공공기관으로 선택하여 ○○청에서 발생시킨 내부거래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 거래처 정보는 거래처명 뿐만 아니라 하위에 정보관리항목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처명이 동일하더라도 ‘거래처 구분’이 ‘3. 중앙재정(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거래처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 이 경우 ○○청 결산담당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거래처를 ‘거래처 구분’이 ‘3.중앙재정(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인 거래처로 수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Q429

발생소관의 미제거 건만 존재하는 경우(발생소관의 거래처 선택 오류) 조치방법

질 의 내 용

일반회계에서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정부내예수금을 상환하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기타재원조달/재원의조달 계정과목이 발생하였고 거래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되어 있어, 해당 건이 상호점검에서 미제거로 조회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 해당 거래로 인해 발생한 기타재원조달/재원의조달 계정과목의 거래처는 국고금회계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거래처를 수정해야 합니다.

Q430

상대소관 미제거 건만 존재하는 경우(계정과목 선택 오류) 조치방법

질 의 내 용

○○청으로 입목을 매각하였습니다. ○○청에서 입목 대금을 지출하면서 기타수수료로 회계처리하여 해당 전표가 내부거래 미제거 상태로 조회되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 ○○청에서 입목으로 제대로 회계처리했다면 해당 미제거 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 결산담당자를 통해 기타수수료를 입목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Q431

상대소관에서 발생시킨 미제거 건만 존재하는 경우(거래처 선택 오류) 조치방법

질 의 내 용

전기 부담금수익 중 일부를 반환하면서 전기과오납금반환금으로 처리한 건이 상대 회계 실체에서 발생시킨 대응되는 건이 없어 상호점검 화면에서 미제거로 조회됩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 상대 회계실체에서 반환 받은 금액에 대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했다면 과오지급금회수금 계정과목으로 상호점검 화면에서 조회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거래처를 잘못 선택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대 회계실체에서 거래처명을 민간 거래처로 선택했거나, '거래처 구분' 선택시 '3. 중앙 재정'이 아닌 거래처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 회계실체에서 거래처를 수정 하면 해당 미제거 건이 제거될 것입니다.

Q432

환원전표 내부거래 제거 여부

질 의 내 용

환원전표도 내부거래 제거 대상인가요?

- ▶ 환원전표도 내부거래 제거 대상입니다. 따라서 환원전표 관련 내부거래 미제거 건도 다른 미제거 건과 동일하게 내부거래 제거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참고로 환원전표는 디브레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생되므로 작성자가 기획재정부로 표시됩니다.

5. 수동대사 및 국채 제거 방법

Q433 상호점검 조회 화면의 요청번호 의미

질 의 내 용

내부거래 상호점검에서 조회되는 '요청번호'가 무엇인가요?

- ▶ '요청번호'는 내부거래 중 '미제거'로 조회된 전표에 대해 수동대사를 수행하면 생성되는 것으로, 수동대사 처리한 전표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제거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됩니다.
- 참고로 상대방 거래처에서도 동일한 수동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상호점검에서 '요청번호' 열 옆의 '상대요청번호' 열에 일련번호가 생성되며, 서로 일치할 경우 수동대사 처리한 전표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 두 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호점검 화면의 '상호점검제거' 열에 '불일치'라고 표시되며, 이 경우 해당 수동대사를 취소하고 재수행해야 합니다.

Q434 일대 다수 전표 미제거 건의 조치방법

질 의 내 용

상대회계실체 전표 1건과 우리 부처 전표 두 건이 미제거로 조회됩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 디브레인에서는 발생 전표가 1:1로 대응 되는 경우만 자동으로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표가 일대 다수 또는 다수 대 다수(금액의 총 합은 양 회계실체가 동일한 경우)로 발생하였다면 상호점검 화면에서 미제거로 조회 됩니다.
- 이 경우 양 회계실체에서 동일한 전표를 선택하여 수동대사 처리하면 제거 가능합니다.

Q435 회계간 내부거래 미제거 건 조치 기한

질 의 내 용

동일 중앙관서내 각 회계실체의 결산이 확정된 후에도 회계실체(기금, 일반회계)간의 내부거래 미제거 건이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 회계간 내부거래는 중앙관서 결산 단계에서 제거하는 것이나 미제거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제거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 우선, 내부거래 미제거 원인이 회계일자가 근접하지 않거나, 전표가 1:1 대응이 아니어서 디브레인에서 자동제거 되지 않아 수동대사 처리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각 회계실체 결산을 확정된 후 중앙관서 결산 시 수동대사 처리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내부거래 미제거 원인이 거래처나 계정과목 선택오류인 경우 오류를 발생시킨 회계실체에서 수정후시산표 마감 전까지 거래처나 계정과목을 바르게 수정해주어야 중앙관서 결산 시 회계실체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Q436 외부연계기관의 수동대사 수행 여부

질 의 내 용

외부연계기관도 디브레인상 수동대사를 수행할 수 있나요?

- ▶ 외부연계기관은 디브레인상 수동대사 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국가통합 단계에서 수동대사를 수행합니다.

Q437 중간점검 시 자산부채 수동대사 필요 여부

질 의 내 용

중간점검 시 자산부채 내부거래 미제거건과 관련해서 수동대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나요?

- ▶ 자산부채 내부거래는 결산 시 최종 잔액을 기준으로 제거되므로 결산 전에 미제거건을 수동대사 처리하더라도 내부거래 최종 제거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수동대사 처리하는 실익이 없으므로 중간점검 시 수동대사를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Q438 내부거래 COA 다운로드 방법

질 의 내 용

디브레인 연계기관입니다. 내부거래 대상자로 연계를 위해 '내부거래 COA'를 참고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다운 받을 수 있나요?

- ▶ 디브레인에서 '회계결산' 메뉴를 선택하면 화면 중앙에 나타나는 '공지사항'에서 내부거래 COA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결산>재무결산>결산계시판] 경로에서도 내부거래 COA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Q439 중앙관서내 회계실체간 국채 내부거래 제거 방법

질 의 내 용

○○부의 회계실체간에 국채 발행 및 매입 거래가 있습니다. 기말 결산 시 중앙관서내 회계실체간의 국채 내부거래는 어떻게 제거해야 하나요? 국채와 관련해 발생한 국채이자비용, 투자증권평가손익 등의 계정도 내부거래 제거대상인가요?

- ▶ 국채의 경우 국채발행자 입장에서는 거래처를 확인할 수 없어 국채에 대한 내부거래가 자동으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 ▶ 따라서 중앙관서 회계실체간의 국채 내부거래는 결산담당자가 디브레인의 [회계결산>재무결산>중앙관서>회계간내부거래제거>국공채자동대사(중앙관서)]경로로 들어가 화면상단에 기재된 작업순서 [조회>국공채 대상집계>엑셀>엑셀 업로드>원장반영] 따라 작업* 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 * 별도로 디브레인에서 다운받은 국공채 내부거래 대상집계 양식(엑셀파일)에 내부거래 제거 정보를 입력하고 다시 디브레인에 업로드하여 '원장반영' 클릭
- ▶ 국채 내부거래 제거 시 국채 계정과목 뿐만 아니라 국채와 관련해 발생한 국채이자비용, 국채이자수익, 투자증권평가손익, 미수채권이자수익, 미지급이자비용 등도 함께 업로드 및 원장반영하여 내부거래 제거를 수행해야 합니다.

Q440 소관간 국채 내부거래 제거 방법

질 의 내 용

○○기금에서 부동산 매입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발행한 국채이기 때문에 내부거래 문제가 생길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관서에서는 해당 국채의 발행처가 어디인지 알 수 있지만, 국채를 발행한 중앙관서에서는 발행한 국채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 이에 따라 국채의 내부거래 제거는 기획재정부에 의해 국가통합 시 각 중앙관서로부터 국채보유내역을 전달받아 수행됩니다.

제3장 결산조정분개 및 결산보고서 수정

1. 결산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 메뉴 사용

Q441 디브레인을 통한 감가상각비 계산 시점

질 의 내 용

디브레인에서 감가상각비 계산을 실행하려면, 국유재산대장을 마감하여야 하나요?

- ▶ 디브레인에서 감가상각비 계산실행은 국유재산대장을 마감한 후에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처리 결과는 [결산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감가상각비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442 정부내예수금에 대한 미지급비용 계상 시 계정과목과 시스템 상 처리방법

질 의 내 용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정부내예수금 700억에 대해 이자상환이 이루어진 12월 9일 이후부터 재정상태표일까지의 미지급비용을 계상하려면, 사용하여야 하는 계정과목은 무엇이고, 조정분개 입력으로 수행하여야 하나요?

- ▶ 정부내예수금에 대한 미지급비용의 계정과목은 미지급이자비용입니다. 이는 [결산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 메뉴] 중 '미지급비용 인식'을 통해 수행됩니다.
- '미지급비용 인식'은 정부내예수금의 정보항목에 따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분개전표를 생성하는 방식이므로, 별도의 결산조정전표 입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III. 디브레인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Q443 대손충당금의 프로그램 대응 방법

질 의 내 용

대손충당금을 프로그램에 대응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 [결산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대손충당금 설정] 화면에서 전표생성 전에 프로그램/단위 사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결산조정전표 등록

Q444 결산조정전표 등록 가능 시점

질 의 내 용

건강보험금 관련 비용을 퇴직급여총당금에서 차감한 오류를 발견하여 결산조정분개를 수행하려고 하였으나 디브레인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디브레인시스템을 통하여 수정전시산표 마감을 수행하게 되면 결산조정분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Q445 건설중인자산을 결산조정분개로 처리한 경우 사후 조치

질 의 내 용

과거 건설중인자산과 관련하여 재해손실이 발생하여 결산조정으로 건설중인자산을 감소 시켰습니다. 취득이 완료됨에 따라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할 때 관련 결산조정 효과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 ▶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되어야 하는 금액은 재해손실을 반영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 재해손실 금액 효과는 결산조정으로만 처리하였기 때문에 대장에 등재되는 금액은 재해손실 반영 전 금액입니다.(자산 과대 계상 및 건설중인자산 부(-)의 금액 발생)
 - 재해손실 금액만큼 과대된 자산은 기타증감으로 차감하고,
 - 차감 시 발생한 계정과목(예. 전기오류수정손실) 금액과 건설중인자산 부(-)의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Q446 결산조정전표 입력 시 조정항목의 순자산구분 선택 방법

질 의 내 용

디브리인에서 결산조정전표를 입력하는 경우, 순자산변동표상 조정항목은 기본순자산,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 구분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나요?

- ▶ 결산조정전표 입력 시, 관리항목을 통해 순자산변동표상 조정항목의 순자산 구분(기본순자산,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447 소송패소로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기존 소송충당부채 상계 방법

질 의 내 용

소송패소로 인해 소송가액을 지급하는 경우 기존에 설정한 소송충당부채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요?

- ▶ 소송충당부채 설정은 결산조정분개로 하게 되고, 소송패소로 실제 소송비용 지급 시 비용이나 수입금반환으로 처리됩니다.
- 따라서 기말시점에 기존에 설정한 소송충당부채와 소송비용 지급 시 계상된 비용 등을 서로 상계하는 결산조정분개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Q448 항공권 구매권한 선급비용 인식 시 환원분개 처리 여부

질 의 내 용

항공권 구매권한 잔액을 기타의선급비용으로 인식하는 결산조정전표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환원여부'를 N, Y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또, 거래처는 인사혁신처로 하면 되나요?

- ▶ 항공권 구매권한을 기타의선급비용으로 인식하는 결산조정전표를 등록할 때 '환원여부'를 'N'으로 선택하여 차기에 환원분개 처리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항공권 구매권한을 기타의선급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사용 또는 유효기간(제공일로부터 1년간)이 종료된 경우 감소처리 해야 합니다.
- ▶ 기타의선급비용 결산조정전표 등록 시 거래처는 인사혁신처가 아닌 항공권 구매권한을 제공한 항공사로 해야 합니다.

3.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Q449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절차

질 의 내 용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기존에 프로그램수익으로 처리한 수익을 비배분수익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을 위한 디브레인절차는 무엇인가요?

- ▶ 다음의 3가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결산조정전표 입력을 통해 자산, 부채 금액을 변경하는 회계처리(수익, 비용의 재작성은 해당사항 없음) 수행[회계결산>재무결산>회계기금>결산조정분개>결산조정전표 등록]
 - 결산보고서 수정요청을 통해 전기 내역 수정[회계결산>재무결산>회계기금>결산보고서 수정요청]
 - 전기결산서 조정내역에 재작성 관련 효과를 입력[회계결산>재무결산>회계기금>전기결산서 조정내역]

Q450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시 수정분개의 반영 방식

질 의 내 용

자산누락에 따른 전기오류수정이익에 대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는 경우에 전기 재무제표에 분개는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 ▶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한 분개는 당기 재무제표에만 반영되므로,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는 전기보고서 수정을 통해 담당자가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IV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



제 1 장 결산개요

1. 자산, 부채 및 순자산증감표

Q451 연계기관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증감표 작성방법

질 의 내 용

연계기관의 경우 디브레인에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증감내역을 생성하는 기능이 부속명세서 메뉴에서 확인되는데, 자산부채순자산증감내역이 부속명세서에 포함되나요?

- ▶ ‘자산, 부채 및 순자산증감표’는 부속명세서가 아닌 결산개요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계기관에 대해서는 디브레인에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증감표’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을 부속명세서 하위 폴더에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제2장 > 주식

1. 계류중인 소송사건

Q452 주식 공시 대상인 소송사건의 범위

질 의 내 용

주식의 계류중인 소송 내역에는 전체 소송건수를 작성해야 하나요? 중요한 소송 건수만을 작성해야 하나요?

- ▶ 전체 소송사건에 대한 건수 및 소송가액을 기재하되 그 중 중요한 내역은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 부분에 기재해야 합니다.

Q453 소송 관련 주식 작성

질 의 내 용

기금 소유 골프장 리모델링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고가 기금이 아닌 골프장 관리업체이나 패소 시 해당 기금이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금은 소송 관련 주식을 기재해야 하나요?

- ▶ 소송 패소 시, 패소 확정금액을 해당 기금에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피고가 기금이 아니더라도 소송 관련 주식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세입·세출외 현금

Q454 세입·세출외 현금 주식 기재 방법

질 의 내 용

보관금, 공탁금과 같은 세입·세출외 현금은 모든 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나요?

▶ 구분이 가능한 항목은 모두 구분해서 주식에 기재해야 합니다.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2. 주요 세입·세출외 현금 항목과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항목	관련법령
보관금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제53조
계약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하자보수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신원보증금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적부심보증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7조
가납금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0조
임치금	「가사소송규칙」 제125조
농지복구비	「농지법」 제36조
산지관리복구비	「산지관리법」 제38조
법원보관금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조
공탁금	「공탁규칙」 제62조

3. 용자사업

Q455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이 없는 용자사업 주식 공시

질 의 내 용

용자사업에 해당되지만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이 없는 경우(2009년 12월 31일 이전 실행된 용자금으로 대손추산액이 없는 경우) 주식에 공시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 재정상태표일 현재 용자사업의 개요, 용자조건, 용자사업의 규모 등을 주식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Q456 용자사업 주식에 대손처리금액 표시 방법

질 의 내 용

용자사업 주식 기재 시 당기에 대손처리한 금액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 ▶ 용자사업 주식 중 용자사업 세부 현황 기재 시, 대손처리한 용자금에 대해서는 '당기 감소'에 기재하고, 표 하단에 해당 내용을 주기 표시할 수 있습니다.

Q457 용자사업 세부현황 작성시 감면액 표시 방법

질 의 내 용

용자 관련 주식에서 용자사업 세부현황을 작성할 때, 당기회수액이 아닌 감면액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감면액은 ‘당기 감소’ 부분에 기재하고, 표 하단에 해당 내용을 주기 표시할 수 있습니다.

Q458 용자사업 주식 기재 범위

질 의 내 용

용자사업 주식은 모든 용자금에 대해서 다 기재해야 하나요?

▶ 용자 회계처리지침 문단2에서 규정하는 용자사업 정의에 부합하는 용자금에 대해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용자 회계처리지침〉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용자를 제공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4. 자산재평가

Q459 자산재평가 주식사항 작성 방법

질 의 내 용

주식의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작성 시 각 재평가방법 마다 재평가가액, 재평가 전 장부가액 및 재평가손익을 별도로 구분해서 작성하나요?

- ▶ 결산작성지침 양식에 따라 각 자산 종류별(토지, 건물 등) 재평가방법을 열거하고 각 재평가방법마다 해당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제3장 필수보충정보

1. 유산자산

Q460 유산자산 공시 방법

질 의 내 용

유산자산은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계상되는데 이외에 별도로 공시하는 항목이 있나요?

▶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를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합니다.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32. (필수보충정보)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로, 다음을 말한다.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2.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Q461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상 미수채권의 증가 표시 방법

질 의 내 용

미수부담금수익과 미수제재금수익 관련 미수채권의 증감은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의 어느 항목으로 기입해야 하나요?

- ▶ 미수부담금수익과 미수제재금수익 관련 미수채권은 '2. 발생주의 기간수익·비용 차이'의 '부담금수익 차이'와 '제재금수익 차이'에 기재합니다.

Q462 공무원연금부담비의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조정항목 포함여부

질 의 내 용

인사혁신처로부터 배부 받은 공무원연금부담비의 경우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상 차이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

- ▶ 공무원연금부담비 배부액의 경우 배부받은 부처 입장에서는 현금유출 없이 발생한 비용이므로, '2. 발생주의 기간수익·비용 차이'의 '기타비용차이'에 기재합니다.

Q463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금액 대사 방법

질 의 내 용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항목 중에서 재정운영결과 이외에 수익비용성질별재정운영표 금액과 일치해야 하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상의 평가이익,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평가손실, 자산감액손실 차이 등이 수익비용성질별재정운영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결산작성지침>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상 다음의 항목들은 수익·비용 성질별재정운영표와 일치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수익·비용 성질별재정운영표
평가이익 차이	평가이익
퇴직급여 차이	퇴직급여(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외)
감가상각비 차이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차이	대손상각비
평가손실 차이	평가손실
자산감액손실 차이	자산감액손실

Q464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의 퇴직급여 차이와 재정운영표의 퇴직급여 금액 일치 여부

질 의 내 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의 퇴직급여차이와 재정운영표의 퇴직급여 금액이 일치해야 하나요?

- ▶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의 퇴직급여차이에는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퇴직급여 비용이 작성되어야 하지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현금이 지출되는 퇴직급여비용이므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인한 퇴직급여만큼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의 퇴직급여차이와 재정운영표의 퇴직급여 금액이 차이 나게 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만을 활용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면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의 퇴직급여차이와 재정운영표의 퇴직급여 금액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Q465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상 무형자산 상각금액 입력 방법

질 의 내 용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작성 시 무형자산 당기 증감액은 자산·부채의 증감에, 무형자산상각비는 발생주의 기간수익·비용으로 반영을 하니 해당 금액만큼 재정운영결과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과 해결방법이 무엇인가요?

- ▶ 무형자산 상각 금액은 해당 자산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따라서 무형자산 당기 총 증감액을 '자산부채의 증감'에 반영하는 경우, 상각으로 인한 효과가 '발생주의 기간수익·비용 차이'에도 반영되므로 상각 금액만큼 오류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무형자산 상각금액은 '자산부채의 증감'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제4장 부속명세서

1. 일반유형자산명세서

Q466 일반유형자산명세서 상 '감가상각 등'과 '기타증감'의 내용

질 의 내 용

일반유형자산명세서 상 '감가상각 등'과 '기타증감'에 들어갈 금액은 어떠한 내용들인가요?

- ▶ 감가상각 등은 당기 중 감가상각으로 인한 비용에서 자산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과 상계된 금액을 기재하며, 수익·비용 성질별재정운영표상 감가상각비와 일치합니다.
- ▶ '기타증감'은 취득/자본적지출, 대체, 처분, 감가상각, 감액/환입, 조직개편 이외의 기타의 증감액을 기재합니다. 당기 발생한 재평가손익증감 및 자산의 멸실이나 폐기 등으로 인한 감소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며, 이때 감소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등을 차감한 순액으로 기재합니다.

<결산작성지침>

감가상각은 당기 중 감가상각으로 인한 비용에서 자산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과 상계된 금액을 기재하며, 성질별재정운영표 상 감가상각비와 일치

기타증감은 상기 사항 외 기타의 증감액을 기재한다. 당기 발생한 재평가손익증감 및 자산의 멸실이나 폐기 등으로 인한 감소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며, 이때 감소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등을 차감한 순액으로 기재

Q467 자산재평가이익 금액대사 방법

질 의 내 용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명세서상 자산재평가이익과 주식의 순자산조정명세서상 자산재평가이익 금액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 ▶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명세서상 자산재평가이익의 합계액은 주식의 순자산조정명세서상 자산재평가이익의 당기말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Q468 재평가이익이 존재하는 유형자산 처분 시 명세서 표시 방법

질 의 내 용

재평가이익이 존재하는 자산을 처분한 경우 일반유형자산명세서상에서 어떻게 표시하나요?

- ▶ 일반유형자산명세서상 처분란에 처분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2. 출자금명세서

Q469 출자금명세서 작성 방법

질 의 내 용

전년도 결산보고서상 출자금명세서에 출자금의 대부분이 '기타' 거래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동일하게 작성하면 되나요?

- ▶ 기타거래처가 아닌 출자대상 기관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로 출자금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5장 기타

Q470 결산보고서 인쇄본 기획재정부 제출 여부

질 의 내 용

결산서(재무제표 및 주석 등)는 인쇄하여 기재부에 제출하나요?

- ▶ 디브리태일링에서 결산확정을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해당 부처의 결산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산서 인쇄본을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Q471 중앙관서 결산보고서 조회 사이트

질 의 내 용

타 중앙관서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및 재무결산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 기획재정부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 홈페이지 (<http://www.openfiscaldata.go.kr>)에서 다음의 경로로 들어가 조회 가능합니다.
- 재정 통계>중앙정부>결산>문서자료>결산보고서>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 결산보고서 폴더에서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뿐만 아니라 국가채무관리보고서, 채권 현재액총계산서 등 개별법 보고서와, 국가결산보고서, 기금재무제표, 정부기업특별회계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재무제표 등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472 세출예산과 재무계정과목 매핑자료 다운로드 방법

질 의 내 용

지출업무 수행 시 예산안에서 세부·세세부항목 선택하면 재무계정과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매핑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출업무 시 변경 후 매핑 자료를 참고하고 싶은데 이 자료를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 ▶ 세출예산내에서 세부·세세부항목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재무계정과목 매핑자료는 디브레인 메뉴 [회계결산>재무결산>결산계시판>결산기초정보>세출예산/계정과목매핑조회]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디브레인의 회계결산 메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 결산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Q473 한국은행국가예금이 국가채권현재액 보고서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내 용

자산·부채조정명세서상 국가채권현재액에는 한국은행국가예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재무제표 자산 금액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국가채권현재액에 한국은행국가예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 ▶ 한국은행국가예금은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국가채권현재액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산·부채조정명세서상 국가채권현재액과 재무제표 자산 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하며, 그 차이금액은 'Ⅲ. 차이내역' 중 '4. 대상차이'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채권관리법>

제3조(적용 제외 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36조와 제37조를 적용한다.

1. 벌금, 과료(料料), 형사추징금, 과태료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2. 증권으로 되어 있는 채권
3.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
4. 보관금(保管金)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5. 기부금에 관한 채권
6. 국세 및 관세와 이의 징수에 관련된 채권